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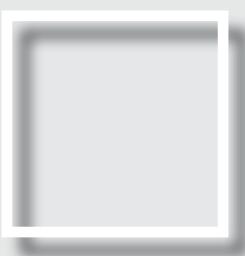
제 출 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9월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



요약보고서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jthink

I. 구조와 기능

1. 공간의 주요기능

- 자립복지재단은 장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연수)+여가문화+돌봄이 통합된 복합커뮤니티로 조성
-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등의 사업 추진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체험교육시설 운영
- 장애인 복지인권 사업으로 장애아동 대상 돌봄, 인권상담, 장애아동 능력개발, 장애인 인권 교육 등 추진

※ 장애인복합 커뮤니티 타운은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전라북도+전주시)으로 연계하여 네 가지 기능이 통합된 복합타운으로 조성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 타운 주요기능

장애인 고용(직업훈련)	장애인 인식개선(차별해소)	장애인 여가문화(치유·건강)	장애인 복지인권(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상담 • 장애인 농생명 직업교육 • 장애인 농생명 분야 취업연계 • 장애인 농생명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전시 체험 • 장애인 국제교류(정보) • 장애인 교육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보건상담) • 장애인 복지농장 조성 • 장애인 치유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권상담 • 장애인 텔시설 지원 • 장애아동 능력개발 • 장애인 인권 교육

I. 구조와 기능

2. 공간의 구조

- 자립복지재단은 장애인고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연수+농생명연계 직업훈련+일자리의 상호연계기반 구축
- 장애인연수시설과 Care Farm 직업훈련센터를 상호 연계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지원하는 종합고용타운으로 조성 (총 부지 2.1만평)

자립복지재단 건물배치



2page

I. 구조와 기능

3. 공간의 가치와 구조(방향)

- 자립복지재단은 장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연수)+여가문화+돌봄이 통합된 복합커뮤니티로 조성
- 장애인고용을 위해 장애인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등의 사업 추진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타운 주요기능



기억과상징

- 장애인인권기념관
- 장애인종합지원센터(탈시설)
- 장애아동능력개발센터

재활과 치유

- 농생명특화장애인 직업훈련센터
- CareFarm농장, 농산물 판매센터
- 자연생태 체험관

교육과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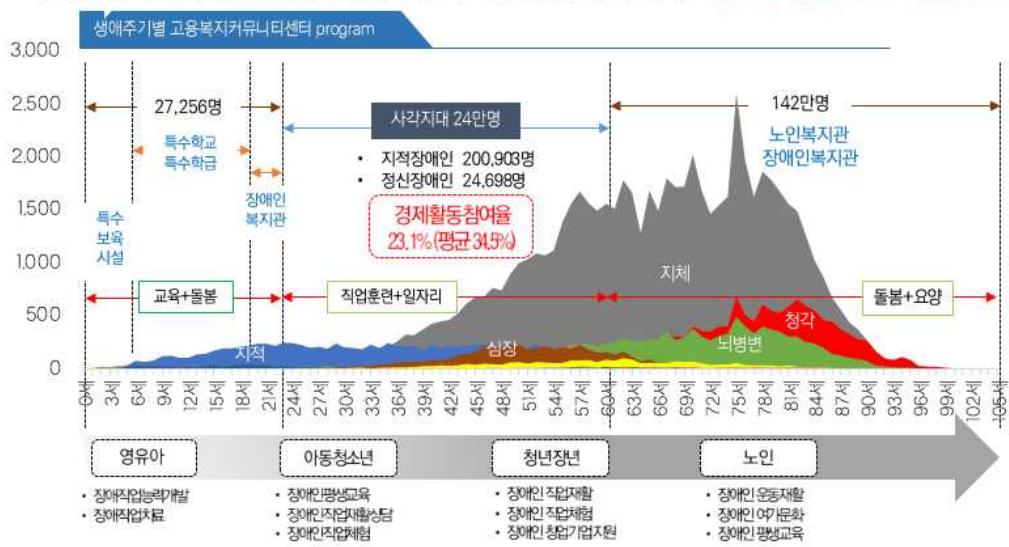
- 장애인컨벤션(연수원)
- 장애인복합 교육문화센터
- 장애인숙박 및 연수

3page

I. 구조와 기능

3. 공간의 가치와 구조(방향)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용을 매개로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가 이용 가능한 복합타운으로 조성
- 생애주기+장애유형이 고용을 주제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one-stop 지원체계로 구축
- 장애인 고용사각지대 계층(발달장애인 24만명)의 통합적 고용복합통합지원체계 구축 (자체장애인 고용률 한국 24% → 일본 51.9%)



I. 구조와 기능

4. 정부정책 동향

1. 장애인 고용확대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역량강화 및 격차 해소 (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 장애인고용률 36.5%(2017년)→38.0%(2022년)로 향상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경기 신설 21년) 발달장애 훈련센터 설치(21년 전국)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장애인창업보육실 운영, 농업기반 창업교육 등)

※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246만명)의 고용률은 36.5%(전체 고용률 61.3%)

※ 고용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은 장애인 59.4%↔ 전체 32.9%

2. 장애인 탈시설 자립역량 강화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중앙('19년), 시도별 지역센터('20년~) 단계적 설치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일반주택 활용 그룹홈 확대, 정원축소, 소규모 전환 기능보강지원 등)
- ※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소했지만 거주장애인은 감소하지 않음
 ※ 거주장애인은 2012년 26,442명→ 2016년 26,461명 2.6만명 유지

3. 장애인 인권보호 및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 중앙 및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 학대피해자 쉼터(현재 8개소) 전국 확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강화 및 개인별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설치('19년~)

5 page

II.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전라북도 관내 장애인 및 장애부모, 장애인 전문가 대상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관련 설문조사 진행
- 등록장애인 177명, 장애부모 138명, 장애인전문가 92명 대상 자립복지재단 향후 활용방안 설문
- 등록장애인(신체장애 132명/내부·정신장애 41명), 장애부모(발달장애 61명, 자폐성 장애 53명, 중복장애 24명), 장애인전문가(장애인복지관 78명, 특수학교교사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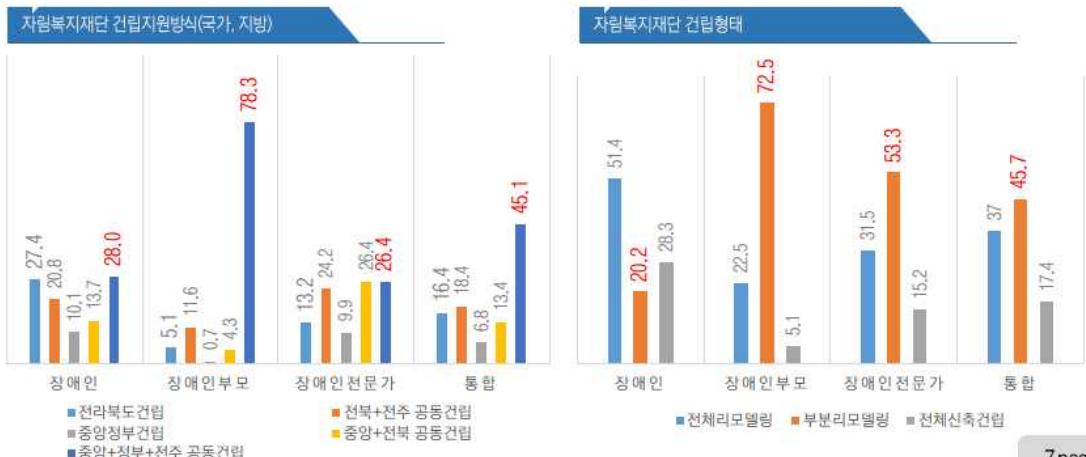
등록장애인(n=177)			장애인부모(n=138)			장애인전문가(n=92)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88	49.7	거주지	전주	134	97.1	근무지	전주	70	76.1
	여성	88	49.7		전주 외	4	2.9		전주 외	22	23.9
	결속	1	.6		합계	138	100.0		합계	92	100.0
	합계	177	100.0		발달장애	61	44.2		장애인이동시설	78	84.8
연령	50대 미만	62	35.0	자녀의 장애유형	자폐성장애	53	38.4	근무 기관	특수학교/교육기관	14	15.2
	50대 이상	114	64.4		중복장애	24	17.4		합계	92	100.0
	결속	1	.6		합계	138	100.0				
	합계	177	100.0								
장애 유형	신체장애	132	74.6								
	내부/정신장애	41	23.2								
	결속	4	2.3								
	합계	177	100.0								

6 page

II.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설문조사

2. 자립복지재단 건립방식 의견

- 자립복지재단 건립지원방식은 중앙+전북+전주 공동 건립 선호 45.1%, 전북 건립 16.4% (다만, 장애부모는 78.3%)
- 자립복지재단의 건립형태로는 부분리모델링 45.7%, 전체 리모델링 37.0%, 전체 신축건립 17.4%
- 장애인부모는 부분리모델링 72.5%, 전체리모델링 22.5%, 전체 신축건립 5.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분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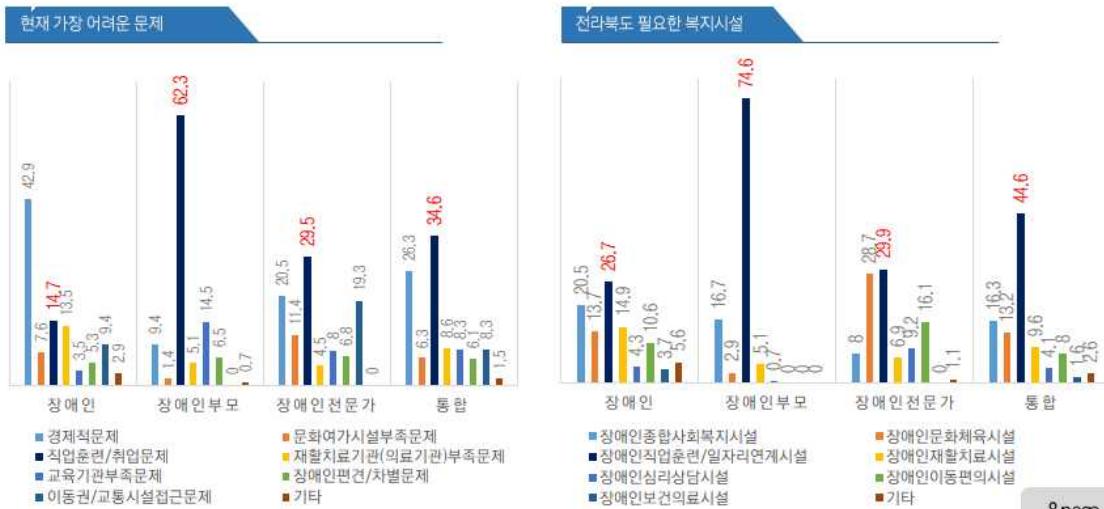


7 page

II.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설문조사

3. 필요한 복지시설

-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직업훈련, 취업문제 34.6% > 경제적 문제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에 필요한 복지시설은 장애인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시설 44.6% > 장애인종합복지시설 16.3%, 장애인문화체육시설 13.2%, 장애인재활치료시설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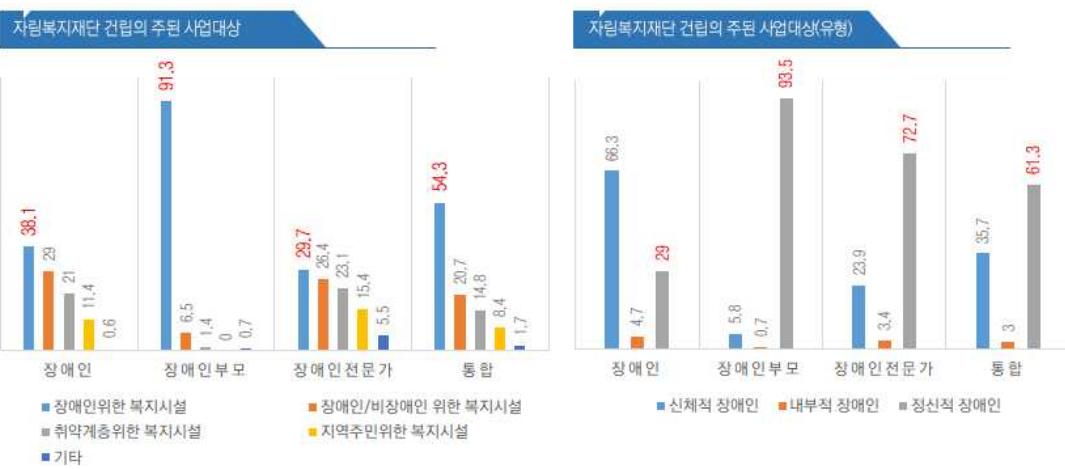


8 page

II.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설문조사

4. 자립복지재단 부지 활용시 주된 사업 대상

- 자립복지재단의 부지 활용시 주된 사업대상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54.3% > 장애인+비장애인 복지시설 20.7% > 취약계층 복지 시설 14.8% > 지역주민 복지시설 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립복지재단의 주된 사업 대상으로는 정신적 장애인 61.3% > 신체적 장애인 35.7%, 내부적 장애인 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9 page

II.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설문조사

5. 자립복지재단의 핵심사업

- 자립복지재단의 우선순위별 핵심사업으로는 직업훈련시설 > 교육시설 및 치료재활시설 > 여가문화체육시설 > 돌봄시설 > 인권보호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부모는 직업훈련시설 및 교육시설 > 치료재활시설 > 인권보호시설 > 돌봄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은 치료재활시설 > 직업훈련시설 > 돌봄시설 > 여가문화체육시설 > 교육시설 및 주거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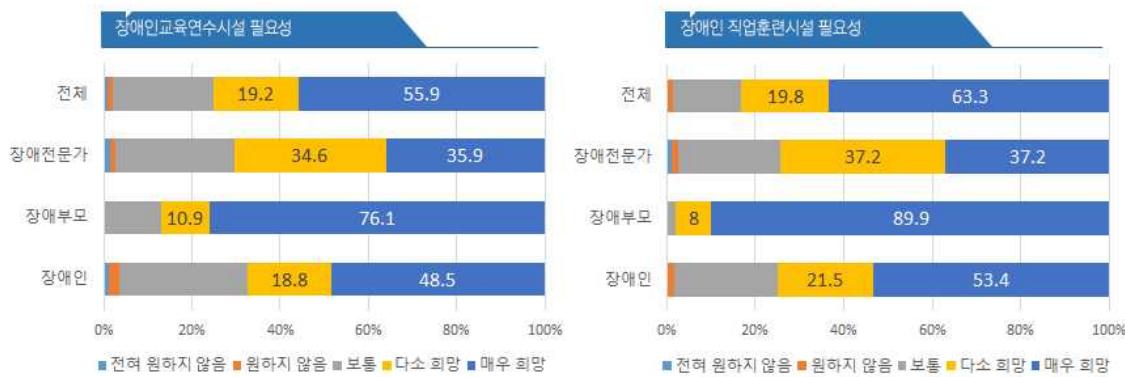


10 page

II.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설문조사

6. 자립복지재단 내 시설유형별 필요성

- 장애인교육연수시설은 매우 필요 55.9%, 다소 필요 19.2%으로 나타나 약 70% 이상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인식
- 장애부모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 76.1%, 다소 필요하다 10.9%로 장애인교육연수시설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필요하다 63.3%, 다소 필요하다 19.8%로 약 80% 이상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인식
- 장애부모는 직업훈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 89.9%, 필요하다 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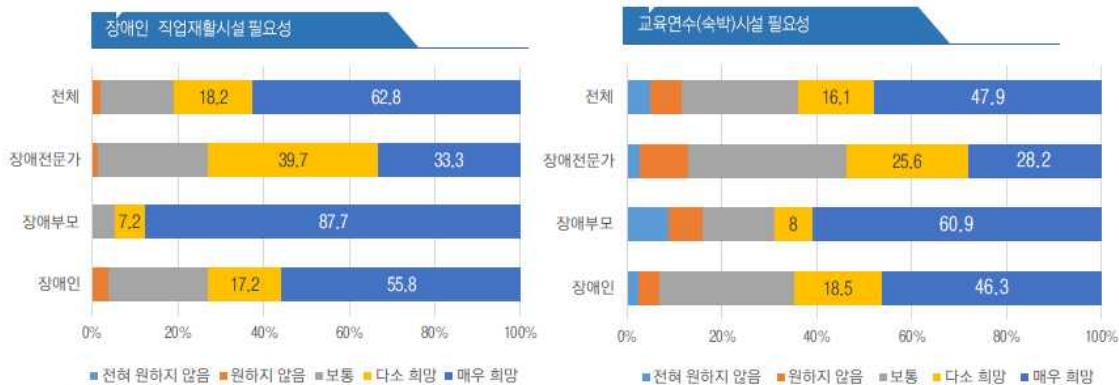


11 page

II.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설문조사

6. 자립복지재단 내 시설유형별 필요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매우 필요 62.8%, 다소 필요 18.2%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장애부모는 약 90%이상이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매우 높은 욕구를 보임
- 교육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47.9%, 다소 필요하다 16.1%로 약 60%정도가 동의
- 장애부모도 필요하다 60.9%, 다소 필요하다 8.0%로 약 70%정도가 필요성에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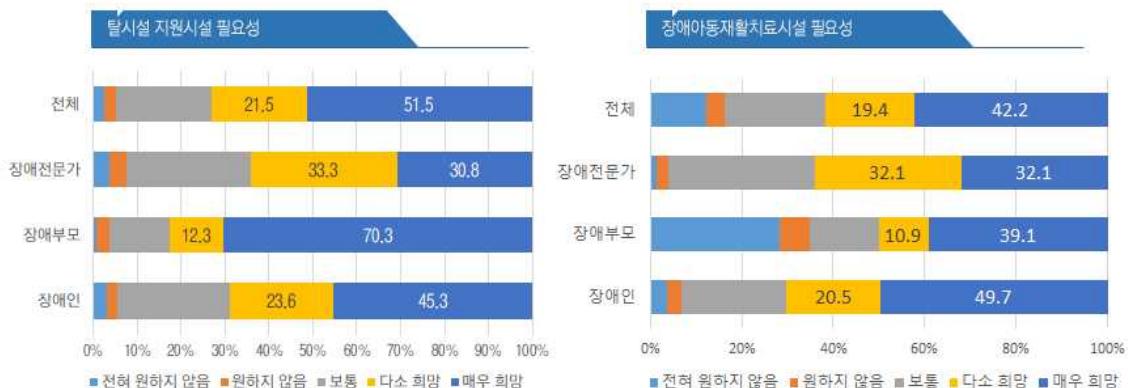


12 page

II.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설문조사

6. 자립복지재단 내 시설유형별 필요성

- 탈시설 지원시설은 매우 필요하다 51.5%, 다소 필요하다 21.5%로 약 70%정도가 필요성에 공감
- 탈시설 지원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부모가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아동재활치료시설은 필요하다 42.2%, 다소 필요하다 19.4% 정도로 약 60%정도 필요성에 공감
- 장애부모는 장애아동재활치료시설에 대해서도 약 50%정도가 필요성에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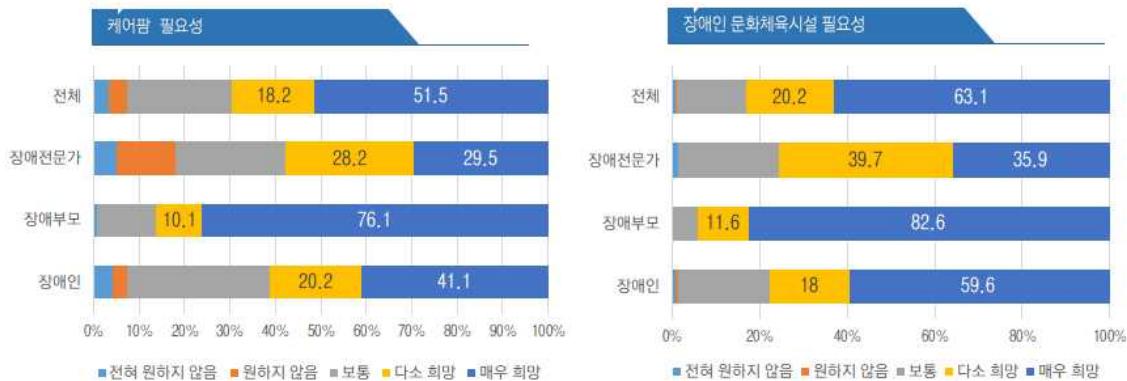


13 page

II.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설문조사

6. 자립복지재단 내 시설유형별 필요성

- 케어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51.5%, 다소 필요하다 18.2%로 약 70%정도가 동의
- 장애부모는 매우 필요하다 76.1%, 다소 필요하다 10.1%로 약 76%정도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은 매우 필요하다 63.1%, 다소 필요하다 20.2%로 약 80%이상이 동의
-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은 장애부모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매우 필요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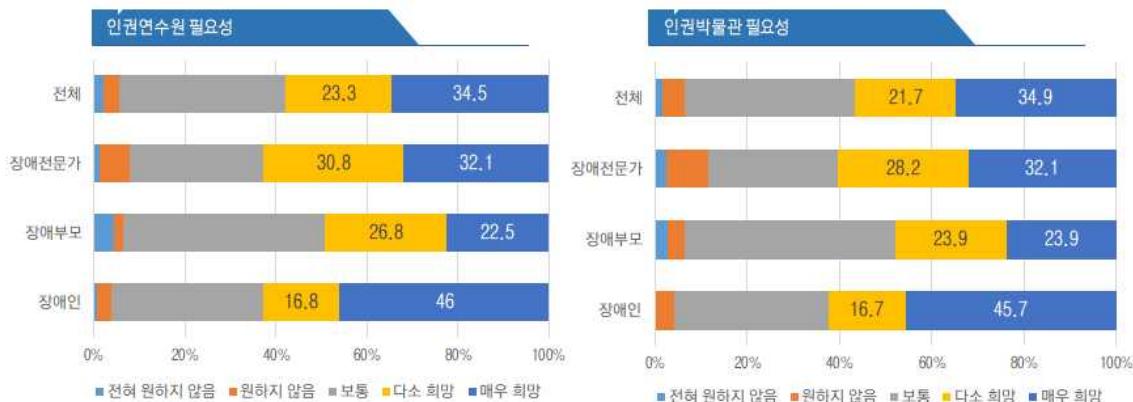


14 page

II.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설문조사

6. 자립복지재단 내 시설유형별 필요성

- 인권연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34.5%, 다소 필요 23.3%로 약 57%정도가 동의하고 있어 다른 시설의 유형보다도 동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권박물관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 34.9%, 다소 필요하다 21.7%로 약 55%정도만 동의하고 있음



15 page

II.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설문조사

6. 자립복지재단 내 시설유형별 필요성

- 자립복지재단의 부지 내 필요한 시설로는 문화체육시설 83.3% > 직업훈련시설 83.1% > 직업체활시설 81.0% 등의 순으로 매우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인권박물관 56.6%, 인권연수원 57.8% 등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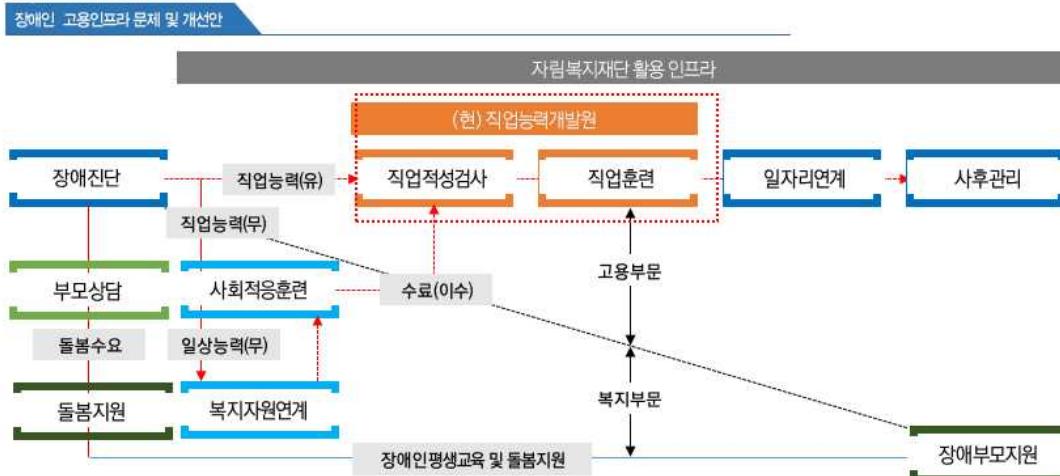


16 page

I. 구조와 기능

3. 공간의 가치와 구조(방향)

- 현재 장애인 고용인프라는 직업훈련분야에 집중된 인프라를 복지와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고용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응훈련과 연계한 직업훈련체계로 일원화 필요
- 장애인고용인프라는 장애인부모지원+사회적응훈련+직업훈련+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전환하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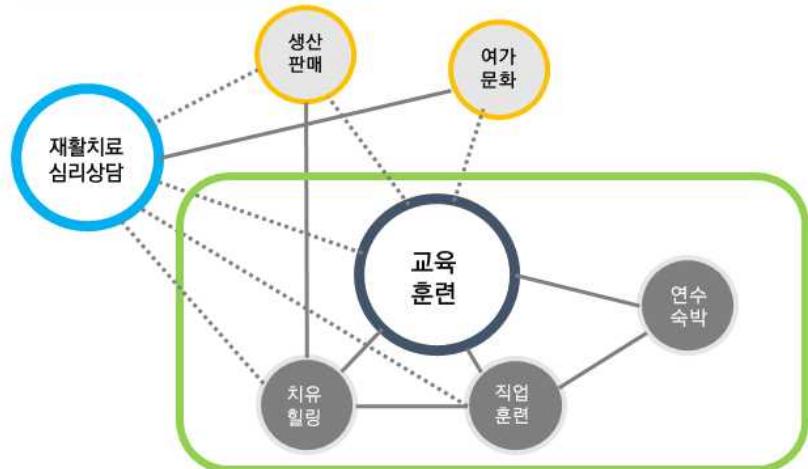
17 page

I. 구조와 기능

4. 공간의 가치와 구조(방향)

- 자림복지재단의 공간은 장애인복지욕구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그리고 국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형 인프라로 구축
- 자림복지재단의 주요공간은 상담·재활·교육훈련·연수·취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구성
- 전라북도의 농생명 특화도시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연계추진

자림복지재단 주요공간 연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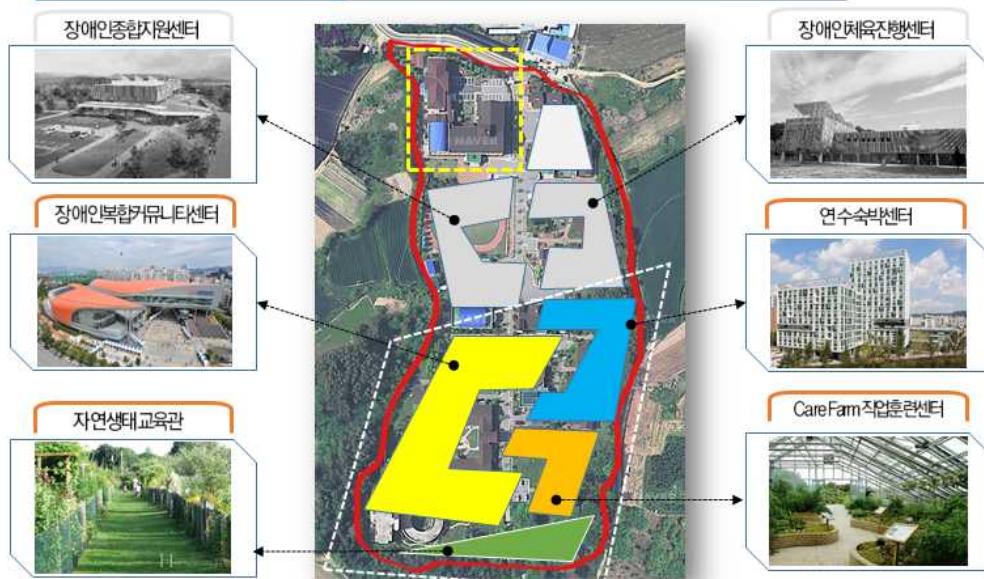


18 page

II. 공간구상

- 자림복지재단의 주요공간은 ① 본관교육동(복합커뮤니티센터), ② 연수숙박관, ③ Care Farm 직업훈련센터, ④ 자연생태교육관 등으로 주요시설물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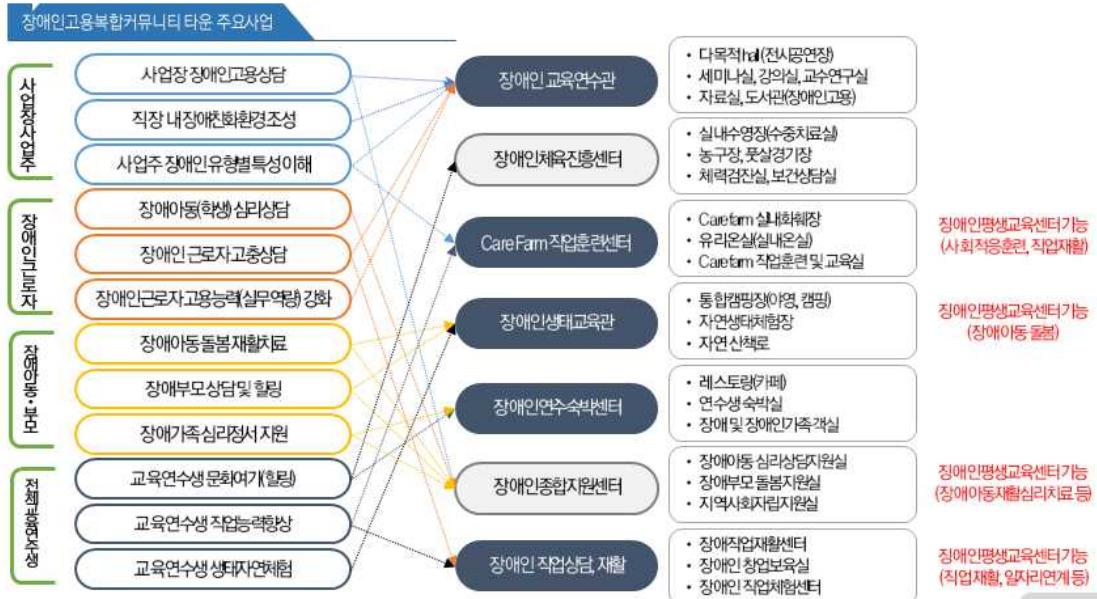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 타운 공간구상



19 page

II. 공간구상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①장애인 인식개선, ②장애인근로자직무역량강화, ③장애인직업자활과치료, ④교육연수생 힐링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업의 연계
-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요 공간내에서 교육연수, 체험, 직업자활, 문화체험과 치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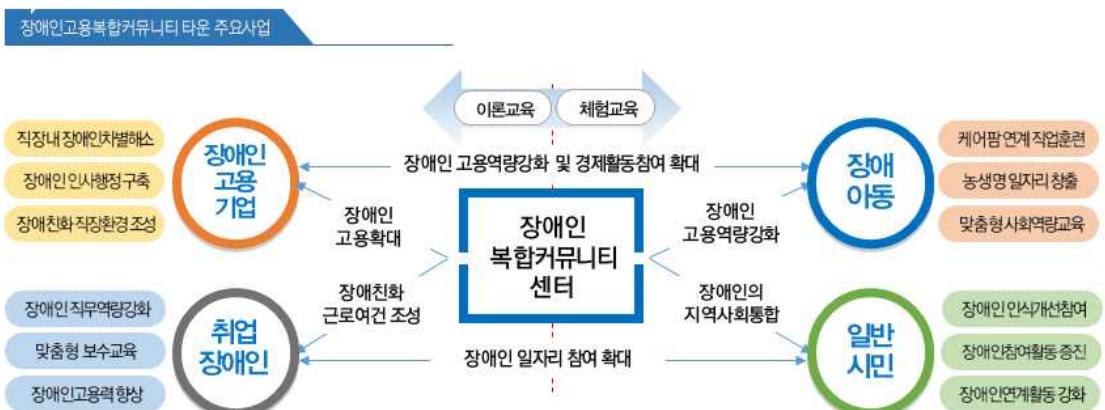


20 page

III. 공간내 사업 구상

교육연수사업 구상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타운은 고용주, 행정기관, 장애인,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고용주는 직장내 장애인고용환경개선, 장애인은 근로장애인의 역량강화, 실업장애인의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능력향상, 그리고 행정기관은 인권행정 강화, 일반시민은 장애인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목표로 교육연수센터 운영



21 page

II. 주요시설물 현황

1. 장애인종합지원센터(탈시설 지원 및 장애아동 심리자활치료)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3층으로 구성하여 탈시설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사회적응능력향상 지원시설로 조성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심리상담센터, 지역사회전환센터, 재활치료센터 설치
-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맞는 맞춤형 심리, 정서, 언어 능력향상 지원, 장애부모 심리상담 지원시설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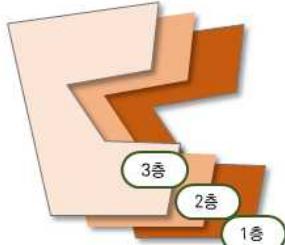
- 장애인아동 심리정서상담
- 장애인부모 및 장애기족 심리상담, 정서지원
-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취업 상담
- 장애인 취업정보제공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상담(탈시설계획수립)
- 장애인인권 상담 및 권익옹호지원
- 탈시설 장애인 장애인 돌봄시설 관리지원
- 탈시설 장애인 독립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 발달장애인 치료실(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훈련
- 발달장애인 상담 및 평가사업(언어평가 등)
-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인지, 모바일, IT 등)



22 page

지역사례: 인천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인천시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9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립생활-전환교육-직업재활(훈련) 인프라로 구성
- 지역사회 중소기업의 민간기부금을 지원받아 시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운영주체 장애인부모협회
- 자립생활지원팀, 전환교육지원팀, 직업교육지원팀으로 구성하고 전일제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정규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내 돌봄 및 교육체계 지원기능 수행
- 인천시 서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전국 최대규모로 설치(지상3층, 2,327㎡ 약 700평) 약 94억원(민간기부 40억원)
- 시설형태는 1층 자립생활체험공간(자립생활체험반), 2층 전환교육반(일상생활지원), 3층 직업훈련지원반(재활, 직업훈련 등)

인천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관 및 입구



센터전경



23 page

III. 공간내 사업구상

1.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본관 교육동)

- 본관 교육동은 고용복합커뮤니티타운의 메인시설로서 교육연수 시설로 구성
- 본관 교육동은 다목적홀(전시, 교육, 공연), 옥외도서관, 카페 및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로 구성
- 본관 교육동의 편의시설은 교육연수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

다목적홀



- 다목적 홀(공연, 전시 등)
-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등
- 국제장애인 교류 행사, 장애인 고용 전시 행사
- 장애인다목적체육 및 여가 활동
- 장애인직업역량 강화 이론교육

옥외도서관



- 지역주민, 교육생, 장애인 휴식공간
- 장애아동 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및 비장애인 소규모 문화예술 실내 공연
- 장애인 및 비장애인 독서 및 휴식공간

레스토랑



- 행사장 이용인 대상 식사
- 장애인 단체 행사참여인원 리셉션
- 일반지역주민 대상 식사(수의사업)
- 호텔이용자(숙박동) 식사 및 카페



24 page

III. 공간내 사업구상

2. 연수숙박관(숙박 및 연구시설)

- 연수숙박관은 교육자 및 이용자 숙박시설, 연수생 및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실로 구성
- 연수숙박관은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교수연구실 함께 배치
- 연수숙박관은 교육생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숙박시설로 조성

연수증명서



- 연수교육생 숙박
- 일반 주민(체험시설 이용자) 숙박
- 장애인 국제 행사 참여자 숙박
- 장애인가족 힐링 휴게공간
- 장애인 근로자 및 가족 숙박 휴게공간

도서관자료실



- 연수 및 교육생 자료실
- 지역주민, 연수생 도서관
- 연수생 및 지역주민 소규모 세미나실
- 연수생 및 교육생 정보화 교육실(컴퓨터 등)

교수연구실



- 장애인고용프로그램 개발
- 연수원 교수연구실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 교육 훈련프로그램 실태조사 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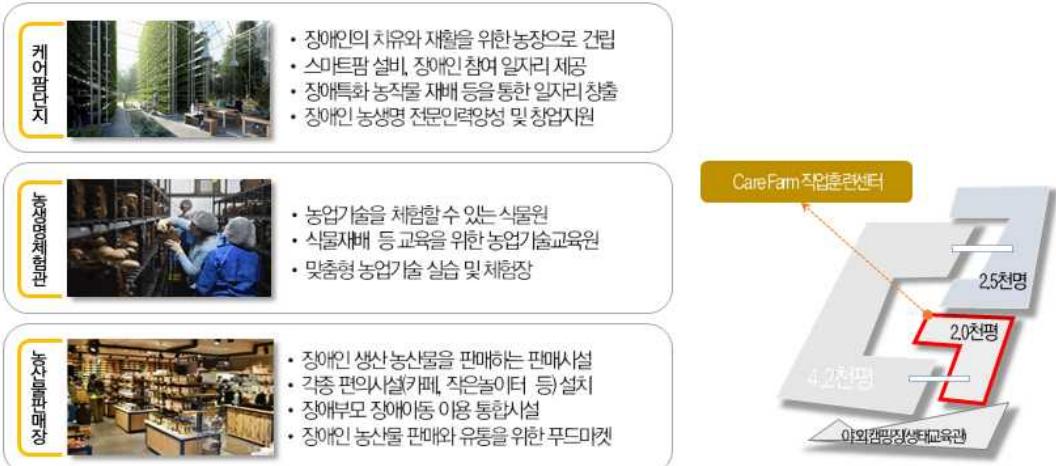


25 page

III. 공간내 사업구상

3. Care Farm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 Care Farm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장애인 고용복지 거점기반육성
- Care Fare은 스마트팜으로 설비하여 다수 장애인이 참여하여 일자리 연계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이 가능한 복지농장 실습 및 체험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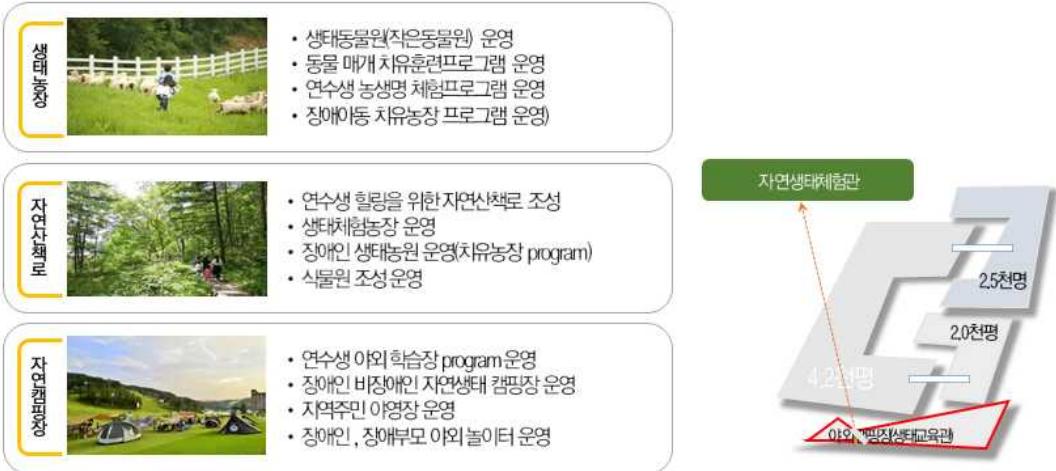


26 page

III. 공간내 사업구상

4. 자연생태 체험관

- 자연생태체험관은 생태농원, 자연산책로, 자연생태 캠핑장으로 구성하여 연수생, 장애인, 비장애인의 치유공간으로 조성
- 자연생태체험관은 전북의 농생명자원(농진청, 농과원) 등과 연계하여 농생명 체험프로그램 공동운영
- 자연캠핑장은 교육연수생의 야외교육공간, 일반시민에게는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



27 page

외국사례: 케어팜 활용 장애아동 돌봄 및 치유시설

바르타일
장애인아동통합아영장



- 장애인 비장애인 학습놀이공간
- 장애인 아동 자연친화학습장
- 장애인 아동, 장애부모 아영시설 운영
- 장애인 장애인부모 방과후 돌봄 및 치유공간(약 70평)

독일
호프구오퍼펠드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형 치유농원
- 농업생산활동(치즈제조, 제과제빵 등)
- 장애인과 주민시설 운영
- 주야간 돌봄 방과후 원예치료 제공
- 장애인농산물을 직판장에서 판매(수익)

네덜란드
드포트돌봄농장



- 정신질환자 24시간 돌봄시설
- 원예 및 동물매개치료 인프라 구축
- 24시간 주간보호, 이간 보호제공
- 상태체크장, 동물농장 운영
- 동물교감, 정원관리, 동물기르기 등

28 page

III. 공간내 사업 구상

CareFarm 활용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창출 사례

- 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으로서 케어팜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고용 창출수단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활용
- 중앙정부(문재인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추진 예정

케어팜 유형

구분	대상	내용
교육	장애인, 빈곤아동, 비행청소년	영농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돌봄	장애인, 아동, 고령자	건강관리, 요양, 재활서비스 제공
고용	장애인, 고령자, 귀농귀촌희망자	농업실습, 일자리 제공

“문재인정부는 100개 국정과제로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제시”

국외 케어팜 정책 사례

네덜란드
케어팜
지원센터

- 네덜란드는 농업을 소득을 위한 생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으로 활용(농업의 다각화 추진)
- 네덜란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과 치유,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케어팜 지원센터 설치
- 전국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1,100개의 케어팜 운영

일본
케어팜
지원센터

- 일본은 2006년부터 복지와 농업을 연계하는 농복연계사업 추진
- 일본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농업기반 장애인 특례회사를 설립하여 농촌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견인(2016년 기준 장애인 고용 특례회사 36개 설립)
-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사회적 농장 지원

29 page

III. 공간내 사업구상

자립복지재단 부지 내 사업연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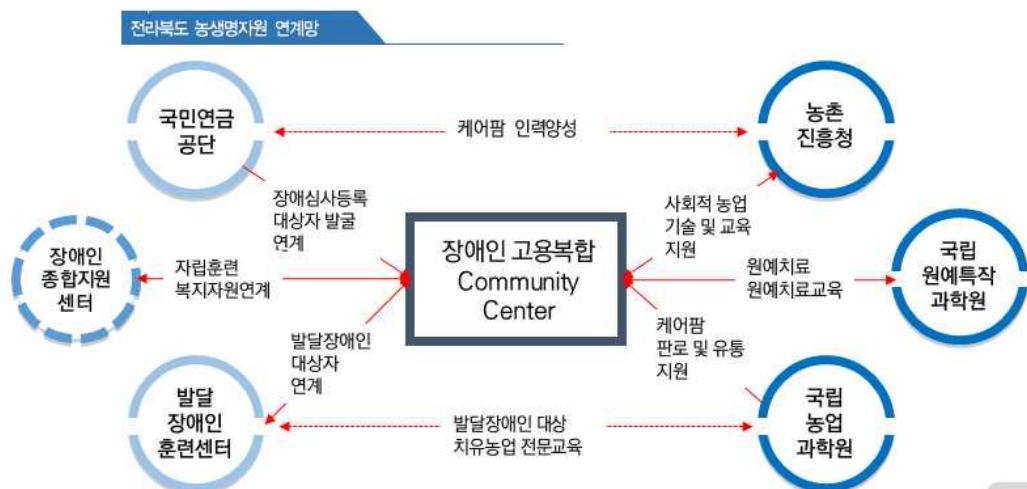
-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통한하여 '상담-훈련-생산-판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고용 복지타운으로 조성
- 장애인직업훈련분야로 'Care Farm'으로 특성화하여 원예, 농작물 재배 및 수확,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



IV. 공간연계구상

자립복지재단 부지 내 지역자원연계망

- 복지자원[국민연금공단(장애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예정)]과 농생명자원(농촌진흥청,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계를 통한 농생명 특화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고용연계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연수+여가문화+일자리 창출 원스톱 서비스 제공



IV. 공간연계구상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타운은 주요진입로(전주IC, 전주역)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접근성 용이
 - 주요 관광자원(한옥마을, 전통문화원, 소리문화전당) 등과도 10km 내외에 인접하고 있어 교육연수생 대상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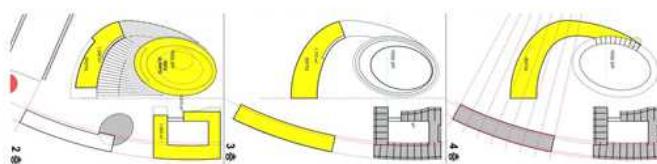
32 page

IV. 공간연계구상

-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농생명 지원을 연계한 장애인직업훈련+고용연수 복합센터로 건립
 -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를 랜드마크로 케어팜+농생명특화 직업훈련+고용연계+교육연수가 조합된 시설로 건립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시실(공연장) 약 600석, 세미나실(강의동) 카페테리아(식당), 작업훈련센터(농생명특화 교육) 설치
 - 태원형 건물에 연결형 건축을 통해 야외 공연장 등 설치를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적이 용공간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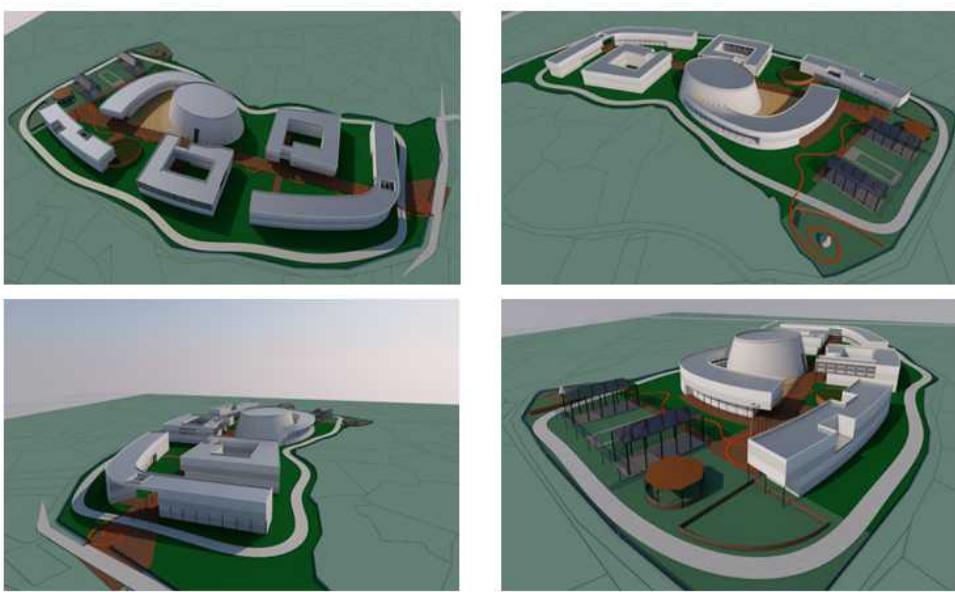
33 page



34 page

IV. 공간연계구상

- 자립복지재단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라북도(전주시) 연계사업으로 조성
- 자립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지원 인프라의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장애인에게는 재활, 치유, 고용지원 비장애인에게는 여가, 문화, 헬링 등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지원 강화



35 page

목 차 Contents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II. 자립복지재단 개관	5
1. 자립복지재단 연혁	5
2. 자립복지재단 시설물 현황	7
III. 장애인 복지수요 진단	11
1. 장애인구 현황 및 추이	11
2. 장애인 고용 복지현황 분석	22
1) 고용 및 일자리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22
2)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수요 현황	33
3) 돌봄 및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	45
4) 교육 및 직업훈련 훈련 자원 현황	61
3. 전라북도 장애인복지 공급 진단	67
1) 장애인복지 공급 현황	67
2) 장애인고용 공급 현황	78
IV. 자립복지재단 기본구상 관련 지역주민 조사	85
V. 국내외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135
1.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135
2.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강화	137
3.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추진	140

4.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화	143
5. 사회적 농업(케어팜) 활성화	146
VII.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안	151
1.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향	151
2. 자립복지재단 부지현황 및 환경 분석	153
VIII.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기본구상	161
1.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상 방향	161
2.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상 계획	167
3. 자립복지재단 공간 내 주요시설물 운영 사례 검토	168
1) 인권박물관 운영 사례	168
2)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170
3) 장애아동 능력개발센터	175
4) 장애인평생교육센터	179
5) 농생명 특화 장애인직업훈련 센터	181
6) 고용복합 커뮤니티센터(연수+교육 기능)	183
7)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188
4. 전라북도 특화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구상	196
1) 농업명 특화 치유농업(케어팜)의 개념 및 유형	196
2) 농생명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204
5. 자립복지재단 공간 주요시설물 구상	215
6. 자립복지재단 주요시설물 유형별 사업내용	215
1)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219
2)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223
3)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 및 교육관	225

4) 장애인종합지원센터	228
5)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230
6) 자립학교(평생교육관)	233
7) 자연생태 체험관(Care Farm)	236
VIII. 자립복지재단 부지 활용 건축기본계획	243
1.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부지활용 배치계획	243
2.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부지활용 조형계획	246
1)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246
2)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248
3. 자립복지재단 활용 기본구상 건축예산	250
4. 자립복지재단 내 주요시설의 지역자원 연계방안	254
1) 장애인 교육(인식개선 및 직업교육)자원 연계방안	254
2) 농생명 특화자원 및 케어팜(Care Farm) 연계방안	255
3) 교육훈련 및 연수자원 연계방안	258
IX. 사업타당성 분석	265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요	265
2. 편익추정 방법	265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274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76
5.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81
참고문헌	287

표 목차 Contents

〈표Ⅱ-1〉 전주 자립원 사건 주요 경과	5
〈표Ⅱ-2〉 자립복지재단 청산주요경과 및 계획	6
〈표Ⅱ-3〉 전주 자립원 시설 현황 및 법적 근거	7
〈표Ⅱ-4〉 전주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현황(토지 및 건물)	7
〈표Ⅲ-1〉 유형별 장애인추이	11
〈표Ⅲ-2〉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유형별 현황	12
〈표Ⅲ-3〉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유형별 구성비	13
〈표Ⅲ-4〉 유형별 장애인추이	14
〈표Ⅲ-5〉 장애인구 및 출현율	14
〈표Ⅲ-6〉 지역별 등록 장애인추이	15
〈표Ⅲ-7〉 지역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16
〈표Ⅲ-8〉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인구 비율	16
〈표Ⅲ-9〉 등록장애인 추이	17
〈표Ⅲ-10〉 전라북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8
〈표Ⅲ-11〉 전라북도 지역별장애인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19
〈표Ⅲ-12〉 전라북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	20
〈표Ⅲ-13〉 전라북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추이	20
〈표Ⅲ-14〉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현황	21
〈표Ⅲ-15〉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 현황	21
〈표Ⅲ-16〉 지역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현황	22
〈표Ⅲ-1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64세)	23
〈표Ⅲ-18〉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64세)	23
〈표Ⅲ-19〉 장애인유형별 경제활동상태	24
〈표Ⅲ-20〉 장애인의 연령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24
〈표Ⅲ-21〉 장애인근로자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5
〈표Ⅲ-22〉 직업분류별 취업자 현황	26

〈표Ⅲ-23〉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26
〈표Ⅲ-24〉 장애인고용기업체 현황	27
〈표Ⅲ-25〉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27
〈표Ⅲ-26〉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	28
〈표Ⅲ-27〉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률(%)	29
〈표Ⅲ-28〉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 및 취업률 추이	30
〈표Ⅲ-29〉 장애인 구인자 수 추이 (단위 : 명)	31
〈표Ⅲ-30〉 장애유형별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	31
〈표Ⅲ-31〉 기채용 및 신규인력채용 계획 여부(전체 기업체)	32
〈표Ⅲ-32〉 장애인 학력	33
〈표Ⅲ-33〉 최종학력 및 졸업여부	34
〈표Ⅲ-34〉 학교형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34
〈표Ⅲ-35〉 학교형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35
〈표Ⅲ-36〉 학교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 이유	35
〈표Ⅲ-37〉 학교생활의 문제점	36
〈표Ⅲ-38〉 장애아동 돌봄가족의 어려움	36
〈표Ⅲ-39〉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영역	37
〈표Ⅲ-40〉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37
〈표Ⅲ-41〉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38
〈표Ⅲ-42〉 직업훈련 경험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38
〈표Ⅲ-43〉 직업훈련 희망분야	39
〈표Ⅲ-44〉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	39
〈표Ⅲ-45〉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40
〈표Ⅲ-46〉 장애인고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체 사업체)	40
〈표Ⅲ-47〉 장애인 미취업자의 취업희망	41
〈표Ⅲ-48〉 직장생활시 애로사항(근로자)	42
〈표Ⅲ-49〉 일에 대한 만족도(근로자)	42
〈표Ⅲ-50〉 직업훈련 경험 여부	43
〈표Ⅲ-51〉 직업훈련 희망 분야	43
〈표Ⅲ-52〉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	44
〈표Ⅲ-5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45

〈표Ⅲ-54〉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45
〈표Ⅲ-55〉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46
〈표Ⅲ-56〉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와 도움제공자 유형	46
〈표Ⅲ-57〉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47
〈표Ⅲ-58〉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48
〈표Ⅲ-59〉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48
〈표Ⅲ-60〉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49
〈표Ⅲ-61〉 일상생활 도움 정도	49
〈표Ⅲ-62〉 일상생활 도움 정도	50
〈표Ⅲ-63〉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50
〈표Ⅲ-64〉 경제적 특성	51
〈표Ⅲ-65〉 장애인 가구주의 소득원	52
〈표Ⅲ-66〉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53
〈표Ⅲ-67〉 지난 1주간 활동형태	53
〈표Ⅲ-68〉 일반주택 거주시 희망생활	54
〈표Ⅲ-69〉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54
〈표Ⅲ-70〉 복지서비스 수요	55
〈표Ⅲ-7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시기관 이용경험	56
〈표Ⅲ-72〉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단위: %)	57
〈표Ⅲ-73〉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단위: %)	57
〈표Ⅲ-7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58
〈표Ⅲ-75〉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이용율	59
〈표Ⅲ-76〉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희망율	59
〈표Ⅲ-77〉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60
〈표Ⅲ-78〉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2순위	60
〈표Ⅲ-79〉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3순위	60
〈표Ⅲ-80〉 특수학교 현황	61
〈표Ⅲ-81〉 학교과정 설치별 학생 수	62
〈표Ⅲ-8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63
〈표Ⅲ-8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64
〈표Ⅲ-84〉 학령기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65

〈표Ⅲ-85〉 전라북도 장애인 특수학교 교육자원 현황	65
〈표Ⅲ-86〉 2018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66
〈표Ⅲ-87〉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66
〈표Ⅲ-88〉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현황	67
〈표Ⅲ-89〉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현황	67
〈표Ⅲ-90〉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현황	68
〈표Ⅲ-91〉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지표정의)	69
〈표Ⅲ-92〉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69
〈표Ⅲ-93〉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유형별 현황 및 추이	69
〈표Ⅲ-94〉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70
〈표Ⅲ-95〉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71
〈표Ⅲ-9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72
〈표Ⅲ-9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73
〈표Ⅲ-9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73
〈표Ⅲ-99〉 주간보호시설	74
〈표Ⅲ-100〉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현황	74
〈표Ⅲ-1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5
〈표Ⅲ-1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현황	76
〈표Ⅲ-103〉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황	77
〈표Ⅲ-104〉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프로그램 현황	77
〈표Ⅲ-105〉 장애인고용공단 지역인프라 현황	78
〈표Ⅲ-10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현황	79
〈표Ⅲ-107〉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현황	80
〈표Ⅲ-108〉 전라북도 표준사업장 현황	81
〈표Ⅲ-109〉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총괄	82
〈표Ⅲ-110〉 장애인 국민체육시설 현황	82
 〈표IV-1〉 장애인 당사자 응답자 특성	85
〈표IV-2〉 자립복지재단 건립방식 및 활용방안	86
〈표IV-3〉 자립원 사건 인지 정도	87
〈표IV-4〉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88

〈표IV-5〉 전라북도에서 가장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89
〈표IV-6〉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1	90
〈표IV-7〉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2	91
〈표IV-8〉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	92
〈표IV-9〉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1	93
〈표IV-10〉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2	94
〈표IV-11〉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3	95
〈표IV-12〉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4	96
〈표IV-13〉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5	97
〈표IV-14〉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6	98
〈표IV-15〉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7	99
〈표IV-16〉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8	100
〈표IV-17〉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1	101
〈표IV-18〉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2	102
〈표IV-19〉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3	103
〈표IV-20〉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4	104
〈표IV-21〉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5	105
〈표IV-22〉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6	106
〈표IV-23〉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7	107
〈표IV-24〉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8	108
〈표IV-25〉 자림복지재단 부지 활용용도 및 우선 장애인 대상	109
〈표IV-26〉 자림복지재단의 활용 시설 우선순위 종합	110
〈표IV-27〉 자림복지재단에 필요한 복지시설 유형 1	111
〈표IV-28〉 자림복지재단에 필요한 복지시설 유형 2	112
〈표IV-29〉 자림복지재단에 필요한 복지시설 유형 3	113
〈표IV-30〉 자림복지재단 내 장애인 교육연수 및 직업훈련시설 건립 수요	114
〈표IV-31〉 장애인교육연수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시설	115
〈표IV-32〉 장애인교육연수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16
〈표IV-33〉 자림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1	117
〈표IV-34〉 자림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2	118
〈표IV-35〉 자림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3	119

〈표IV-36〉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4	120
〈표IV-37〉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5	121
〈표IV-38〉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6	122
〈표IV-39〉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7	123
〈표IV-40〉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향후 이용의향 1	124
〈표IV-41〉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2	125
〈표IV-42〉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3	126
〈표IV-43〉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4	127
〈표IV-44〉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5	128
〈표IV-45〉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6	129
〈표IV-46〉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7	130
〈표IV-47〉 장애인전문가 간담회 주요 논의결과	131
〈표V-1〉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추진 개요(1998~2017년)	135
〈표V-2〉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 중점과제	136
〈표V-3〉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획(안)	137
〈표V-4〉 '17.6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37
〈표V-5〉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138
〈표V-6〉 직능원별 高기능신규 훈련직종(안)	139
〈표V-7〉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140
〈표V-8〉 제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 중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142
〈표V-9〉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범위	144
〈표V-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프로그램 내용	145
〈표V-11〉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	146
〈표V-12〉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현황	147
〈표V-13〉 사회적 농업 발전 계획	148
〈표VI-1〉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현황	153
〈표VII-1〉 자립복지재단 주요 공간의 기능과 특징	162

〈표VII-2〉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중요한 정책영역	166
〈표VII-3〉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171
〈표VII-4〉 고베 행복촌 주요시설물 현황	173
〈표VII-5〉 발달재활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및 내용	175
〈표VII-6〉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제공프로그램 및 이용료	176
〈표VII-7〉 발달재활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및 내용	177
〈표VII-8〉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의 주요시설 및 내용	178
〈표VII-9〉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정 및 훈련분야	181
〈표VII-10〉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교육프로그램 현황	182
〈표VII-11〉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교육과정	182
〈표VII-12〉 행정기관 교육연수시설 현황	183
〈표VII-13〉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 캠프장	187
〈표VII-14〉 장애인설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분포도	189
〈표VII-15〉 장애인설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분포도	190
〈표VII-16〉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및 사업비	191
〈표VII-17〉 2019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191
〈표VII-18〉 장애인 체육센터 현황	192
〈표VII-19〉 생활체육시설 유형 및 지원목적	192
〈표VII-20〉 자림복지재단 주요 시설별 건립 적합성 검토	193
〈표VII-21〉 치유농업의 유형	196
〈표VII-22〉 케어팜의 방법과 관계기관	197
〈표VII-23〉 네덜란드 케어팜 유형	199
〈표VII-24〉 네덜란드 케어팜 대상	200
〈표VII-25〉 케어팜 동물관련 활동	201
〈표VII-26〉 치유농업을 위한 교육훈련기관(MBO)	202
〈표VII-27〉 국외 사회적 농장(케어팜) 지원 주요정책	203
〈표VII-28〉 Hoeve Klein Mariëndaal 재배 농작물	205
〈표VII-29〉 Hoeve Klein Mariëndaal 주요 현황	205
〈표VII-30〉 Hofgut Oberfeld 주요 현황	206
〈표VII-31〉 zorgboerderij paradijs 주요 현황	207
〈표VII-32〉 Camphill 주요현황	208

〈표VII-33〉 네덜란드 드포트 요양원	210
〈표VII-34〉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개념	212
〈표VII-35〉 2017년 농산어촌 진흥교부금의 주요내용	212
〈표VII-36〉 일본 농정복지 사례	214
〈표VII-37〉 자립복지재단 주요시설의 역할과 기능	217
〈표VII-38〉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요 시설 및 활용	220
〈표VII-39〉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교육 컨벤션)	220
〈표VII-40〉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222
〈표VII-41〉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주요 사업	224
〈표VII-42〉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유사시설 현황	224
〈표VII-43〉 교육연수 관련 유사시설 현황	226
〈표VII-44〉 오사카 장애인국제교류센터 숙박실 구조	227
〈표VII-45〉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사시설	229
〈표VII-46〉 국민체육진흥센터 관련 유형별	230
〈표VII-47〉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모델	231
〈표VII-48〉 국민체육진흥센터 공간구성 및 시설면적(안) : 도시성장형	232
〈표VII-49〉 자립학교 평면도 및 시설구성	233
〈표VII-50〉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례	234
〈표VIII-1〉 자립복지재단 활용 기본구상 건축예산(안)	250
〈표VIII-2〉 전라북도 이전 주요 공공기관 현황	256
〈표VIII-3〉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257
〈표VIII-4〉 농촌마을 공동체 조직 현황	257
〈표IX-1〉 경제적 가치의 종류	266
〈표IX-2〉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	267
〈표IX-3〉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	268
〈표IX-4〉 경제적 가치 평가 절차	271
〈표IX-5〉 초기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 분포	271
〈표IX-6〉 사업별 자불용의금액 추정 결과	272
〈표IX-7〉 연간 경제적 가치 규모 추정 결과	273

〈표IX-8〉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 기준	276
〈표IX-9〉 사업별 비용 추정 결과	277
〈표IX-10〉 사업별 편익 추정 결과	277
〈표IX-11〉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 검토(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278
〈표IX-12〉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 검토(장애인 종합지원센터)	278
〈표IX-13〉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 검토(통합 사업)	278
〈표IX-14〉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현금 흐름(단위 : 백만원)	279
〈표IX-15〉 통합사업 추진에 따른 현금 흐름(단위 : 백만원)	280
〈표IX-16〉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비교	281
〈표IX-17〉 건립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283
〈표IX-18〉 건립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종합지원센터)	283
〈표IX-19〉 건립 단계 파급효과(통합사업)	283
〈표IX-20〉 운영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284
〈표IX-21〉 운영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종합지원센터)	284
〈표IX-22〉 운영 단계 파급효과(통합사업)	284

그림 목차 Contents

〈그림Ⅱ-1〉 자립복지재단 사진	8
〈그림Ⅱ-2〉 자립복지재단 사진	8
〈그림Ⅱ-3〉 자립복지재단 주요 복지시설 배치도	8
〈그림Ⅲ-1〉 전라북도 연령별·유형별 장애인추이	12
〈그림Ⅲ-2〉 전라북도 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18
〈그림Ⅲ-3〉 전라북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9
〈그림Ⅲ-4〉 장애인 구직 및 취업자 수	25
〈그림Ⅲ-5〉 장애유형별 취업율	30
〈그림V-1〉 치유농업활용 케어팜의 영역 및 효과	148
〈그림VI-1〉 자립복지재단 활용 기본방향	151
〈그림VI-2〉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개념구상	152
〈그림VI-3〉 자립복지재단 대상부지	153
〈그림VI-4〉 자립복지재단 교통망	154
〈그림VI-5〉 자립복지재단 연결도로	154
〈그림VI-6〉 자립복지재단 진입도로	154
〈그림VI-7〉 자립복지재단 인근지역 거리	155
〈그림VI-8〉 자립복지재단 인근지역 거리	155
〈그림VI-9〉 자립복지재단 위성사진	156
〈그림VI-10〉 자립복지재단 지적용도	156
〈그림VI-11〉 자립복지재단 지번구성	156
〈그림VI-12〉 자립복지재단 인근 도시계획상 부지	157
〈그림VI-13〉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158
〈그림VII-1〉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성 연계도	161
〈그림VII-2〉 전국 연령대별 등록장애인 현황 및 정책욕구	163

〈그림VII-3〉 전라북도 연령별 장애인현황 및 정책욕구 진단	164
〈그림VII-4〉 자립복지재단 주요 공간의 기능과 특징	165
〈그림VII-5〉 자립복지재단 주요 공간의 기능과 특징	167
〈그림VII-6〉 캐나다 인권박물관	168
〈그림VII-7〉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168
〈그림VII-8〉 고베 행복촌 복지복합타운	172
〈그림VII-9〉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개념적 구분	179
〈그림VII-10〉 인천시 서구 평생교육센터 입구	180
〈그림VII-11〉 인천시 서구 평생교육센터 전체 시설	180
〈그림VII-12〉 일본 오사카 BIG-I 개관	185
〈그림VII-13〉 생활체육서비스 수혜지역 현황	188
〈그림VII-14〉 생활체육서비스 사각지대 현황	188
〈그림VII-15〉 인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90
〈그림VII-16〉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90
〈그림VII-17〉 주요시설별 기능별 중복사업 검토	194
〈그림VII-18〉 자립복지재단 주요 시설의 연계 효과	195
〈그림VII-19〉 치유농업의 유형	197
〈그림VII-20〉 영국 Care Farm의 영역	198
〈그림VII-21〉 자연(생태)중심 활동의 범위	201
〈그림VII-22〉 한국의 케어팜 농장의 대상자 분포	203
〈그림VII-23〉 스코트랜드 캠프힐 공동체 현황	209
〈그림VII-24〉 일본의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정	211
〈그림VII-25〉 아오모리현의 농복연계 추진사업(2016~2017)	213
〈그림VII-26〉 자립복지재단 공간 주요시설 구상	215
〈그림VII-27〉 자립복지재단 주요시설의 역할과 기능	216
〈그림VII-28〉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상에 따른 주요대상별 사업(안)	218
〈그림VII-29〉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구상	219
〈그림VII-30〉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대상 및 방법(안)	221
〈그림VII-31〉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과정(안)	222
〈그림VII-32〉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세부공간 구상	223
〈그림VII-33〉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 및 교육관	225

〈그림VII-34〉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층별 구상	228
〈그림VII-35〉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자립지원 절차(안)	229
〈그림VII-36〉 장애인체육진흥센터 층별 구상	230
〈그림VII-37〉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의 층별 배치모형	231
〈그림VII-38〉 대전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간구성	235
〈그림VII-39〉 자연생태교육체험관(care farm) 주요사업(안)	236
〈그림VII-40〉 케어팜 조성부지	237
〈그림VII-41〉 국외 케어팜 운영 사례	238
〈그림VII-42〉 케어팜 대상별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안)	239
〈그림VII-43〉 자립복지재단 내 케어팜 단지 주요공간구상	239
〈그림VIII-1〉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배지도	243
〈그림VIII-2〉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배치계획	244
〈그림VIII-3〉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배치계획	244
〈그림VIII-4〉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배지도(1안)	245
〈그림VIII-5〉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배지도(2안)	245
〈그림VIII-6〉 장애인 고용복합센터	246
〈그림VIII-7〉 장애인직업훈련센터(케어팜 연계)	247
〈그림VIII-8〉 장애인 연수생활관	248
〈그림VIII-9〉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249
〈그림VIII-10〉 장애인 국민체육진흥센터	249
〈그림VIII-11〉 장애인 평생교육관	250
〈그림VIII-12〉 장애인 평생교육관 세부조감도	251
〈그림VIII-13〉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세부조감도	251
〈그림VIII-14〉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세부조감도	252
〈그림VIII-15〉 장애인 고용복합센터 세부조감도	252
〈그림VIII-16〉 연수숙박관 세부조감도	253
〈그림VIII-17〉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세부조감도	253
〈그림VIII-18〉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요사업간 연계망	254
〈그림VIII-19〉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지역자원연계방안	255
〈그림VIII-20〉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관련 주요연수교육자원 연계자원활용(안)	258

〈그림VIII-21〉 자립복지재단 내 주요시설과 주요연계자원 현황	259
〈그림VIII-22〉 자립복지재단 내 대상별 사업의 연계 및 기대효과	260
〈그림VIII-23〉 자립복지재단 인근 지역자원현황	261
〈그림IX-1〉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의 개념도	270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자립원이 2015년 5월 공식 폐쇄된 이후 자립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거주자는 인근 장애인시설로 전원됨으로써 자립원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이후 3년간 사실상 빙치되고 있어 국가정책방향과 전라북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방향 설정 필요
- 자립원의 폐쇄 이후 기존 시설의 정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존장애인복지시설의 미활용에 따른 지역 장애인의 돌봄이나 직업재활 등의 복지서비스의 누수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자립복지재단은 장애인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기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어 전라북도의 지역복지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시설 건립 필요
- 자립복지재단의 유휴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각종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탈시설 강화를 장애인복지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앙의 정책동향과 연계한 자립복지재단 활용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립원 사건으로 인한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립복지재단의 부지 내에 활용 가능한 복지시설의 건립 방향에 제시 필요
- 지역장애인의 주된 욕구와 국가의 장애인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예산 확보와 연계한 광범위한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의 방향과 관련 인프라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 최근에는 장애인복지정책은 탈 시설 자립 확대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재활 강화 등을 중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관련 인프라의 구축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타당성 검토 필요
- 특히,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능력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검토
- 장애고용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립복지재단 내 필요한 고용 및 복지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필요
- 특히, 자립복지재단의 기본재산 활용방안 구상 시 중앙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책동향과 함께 전라북도의 지역특성과 장애인의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합한 인프라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의 동향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제도화에 따른 장애인연구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바 자립복지재단 내 관련 시설의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을 통해 자립복지재단 내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 필요
- 자립복지재단의 주요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관련 인프라의 정합성을 지역 장애인복지의 욕구와 자립원의 상징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적합한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설 폐쇄 이후 유휴공간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립복지재단의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경향과 지역장애인의 복지욕구 그리고 자립원사태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본 연구는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라북도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탐색 그리고 타시도와 국외 장애인정책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자림복지재단 개관

II. 자립복지재단 개관

1. 자립복지재단 연혁

- 전주 자립원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인 자립복지재단의 복지시설로서 주요 사회복지시설로는 전주자립원, 자립인애원, 전주자립학교 그리고 자립보호작업장 등으로 구성
- 전주 자립원의 사회복지시설 유형은 총 5개로 장애인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작업장 등 총 8개 시설이 위치해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립원의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 공동작업장 3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그리고 자립학교인 특수학교 1개소 등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원 1개소 등 노인복지시설로 구성됨¹⁾
- 자립복지재단은 자립원(지적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인애원(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자립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립학교(특수학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교육시설 등으로 운영 된 이후 장애인 성폭행 등 장애인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으로 인해 2015년에 폐쇄
- 전주자립원은 폐쇄 이전에 장애인거주시설인 자립원과 자립인애원 등에 약 13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주 자립원 폐쇄 당시 자립원과 자립인애원에는 장애인 약 128명이 생활하고 있었고, 시설 폐쇄 이후 복지시설에 전원조치

〈표 II-1〉 전주 자립원 사건 주요 경과

'11. 9월 영화 '도가니' 개봉 (사회적 관심촉발)	11. 10월 자립복지재단 민관협동실태조사	'12.7월~'13.3월 가해자(2명) 고발 및 피해자(5명) 전원조치	'14. 8월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도-시-교육청-민간)
'14. 10월 민관특별감사 (11개 위법사항 적발)	'15. 1월 가해자 판결확정 -징역 13년(2심)	'15. 3~5월 시설 폐쇄조치 (도라지, 자립원, 인애원)	'15. 4월, 12월 임원해임명령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
'16년~ 체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진행	16. 6월 전원조치 완료 (129명)	'17. 5월, 6월 행정처분 승소판결 (대법원)	17. 7월~ 청산절차 진행

1) 전주 자립복지재단은 1980년 지적장애인 대상 복지시설로 전주자립원을 설립인가 받은 후 시설이 공식 폐쇄된 2015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으로, 동법인은 2000년 사회복지법인 자립복지재단으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였고, 2010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인 자립성덕현을 개소하여 전주자립원, 자립인애원, 자립보호작업장 자립도라지, 자립학교, 자립공동생활가정 등 6개의 시설을 운영함(이종섭 외, 2018).

〈표Ⅱ-2〉 자림복지재단 청산주요경과 및 계획

· 청산인 선임 원료(전주지방법원 등기수리)	: '18. 3. 19.
· 청산법인 채권 신고 공고(전북일보)	: '18. 4~6월
· 자림학교 교원에 대한 체불임금 합의 및 지급	: '18. 6~7월
· 청산관련 현장행정, 청산인 및 민관대책협의회 간담회	: '18.. 7~8월
· 피해자 피해보상(일부 기본재산 처분, 적정 피해보상액 지급)	: '18.. 10월
· 기본재산 활용 관련 연구용역	: '18. 10~12월
· 청산 종료, 잔여 기본재산 지자체 귀속 및 활용	: '19.년 이후

- 전주 자림원의 인권유린 사태는 2011년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주시와 민간단체가 실시한 민관 합동실태조사에서 일부 장애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에 따라 가해자 고발 이후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쳐 법정에서의 확정판결과 시설의 폐쇄 등의 절차 진행(전라북도 내부자료, 2018)
- 자림복지재단의 인권유린사태 이후 2014년에 민간주도로 자림복지재단 민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시설거주 장애인 129명이 2016년 6월에 모두 탈 시설 및 전원조치가 이루어짐
- 2017년에는 주요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에 따른 결과로서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이후 임시이사회의 구성 등이 진행
- 이후 자림복지재단의 부지활용의 대원칙으로서 관련 부지는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정상화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애인계의 의견수렴
- 또한, 자림복지재단 부지활용 관련 1차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서 자림복지재단에 적합한 장애인복지 관련 인프라의 구축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고, 관련 활용안에서는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됨
- 당시 논의과정에서 각각의 제단체들마다 자림복지재단의 부지활용과 관련된 제안이 서로 상이하게 제시되었는데, 자림복지재단 민간대책위원회에서는 자림복지재단의 역사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인권을 주제로 한 시설(장애인인권박물관)과 시설장애인의 치유공간이 설치될 필요성 제안
-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장애아동의 현실적 고민인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장애인전문가들은 정규학교 졸업이후 갈 곳이 없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설치 혹은 특수학교의 증설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자림복지재단 부지활용 방안 제시

2. 자립복지재단 시설물 현황

- 전주 자립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 자립복지재단이 운영하였고,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운영됨
- 한편, 자립성덕현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임

〈표 II-3〉 전주 자립원 시설 현황 및 법적 근거

구분	대상	시설유형	관련 법령
자립원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일상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립인애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형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립공동생활 가정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
자립보호 작업장	장애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자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자립학교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중등 교육법
자립성덕현	노인	노인요양시설	노인 복지법

자료 : 이중섭 외(2018) 재인용

- 자립복지재단은 총 6개 유형의 복지시설을 평화동과 성덕동 그리고 반월동 등 3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각각 시설의 총 기본재산은 약 180억원 정도임

〈표 II-4〉 전주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현황(토지 및 건물)

구 분	면적	용 도	소재지	재산가액
평화동 토지	37,685㎡	임야	평화동3가 산40-1	22,000천원
성덕동 토지	70,953㎡	전,답,도로 등	성덕동 377,477등	4,234,718천원
성덕동 건물	12,792㎡	자립원 등	성덕동 477번지외 21동	12,723,178천원
반월동 건물	204㎡	공동생활가정	삼오A 103-308등 3개소	196,000천원

〈그림 II-1〉 자림복지재단 사진



〈그림 II-2〉 자림복지재단 사진



- 세부적으로 보면, 평화동 토지(임야)와 성덕동 토지 그리고 성덕동과 반월동 건물 등으로 각 토지의 기본재산은 425억원, 성덕동과 반월동 건물의 재산가액은 129억원 정임
- 자림복지재단은 특수학교와 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운동장, 식당 등의 각종 편의시설 도 함께 설치되어 있음
- 자림복지재단은 약 21만평에 이르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특수학교인 입구의 자림학교를 시작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자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II-3〉 자림복지재단 주요 복지시설 배치도



III



장애인 복지수요 진단

III. 장애인 복지수요 진단

1. 장애인구 현황 및 추이

-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등록장애인은 2004년 161만명에서 2018년 285만명으로 약 두 배 정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등록장애인의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자폐성장애인과 간장애인, 신장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평균 5%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체 장애인 중 자폐성 장애인은 2004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9.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자폐성 장애인은 2004년 7.7천명에서 2018년 267만명으로 약 2만명 정도가 증가함
- 전체적으로 등록장애인은 2004년 161만명에서 2018년 258만명으로 연평균 3.44%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보면 자폐성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증가율보다도 약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III-1〉 유형별 장애인추이

구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연평균 증감율
합계	1,610,994	1,967,326	2,246,965	2,517,312	2,511,159	2,494,460	2,511,051	2,585,876	3.44
지체	883,296	1,049,396	1,191,013	1,337,722	1,322,131	1,295,608	1,267,174	1,238,532	2.44
시각	170,107	196,507	228,126	249,259	252,564	252,825	252,794	252,957	2.87
청각	155,382	205,155	238,560	277,610	276,332	271,054	-	-	
언어	141,908	182,361	223,102	260,403	258,589	252,779	271,843	342,582	6.50
	13,474	22,794	15,458	17,207	17,743	18,275	19,409	20,744	3.13
지적	119,207	137,596	146,898	161,249	173,257	184,355	195,283	206,917	4.02
뇌병변	142,804	195,253	232,389	261,746	257,797	251,543	250,456	253,083	4.17
자폐성	7,740	10,926	12,954	14,888	16,906	19,524	22,853	26,703	9.25
정신	54,333	75,058	86,624	95,821	94,638	96,963	100,069	102,140	4.61
신장	38,175	44,571	50,474	57,142	63,434	70,434	78,750	87,892	6.14
심장	11,634	13,739	14,732	12,864	7,744	6,401	5,507	5,304	-5.46
호흡기	9,768	13,035	14,984	15,551	13,879	12,445	11,831	11,761	1.34
간	4,072	5,875	6,968	7,920	8,588	9,668	11,042	12,524	8.36
안면	1,114	1,863	2,337	2,696	2,709	2,689	2,680	2,689	6.50
장루·요루	8,182	10,461	11,740	13,072	13,374	13,867	14,404	15,027	4.44
뇌전증	5,180	7,891	9,166	9,772	7,806	7,084	6,956	7,021	2.2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 장애인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장애인은 57세에서 76세 구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구간대에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전체 장애인의 약 절반정도를 상회하고 있어 다수 장애인이 고령노인인 것으로 나타남(전체 장애인 약 285만명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노인은 121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6.6%)

〈표 III-2〉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자체	사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부 요루	뇌진증
합계	2,555,876	1,238,532	252,957	342,582	20,744	206,917	253,083	26,703	102,140	87,892	5,304	11,761	12,524	2,689	15,027	7,021
0~4세	5,875	260	204	761	604	965	2,403	538	0	16	22	6	64	2	11	19
5~9세	23,334	596	536	1,144	2,084	9,675	3,250	5,753	0	27	75	8	116	3	21	46
10~14세	24,253	1,075	826	1,203	413	13,144	2,863	4,330	3	64	95	13	134	16	25	49
15~19세	36,606	2,604	1,592	1,734	367	20,474	3,865	5,149	83	156	214	22	167	46	35	98
19세 미만	90,068	4,535	3,158	4,842	3,468	44,258	12,381	15,770	86	263	406	49	481	67	92	212
20~24세	47,363	5,138	2,623	2,363	220	26,247	3,686	5,362	671	430	206	35	119	49	29	185
25~29세	47,433	8,372	3,653	2,563	267	22,652	3,100	3,379	1,949	888	150	39	88	74	53	256
30~34세	51,742	14,808	5,008	2,719	392	18,173	3,592	1,490	3,231	1,468	141	53	123	136	81	327
35~39세	84,139	33,512	9,288	4,283	762	18,893	5,636	447	6,434	3,328	180	112	245	206	156	657
40~44세	107,672	50,173	11,774	5,433	918	16,001	6,608	152	9,739	4,913	149	194	401	247	209	761
45~49세	158,636	78,711	16,427	8,159	1,415	16,123	9,913	66	16,874	7,839	215	364	859	316	385	970
50~54세	208,012	112,586	19,701	12,485	1,666	13,847	14,472	18	18,501	10,131	325	594	1,610	310	694	1,072
55~59세	284,759	160,798	26,512	21,131	2,081	12,307	23,617	11	18,091	13,028	449	1,244	2,729	369	1,300	1,092
60~64세	299,570	169,749	28,075	26,472	2,351	8,761	29,813	7	13,274	13,037	595	1,857	2,715	307	1,746	811
65~69세	270,645	149,565	27,925	31,018	2,093	4,528	30,794	0	7,000	10,474	649	2,138	1,820	230	2,026	385
70~74세	276,522	145,954	30,109	44,014	1,872	2,536	33,039	1	3,599	8,817	670	2,141	1,005	196	2,390	179
75~79세	296,509	149,404	31,208	60,637	1,820	1,663	37,110	0	1,847	7,361	631	1,798	272	108	2,572	78
80~84세	218,369	101,682	22,141	59,323	987	679	25,324	0	658	4,186	366	854	51	52	2,038	28
85~89세	105,120	41,098	10,881	39,069	344	194	10,595	0	149	1,457	138	238	6	15	931	5
90~94세	31,713	10,358	3,587	14,188	74	45	2,805	0	26	292	27	43	0	5	260	3
95~99세	6,805	1,878	806	3,437	14	10	547	0	10	28	6	7	0	2	60	0
100세 이상	799	211	81	446	0	0	51	0	1	2	1	1	0	0	5	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표III-3〉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유형별 구성비

구분	합계	자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수 증후군	뇌전증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4세	0.23	0.02	0.08	0.22	2.91	0.47	0.95	2.01	0.00	0.02	0.41	0.05	0.51	0.07	0.07	0.27
5~9세	0.90	0.05	0.21	0.33	10.05	4.68	1.28	21.54	0.00	0.03	1.41	0.07	0.93	0.11	0.14	0.66
10~14세	0.94	0.09	0.33	0.35	1.99	6.35	1.13	16.22	0.00	0.07	1.79	0.11	1.07	0.60	0.17	0.70
15~19세	1.42	0.21	0.63	0.51	1.77	9.89	1.53	19.28	0.08	0.18	4.03	0.19	1.33	1.71	0.23	1.40
19세이하	3.48	0.37	1.25	1.41	16.72	21.39	4.89	59.06	0.08	0.30	7.65	0.42	3.84	2.49	0.61	3.02
20~24세	1.83	0.41	1.04	0.69	1.06	12.68	1.46	20.08	0.66	0.49	3.88	0.30	0.95	1.82	0.19	2.63
25~29세	1.83	0.68	1.44	0.75	1.29	10.95	1.22	12.65	1.91	0.95	2.83	0.33	0.70	2.75	0.35	3.65
30~34세	2.00	1.20	1.98	0.79	1.89	8.78	1.42	5.58	3.16	1.67	2.66	0.45	0.98	5.06	0.54	4.66
35~39세	3.25	2.71	3.67	1.25	3.67	9.13	2.23	1.67	6.30	3.79	3.39	0.95	1.96	7.66	1.04	9.36
40~44세	4.16	4.05	4.65	1.59	4.43	7.73	2.61	0.57	9.53	5.59	2.81	1.65	3.20	9.19	1.39	10.84
45~49세	6.13	6.36	6.49	2.38	6.82	7.79	3.92	0.25	16.52	8.92	4.05	3.09	6.86	11.75	2.56	13.82
50~54세	8.04	9.09	7.79	3.64	8.03	6.69	5.72	0.07	18.11	11.53	6.13	5.05	12.86	11.53	4.62	15.27
55~59세	11.01	12.98	10.48	6.17	10.03	5.95	9.33	0.04	17.71	14.82	8.47	10.58	21.79	13.72	8.65	15.55
60~64세	11.58	13.71	11.10	7.73	11.33	4.23	11.78	0.03	13.00	14.83	11.22	15.79	21.68	11.42	11.62	11.55
20~64세	49.86	51.18	48.65	24.99	48.55	73.94	39.69	40.94	86.90	62.59	45.44	38.19	70.98	74.90	30.96	87.32
65~69세	10.47	12.08	11.04	9.05	10.09	2.19	12.17	0.00	6.85	11.92	12.24	18.18	14.53	8.55	13.48	5.48
70~74세	10.69	11.78	11.90	12.85	9.02	1.23	13.05	0.00	3.52	10.03	12.63	18.20	8.02	7.29	15.90	2.55
75~79세	11.47	12.06	12.34	17.70	8.77	0.80	14.66	0.00	1.81	8.38	11.90	15.29	2.17	4.02	17.12	1.11
80~84세	8.44	8.21	8.75	17.32	4.76	0.33	10.01	0.00	0.64	4.76	6.90	7.26	0.41	1.93	13.56	0.40
85~89세	4.07	3.32	4.30	11.40	1.66	0.09	4.19	0.00	0.15	1.66	2.60	2.02	0.05	0.56	6.20	0.07
90~94세	1.23	0.84	1.42	4.14	0.36	0.02	1.11	0.00	0.03	0.33	0.51	0.37	0.00	0.19	1.73	0.04
95~99세	0.26	0.15	0.32	1.00	0.07	0.00	0.22	0.00	0.01	0.03	0.11	0.06	0.00	0.07	0.40	0.00
100세 이상	0.03	0.02	0.03	0.13	0.00	0.00	0.02	0.00	0.00	0.00	0.02	0.01	0.00	0.00	0.03	0.00
65세이상	46.66	48.46	50.10	73.60	34.73	4.67	55.42	0.00	13.01	37.11	46.91	61.39	25.18	22.61	68.42	9.66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 아동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3.48%를 차지하고 있고, 20세에서 64세까지의 청장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49.36%를 차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6.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 중 약 절반정도가 고령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장애유형별로는 연령대별 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자폐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59.1%가 19세 이하 아동이었고, 지적장애인도 전체 장애인의 약 21.4%가 19세 이하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언어장애인도 전체 장애인의 약 16.7%가 19세 이하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언어 장애인의 다수는 19세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반대로 청각장애인은 65세 이상 고령노인이 전체 장애인의 73.6%를 차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도 전체 장애인의 약 50%이상이 고령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Ⅲ-4〉 유형별 장애인추이

구분	2005			2011			2014			2017		
	등록 장애인수 (명)	추정수 (명)	등록율 (%)									
계	1,699,329	2,148,686	79.1	2,517,312	2,683,477	93.8	2,501,112	2,726,910	91.7	2,511,051	2,668,411	94.1
지체	923,183	1,005,618	91.8	1,387,722	1,338,554	99.9	1,309,285	1,353,753	96.7	1,267,174	1,278,368	99.1
뇌병변	154,614	270,853	57.1	261,746	333,798	78.4	253,493	308,100	82.3	250,456	306,855	81.6
시각	180,526	221,166	81.6	249,259	259,986	95.9	253,095	278,172	91.0	252,794	266,823	94.7
청각	151,184	229,159	66.0	260,403	281,878	92.4	255,399	281,983	90.6	271,843	288,251	94.3
언어	13,874	20,947	66.2	17,207	21,277	80.9	17,830	21,700	82.2	19,409	21,087	92.0
지적	123,868	125,563	98.7	161,249	176,110	91.6	178,866	207,703	86.1	195,283	223,228	87.5
자폐성	8,754	23,478	37.3	14,888	16,916	88.0	18,133	19,868	91.3	22,853	23,961	95.4
정신	59,223	91,253	64.9	95,821	115,151	83.2	95,675	117,428	81.5	100,069	116,079	86.2
신장	40,288	40,355	99.8	57,142	58,702	97.3	66,551	72,132	92.3	78,750	83,906	93.9
심장	12,226	42,007	29.1	12,864	18,573	69.3	6,928	8,499	81.5	5,507	6,217	88.6
호흡기	10,815	30,186	35.8	15,551	19,316	80.5	13,150	16,055	81.9	11,831	14,111	83.8
간	4,583	13,443	34.1	7,920	9,292	85.2	9,194	11,842	77.6	11,042	11,045	100.0
안면	1,311	4,394	29.8	2,696	2,434	110.8	2,696	3,019	89.3	2,680	3,180	84.3
장류 요로	8,848	15,508	57.1	13,072	16,790	77.9	13,546	16,815	80.6	14,404	15,707	91.7
뇌진증	6,032	14,756	40.9	9,772	14,701	66.5	7,271	9,841	73.9	6,956	9,592	72.5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 유형별 등록장애인의 등록율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8년 장애인의 등록률은 94.1%로 2005년 장애인의 등록율인 79.1%보다도 크게 증가함
- 장애인의 등록율은 간장애인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체장애인 99.1%, 자폐성 장애인 95.4%, 시각장애인 94.7%, 청각장애인 94.3% 등의 순임
- 장애유형 중에서 장애인등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안면장애인 등으로 이들 장애유형은 등록율이 80%대로 다소 낮은 수준임
- 장애출연율은 2017년 5.39%로 2011년 5.61%보다도 0.22%p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Ⅲ-5〉 장애인구 및 출현율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장애인 추정 인구수	268만명	273만명	267만명	
장애인 출현율	5.61%	5.59%	5.39%	
장애인 등록율	93.8%	91.7%	94.1%	
65세 이상 인구	38.8%	43.3%	46.6%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1인 가구	17.4%	24.3%	26.4%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증가
후천적 장애발생률	90.5%	88.9%	88.1%	후천적 장애발생률 감소경향 2017년(질환 56.0%, 사고 32.1%) 2014년(질환 56.2%, 사고 32.7%) 2011년(질환 55.1%, 사고 35.4%)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주요내용

- 전술한 바와 같이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017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46.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11년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구성비인 38.8%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임
- 장애인 1인 가구도 2011년 17.4%에서 2017년 26.4%로 약 9.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등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후천적 장애발생률은 2011년 90.5%에서 2017년 88.1%로 다소 감소하였고, 2017년 기준 후천적장애인은 질환으로 인한 발생이 56.0%, 사고로 인한 발생이 32.1% 였음
- 후천적 장애인의 발생사유는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2011년보다도 소폭 증가하였고, 사고로 인한 장애의 발생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별로 등록장애인의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는 2018년 말 기준 약 131.7만 명이고 이중 지체장애인인 6.6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각장애인 1.7만 명, 시각장애인 1.1만 명 등의 순임
-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258.5만 명의 5.09%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 전체 인구 중 등록장애인은 약 7%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등록장애인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50% 상회)

〈표Ⅲ-6〉 지역별 등록 장애인추이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국	2,585,876	1,238,532	252,957	342,582	20,744	206,917	253,083	26,703	102,140	87,892	5,304	11,761	12,524	2,689	15,027	7,021
서울	392,920	180,610	41,900	50,306	3,233	26,231	41,801	5,798	16,365	16,625	1,076	2,130	2,417	387	2,799	1,242
부산	173,820	81,254	18,134	20,492	1,422	11,528	20,108	1,771	8,136	6,936	478	992	752	235	1,049	533
대구	123,070	53,691	12,067	19,390	1,046	9,829	12,999	1,156	6,080	4,406	237	442	627	141	640	319
인천	141,771	70,119	13,756	18,957	1,319	10,104	13,224	1,415	4,707	5,297	237	651	624	141	825	395
광주	69,884	31,130	7,356	9,704	564	6,703	6,846	773	3,053	2,253	138	307	354	61	367	275
대전	72,927	33,776	7,080	9,507	571	6,305	7,532	984	3,139	2,569	132	296	304	77	393	262
울산	50,640	24,038	4,918	7,314	393	4,150	4,908	563	1,405	1,808	178	259	318	72	213	103
세종	11,404	5,592	1,124	1,475	84	985	994	144	425	342	20	49	59	14	70	27
경기	547,386	268,731	52,988	64,102	4,517	42,933	54,606	7,037	19,016	21,070	1,302	2,506	3,153	626	3,389	1,410
강원	100,693	51,023	9,415	13,481	737	8,213	9,277	664	3,108	2,692	131	560	413	98	639	242
충북	97,086	46,523	8,993	12,951	662	10,205	8,738	694	3,706	2,776	150	364	401	86	591	246
충남	131,910	63,977	12,052	20,217	1,011	11,661	10,993	898	5,325	3,350	210	577	467	123	772	277
전북	131,746	66,299	11,583	17,200	1,190	12,140	12,118	721	5,471	2,934	161	361	423	115	601	429
전남	142,213	71,918	14,078	19,669	1,004	11,847	11,586	729	5,728	3,237	188	577	519	86	655	392
경북	176,550	82,032	16,234	28,987	1,202	15,827	15,989	1,126	7,370	4,578	330	664	808	193	854	356
경남	186,016	93,145	17,054	22,970	1,395	15,037	17,824	1,709	7,825	5,719	259	774	710	208	991	396
제주	35,840	14,674	4,225	5,860	394	3,219	3,540	521	1,281	1,300	77	252	175	26	179	117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표Ⅲ-7〉 지역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	15.19	14.58	16.56	14.68	15.59	12.68	16.52	21.71	16.02	18.92	20.29	18.11	19.30	14.39	18.63	17.69
부산	6.72	6.56	7.17	5.98	6.85	5.57	7.95	6.63	7.97	7.89	9.01	8.43	6.00	8.74	6.98	7.59
대구	4.76	4.34	4.77	5.66	5.04	4.75	5.14	4.33	5.95	5.01	4.47	3.76	5.01	5.24	4.26	4.54
인천	5.48	5.66	5.44	5.53	6.36	4.88	5.23	5.30	4.61	6.03	4.47	5.54	4.98	5.24	5.49	5.63
광주	2.70	2.51	2.91	2.83	2.72	3.24	2.71	2.89	2.99	2.56	2.60	2.61	2.83	2.27	2.44	3.92
대전	2.82	2.73	2.80	2.78	2.75	3.05	2.98	3.68	3.07	2.92	2.49	2.52	2.43	2.86	2.62	3.73
울산	1.96	1.94	1.94	2.13	1.89	2.01	1.94	2.11	1.38	2.06	3.36	2.20	2.54	2.68	1.42	1.47
세종	0.44	0.45	0.44	0.43	0.40	0.48	0.39	0.54	0.42	0.39	0.38	0.42	0.47	0.52	0.47	0.38
경기	21.17	21.70	20.95	18.71	21.77	20.75	21.58	26.35	18.62	23.97	24.55	21.31	25.18	23.28	22.55	20.08
강원	3.89	4.12	3.72	3.94	3.55	3.97	3.67	2.49	3.04	3.06	2.47	4.76	3.30	3.64	4.25	3.45
충북	3.75	3.76	3.56	3.78	3.19	4.93	3.45	2.60	3.63	3.16	2.83	3.09	3.20	3.20	3.93	3.50
충남	5.10	5.17	4.76	5.90	4.87	5.64	4.34	3.36	5.21	3.81	3.96	4.91	3.73	4.57	5.14	3.95
전북	5.09	5.35	4.58	5.02	5.74	5.87	4.79	2.70	5.36	3.34	3.04	3.07	3.38	4.28	4.00	6.11
전남	5.50	5.81	5.57	5.74	4.84	5.73	4.58	2.73	5.61	3.68	3.54	4.91	4.14	3.20	4.36	5.58
경북	6.83	6.62	6.42	8.46	5.79	7.65	6.32	4.22	7.22	5.21	6.22	5.65	6.45	7.18	5.68	5.07
경남	7.19	7.52	6.74	6.70	6.72	7.27	7.04	6.40	7.66	6.51	4.88	6.58	5.67	7.74	6.59	5.64
제주	1.39	1.18	1.67	1.71	1.90	1.56	1.40	1.95	1.25	1.48	1.45	2.14	1.40	0.97	1.19	1.67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 지역별로 장애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지체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5.35%를 차지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은 5.57%를 차지하고 있음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전라북도는 전체 장애인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5.87%를 차지하고 있음
-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라북도가 12,861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전라북도의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 구성비는 전남 7.55%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전라북도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Ⅲ-8〉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인구 비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2,585,876	392,920	173,820	123,070	141,771	69,884	72,927	50,640	11,404
등록장애인	51,826,059	9,765,623	3,441,453	2,461,769	2,954,642	1,459,336	1,489,936	1,155,623	314,126
등록장애인비율	4.99	4.02	5.05	5.00	4.80	4.79	4.89	4.38	3.6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47,386	100,693	97,086	131,910	131,746	142,213	176,550	186,016	35,840
등록장애인	13,077,153	1,543,052	1,599,252	2,126,282	1,836,832	1,882,970	2,676,831	3,373,988	667,191
등록장애인비율	4.19	6.53	6.07	6.20	7.17	7.55	6.60	5.51	5.37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재구성

-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은 꾸준히 증하고 있는데, 2002년 7.7만 명에서 2018년 13.1만 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함
- 전라북도의 장애인 증감율을 보면, 2002년 이후 약 70.83% 정도 증가했고,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인 99.80%보다는 낮은 수준임
- 2002년 이후 등록장애인의 증감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2002년 이후 연평균 70.83% 증가하였고,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9개 광역도와 비교해서도 증감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다만, 전라북도의 장애인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를 상회하고 있고, 이 같은 장애인인구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7.2%(183만 명 중 13.1만 명)로 전국 평균인 5.0%(전체 인구 5.18천만 명 중 258.6만 명)보다도 약 2.2%p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2008년 6.5%에서 2015년 6.9% 그리고 2018년에는 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8년 이후 전체 장애인의 비율은 2008년 4.5%에서 2015년 4.3% 그리고 2018년 5.0%로 증가

〈표Ⅲ-9〉 등록장애인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율	
계	1,294,254	1,454,215	1,610,994	1,789,443	1,957,326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2,555,876	99.80	
서울	213,121	239,647	267,365	297,087	324,560	346,275	368,955	401,638	414,522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3,245	391,027	391,753	392,920	84.36	
부산	91,242	101,728	113,369	125,936	138,501	148,145	156,966	168,493	172,765	171,729	170,743	169,750	168,663	168,084	168,950	171,384	173,820	90.50	
대구	63,588	71,066	77,896	85,265	93,481	100,082	106,448	113,509	117,141	117,183	116,839	116,567	115,983	115,694	117,111	119,766	123,070	93.51	
인천	70,442	77,922	84,955	93,869	102,789	108,823	116,697	126,878	131,815	132,732	133,467	133,778	133,855	134,191	135,623	138,304	141,771	101.26	
광주	35,037	38,967	43,717	48,485	53,506	57,280	61,575	66,191	68,518	68,675	68,534	68,372	68,288	68,079	68,569	69,233	69,884	99.46	
대전	36,336	40,853	45,239	50,555	55,854	59,978	64,348	68,884	71,164	71,626	71,647	71,441	71,198	70,890	71,425	72,180	72,927	100.70	
울산	23,475	26,820	30,698	34,864	38,730	40,758	44,402	47,210	49,013	48,926	48,982	71,441	49,014	49,326	49,533	50,205	50,640	115.72	
세종	-	-	-	-	-	-	-	-	-	-	-	7,081	7,202	7,943	9,079	9,845	10,623	11,404	61.05
경기	237,285	273,382	305,087	342,153	379,985	407,247	436,698	477,021	500,704	505,052	505,519	506,464	508,330	512,882	522,437	533,259	547,386	130.69	
강원	55,549	61,528	66,863	73,112	79,468	85,594	91,448	97,604	101,067	101,283	100,579	99,660	98,970	98,324	98,928	99,959	100,693	81.27	
충북	48,144	53,922	59,965	67,086	73,923	79,826	85,097	90,958	94,654	94,855	94,137	93,563	93,612	93,536	94,688	95,844	97,086	101.66	
충남	67,701	75,313	83,589	92,634	101,815	107,895	116,908	125,556	130,646	131,108	124,872	124,561	124,721	124,801	126,406	128,503	131,910	94.84	
전북	77,122	84,431	91,959	101,029	109,189	116,141	120,481	130,807	134,235	134,239	133,054	132,006	130,932	129,769	130,345	131,303	131,746	70.83	
전남	81,010	89,706	97,925	107,899	117,699	125,731	134,898	144,039	147,918	146,524	145,788	144,324	143,128	141,837	141,578	142,174	142,213	75.55	
경북	88,250	98,103	108,654	119,814	132,381	143,009	151,898	164,885	170,396	170,479	169,699	168,836	168,650	168,089	169,643	172,533	176,550	100.06	
경남	90,178	102,998	114,129	127,411	141,227	151,785	162,753	175,198	180,880	181,044	180,285	179,530	179,276	179,070	180,665	183,510	186,016	106.28	
제주	15,764	17,829	19,634	22,244	24,218	26,320	28,393	30,676	31,874	32,216	32,405	32,673	32,989	33,510	34,278	35,104	35,840	127.35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8) 등록장애인 현황

〈표Ⅲ-10〉 전라북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장애인수						장애인비율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131,746	9,088	17,158	23,031	20,673	29,906	31,890	100	6.90	13.02	17.48	15.69	22.70	24.21	
지체	66,299	1,630	3,500	8,100	12,976	19,853	20,240	100	2.46	5.28	12.22	19.57	29.94	30.53	
시각	11,583	1,329	318	550	586	931	7,869	100	11.47	2.75	4.75	5.06	8.04	67.94	
청각	17,200	328	2,033	2,287	4,069	6,111	2,372	100	1.91	11.82	13.30	23.66	35.53	13.79	
언어	1,190	8	135	521	526	0	0	100	0.67	11.34	43.78	44.20	0.00	0.00	
지적	12,140	2,875	4,788	4,477	0	0	0	100	23.68	39.44	36.88	0.00	0.00	0.00	
뇌병변	12,118	2,259	2,190	2,780	1,773	1,707	1,409	100	18.64	18.07	22.94	14.63	14.09	11.63	
자폐성	721	240	369	112	0	0	0	100	33.29	51.18	15.53	0.00	0.00	0.00	
정신	5,471	136	1,645	3,690	0	0	0	100	2.49	30.07	67.45	0.00	0.00	0.00	
신장	2,934	216	2,006	1	27	684	0	100	7.36	68.37	0.03	0.92	23.31	0.00	
심장	161	5	18	110	2	26	0	100	3.11	11.18	68.32	1.24	16.15	0.00	
호흡기	361	41	103	213	0	4	0	100	11.36	28.53	59.00	0.00	1.11	0.00	
간	423	7	8	22	14	372	0	100	1.65	1.89	5.20	3.31	87.94	0.00	
안면	115	4	26	39	42	4	0	100	3.48	22.61	33.91	36.52	3.48	0.00	
장류	요루	601	0	4	47	400	150	0	100	0.00	0.67	7.82	66.56	24.96	0.00
뇌전증	429	10	15	82	258	64	0	100	2.33	3.50	19.11	60.14	14.92	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 전라북도의 유형 장애정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인 중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은 2.6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아울러 5급과 6급의 경증장애인은 6.2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47%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다수 장애인은 5급과 6급의 경증장애인으로 구성됨
- 다만, 장애유형별로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가령, 자폐성 장애인은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인 약 80%정도를 상회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이 중증의 장애인으로 구성됨
- 이에 반해 지체장애인은 1급과 2급의 경증장애인보다는 5급과 6급의 중증장애인인 약 60%정도임

〈그림Ⅲ-2〉 전라북도 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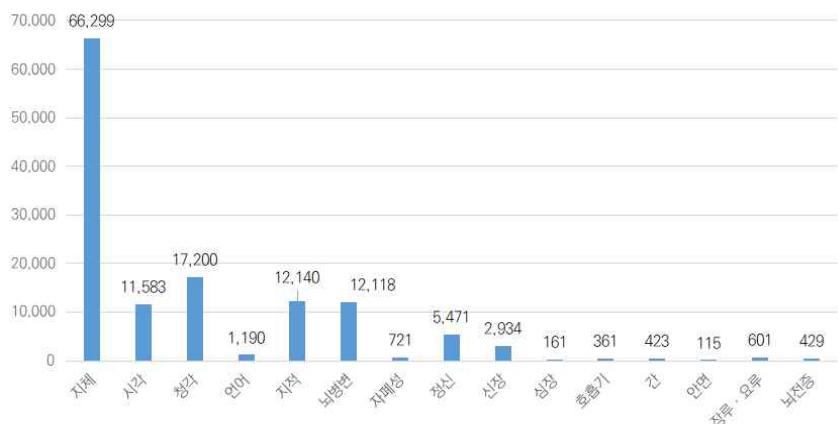
〈표 III-11〉 전라북도 지역별장애인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장애인수						장애인 비율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주	33,280	2,398	4,310	5,949	4,645	7,498	8,480	100	7.21	12.95	17.88	13.96	22.53	25.48
군산	17,859	1,128	2,162	3,185	2,816	4,077	4,491	100	6.32	12.11	17.83	15.77	22.83	25.15
익산	20,351	1,633	2,933	3,641	3,216	4,186	4,742	100	8.02	14.41	17.89	15.80	20.57	23.30
정읍	10,115	804	1,276	1,744	1,595	2,319	2,377	100	7.95	12.61	17.24	15.77	22.93	23.50
남원	7,871	481	1,051	1,462	1,302	1,849	1,726	100	6.11	13.35	18.57	16.54	23.49	21.93
김제	9,349	520	1,284	1,636	1,607	2,168	2,134	100	5.56	13.73	17.50	17.19	23.19	22.83
완주	8,037	643	1,061	1,379	1,238	1,818	1,898	100	8.00	13.20	17.16	15.40	22.62	23.62
진안	2,820	192	330	451	472	721	654	100	6.81	11.70	15.99	16.74	25.57	23.19
무주	2,530	140	298	403	418	646	625	100	5.53	11.78	15.93	16.52	25.53	24.70
장수	2,399	134	228	366	404	631	636	100	5.59	9.50	15.26	16.84	26.30	26.51
임실	3,226	186	403	495	536	812	794	100	5.77	12.49	15.34	16.62	25.17	24.61
순창	3,014	198	360	479	544	709	724	100	6.57	11.94	15.89	18.05	23.52	24.02
고창	5,661	314	759	937	973	1,317	1,361	100	5.55	13.41	16.55	17.19	23.26	24.04
부안	5,234	317	703	904	907	1,155	1,248	100	6.06	13.43	17.27	17.33	22.07	23.84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 지역별 장애인 현황을 보면, 전주의 등록장애인이 3.3만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익산 2.0만명, 군산 1.8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7.1만명으로 전체 장애인 13.2만명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의 등록장애인이 6.0만명으로 3개 시군의 등록장애인보다도 규모가 적은 수준임
- 대체로 14개 시군의 장애유형별 비율은 5급과 6급의 경증장애인이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전라북도의 유형별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6만 명 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각 장애인 1.7만명, 지적장애인 1.2만명, 뇌병변 장애인 1.2만 명 그리고 시각장애인 1.1만 명 등의 순임

〈그림 III-3〉 전라북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표Ⅲ-12〉 전라북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8,974	77,122	84,431	91,959	101,029	109,189	116,141	120,481	130,807	134,235	134,239	133,054	132,006	130,932	129,769	130,345	131,303	131,746
지체	42,151	45,666	48,181	51,274	55,630	59,721	63,095	65,566	71,659	73,347	73,063	72,414	71,618	70,649	69,463	68,350	67,516	66,299
시각	6,975	7,852	8,482	9,230	10,115	10,669	11,032	11,169	11,774	12,006	12,078	12,016	12,061	11,976	11,868	11,772	11,683	11,583
소계	6,246	7,114	7,890	8,834	9,879	11,066	12,097	12,849	14,341	15,211	15,237	15,013	14,730	14,437	-	-	-	-
청각	-	-	7,079	7,980	9,061	10,156	11,197	11,918	13,362	14,168	14,163	13,932	13,654	13,354	13,100	14,426	15,677	17,200
언어	-	-	811	854	818	900	900	931	979	1,043	1,074	1,081	1,076	1,083	1,134	1,146	1,181	1,190
지적	6,285	6,847	7,183	7,555	8,043	8,337	8,718	8,927	9,560	9,914	10,300	10,638	10,920	11,220	11,468	11,702	11,974	12,140
뇌병변	3,597	5,195	6,533	7,932	9,366	10,446	11,496	12,068	13,038	13,322	13,339	12,915	12,547	12,357	12,274	12,258	12,274	12,118
자폐성	88	130	198	251	285	318	342	354	423	454	476	509	542	573	607	637	692	721
정신	2,349	2,841	3,284	3,769	4,212	4,935	5,410	5,537	5,787	5,690	5,501	5,377	5,358	5,355	5,395	5,454	5,491	5,471
신장	971	1,117	1,193	1,259	1,368	1,430	1,554	1,596	1,759	1,847	1,906	2,010	2,135	2,289	2,434	2,568	2,733	2,934
심장	312	370	399	400	421	427	436	427	404	355	294	238	220	211	181	176	164	161
호흡기	-	-	343	440	496	522	553	546	550	530	515	465	435	389	372	363	375	361
간	-	-	125	150	199	208	215	216	237	243	267	292	297	320	343	377	408	423
안면	-	-	36	56	78	93	100	107	115	123	123	119	115	117	118	114	114	115
질환 요루	-	-	308	386	441	460	488	509	534	564	552	549	557	572	559	556	579	601
뇌전증	-	-	276	423	496	567	605	610	626	629	588	499	471	467	453	446	432	429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재구성)

- 등록장애인의 인구추이를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의 빨달장애인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적장애인은 2001년 약 3.6천명에서 2018년 1.2만명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자폐성 장애인도 같은 기간 88명에서 2018년 721명으로 약 9배 정도 증가함

〈표Ⅲ-13〉 전라북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주	29,121	29,336	32,963	33,845	34,257	33,870	33,616	33,256	32,899	32,966	32,993	33,280
군산	15,389	16,276	17,073	17,598	17,695	17,637	17,414	17,363	17,277	17,552	17,834	17,859
익산	18,339	19,122	20,350	20,823	20,714	20,398	20,297	20,241	20,014	20,129	20,252	20,351
정읍	9,298	9,766	10,438	10,595	10,612	10,404	10,272	10,146	10,044	9,989	10,084	10,115
남원	6,880	7,329	7,808	8,018	7,991	7,881	7,835	7,779	7,682	7,755	7,854	7,871
김제	9,049	8,632	9,960	10,117	10,063	9,959	9,830	9,655	9,483	9,420	9,399	9,349
완주	6,614	7,138	7,483	7,687	7,549	7,559	7,530	7,597	7,739	7,813	7,910	8,037
진안	2,323	2,510	2,715	2,816	2,821	2,781	2,757	2,717	2,687	2,725	2,800	2,820
무주	2,102	2,268	2,454	2,530	2,525	2,493	2,471	2,467	2,471	2,490	2,507	2,530
장수	2,052	2,143	2,371	2,467	2,411	2,460	2,406	2,353	2,343	2,343	2,392	2,399
임실	2,793	2,963	3,183	3,265	3,278	3,285	3,245	3,234	3,236	3,199	3,227	3,226
순창	2,566	2,680	2,876	3,002	2,976	3,015	3,042	2,999	2,941	2,966	3,022	3,014
고창	4,837	5,199	5,624	5,833	5,797	5,791	5,816	5,752	5,670	5,722	5,755	5,661
부안	4,778	5,119	5,509	5,639	5,550	5,521	5,475	5,373	5,283	5,276	5,274	5,234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재구성)

-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전국적으로 23만명 정도이고 이는 전체 장애인의 약 9.0%정도임
- 2010년 전체 장애인이 251만명에서 2017년 254만명으로 연평균 0.2%p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발달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3.6%p로 다른 장애유형보다도 발달장애인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전체장애인수는 동결수준이나 발달장애는 3.6% 증(지적3.2%, 자폐성7.5% 증)

〈표Ⅲ-14〉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현황

(17. 12월말,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장애인	2,517,312 (100%)	2,519,241 (100%)	2,511,159 (100%)	2,501,112 (100%)	2,494,460 (100%)	2,490,408 (100%)	2,511,051 (100%)	2,545,637 (100%)	0.2%
계	176,137 (7.0%)	183,336 (7.3%)	190,163 (7.6%)	196,999 (7.9%)	203,879 (8.2%)	210,855 (8.5%)	218,136 (8.7%)	225,601 (8.9%)	3.6%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인 (0.6%)	14,888 (0.6%)	15,857 (0.6%)	16,906 (0.7%)	18,133 (0.7%)	19,524 (0.8%)	21,103 (0.8%)	22,853 (0.9%)	7.5%
	지적 장애인 (6.4%)	161,249 (6.6%)	167,479 (6.9%)	173,257 (7.2%)	178,866 (7.4%)	184,355 (7.4%)	189,752 (7.6%)	195,283 (7.8%)	3.2%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등록장애인 현황 재구성

-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20대 이하의 아동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은 약 16.96만명으로 전체 발달 장애인의 75.2%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발달장애인의 연령대가 6세에서 17세의 아동청소년은 약 4.4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19.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아동청소년 인구의 비율인 2.5% 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임

〈표Ⅲ-15〉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 현황

(17. 12월말, 명, %)

구 분	합 계		영유아 (0~5세)	아동·청소년 (6~17세)	성인 (18세~64세)	노인 (65세 이상)		
전체장애인	2,545,637/(100)		8,983/(0.3)	63,277/(2.5)	1,323,467/(52.0)	1,149,910/(45.2)		
	225,601/(100)		2,920/(1.3)	44,001/(19.5)	169,650/(75.2)	9,030/(4.0)		
발달 장애인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24,698 (11)	200,903 (89)	1,078 (36.9)	1,842 (63.1)	11,481 (26.0)	32,520 (74.0)	12,138 (7.2)	157,512 (92.8)
							1 (0.0)	9,029 (100.0)

2. 장애인 고용 복지현황 분석

1) 고용 및 일자리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지역별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약 249.5만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86.2만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57만명으로 고용율은 34.5% 수준임
- 지역별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장애인 고용률은 47.6% 정도 전국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4.5%보다도 약 12%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라북도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2.9만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4.3만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은 33.3%밖에 되지 않음
- 전라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장애인 고용율인 34.5%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9개 광역도에서는 경북, 경남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17개 시도 중에서 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44.7%에 이르고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지역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은 38.5%에 불과함

〈표Ⅲ-16〉 지역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현황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전체	2,495,043	861,649	1,572,146	34.5
경기	520,740	193,449	318,088	37.1
서울	382,947	120,934	256,003	31.6
강원	98,499	32,642	62,147	33.1
부산	168,142	53,326	109,969	31.7
충북	94,158	29,784	62,039	31.6
대구	117,339	32,939	76,640	28.1
충남	126,367	60,120	64,144	47.6
인천	135,346	48,729	81,998	36
전북	129,272	43,106	83,518	33.3
광주	67,627	22,559	43,523	33.4
전남	140,357	57,474	81,539	40.9
대전	70,367	27,738	40,032	39.4
경북	169,979	48,489	117,263	28.5
울산	48,967	16,841	30,280	34.4
경남	180,203	57,296	117,695	31.8
세종	10,487	4,354	6,008	41.5
제주	34,247	11,868	21,261	34.7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 장애인통계

〈표Ⅲ-1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64세)

(단위 : 명, %, p)

구분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율
	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16년	1,355,493	728,764	680,163	48,601	626,729	53.8	6.7
	2017년	1,382,558	721,961	680,170	41,791	660,597	52.2	5.8
	2018년	1,312,159	689,308	642,738	46,570	622,851	52.5	6.8
	증감	-70,399	-32,653	-37,432	4,779	-37,746	0.3	1
전체인구	2016년	36,492,000	25,167,000	24,198,000	969,000	11,325,000	69	3.8
	2017년	36,560,000	25,443,000	24,485,000	958,000	11,116,000	69.6	3.8
	2018년	36,793,000	25,711,000	24,633,000	1,078,000	11,082,000	69.9	4.2
	증감	233,000	268,000	148,000	120,000	-34,000	0.3	0.4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2018년 5월 기준 249.5만명이고 이중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는 131만명 정도임
- 경제활동인구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기준 52.5%, 고용율은 49.0%정도이고 이는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9.9%보다도 약 26.9%p 낮고, 고용율도 전체 국민의 고용율인 67.0%보다도 장애인의 고용율이 약 18%p낮은 수준임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6년 38.5%에서 2018년 37.0%로 소폭 감소하였고, 고용율도 같은 기간 36.1%에서 34.5%로 감소함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7.0%인데 반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3.9%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약 절반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Ⅲ-18〉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64세)

(단위 : 명, %, p)

구분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율
	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16년	2,441,166	941,051	880,090	60,961	1,500,115	38.5	6.5
	2017년	2,460,080	953,008	898,475	54,533	1,507,072	38.7	5.7
	2018년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	6.6
	증감	34,963	-30,111	-36,827	6,716	65,074	-1.7	0.9
전체인구	2016년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000	63.3	3.7
	2017년	43,735,000	27,828,000	26,824,000	1,003,000	15,907,000	63.6	3.6
	2018년	44,14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
	증감	406,000	356,000	240,000	118,000	49,000	0.3	0.4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표 III-19〉 장애인유형별 경제활동상태

구분	15세 이상 인구 (명)	경제활동 인구 (명)	취업자 (명)	실업자 (명)	비경제활동인 구 (명)	경찰률 (%)	실업률 (%)	고용률 (%)
전체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지체장애	1,251,749	564,549	531,608	32,941	687,200	45.1	5.8	42.5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246,875	35,753	31,293	4,460	211,122	14.5	12.5	12.7
시각장애	250,978	112,035	103,916	8,119	138,943	44.6	7.2	41.4
시각 외 감각장애	316,335	107,110	100,743	6,367	209,225	33.9	5.9	31.8
정신적 장애	295,805	68,217	60,975	7,242	227,588	23.1	10.6	20.6
신체내부장애	133,299	35,232	33,112	2,120	98,067	26.4	6.0	24.8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의 유형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등록장애인 약 249만명 중에서 경제활동참여자는 92.2만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86.1만명, 실업자는 6.1만명 정도임
-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8.0%이고, 고용율은 34.5%이며, 실업률은 6.6%정도임
-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의 고용율이 42.5, 경제활동참여율이 4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고용율 41.4%, 경제활동참여율 44.6% 등의 순임
-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율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 이외 신체외부장애인으로 고용율과 경제활동참여율이 15%도 되지 않은 정도로 낮은 수준임
- 또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등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율도 각각 20.6%와 23.1% 매우 낮은 수준임
- 한편, 장애인의 연령대별 취업률과 실업률을 보면,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세에서 39세 구간으로 이 연령대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은 60.6% 수준임

〈표 III-20〉 장애인의 연령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연령별(1)	15세이상 인구 (명)		경제활동인구 (명)		비경제 활동인구 (명)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률 (%)	실업률 (%)	인구대비 취업자비율 (%)
	소계	소계	취업	실업					
계	2,522,592	981,028	931,429	49,599	1,541,565	38.90	94.90	5.10	36.90
15~19세	42,616	3,360	2,939	421	39,256	7.90	87.50	12.50	6.90
20~29세	103,407	54,237	48,445	5,793	49,169	52.50	89.30	10.70	46.80
30~39세	123,542	74,851	70,811	4,040	48,690	60.60	94.60	5.40	57.30
40~49세	268,657	160,784	155,794	4,991	107,873	59.80	96.90	3.10	58.00
50~64세	781,074	422,130	398,263	23,867	358,944	54.00	94.30	5.70	51.00
65세 이상	1,203,296	265,665	255,178	10,487	937,632	22.10	96.10	3.90	21.2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율은 30세에서 39세 연령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세에서 49세 59.8%, 50세에서 64세 5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를 분기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4분기에서 취업자는 감소하고 2분기에서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한편, 근로장애인의 종사자상 지위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임금근로자는 32.3% 정도로 추정되고 비임금 근로자는 4.5%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장애인 전체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는 약 50.8%정도이고 임시근로자는 18.4% 그리고 나머지 5.4%는 일용근로자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장애인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1%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는 4.3%정도로 추정됨

〈표Ⅲ-21〉 장애인근로자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주정수	비율	주정수	비율
전체	861,648	100	27,064,000	100
소계	583,095	67.7	20,187,000	74.6
임금 근로자	333,273	38.7	13,741,000	50.8
상용근로자	160,140	18.6	4,984,000	18.4
임시근로자	89,683	10.4	1,463,000	5.4
소계	278,553	32.3	6,876,000	25.4
비임금 근로자	51,801	6	1,643,000	6.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88,059	21.8	4,081,000	15.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8,693	4.5	1,152,000	4.3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표Ⅲ-22〉 직업분류별 취업자 현황

한국표준직업분류별(1)	2018 4/4			2019 1/4			
	취업자수 (명)	전년도 동분기 취업자수 증감 (%)	취업률 (%)	전년도 동분기 취업률 증감 (%)p	취업자수 (명)	전년도 동분기 취업자수 증감 (%)	취업률 (%)
합계	8,476	44.7	51.4	10.5	9,299	34.9	51.7
관리자	48	-20.0	16.2	-1.1	89	67.9	29.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86	67.3	42.9	12.6	107	0.0	1.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	-60.0	10.7	-16.6	16	77.8	41.0
단순노무 종사자	3,083	36.1	49.1	8.8	1,793	0.2	19.3
사무종사자	1,647	157.7	38.1	20.7	2,871	178.2	30.9
서비스 종사자	431	49.1	34.0	4.8	406	26.1	4.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78	43.1	31.2	4.6	320	0.6	3.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96	67.8	25.7	8.6	369	5.4	17.9
판매종사자	59	-19.2	27.1	-13.2	53	-37.6	0.6
군인	0	-	-	0.0	0	-	0.0
미분류	1,942	13.8	-	0.0	3,275	15.8	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장애인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장애인의 직업분류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2018년 말 기준 취업자는 총 8천명이고, 이중 단순노무직이 3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1.6천명, 장치 및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5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취업자 중 다수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혹은 기능원과 관련기능종사자로 채워지고 있음
- 전년 동 분기 대비 취업자의 증가율을 보면, 사무종사자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등이 다른 직업유형보다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 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 수는 총 164만개이고 이중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는 총 7.1만개로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4.3% 정도임

〈표Ⅲ-23〉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항목	2012	2013	2015	2017
전체 기업체 수 (개)	1,215,966	1,383,467	1,531,716	1,638,452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 (개)	65,715	62,662	59,885	70,558
고용기업체 비율 (%)	5.4	4.5	3.9	4.3
전체 상시근로자 수 (명)	11,873,457	12,149,124	12,872,245	14,526,473
장애인 근로자 수 (명)	185,998	172,470	187,630	213,688
장애인 고용률 (%)	1.57	1.42	1.46	1.47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표Ⅲ-24〉 장애인고용기업체 현황

특성별(1)	특성별(2)	계		장애인 고용		장애인 미고용		장애인 고용기업체	
		기업체 수 (개)	비율 (%)	기업체 수 (개)	비 율 (%)	기업체 수 (개)	비율 (%)	기업체 수 (개)	비율 (%)
전체	소계	1,638,452	100.0	70,558	100.0	1,567,894	100.0	4,3	
비고용의무기업 규모별	소계	1,606,249	98.0	50,579	71.7	1,555,670	99.2	3.1	
	1~4명	1,164,268	71.1	23,558	33.4	1,140,710	72.8	2.0	
	5~49명	441,981	27.0	27,021	38.3	414,960	26.5	6.1	
고용의무기업 규모별	소계	32,203	2.0	19,979	28.3	12,224	0.8	62.0	
	50~299명	28,504	1.7	16,529	23.4	11,975	0.8	58.0	
	300~999명	2,926	0.2	2,693	3.8	233	0.0	92.0	
	1,000명 이상	773	0.0	758	1.1	15	0.0	98.0	
부담금 납부 대상 (100명 이상) 산업별	소계	14,015	0.9	11,696	16.6	2,319	0.1	83.5	
	제조업	264,178	16.1	19,444	27.6	244,734	27.6	7.4	
	서비스업1	732,929	44.7	15,061	21.3	717,868	45.8	2.1	
	서비스업2	540,253	33.0	32,217	45.7	508,036	32.4	6.0	
	기타 산업	101,092	6.2	3,836	5.4	97,256	6.2	3.8	
기업체 형태별	개인기업체	1,174,560	71.7	32,201	45.6	1,142,359	72.9	2.7	
	회사법인	402,693	24.6	29,021	41.1	373,672	23.8	7.2	
	회사이외법인	61,199	3.7	9,335	13.2	51,864	3.3	15.3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장애인의 고용기업체의 비율은 약 2012년 5.4%에서 2013년 4.5% 그리고 2017년 4.3%로 2012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기업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자 규모가 50인에서 300명 이하인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가 1천명이 넘는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체의 형태에서도 회사법인 보다는 개인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다소 많았고, 회사법인 이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를 보면, 2013년 4분기의 구인자수가 약 14,683명 이었고 2018년 4분기에는 20,579명으로 증가하였고, 취업자 수도 같은 기관 약 7,321명에서 8,476명으로 증가함

〈표Ⅲ-25〉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항목	2013 4/4	2014 4/4	2015 4/4	2016 4/4	2017 4/4	2018 4/4	2019 1/4
구인수 (명)	20,080	14,683	17,748	17,424	19,261	20,570	22,838
구직자수 (명)	10,453	9,296	10,923	11,586	14,329	16,501	17,994
취업자수 (명)	6,249	7,371	5,962	5,781	5,859	8,476	9,299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표Ⅲ-26〉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암면 장애	장루요 루장애	뇌전증 장애	상이급	미분류
2013 1/4	2,091	420	201	128	281	5	773	152	46	54	5	9	3	4	-	9	1	-
2013 2/4	2,595	360	171	94	354	8	1,198	226	106	39	12	9	2	2	-	9	5	-
2013 3/4	2,849	539	256	140	354	2	1,089	289	76	59	14	9	-	-	-	20	2	-
2013 4/4	3,404	480	216	136	424	4	1,576	379	96	47	11	9	4	3	1	15	3	-
2014 1/4	2,881	782	388	183	307	4	799	215	54	94	17	19	1	2	-	10	6	-
2014 2/4	3,060	450	222	111	394	11	1,413	282	81	49	18	9	3	3	0	6	8	-
2014 3/4	2,423	357	160	123	317	6	1,099	229	51	48	9	8	6	3	0	6	1	-
2014 4/4	3,740	570	254	151	403	14	1,770	379	97	60	13	7	2	1	0	12	7	-
2015 1/4	2,319	438	239	123	258	5	863	220	67	63	15	13	1	2	0	10	2	-
2015 2/4	2,831	317	195	125	344	4	1,367	264	143	48	5	7	-	-	-	9	3	-
2015 3/4	2,913	374	207	92	328	5	1,340	377	110	52	6	9	1	2	0	7	3	-
2015 4/4	3,298	366	198	120	428	4	1,572	418	99	58	7	9	-	4	-	11	4	-
2016 1/4	2,459	367	210	132	271	5	1,055	222	90	63	11	10	2	1	0	18	2	-
2016 2/4	3,560	343	250	182	380	5	1,799	364	157	48	7	11	0	2	0	7	5	-
2016 3/4	2,887	376	180	182	371	4	1,289	312	95	43	12	10	1	1	0	8	3	-
2016 4/4	3,234	343	167	106	376	5	1,712	339	114	50	5	4	-	1	-	9	3	-
2017 1/4	2,634	385	204	150	273	6	1,169	269	90	49	9	10	1	1	1	11	6	-
2017 2/4	4,319	503	258	245	458	7	2,096	437	176	94	14	15	0	3	0	8	5	-
2017 3/4	3,725	445	241	143	381	6	1,857	381	150	74	16	10	2	3	0	8	8	-
2017 4/4	3,397	319	180	137	324	4	1,886	310	164	41	13	6	0	0	0	12	1	-
2018 1/4	3,346	496	260	237	343	9	1,437	313	129	79	13	14	1	1	0	11	3	-
2018 2/4	4,299	475	257	236	400	9	2,169	441	182	74	21	13	2	7	0	5	7	1
2018 3/4	3,806	442	252	342	410	5	1,778	319	145	64	18	11	1	1	1	11	6	0
2018 4/4	4,373	548	274	242	389	3	2,137	453	176	87	25	10	0	5	0	17	6	1
2019 1/4	4,707	700	400	319	349	9	2,129	392	203	141	18	22	1	1	0	19	4	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장애인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를 보면, 최근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장애유형중에서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최근 장애인의 취업자 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를 보면, 2013년 말 기준 1,576명에서 2018년 말에는 2,13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자폐성 장애인도 같은 기간 96명에서 2018년 말 176명으로 약 두 배 정도 증가함

〈표III-27〉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률(%)

구분	합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 장애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질환 장애	노년증 장애	상이 증급	미분류
2013 1/4	30.8	34.5	34.2	53.8	44.0	26.3	37.6	22.7	37.1	32.9	17.2	56.3	42.9	44.4	-	20.5	20.0	-
2013 2/4	41.9	38.3	34.0	47.0	59.9	66.7	59.3	34.3	68.8	28.5	40.0	37.5	50.0	50.0	-	36.0	62.5	-
2013 3/4	36.5	56.5	46.5	64.8	63.6	16.7	54.6	41.5	66.1	33.0	50.0	45.0	0.0	0.0	0.0	57.1	25.0	-
2013 4/4	62.1	54.8	43.1	67.3	79.4	26.7	71.3	51.7	68.1	37.6	45.8	64.3	200.0	30.0	100.0	40.5	75.0	-
2014 1/4	46.1	55.3	53.1	70.1	51.1	20.0	38.2	31.5	36.0	58.4	47.2	47.5	20.0	33.3	-	33.3	46.2	-
2014 2/4	64.4	60.7	52.1	82.8	76.2	78.6	71.6	45.3	67.5	36.3	81.8	64.3	60.0	100.0	0.0	30.0	100.0	-
2014 3/4	50.9	46.8	35.2	63.1	69.5	37.5	57.5	35.6	47.2	34.5	52.9	61.5	150.0	100.0	-	20.0	25.0	-
2014 4/4	78.4	81.9	58.3	92.1	82.6	100.0	88.4	60.1	66.0	52.6	81.3	100.0	31.8	25.0	0.0	40.0	140.0	-
2015 1/4	43.3	48.8	46.1	56.9	51.0	27.8	39.3	36.7	34.7	49.6	60.0	61.9	33.3	200.0	-	38.5	28.6	-
2015 2/4	53.2	39.1	40.4	63.8	55.8	33.3	64.8	36.5	81.3	38.1	35.7	38.9	0.0	0.0	-	33.3	42.9	-
2015 3/4	58.6	52.3	46.4	63.9	55.5	35.7	66.8	53.7	79.7	38.0	30.0	60.0	-	100.0	-	25.0	33.3	-
2015 4/4	59.9	48.7	41.9	77.9	73.5	40.0	65.3	57.7	49.0	50.0	38.9	39.1	-	66.7	-	37.9	66.7	-
2016 1/4	36.3	35.6	32.6	59.7	39.6	26.3	36.1	29.4	37.5	39.1	44.0	43.5	66.7	25.0	0.0	48.6	28.6	-
2016 2/4	59.7	42.0	49.3	90.1	58.6	20.8	69.8	45.1	82.6	41.7	31.8	45.8	0.0	66.7	0.0	30.4	83.3	-
2016 3/4	48.2	48.0	39.0	94.3	62.7	26.7	47.4	40.1	44.8	30.5	60.0	43.5	0.0	33.3	0.0	25.8	27.3	-
2016 4/4	55.6	41.9	33.0	52.0	66.2	33.3	67.1	44.7	57.9	43.9	27.8	19.0	-	50.0	-	31.0	23.1	-
2017 1/4	33.5	34.7	29.1	54.5	38.0	40.0	33.5	28.2	31.5	24.7	30.0	31.3	16.7	16.7	0.0	30.6	54.5	-
2017 2/4	61.6	51.4	45.7	111.9	68.5	70.0	68.9	46.9	65.4	42.9	43.8	60.0	0.0	23.1	0.0	25.0	62.5	-
2017 3/4	52.4	49.6	46.4	52.8	56.1	54.5	56.9	43.7	53.4	36.6	53.3	37.0	66.7	100.0	0.0	27.6	50.0	-
2017 4/4	47.2	30.4	27.3	56.8	47.6	26.7	60.3	37.2	56.6	22.7	37.1	21.4	-	-	-	35.3	12.5	-
2018 1/4	41.8	44.0	41.7	102.2	44.9	56.3	40.2	31.3	43.6	33.2	31.0	48.3	20.0	20.0	0.0	29.7	42.9	-
2018 2/4	67.6	59.7	55.0	116.3	63.2	64.3	72.9	57.1	72.8	42.8	100.0	59.1	200.0	175.0	0.0	21.7	116.7	0.0
2018 3/4	56.5	46.6	49.4	145.5	61.1	35.7	60.1	38.5	60.9	29.5	50.0	33.3	50.0	12.5	0.0	36.7	100.0	0.0
2018 4/4	54.9	49.4	40.2	80.1	53.1	21.4	60.5	49.5	57.5	31.2	96.2	34.5	0.0	166.7	0.0	56.7	75.0	100.0
2019 1/4	52.8	63.6	58.7	70.0	48.3	64.3	51.2	40.3	51.0	52.6	43.9	53.7	33.3	20.0	0.0	52.8	57.1	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장애인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률을 보면, 지체장애인은 2013년 말 기준 54.8%에서 2018년 말 기준 49.4%로 소폭 감소하였고, 지적장애인도 같은 기관 71.3%에서 60.5%로 감소함
- 자폐성 장애인의 취업률도 2013년 말 기준 66.1%에서 2018년 말 기준 57.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취업률은 일부 장애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3년도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말 기준 장애유형별 취업률을 보면, 심장장애인이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80.1%, 지적장애인 6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Ⅲ-28〉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 및 취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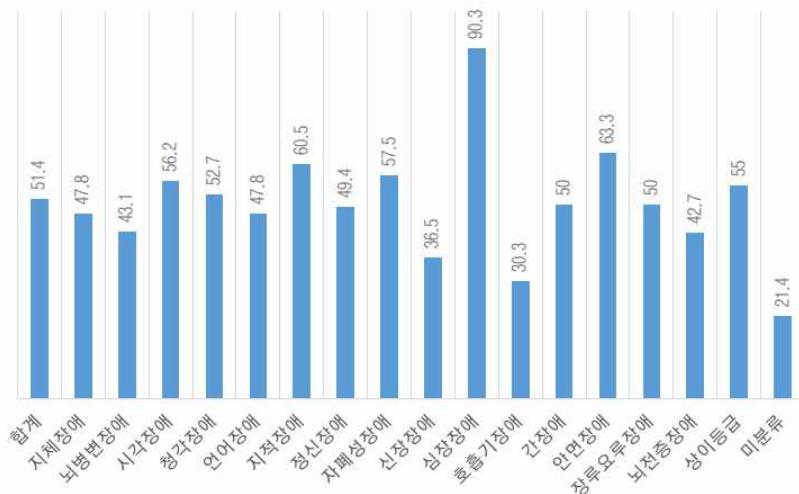
(단위 : 명, %)

장애유형별(1)	2018 4/4			2019 1/4				
	취업자수 (명)	전년도 취업자수 증감 (%)	취업률 (%)	전년도 동분기 취업률 증감 (%)p)	취업자수 (명)	전년도 동분기 취업자수 증감 (%)	취업률 (%)	전년도 동분기 취업률 증감 (%)p)
합계	8,476	44.7	51.4	10.5	9,299	34.9	51.7	9.0
지체장애	2,965	66.5	47.8	14.4	3,478	31.4	54.2	10.1
뇌병변장애	608	51.6	43.1	12.7	784	45.7	53.8	12.8
시각장애	839	83.2	56.2	17.9	960	30.4	53.7	-1.4
청각장애	849	46.6	52.7	10.1	803	13.4	49.0	3.6
언어장애	88	35.4	47.8	9.8	100	33.3	48.8	10.1
지적장애	2,137	13.2	60.5	0.2	2,130	48.1	51.1	10.9
정신장애	453	46.1	49.4	12.2	392	25.2	40.3	9.0
자폐성장애	176	7.3	57.5	0.9	203	57.4	51.0	7.4
신장장애	163	94.0	36.5	11.9	248	64.2	53.1	14.1
심장장애	28	86.7	90.3	55.4	23	27.8	37.7	5.6
호흡기장애	10	66.7	30.3	8.9	23	53.3	54.8	4.8
간장애	30	100.0	50.0	19.4	35	66.7	43.2	13.6
안면장애	19	216.7	63.3	41.1	8	-38.5	29.6	-8.6
장루요루장애	14	40.0	50.0	6.5	18	38.5	36.0	-2.2
뇌전증장애	50	16.3	42.7	4.0	56	24.4	41.2	7.9
상이등급	44	37.5	55.0	7.2	35	6.1	43.2	12.6
미분류	3	0.0	21.4	-28.6	3	200.0	100.0	87.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장애인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2018년 말 기준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와 취업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취업률은 심장장애가 9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전년동분기 대부 취업자 수의 증가율을 보면, 간장애와 안면장애 등이 가장 높았고,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Ⅲ-5〉 장애유형별 취업률



〈표Ⅲ-29〉 장애인 구인자 수 추이 (단위 : 명)

한국표준직업분류별(1)	2013 4/4	2014 4/4	2015 4/4	2016 4/4	2017 4/4	2018 4/4	2019 1/4
	구인수 (명)						
합계	20,080	14,683	17,748	17,424	19,261	20,570	22,838
관리자	221	113	101	168	227	114	12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76	880	921	1,037	873	925	1,1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7	72	79	84	58	49	107
단순노무 종사자	5,088	3,743	5,643	6,019	6,952	7,456	7,684
사무종사자	6,133	4,745	4,568	3,801	4,534	4,916	5,047
서비스 종사자	1,124	458	1,088	1,051	955	1,068	1,26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328	1,747	2,734	2,738	2,994	3,501	4,37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658	866	1,726	1,657	1,905	2,178	2,723
판매종사자	1,555	2,059	888	869	763	363	321
군인	-	-	-	-	-	0	0
미분류	-	-	-	-	-	0	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장애인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장애인구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말 기준 20,080명이었던 구직자는 2019년 1분기 22,838명으로 약 2천명 정도 증가함
- 한편,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임금을 보면, 전체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은 2008년 115.6만원에서 2017년 171.0만원으로 약 5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평균임금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19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인이 189만원이었고, 자폐성장애인이 35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Ⅲ-30〉 장애유형별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

(단위 : 만원, %)

구분	2008	2011	2014	2017	증감액 (2008-2017)	증감율(2008-2017)
전체	115.6	142.0	153.0	171.0	55.4	47.9
지체장애	121.4	155.0	167.0	189.0	67.6	55.7
뇌병변장애	104.5	118.0	112.0	124.0	19.5	18.7
시각장애	136.8	136.0	156.0	196.0	59.2	43.3
청각장애	88.5	125.0	120.0	125.0	36.5	41.2
언어장애	92.7	141.0	130.0	155.0	62.3	67.2
지적장애	41.0	54.0	57.0	70.0	29	70.7
자폐성장애	23.2	38.0	45.0	35.0	11.8	50.9
정신장애	23.7	53.0	56.0	87.0	63.3	267.1
신장장애	147.5	189.0	183.0	176.0	28.5	19.3
심장장애	97.8	100.0	327.0	65.0	-32.8	-33.5
호흡기장애	86.5	99.0	110.0	101.0	14.5	16.8
간장애	235.2	196.0	190.0	278.0	42.8	18.2
안면장애	124.2	70.0	160.0	120.0	-4.2	-3.4
장루요루장애	84.5	86.0	78.0	188.0	103.5	122.5
뇌전증(간질)장애	66.4	117.0	-	90.0	23.6	35.5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 III-31〉 기채용 및 신규인력채용 계획 여부(전체 기업체)

(단위 : %)

채용계획현 황별(1)	채용계획현황별(2)	전체	장애인고용 여부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부담금 납부대상 (100명 이상)	
		소계	고용	미고용	비의무	의무(50명 이상)				
		소계	소계	소계	5~49명	소계	50명~ 299명	300명~ 999명	1,000명 이상	
기채용 및 신규채용별 (%)	채용(계획) 있음	17.1	25.1	16.2	15.3	42.0	40.3	51.8	65.1	48.0
	장애인 채용(계획) 있음	19.7	36.6	16.0	16.5	35.2	32.9	45.7	56.1	44.4
	채용(계획) 없음	82.9	74.9	83.8	84.7	58.0	59.7	48.2	34.9	52.0
기채용 및신규 채용예정별 (명)	전체 근로자 기업체별 평균 채용 예정 인원	7.7	28.5	4.1	3.2	30.0	16.8	71.8	207.2	47.3
	전체 근로자 채용 총 예정 인원	622,517	335,566	286,951	216,537	405,980	192,934	108,720	104,326	321,583
	전체 근로자 추정수	81,041	11,788	69,254	67,527	13,514	11,496	1,515	503	6,800
	장애인 근로자 기업체별 평균 채용 예정 인원	2.5	3.5	2.1	1.9	4.0	3.3	4.8	10.5	4.6
	장애인 채용 총 예정 인원	40,183	15,263	24,921	21,273	18,910	12,632	3,311	2,967	13,978
	장애인 근로자 추정수	15,929	4,312	11,617	11,176	4,753	3,779	692	283	3,019
	전체 대비 장애인 채용비율(%)	6.5	4.5	8.7	9.8	4.7	6.5	3.0	2.8	4.3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거나, 고용의무가 없어서	6.6	16.1	5.6	6.5	7.5	7.4	8.8	12.1	10.8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37.8	35.5	38.1	36.8	45.0	46.3	31.4	29.3	38.2
미채용이유 (중복응답) (%)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의 부족해서	14.5	13.1	14.6	14.0	17.6	17.1	19.3	40.4	17.7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19.0	28.9	17.9	18.3	23.9	23.0	36.0	16.2	29.3
	사업주, 관리자, 동료 등이 장애인 채용을 꺼려서	0.2	0.4	0.2	0.0	1.9	1.9	1.5	2.0	1.4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2.2	0.6	2.4	2.4	0.8	0.8	1.3	0.0	0.9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3.3	0.7	3.6	3.7	0.7	0.7	0.7	0.0	0.2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16.2	4.7	17.5	18.1	2.6	2.8	1.1	0.0	1.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다음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력채용 계획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향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7.1%였고, 이중 장애인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19.7%였음
-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25.1%였고,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16.2%정도가 향후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의무기업체인지 여부에서는 비의무 사업체 가 15.3%, 의무사업체가 42.0% 였음
- 장애인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지원 자체가 없어서라는 응답 도 1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2)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수요 현황

- 장애인의 교육 및 학력을 보면, 전체 장애인의 약 37%이상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는 전체 장애인의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 중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간장애가 3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장애 29.6%, 심장장애 23.8%, 안면장애 22.6% 등의 순이었고,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인은 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각각 6%~8% 이내에 불과함
- 특히,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50%내외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장애유형중에서도 대학진학률이 가장 낮은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
-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사실상 고등학교 정규교과 과정까지는 교육과 함께 돌봄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 고등학교까지의 졸업자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고등학교 정규교과를 졸업한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 많지 않아 돌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표Ⅲ-32〉 장애인 학력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전체	10.4	27.3	16.7	30.4	15.1
지체장애	11.2	28.9	18.8	27.6	13.5
뇌병변장애	9.3	26.3	15.6	29.6	19.1
시각장애	8.9	26.9	15.8	29.4	19.0
청각장애	18.6	32.7	14.2	22.3	12.2
언어장애	18.6	25.4	18.6	25.1	12.3
지적장애	7.4	23.3	12.2	48.5	8.6
자폐성장애	3.1	31.1	7.6	51.5	6.7
정신장애	1.3	15.1	11.9	42.1	29.6
신장장애	2.8	22.6	17.8	35.2	21.6
심장장애	0.0	23.5	9.8	42.8	23.8
호흡기장애	8.1	14.4	28.0	38.3	11.2
간장애	2.7	1.9	12.6	48.2	34.6
안면장애	1.7	14.1	15.0	46.8	22.6
장루요루장애	9.4	24.8	11.5	37.4	16.8
뇌전증(간질)장애	0.0	14.1	13.8	66.1	6.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Ⅲ-33〉 최종학력 및 졸업여부

구분	최종학력-학교							최종학력-졸업여부				
	무학 (만6세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3년제 이하	대학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비해당	재학 (수료)	중퇴	졸업	휴학
장애 등급	1-2등급	10.6	25.8	12.1	36.4	7.6	6.1	1.5	10.6	9.1	16.7	62.1
	3-4등급	18.1	30.5	13.3	28.6	3.8	5.7		18.1	1.0	17.1	63.8
	5-6등급	14.4	25.8	21.2	24.2	3.8	9.1	1.5	14.4		11.4	74.2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16.3	27.9	18.2	24.0	4.7	8.1	.8	16.3	.4	12.4	70.9
	정신적장애	7.9	18.4	7.9	57.9	5.3	2.6		7.9	15.8	26.3	47.4
	내부기관장애	9.1	36.4	9.1	36.4			9.1	9.1		18.2	72.7
전체		15.0	27.0	16.6	28.7	4.6	7.2	1.0	15.0	2.3	14.3	68.1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2017)의 원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가 2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27.0%, 중학교 16.6%, 그리고 무학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전라북도의 장애인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5%p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의 형태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약 71.7%정도가 일반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는 15.0%였으며, 일반 중퇴는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학교의 경우도 일반졸업자가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학급 졸업 2.9%, 일반중학교 중퇴 1.6%, 특수학교 졸업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국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는 대부분 일반학교의 졸업자가 차지하고 있었고, 아예 학교를 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퇴자가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졸업자를 제외하면 일반 중퇴자가 9.8%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임

〈표Ⅲ-34〉 학교형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중퇴	일반 졸업	특수 학급 졸업	특수 학교 졸업	다니지 않음	일반 재학	일반 중퇴	일반 졸업	특수 학급 중퇴	특수 학급 졸업	특수 학교 졸업	검정 고시	다니지 않음
장애 등급	1-2등급	13.6	62.1	7.6	6.1	10.6			43.9	1.5	10.6	7.6	36.4
	3-4등급	11.4	68.6	1.9	18.1	1.0	1.0	47.6		1.9			48.6
	5-6등급	6.8	78.8		14.4		3.0	56.1				.8	40.2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8.5	74.4	.4	.4	16.3	.4	1.6	52.7	.4	.4	.4	44.2
	정신적장애	15.8	52.6	15.8	7.9	7.9		2.6	36.8	2.6	21.1	10.5	26.3
	내부기관장애	18.2	72.7		9.1				54.5				45.5
전체		9.8	71.7	2.3	1.3	15.0	.3	1.6	50.8	.3	2.9	1.6	.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III-35〉 학교형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구분	중학교								
	비해당	일반 중퇴	일반 졸업	특수학급 재학	특수학급 졸업	특수학교 재학	특수학교 졸업	대안 졸업	검정고시 다니지 않음
장애 등급	1-2등급		1.5	31.8	6.1	3.0	3.0	6.1	48.5
	3-4등급		1.0	4.8	31.4	1.9			61.0
	5-6등급		.8	36.4			.8	.8	61.4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4	1.9	34.5		.4	.4	.4	62.0
	정신적장애		5.3	26.3	10.5	10.5	5.3	7.9	34.2
	내부기관장애			45.5					54.5
전체		.3	2.3	33.9	1.3	1.3	.7	1.3	.3
									58.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다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졸업자가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 중퇴 2.3%, 특수학교 졸업 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일반학교의 중퇴자는 신체적 장애자보다는 정신적 장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장애인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4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의 반대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신체적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정신적 장애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학교 자체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라는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결국, 학교의 중도포기는 장애유형별로 큰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교육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다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가정에서의 반대와 개인의 학교에 대한 거부감 등이 학교의 중도포기나 미진학의 주된 사유인 만큼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 그리고 장애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표 III-36〉 학교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 이유

구분	비해당	심한장애때문에 집에서 못다니게 해서	다니기 싫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주위 사선 및 편견때문에
장애 등급	1-2등급	50.0	4.5	4.5	3.0	30.3	3.0
	3-4등급	34.3	2.9	11.4	9.5	41.9	
	5-6등급	37.1		10.6	3.8	47.7	.8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35.7	1.9	10.5	5.0	45.0	.8
	정신적장애	60.5	2.6	7.9	10.5	15.8	2.6
	내부기관장애	45.5				54.5	
전체	39.1	2.0	9.8	5.5	41.7	1.0	.7
							.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Ⅲ-37〉 학교생활의 문제점

구분	학교생활시 문제점 1순위					학교생활시 문제점 2순위						
	비해당	친구들의 이해부족 의 이해 놀림	수업내용 사용 불편	교육도구 나 기자재 사용 불편	특수교사 의 부족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0	특수교사 의 부족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등하교 불편	문제가 없음
장애 등급	1-2등급	89.4	4.5	1.5	3.0	1.5	89.4	1.5	1.5	4.5	3.0	
	3-4등급	99.0	1.0				99.0			1.0		
	5-6등급	100.0					100.0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99.6	.4				99.6			.4		
	정신적장애	81.6	7.9	2.6	5.3	2.6	81.6	2.6	2.6	7.9	5.3	
	내부기관장애	100.0					100.0					
전체	97.4	.3	1.0	.3	.7	.3	97.4	.3	.3	.3	1.0	.7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학교생활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1순위에서는 대체로 수업내용의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높게 나타남
- 학교생활의 어려움 2순위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등하교에서의 불편함이 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사의 부족이나 특수교육 보조원의 미 배치 등이 2.6% 정도로 나타남
- 다음으로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1순위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1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문제, 자녀의 보호에 따른 심리적 부담, 그리고 미래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도 가족의 어려움으로 제시됨
-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에서 2순위는 자녀의 직업과 취업문제 그리고 미래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각각 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운감과 사회적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국 장애아동의 돌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의 마련 그리고 장애아동의 직업과 일자리 제공의 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음

〈표Ⅲ-38〉 장애아동 돌봄가족의 어려움

구분	비해당	1순위					2순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자녀의 건강악화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	자녀보호에 따른 심리 스트레스	미래 비용발생 부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자녀 직업/취업 문제	사회적차별 과 인식부족	미래 비용발생 부담	
장애등급	1-2등급	87.9	7.6	1.5		1.5	1.5	4.5	1.5	4.5	
	3-4등급	99.0			1.0		1.0				
	5-6등급	100.0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99.6			.4		.4				
	정신적장애	78.9	13.2	2.6		2.6	2.6	7.9	2.6	7.9	
	내부기관장애	100.0									
전체	97.1	1.6	.3	.3	.3	.3	.7	1.0	.3	1.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Ⅲ-39〉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영역

구분	비해당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체육,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없음
장애등급	1-2등급	9.1	6.1	1.5	3.0	3.0	3.0	71.2
	3-4등급	1.0	3.8	2.9	4.8	1.9	2.9	82.9
	5-6등급		1.5	7.6	1.5	3.8	3.0	81.1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4	3.5	5.4	1.9	2.7	3.1	80.6
	정신적장애	15.8	2.6		10.5		2.6	68.4
	내부기관장애							100.0
전체	2.3	3.3	4.6	2.9	2.3	2.6	2.3	79.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분석해 보면, 전라북도의 장애인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희망은 신체적장애나 내부기관 장애보다도 정신적 장애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장애정도에서는 2급 이하의 중증장애인인 3급 이상의 중증도 혹은 중증장애인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수요가 다른 유형보다도 발달장애인 등의 정신적 장애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발달장애인아동의 경우 19세 이후 정규교과과정 졸업이후에는 돌봄과 교육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 이 같은 돌봄 및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다른 유형보다도 정신적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정책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2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19.2%, 학습보조금 지원 17.9% 그리고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아동에 특화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학습인력과 학급보조금 등의 행정적 비용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해석됨

〈표Ⅲ-40〉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비해당	프로그램홍보 강화	교育기관까지의 이동방법지원	강사동료의 장애 이해	학습지원인력 제공	학습보조금 지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기타
장애등급	1-2등급	9.1	13.6	16.7	6.1	10.6	13.6	24.2
	3-4등급	1.0	22.9	11.4	3.8	6.7	19.0	23.8
	5-6등급		40.2	12.9		5.3	19.7	13.6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4	30.6	14.7	1.9	6.6	19.8	17.4
	정신적장애	15.8	10.5	2.6	7.9	13.2	7.9	34.2
	내부기관장애		27.3	27.3		9.1	9.1	18.2
전체	2.3	28.0	13.7	2.6	7.5	17.9	19.2	8.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Ⅲ-41〉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구분	장애로 인해 일하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것 같아서	임금 수준, 근로 조건에 맞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	교육, 기술, 경험	장애인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이전에 찾아보았을때 일자리가 없어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현재 취업준비중	나이가 너무 어리고 나이가 많아서	육아 또는 가사	장애 이외의 질병, 사고로(건강문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	자영업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기타	
전체	37.5	10.5	3.2	0.5	0.5	0.9	4.0	0.2	0.8	15.6	3.7	19.2	2.4	0.3	0.2	0.4
지체장애	28.1	12.7	4.8	0.7	0.4	0.8	4.9	0.1	0.7	19.4	4.6	21.4	0.7	0.2	0.2	0.3
뇌병변장애	56.0	7.6	0.2	0.6	0.0	0.9	3.0	0.0	0.0	7.6	0.7	20.1	2.5	0.6	0.2	0.0
시각장애	20.4	14.1	4.7	0.0	1.1	0.3	5.3	0.0	3.1	19.3	5.0	23.6	1.5	0.6	0.0	1.0
청각장애	14.4	14.0	2.4	0.7	1.1	0.7	3.0	0.0	0.9	33.0	5.1	22.1	1.7	0.5	0.0	0.4
언어장애	69.6	1.3	0.0	0.0	0.0	13.7	6.1	0.0	0.0	1.1	0.0	8.2	0.0	0.0	0.0	0.0
지적장애	66.7	2.5	1.8	0.0	0.5	1.7	2.7	0.4	0.7	0.0	3.0	3.4	15.6	0.3	0.0	0.6
자폐성장애	47.3	0.0	0.0	0.0	0.0	0.0	0.0	6.9	6.9	0.0	0.0	3.4	35.6	0.0	0.0	0.0
정신장애	71.5	4.2	1.4	0.0	1.1	1.8	4.2	1.0	0.0	1.2	2.5	9.0	0.2	0.0	1.4	0.5
신장장애	57.5	7.0	2.2	0.0	0.9	0.0	2.3	0.0	0.9	3.9	1.8	23.0	0.0	0.0	0.5	0.0
심장장애	38.1	3.9	7.1	0.0	0.0	0.0	0.0	0.0	0.0	28.7	18.7	0.9	2.7	0.0	0.0	0.0
호흡기장애	67.5	8.2	0.0	0.0	0.0	0.0	0.0	0.0	0.0	2.8	0.5	20.9	0.0	0.0	0.0	0.0
간장애	35.7	9.9	7.4	0.0	0.0	0.0	0.0	0.0	0.0	0.0	14.6	32.4	0.0	0.0	0.0	0.0
안면장애	69.5	0.0	0.0	0.0	0.0	17.5	0.0	0.0	0.0	6.2	6.7	0.0	0.0	0.0	0.0	0.0
장루요루장애	53.0	12.2	1.4	0.0	0.0	0.0	3.6	1.1	0.0	12.5	3.2	11.3	1.7	0.0	0.0	0.0
노전증(간질)장애	65.0	0.0	0.0	1.9	0.0	1.9	3.3	8.7	2.8	0.0	5.5	7.4	3.3	0.0	0.0	0.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으로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현재 장애인 중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 이외의 질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 7.4%, 육아 또는 가사 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장애유형별로는 경제활동 미 참여 사유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학교재학 중으로 인한 경제활동 미 참여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Ⅲ-42〉 직업훈련 경험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구분	직업훈련 경험여부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								
	비해당	예	훈련중	아니오	직업 훈련 있 는지 몰 라서	등록 절차를 몰라서	심한 장애로	비용 부담	훈련 내용이 마음에 인들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서	훈련 받을 필 요가 없 어서	집근처 훈련 기관이 없어서	노령 이어서
장애 등급	1-2등급	4.5	1.5	93.9	6.1	40.9				7.6	28.8	1.5	9.1
	3-4등급	1.0	3.8	1.9	93.3	8.6	3.8	13.3	1.9	8.6	34.3	1.9	21.0
	5-6등급	2.3		97.7	7.6	0.8	1.5	0.8	0.8	11.4	46.2	1.5	27.3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4	3.1	.4	96.1	8.1	1.9	7.8	0.4	9.7	42.6	1.6	24.0
	정신적장애	5.3	5.3	89.5	5.3		52.6		5.3	10.5	13.2	2.6	
	내부기관장애			100.0					36.4	9.1		27.3	27.3
전체	.3	3.3	1.0	95.4	7.5	1.6	14.3	0.3	1.0	9.4	38.4	1.6	21.2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Ⅲ-43〉 직업훈련 희망분야

구분	비해당	기계 분야	금속 분야	통신 분야	토목 건축 분야	컴퓨터 정보 처리 분야	공예 분야	산업 응용 분야	첨술 인마 분야	사무 분야	제과 제빵 분야	이외의 서비스 분야	희망 안 함	기타
장애 등급	1-2등급				1.5	4.5	1.5	3.0	1.5	1.5	3.0	83.3		
	3-4등급	1.0				1.9	4.8			1.0	2.9	1.9	86.7	
	5-6등급		2.3	0.8		0.8	0.8	1.5			2.3	90.9	0.8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0.4	1.2	0.4		0.8	1.6	0.4	0.8	0.4	0.4	2.7	90.3	
	정신적장애				2.6	2.6	7.9	2.6		2.6	7.9		73.7	
	내부기관장애						9.1					81.8	9.1	
전체		0.3	1.0	0.3	0.3	1.0	2.6	0.7	0.7	0.7	1.3	2.3	87.9	0.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95.4%정도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라북도의 장애인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유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38.4%, 노령이어서 21.2%, 심한 장애로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장애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직업훈련 미 참여 이유로 장애의 심각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로 매우 높았고, 훈련이 불필요해서라는 응답은 13.2%로 다른 장애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제도적 과제로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이 1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 15.3%, 취업정보 제공 14.3%, 의무고용제도 준수 유도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역량개발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와 같은 장애인 대상 인식개선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표Ⅲ-44〉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구분	비해당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취업정보 제공	직업능력 개발	취업상담평 기발선	사후지도	임금보조	직장내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의무 고용제 준수유도	업무보조 및 근로지원서비스	기타
장애 등급	1-2등급	19.7	9.1	19.7	4.5	7.6	15.2	3	9.1	7.6	4.5
	3-4등급	1	21	13.3	12.4	10.5	3.8	17.1	1.9	4.8	2.9
	5-6등급		13.6	18.2	15.9	9.8	4.5	15.9	2.3	10.6	2.3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0.4	15.5	15.9	14.3	10.1	5	16.7	2.7	8.5	3.5
	정신적장애		28.9	5.3	23.7	5.3	5.3	13.2		2.6	7.9
	내부기관장애		36.4	9.1	9.1			9.1		18.2	18.2
전체		0.3	17.9	14.3	15.3	9.1	4.9	16	2.3	8.1	3.9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Ⅲ-45〉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단위: %)

구분	추정수	근로장애인 고용 안정	용통성 있는 근로 시간 조정	생산 작업 공정 단순화	복리 후생 건강 관리	임금 지원 (교통 실비)	직무 능력 향상 훈련	의사 소통 대인 관계 훈련	장애인 편의 시설 보강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전체	203	33.1	2.0	4.3	3.2	32.0	12.0	6.1	1.9	5.5
보호작업장설비 무	61	29.0	0.0	10.5	2.4	22.6	8.9	13.7	2.4	10.5
보호작업장설비 유	122	34.0	3.3	2.0	3.3	35.9	12.5	3.3	1.9	3.9
보호작업장_합계	183	32.4	2.2	4.8	3.0	31.5	11.3	6.8	2.1	6.1
근로사업장	20	40.0	0.0	0.0	5.0	36.7	18.3	0.0	0.0	0.0
전체	488	35.8	8.1	0.6	14.1	30.7	1.5	2.0	4.4	3.0
보호작업장_최저임금 미만	326	38.8	7.4	0.6	13.4	30.0	0.3	2.2	3.9	3.5
보호작업장_최저임금 이상	113	27.3	9.6	0.7	9.1	39.1	5.1	2.2	4.5	2.2
근로작업장_최저임금 미만	40	31.7	8.8	0.0	33.3	17.5	0.0	0.0	8.8	0.0
근로작업장_최저임금 이상	9	50.0	11.1	0.0	16.7	11.1	5.6	0.0	0.0	5.6

출처: 시설/근로장애인 조사 결과

-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조치로는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이 50.0%로 가장 높았고, 복지후생 및 건강관리 16.7%, 용통성있는 시간조정과 임금지원이 각각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그리고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금감면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46〉 장애인고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체 사업체)

필요한 정책	2015			2017		
	전체	고용	미고용	전체	고용	미고용
부담금 인상	21.5	18.8	21.8	11.5	13.6	11.3
고용의무 범위 확대	5.2	5.1	5.3	6.0	4.7	6.2
장애인 고용장려금 증액	17.4	19.5	17.2	12.5	19.4	11.8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응자 등 금융지원 확대	18.8	19.5	18.7	13.5	15.3	13.3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13.3	19.4	12.6	17.3	18.1	17.2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확대	1.4	4.2	1.1	3.8	4.9	3.7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	6.7	4.1	7.1	11.2	7.7	11.6
적합한 장애인력 구인 서비스 강화	3.1	4.6	3.0	6.6	7.6	6.5
고용된 장애인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1.4	1.3	1.5	8.8	4.3	9.3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	5.8	2.2	6.3	6.5	3.4	6.8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0.7	0.4	0.8	0.4	0.3	0.4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사설의 설치나 장비의 구입 지원	1.7	0.8	1.8	1.8	0.7	1.9
기타	0.2	0.0	0.2	-	-	-
특별히 없음	2.5	0.0	2.8	-	-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표III-47〉 장애인 미취업자의 취업희망

취업희망별(2)		추정수 (명)	비율 (%)
전체	소계	202,698	100.0
시유별	돈을 벌지 않으면 가구의 생계가 어려워서	87,983	43.4
	용돈마련, 자족, 노후준비 등을 위해	50,529	24.9
	자신의 발전을 위해	24,660	12.2
	자신이나 가술의 활용을 위해	2,869	1.4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	32,403	16.0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3,604	1.8
종사상 지위별	주변 사람의 권유로	650	0.3
	임금근로자	185,680	91.6
	자영업자	15,840	7.8
산업별	무급가족종사자	1,178	0.6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197	1.1
	제조업	34,666	17.1
	건설업	18,110	8.9
	도소매, 음식 숙박업	41,723	20.6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84,292	41.6
직업별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11,754	5.8
	모름 응답가절	9,954	4.9
	관리자, 전문가	17,988	8.9
	사무 종사자	28,509	14.1
	서비스 판매 종사자	37,929	18.7
직업별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31	0.7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27,926	13.8
	단순노무 종사자	82,326	40.6
	모름 응답가절	6,589	3.3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분석자료

- 장애인 미취업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취업희망 사유로는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서’ 43.4%, 용돈마련 및 노후준비 등을 위해 24.9%, 자기발전을 위해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희망이 91.6%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는 7.8%에 불과해 다수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미취업자의 산업별 취업희망분야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 분야가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6%, 제조업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8.7%, 기능 및 기계조작 종사자 13.8%, 사무종사자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Ⅲ-48〉 직장생활시 애로사항(근로자)

구분	비해당	낮은 수입	직장내 대인관계	승진문제	업무과다	직무관련기능부족	적성과 맞지않는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출퇴근 불편
장애 등급	1-2등급	87.9	50.0	16.7				16.7	16.7
	3-4등급	73.3	50.0	7.5		42.5			
	5-6등급	56.1	58.7	5.8	3.1	20.5	3.1	3.1	5.8
장애 유형	신체장애	64.7	54.4	7.8	1.9	26.2	1.9	1.9	5.8
	정신장애	89.5	100.0						
	내부기관장애	90.9						100.0	
전체	68.7	54.7	7.3	1.7	25.7	1.7	1.7	1.7	5.6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분석, 전라북도 자료 추출

- 전라북도의 장애인 중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수입이 5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업무과다 25.7%, 직장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장 생활시 애로사항으로는 신체장애의 경우 낮은 수입과 업무과다가 상당부분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적 장애의 경우 낮은 수입이 가장 큰 어려움 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근로 장애인중 일에 대한 만족정도에서는 약간만족 42.8%, 매우 만족 7.3% 등으로 만족한다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 장애인의 절반정도 차지
- 다만, 근로 장애인의 일에 대한 만족도 중 보통이다 응답을 제외하면 불만족한다는 장애인은 10% 이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근로 장애인은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에 대한 만족정도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표본수가 적은 내부기관장애를 제외하면 정신적 장애가 신체적 장애보다는 일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표Ⅲ-49〉 일에 대한 만족도(근로자)

구분	비해당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장애등급	1-2등급	87.9	12.4	37.2	50.4	
	3-4등급	73.3	7.1	35.6	42.7	10.9
	5-6등급	56.1	6.8	46.7	39.6	6.8
장애유형	신체장애	64.7	6.5	42.9	41.8	7.7
	정신장애	89.5	24.8	24.8	50.5	
	내부기관장애	90.9		100.0		
전체	68.7	7.3	42.8	41.5	7.3	1.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분석, 전라북도 자료 추출

〈표III-50〉 직업훈련 경험 여부

구분	비해당	예	훈련중	아니오
장애등급	1-2등급	4.5	1.5	93.9
	3-4등급	1.0	3.8	93.3
	5-6등급	2.3		97.7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4	3.1	96.1
	정신적장애	5.3	5.3	89.5
	내부기관장애	-		100.0
전체	.3	3.3	1.0	95.4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분석, 전라북도 자료 추출

-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전라북도의 데이터만 추출하여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고, 나머지 95.4%의 장애인은 전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이 5.3%로 신체적 장애 3.1%, 내부적 장애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훈련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희망분야에서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및 정보처리 기술에 대한 직업교육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과제빵 1.3%, 기계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장애인은 컴퓨터 정보처리기술과 기계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 높았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컴퓨터 정보처리분야와 제과 제빵분야에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신체적 장애이든 정신적 장애이든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컴퓨터 관련 정보처리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욕구가 가장 많았고, 제과제빵 등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직업훈련의 희망분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은 정보처리기술과 침술 안마 등의 분야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5급과 6급의 경증장애인은 기계분야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III-51〉 직업훈련 희망 분야

구분	비해당	기계	금속	통신	토목 건축	컴퓨터 정보 처리	공예 분야	산업 응용	침술 안마	사무	제과 제빵	이외 서비스	희망 인함	기타
장애 등급	1-2등급				1.5	4.5	1.5		3.0	1.5	1.5	3.0	83.3	
	3-4등급	1.0				1.9	4.8			1.0	2.9	1.9	86.7	
	5-6등급		2.3	.8	.8		.8	1.5			2.3	90.9	.8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4	1.2	.4		.8	1.6	4	.8	.8	4	2.7	90.3	
	정신적장애				2.6	2.6	7.9	2.6			2.6	7.9	73.7	
	내부기관장애						9.1						81.8	9.1
전체		.3	1.0	.3	.3	1.0	2.6	.7	.7	.7	1.3	2.3	87.9	.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분석, 전라북도 자료 추출

〈표 III-52〉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구분	비해당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취업정보 제공	직업능력 개발	취업상담 평가일선	사후지도	임금보조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의무고용 제 준수 유도	업무보조 근로지원 서비스	기타
장애 등급	1-2등급	19.7	9.1	19.7	4.5	7.6	15.2	3.0	9.1	7.6	4.5
	3-4등급	1.0	21.0	13.3	12.4	10.5	3.8	17.1	1.9	4.8	2.9
	5-6등급		13.6	18.2	15.9	9.8	4.5	15.9	2.3	10.6	2.3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4	15.5	15.9	14.3	10.1	5.0	16.7	2.7	8.5	3.5
	정신적장애		28.9	5.3	23.7	5.3	5.3	13.2		2.6	7.9
	내부기관장애		36.4	9.1	9.1			9.1		18.2	18.2
전체		.3	17.9	14.3	15.3	9.1	4.9	16.0	2.3	8.1	3.9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분석, 전라북도 자료 추출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1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금보조 16.0%,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15.3%, 취업 정보의 제공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에는 임금보조가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정신적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는 장애인 인식개선활동이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장애정도에 따라서도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과제로서 장애인인식개선과 직업능력개발이 1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금보조 15.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5급과 6급의 경증장애인은 취업정보의 제공이 1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과 임금보조가 각각 15.9%,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다수는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에 대한 상당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증보다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 보다는 발달장애인 등의 정신적 장애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직업재활과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인식개선이 중요한 과제이고 여기에 더하여 취업알선과 적정한 임금의 지원과 같은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됨
-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 그리고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취업상담 및 연계프로그램의 운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3) 돌봄 및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

- 장애인의 돌봄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011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7.5%였지만 2014년에는 32.2% 그리고 2017년도에는 33.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2011년 32.4%에서 2014년에는 36.6% 그리고 2017년도에는 3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Ⅲ-5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만 65세 이상	전체	만 65세 이상	전체	만 65세 이상
혼자서 스스로 (ⓐ)	56.9	47.8	51.3	44.9	46.9	38.8
대부분 혼자서 (ⓑ)	15.6	19.8	16.5	18.5	19.2	23.6
일부도움 필요 (ⓒ)	13.6	16.2	17.7	21.2	19.5	21.7
대부분 필요 (ⓓ)	7.5	7.4	8.6	8.9	8.9	10.1
거의 남의도움 필요 (ⓔ)	6.4	8.8	5.9	6.5	5.5	5.8
혼자서 가능 [ⓐ+ⓑ]	72.5	67.6	67.8	63.4	66.1	62.4
도움 필요 [ⓒ+ⓓ+ⓔ]	27.5	32.4	32.2	36.6	33.9	37.6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자폐성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7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Ⅲ-54〉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구분	혼자서 스스로 ⓐ	대부분 혼자서 ⓑ	혼자 가능 ⓒ=ⓐ+ⓑ	일부 도움 필요 ⓓ	대부분 필요 ⓔ	거의 남의 도움 필요 ⓕ	남의도움 필요 ⓖ=ⓓ+ⓔ+ⓕ
전체	46.9	19.2	66.1	19.5	8.9	5.5	33.9
지체장애	58.3	20.5	78.8	14.4	4.4	2.4	21.2
뇌병변장애	13.4	13.5	26.9	28.8	21.0	23.4	73.2
시각장애	64.0	12.6	76.6	12.8	8.1	2.6	23.5
청각장애	45.8	28.0	73.8	19.3	4.7	2.2	26.2
언어장애	28.2	32.4	60.6	23.4	16.0	-	39.4
지적장애	9.5	11.5	21.0	41.6	26.1	11.2	78.9
자폐성장애	2.9	11.1	14.0	25.7	35.0	25.3	86.0
정신장애	40.1	18.4	58.5	29.9	9.0	2.6	41.5
신장장애	49.4	21.2	70.6	22.2	5.5	1.7	29.4
심장장애	56.5	25.9	82.4	17.5	-	-	17.5
호흡기장애	29.2	26.0	55.2	36.3	8.1	0.4	44.8
간장애	84.6	12.1	96.7	1.6	-	1.7	3.3
안면장애	84.2	14.2	98.4	1.7	-	-	1.7
장루요루장애	29.7	52.4	82.1	16.1	0.9	0.8	17.8
뇌전증(간질)장애	62.8	12.4	75.2	15.1	9.7	-	24.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Ⅲ-55〉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구분	혼자서 스스로 ④	대부분 혼자서 ⑤	혼자 가능 ⑥ ④+⑤	일부 도움 필요 ⑦ ④	대부분 필요 ⑧ ⑤	거의 도움 필요 ⑨ ①	남의 도움 필요 ⑩ ④+⑤+⑦
전체	46.9	19.2	66.1	19.5	8.9	5.5	33.9
지체장애	58.3	20.5	78.8	14.4	4.4	2.4	21.2
뇌병변장애	13.4	13.5	26.9	28.8	21.0	23.4	73.2
시각장애	64.0	12.6	76.6	12.8	8.1	2.6	23.5
청각장애	45.8	28.0	73.8	19.3	4.7	2.2	26.2
언어장애	28.2	32.4	60.6	23.4	16.0	-	39.4
지적장애	9.5	11.5	21.0	41.6	26.1	11.2	78.9
자폐성장애	2.9	11.1	14.0	25.7	35.0	25.3	86.0
정신장애	40.1	18.4	58.5	29.9	9.0	2.6	41.5
신경장애	49.4	21.2	70.6	22.2	5.5	1.7	29.4
심장장애	56.5	25.9	82.4	17.5	-	-	17.5
호흡기장애	29.2	26.0	55.2	36.3	8.1	0.4	44.8
간장애	84.6	12.1	96.7	1.6	-	1.7	3.3
안면장애	84.2	14.2	98.4	1.7	-	-	1.7
장루요루장애	29.7	52.4	82.1	16.1	0.9	0.8	17.8
뇌전증(간질)장애	62.8	12.4	75.2	15.1	9.7	-	24.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간장애인과 안면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Ⅲ-56〉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와 도움제공자 유형

구분	있다	없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활동 지원인	가정 봉사원	간병인	요양 보호사	기타
전체	83.3	16.7	39.4	21.1	16.6	3.7	0.5	0.3	0.3	0.5	0.2	1.1	2.2	0.6	2.4	8.7	2.4
지체장애	74.8	25.2	52.3	3.8	24.1	1.9	-	0.7	0.1	0.4	0.3	1.8	1.4	0.8	2.4	8.7	1.4
뇌병변장애	91.4	8.6	44.5	12.4	11.2	3.2	0.3	0.5	0.3	0.2	0.0	0.1	3.8	0.2	6.2	15.0	2.0
시각장애	78.8	21.2	42.3	6.5	18.9	1.1	-	-	-	0.6	1.0	1.5	7.3	1.5	0.4	17.4	1.5
청각장애	77.9	22.1	47.4	5.6	31.7	1.8	-	0.1	0.2	0.1	0.4	2.6	-	0.8	1.0	7.1	1.3
언어장애	82.8	17.2	23.7	38.0	12.9	-	8.7	-	-	-	-	0.8	2.6	-	-	6.4	6.9
지적장애	97.6	2.4	5.1	72.8	1.3	8.2	2.2	-	1.0	1.4	-	0.6	1.4	0.3	0.4	1.5	3.8
자폐성장애	100.0	-	-	98.5	-	-	-	-	-	-	-	-	1.5	-	-	-	-
정신장애	92.3	7.7	13.7	49.7	3.4	13.7	0.3	-	-	-	-	-	2.0	-	3.1	1.5	12.6
신경장애	88.3	11.7	53.6	5.0	19.7	4.9	-	-	-	1.0	-	-	2.1	1.7	0.2	11.8	-
심장장애	100.0	-	65.9	4.8	9.7	-	-	-	-	-	8.4	-	-	-	-	-	11.3
호흡기장애	94.6	5.4	68.2	2.5	21.3	-	-	-	-	-	-	-	0.7	4.8	2.5	-	-
간장애	88.5	11.5	95.2	-	-	-	-	-	-	-	-	-	4.8	-	-	-	-
안면장애	79.3	20.7	-	-	100.0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62.1	37.9	74.3	3.1	14.6	-	2.7	-	1.3	-	-	-	-	-	-	3.9	-
뇌전증(간질)장애	95.9	4.1	10.3	65.6	8.4	7.9	-	-	-	-	-	-	-	-	-	7.8	-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한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에서 실제로 도움을 제공하는 장애인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 자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와 심장장애, 장루요루 등의 내부기관장애자는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은 도움제공자가 대부분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 간장애와 심장장애인의 대부분은 대체로 50대 전후반의 중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다수가 20대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어 부모가 대부분의 도움 제공자로 구성되어 있음
-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 등의 제도적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약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이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움제공자의 유형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2011년도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의 비율이 84.2%에서 2014년 81.5% 그리고 2017년도에는 81.9%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1년 10.8%에서 2017년도에 13.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Ⅲ-57〉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배우자	37.4	37.7	39.4
부모	23.3	20.1	21.1
자녀(며느리, 사위)	18.6	16.7	16.6
형제자매	3.4	5.1	3.7
조부모	0.6	1.1	0.5
손자녀	0.6	0.5	0.3
기타 가족	0.3	0.3	0.3
친척	0.6	0.8	0.5
친구	0.6	0.8	0.2
이웃	1.7	1.1	1.1
활동보조인	1.7	3.3	2.2
가정봉사원	1.5	0.5	0.6
간병인	2.8	2.0	2.4
요양보호사	4.8	7.3	8.7
기타	1.9	2.7	2.4
계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Ⅲ-58〉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구분	매우 불편하다 Ⓐ	약간 불편하다 Ⓑ	불편하다 Ⓒ=Ⓐ+Ⓑ	거의 불편하지 않다 Ⓡ	전혀 불편하지 않다 Ⓣ	불편하지 않다 Ⓓ=Ⓖ+Ⓔ
전체	13.1	33.5	46.6	38.7	14.7	53.4
지체장애	8.8	33.0	41.8	41.6	16.5	58.1
뇌병변장애	36.1	46.7	82.8	14.3	3.0	17.3
시각장애	11.1	27.1	38.2	43.2	18.6	61.8
청각장애	7.8	34.1	41.9	43.2	14.8	58.0
언어장애	20.6	30.3	50.9	41.4	7.8	49.2
지적장애	20.8	34.2	55.0	32.6	12.4	45.0
자폐성장애	32.3	51.6	83.9	12.3	3.8	16.1
정신장애	6.4	27.9	34.3	43.2	22.4	65.6
신장장애	17.3	22.5	39.8	49.2	11.0	60.2
심장장애	6.6	38.5	45.1	42.8	12.1	54.9
호흡기장애	26.1	41.1	67.2	27.2	5.6	32.8
간장애	4.4	6.0	10.4	62.7	26.9	89.6
안면장애	-	16.1	16	48.6	35.3	83.9
장루요로장애	13.4	42.4	55.8	36.0	8.2	44.2
뇌전증(간질)장애	6.8	42.2	49.0	32.9	18.2	51.1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집밖 활동시의 불편정도를 보면, 불편하다는 응답은 자폐성 장애, 호흡기 장애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간장애와 안면장애 등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집밖에서의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유형별로 외부활동의 불편함 정도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

〈표Ⅲ-59〉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장애유형별(1)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타
전체	49.7	26.9	10.6	11.0	1.7
지체장애	68.3	19.4	9.4	0.4	2.4
뇌병변장애	51.9	31.3	12.3	4.6	-
시각장애	49.8	36.8	8.1	3.2	2.0
청각장애	21.0	20.2	3.4	53.7	1.7
언어장애	13.8	26.0	11.1	49.0	-
지적장애	3.0	48.6	14.5	33.1	0.8
자폐성장애	7.0	44.6	23.0	25.5	-
정신장애	12.1	39.2	35.9	12.8	-
신장장애	60.1	29.0	7.5	1.9	1.6
심장장애	76.9	18.3	4.8	-	-
호흡기장애	76.3	19.6	-	3.4	0.7
간장애	35.0	15.7	-	-	49.2
안면장애	-	-	100.0	-	-
장루요로장애	56.2	10.6	20.3	-	13.0
뇌전증(간질)장애	30.4	40.7	19.8	4.8	4.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III-60〉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일상생활 남의 도움 필요정도	27.5%	32.2%	34.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는 사람 유무	84.0%	85.3%	83.3%	
도움 충분정도1)	59.2%	58.9%	63.6%	

주 : 1) 4점 척도 사용 (매우 충분-충분-부족-매우 부족)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요약

- 한편 일상생활 및 돌봄의 특성을 시기별로 요약해 보면, 일상생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011년 27.5%에서 2017년 34.0%로 증가하였고, 도움의 충분정도도 2011년 59.2%에서 2017년 63.6%로 증가함
-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84.0%의 장애인이 도움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017년도에는 83.3%정도가 도움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장애인만 추출하여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추정해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34%정도로 추정되고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장애인은 7.2%, 약 9.4천명 정도로 추정됨
-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도움정도가 충분하다는 장애인은 27.3%정도이고, 도움정도가 부족하다는 장애인은 14.3%정도임

〈표III-61〉 일상생활 도움 정도

전라북도 등록장애인 수 (2018년)	일상생활 도움	구분	비율	장애인 추정
131,746명	일상생활 도움 필요	모든 일상생활 혼자 함	51.1	67,322
		대부분 일상생활 혼자 함	14.7	19,367
		일부 남의 도움 필요	22.1	29,116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9.1	11,989
		거의 모든일에 남의 도움 필요	2.9	3,821
		전체	100.0	131,746
131,746명	일상생활 도움 주는 사람 유무	비해당	51.1	67,322
		있음	41.7	54,938
		없음	7.2	9,486
		전체	100.0	131,746
	현재 도움 충분도	비해당	58.3	76,808
		매우 충분함	2.9	3,821
		충분함	24.4	32,146
		부족함	11.7	15,414
		매우 부족함	2.6	3,425
		전체	100.0	131,746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표Ⅲ-62〉 일상생활 도움 정도

전라북도 등록장애인 수 (2018년)	구분	장애인 수
	중증 장애인	1급 9,088 2급 17,158
131,746명	청각언어장애인	청각 17,200 언어 1,190
	발달장애인	지적 12,140 자폐 721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분석, 전라북도 자료 추출

- 전라북도로 범위를 좁혀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중증장애인 중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로 한 장애인은 약 2.6만명 정도 추정이 되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2.9만명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2만명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7백명 등의 순임
- 한편,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을 보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011년 3.1점에서 2017년 3.2점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문화 및 여가생활만족도도 2011년 2.8점에서 2017년 3.0점으로 증가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여가 및 문화생활의 만족도는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정도는 2011년 19.3%에서 2017년에는 20.1%로 차별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2011년 7.8%에서 2017년에는 13.9%로 약 두배 이상 증가함
-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에서는 2011년 34.7%정도가 어렵다고 응답했지만 2017년도에는 어렵다는 응답이 3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관련한 장애인의 제도적 인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Ⅲ-63〉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생활만족도	3.1점	3.2점	3.2점	5점 기준(5점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2.8점	2.9점	3.0점	5점 기준 (5점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1)	19.3%	27.4%	20.1%	'차별이 없다'에 대한 응답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7.8%	8.3%	13.9%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2)	34.7%	39.8%	36.7%	'어렵다'에 대한 응답

주 1. 4점 척도 (전혀 없다~별로 없다~약간 있다~매우 있다)

2. 4점 척도 (매우 어렵다~약간 어렵다~거의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요약

〈표III-64〉 경제적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가구 소득 수준	(장애)1,982,000 (전국)3,260,000	(장애)2,235,000 (전국)3,560,000	(장애)2,421,000 (전국)3,617,000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교 * 가계동향(2011,2014,2017.2/4분기)전국1인이상 가구월평균소득
	60.8%	62.8%	66.9%	
가구 지출 수준	(장애)1,618,000 (전국)2,642,000	(장애)1,706,000 (전국)2,814,000	(장애)1,908,000 (전국)2,761,000	전국가구 월평균 지출과 비교 * 가계동향(2011,2014,2/4분기, 2016. 4/4분기) 전국1인이상 가구 월평균 지출
	61.2%	60.6%	69.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60.7천원	164.2천원	165.1천원	
차량 소유율	52.7%	52.2%	52.1%	
자가 비율	58.9%	58.5%	62.3%	
장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35.5%	36.6%	36.9%	만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비율
실업률	7.8%	6.2%	5.1%	통계청 ILO기준 적용
취업장애인 월평균 근로소득	(장애)1,419,000 (임금)2,033,000	(장애)1,525,000 (임금)2,240,000	(장애)1,710,000 (임금)2,430,000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비교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1.8, 2014.8, 2017.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요약

-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실태에서는 가고의 소득수준은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96만원에서 2017년 242만원으로 약 5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전국 가구의 소득 대비 장애인가구의 소득비는 2011년 60.8%에서 2017년 6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의 지출은 2011년 162만원에서 2017년 190.8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의 지출 대비 장애인가구의 지출은 2011년 61.2%에서 2017년 6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는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1년 160.7천원에서 2017년 165.1천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2011년 35.5%에서 2017년 36.9%로 다소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7.8%에서 5.1%로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의 취업률이 약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141.9만원에서 2017년 171.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임금소득은 2011년 2003만원에서 2017년 243만원으로 증가함

〈표Ⅲ-65〉 장애인 가구주의 소득원

주된수입원별(1)	2005		2011		2014		2017	
	추정치 (가구)	구성비 (%)	추정치 (가구)	구성비 (%)	추정치 (가구)	구성비 (%)	추정치 (가구)	구성비 (%)
계	1,944,018	100.0	2,442,442	100.0	2,834,279	100.0	3,068,974	100.0
가구주의 소득	967,067	49.7	1,082,889	44.3	1,345,594	47.5	1,419,132	46.2
가구주외 가구원의 소득	352,930	18.2	490,170	20.1	433,295	15.3	446,872	14.6
연금이나 퇴직금	77,636	4.0	137,705	5.6	257,384	9.1	282,821	9.2
재산소득(부동산)	55,915	2.9	82,185	3.4	79,629	2.8	81,561	2.7
저축이나 증권수익	64,580	3.3	36,998	1.5	37,102	1.3	36,458	1.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87,257	9.6	266,519	10.9	312,691	11.0	344,413	11.2
별거가족친척등 지원	209,829	10.8	326,477	13.4	355,477	12.5	366,115	11.9
기타	28,804	1.5	19,498	0.8	13,107	0.5	91,602	3.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을 보면, 2017년 기준은 가구주의 소득이 141.9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가구 소득의 46.2%를 차지하고 있음
- 가구주 외의 가구원 소득은 44.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4.4만원, 별거가족 및 친척 등 지원이 36.6만원 그리고 연금이나 퇴직금 28.3만원 등의 순임
- 장애인 가구주의 소득 구성비를 보면 가구주의 소득이 4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구주외 가구원의 소득 14.6%, 별거가족 및 친척 등 지원은 11.9%,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2%, 연금이나 퇴직금 9.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지원금액이 전체 가구소득의 10%를 상회하고 있음
-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의 구성비를 지난 시기와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가구주의 소득이 96.7만원 그리고 가구주 외 가구원의 소득 35.3만원 그리고 별거가족 및 친척 등 20.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8.7만원 등의 순임
-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의 비율을 보면 2005년 가구주의 소득이 4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구주외 가구원의 소득 18.2%, 별거가족 및 친척 등 지원 10.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6% 등의 순임
- 장애인가구의 소득구성비를 비교해보면, 가구주의 소득은 2005년 전체 장애인가구소득에서 49.7%를 차지했지만 2017년도에는 46.2%로 감소하였고, 가구주 외의 가구원의 소득은 2005년 18.2%에서 2017년 14.6%로 감소함
- 가구주의 소득과 가구주외의 가구원의 소득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비는 2005년 9.6%에서 2017년 11.9%로 증가하였고, 연금이나 퇴직금도 같은 기간 4.0%에서 9.2%로 약 두배 이상 증가함

〈표Ⅲ-66〉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구분	월평균 총 추가 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 비								
		교통비	의료비	보육·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기관 이용료	통신비	장애인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기타	
전체	165.1	20.5	65.9	8.0	20.6	4.8	9.8	7.2	22.9	5.4
지체장애	121.5	21.3	51.3	0.2	13.7	1.0	2.3	3.6	23.0	5.0
뇌병변장애	342.2	29.9	167.6	5.1	88.4	7.9	3.2	7.3	16.8	16.0
시각장애	87.0	7.8	16.3	0.4	5.6	0.6	29.0	3.0	23.0	1.3
청각장애	83.1	5.1	11.1	1.1	4.4	0.7	24.9	22.3	13.1	0.2
언어장애	146.9	19.3	28.3	45.8	0.0	0.3	21.3	0.4	31.5	0.0
지적장애	287.0	31.3	71.7	44.7	14.2	34.1	9.8	1.6	67.8	11.7
자폐성장애	608.4	85.4	27.7	368.4	19.7	59.0	6.8	0.4	41.0	0.0
정신장애	85.9	12.2	47.5	0.0	0.2	8.3	2.4	0.0	11.4	3.9
신장장애	293.6	47.0	199.1	0.0	14.6	0.2	3.4	8.8	17.5	3.1
심장장애	112.4	21.2	83.7	0.0	0.0	0.0	2.9	4.5	0.0	0.2
호흡기장애	176.4	43.8	71.5	0.0	21.2	0.0	3.4	19.9	14.1	2.6
간장애	462.2	25.3	415.5	0.0	7.7	0.0	0.4	0.3	7.6	5.4
안면장애	329.2	17.0	122.2	0.0	0.0	0.0	3.7	5.3	180.9	0.0
장루요루장애	234.7	24.0	120.0	0.0	2.4	2.4	1.1	82.3	0.0	2.5
뇌전증(간질)장애	118.9	9.3	53.8	0.0	37.0	0.0	3.0	0.0	15.9	0.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의 월 단위 추가비용은 16.6만원이지만 자폐성 장애인은 60.8만원, 간장애인은 46.2만원, 안면장애 32.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정신장애인 8.5만원, 시각장애 9.8만원, 그리고 청각장애 8.3만원 등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자폐성 장애인이 가장 높았고, 그 추가비용의 정도는 전체 장애인의 평균 추가비용인 16.5만원보다도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Ⅲ-67〉 지난 1주간 활동형태

전라북도 등록장애인 수 (2018년)	구분	비율	장애인 추정
131,746명	비해당	.3	395
	일하였음	31.3	41,236
	구직활동	1.0	1,317
	가사	4.2	5,533
	정규교육기관통학	2.0	2,635
	연로	18.6	24,505
	심신장애	25.7	33,859
	휴식	16.9	22,265
	전체	100.0	131,746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표Ⅲ-68〉 일반주택 거주시 희망생활

전라북도 등록장애인 수 (2018년)	구분	비율	장애인 추정
131,746명	비해당	16.3	21,475
	혼자살고싶다	8.8	11,594
	가족과 함께 살고싶다	61.9	81,551
	마음맞는 친구와 살고싶다	1.6	2,108
	국가사회로부터 일상생활지원 받으며 살고싶다	11.4	15,019
	전체	100.0	131,746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 다음으로 전라북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1주간의 활동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구직활동은 1.0%정도였고, 일을 했다는 장애인 31.3%정도에 불과함
- 이외에도 심신장애 25.7%, 연로 18.6% 그리고 휴식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근로장애인의 경우 대체로 연로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 중에서도 향후 거주욕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견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일상생활지원을 받으며 살고 싶다 11.4% 그리고 혼자살고 싶다 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현황을 보면, 자폐성 장애인은 기타를 제외하면 4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치료 19.2%, 심리 및 행동치료 17.7% 등으로 나타남

〈표Ⅲ-69〉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단위 : %)

구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
전체	22.9	1.5	2.1	0.9	0.9	0.9	1	1.4
지체	29.6	0.4	0.1	0	0.1	0	0.1	0.3
뇌병변	34.2	6	3.1	1	0.7	0.6	0.6	3.8
시각	14.3	0.5	0.2	0	0.1	0.2	0	0.2
청각	16	0	0.5	0	0	0	0	0
언어	4.1	0	26.3	6.7	13.1	7.4	4.2	4.1
지적	6	5.1	13.7	6.6	5.2	6.6	8.2	7.2
자폐성	2.3	13.6	41	15.2	19.2	17	17.7	19.4
정신	8.9	1.1	0	2.5	2.3	2.9	2.9	2
신장	10.2	0	0	0	0	0	0	0
심장	14.5	0	0	0	0	0	0	0
호흡기	18.1	0	0	0	0	0	0	0
간	5.8	0	0	0	0	0	0	0
안면	26.1	0	0	0	0	0	0	0
장루요루	4.2	0	0	0	0	0	0	0
뇌전증	3.4	0	0	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지체장애인 물리치료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작업치료 0.4%, 언어치료와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가 각각 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울러 지적장애인은 언어치료 2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리행동치료 8.2%, 그리고 미술치료와 음악치료가 각각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물리치료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안면장애 등의 순으로 이용빈도가 높았고, 작업치료는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에게서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요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장애인은 대부분 소득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년에는 소득보장을 원하는 비율이 36.2%에서 2017년 41.0%로 크게 증가함
- 다음으로 의료보장의 경우는 2011년 31.5%정도가 원하고 있었지만 2017년에는 27.6%로 감소함
- 장애인 복지사업의 이용경험률은 94.5%에서 2017년도에는 96.0%로 크게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기관의 이용경험률도 2011년 18.9%에서 2017년 21.0%로 증가함
- 장애인복지관련 이용희망률은 2011년 장애인복지관은 31.2%에서 2017년 37.1%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는 같은 기간 30.0%에서 36.1%로 증가함

〈표 III-70〉 복지서비스 수요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소득보장 (38.2%) 의료보장 (31.5%)	소득보장 (38.5%) 의료보장 (32.8%)	소득보장 (41.0%) 의료보장 (27.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률	94.5%	94.8%	96.0%	·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5.4% ·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5.8%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기관 이용 경험률	18.9%	23.0%	21.0%	(2017년) · 장애인복지관 10.0%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3% (2014년) · 장애인복지관 9.5% · 특수학교및 특수학급 5.8%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기관 이용 희망률	장애인복지관 (31.2%)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0%) 재활병원의원 (26.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4.8%) 장애인재활병원의원 (31.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4.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7.1%) 장애인재활병원의원 (36.1%) 장애인체육시설 (21.0%)	※ 장애인복지관 (20.7%)
장애인복지관 이용 평균점수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 충분도	2.8점	2.8점	2.9점	5점 기준 (5점 매우 많이 받고 있다~1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 III-7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시기관 이용경험

구분	전체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간장 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 장애인	뇌전 증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훈련원)	3.4	1.0	3.0	1.7	2.1	2.7	20.9	11.9	7.9	1.8	4.2	2.9	0.0	0.0	0.0	2.2
장애인복지관 (단종복지관 포함)	10.0	5.6	15.7	8.9	8.2	7.6	31.1	41.6	15.1	6.7	18.6	8.0	0.5	20.1	2.3	2.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간·단기 보호시설)	1.4	0.6	2.5	0.8	0.7	0.0	7.6	4.6	0.0	0.4	0.0	0.0	0.0	0.0	0.0	0.0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관)	2.2	1.9	2.8	1.0	1.2	2.7	6.2	13.0	1.7	2.9	0.0	0.0	0.0	0.0	0.0	0.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8	0.4	1.4	1.3	0.1	0.0	2.4	5.6	0.6	0.2	0.0	1.7	0.0	0.0	0.0	0.0
장애인자활지원센터	1.1	0.4	3.4	0.2	0.5	0.0	4.4	7.6	1.0	0.0	0.0	0.0	0.0	0.0	0.0	0.0
점자도서관	0.3	0.0	0.0	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화통역센터	0.4	0.0	0.0	0.0	3.4	2.1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클래스·해피클 등)	5.3	3.2	17.1	4.1	1.7	8.7	7.0	12.5	2.5	11.5	0.0	5.9	0.0	1.7	2.5	6.8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5	0.4	0.8	1.1	0.3	1.5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	0.3	1.0	1.2	0.2	0.0	2.4	0.0	3.1	0.9	0.0	0.0	0.0	0.0	0.0	2.2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	0.1	0.0	0.0	0.0	0.0	5.8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0.8	0.1	1.3	0.4	0.1	4.2	1.8	2.5	10.7	0.0	0.0	0.0	0.0	0.0	0.0	2.3
장애인 재활 병·의원	1.8	0.9	7.9	0.7	0.2	0.0	2.4	2.5	4.1	0.1	0.0	1.7	0.0	0.0	0.0	2.3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1.7	0.0	0.2	0.0	0.0	0.0	1.9	0.2	38.0	0.0	0.0	0.5	0.0	0.0	0.0	3.2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	0.3	0.0	0.0	0.0	0.0	0.0	0.4	0.0	6.7	0.0	0.0	0.0	0.0	0.0	0.0	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8	0.0	0.3	0.0	0.0	0.0	8.3	13.5	0.0	0.0	0.0	0.0	0.0	0.0	0.0	0.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0.4	0.0	0.3	0.0	0.0	0.0	4.3	8.5	0.1	0.0	0.0	0.0	0.0	0.0	0.0	0.0
특수교육지원센터	1.5	0.0	1.8	0.5	0.3	2.2	12.5	25.7	1.0	0.0	0.0	0.0	0.0	0.0	0.0	0.0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0.5	0.1	0.5	1.4	0.3	0.0	2.1	2.9	0.0	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0.4	0.1	0.5	0.2	0.2	0.4	1.8	5.0	0.2	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	0.3	0.2	0.7	0.2	0.0	0.3	2.4	0.0	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단체	3.3	2.6	4.4	5.5	2.4	1.2	4.5	18.3	0.8	3.4	0.0	1.9	2.5	0.0	1.8	0.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실시기관의 이용경험을 보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적장애 20.9%로 가장 높았고, 자폐성 장애인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경험률이 5.6%,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2%, 장애인 단체 2.6%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1.9% 등의 순으로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자폐성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이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25.7%, 장애인 단체 18.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3.5%, 장애인체육시설 13.0% 그리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인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이용경험빈도가 높게 나타남

〈표 III-72〉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23.0	25.4	26.0
물리치료	20.3	22.4	22.9
직업치료	1.0	1.6	1.5
언어치료	1.5	1.6	2.1
음악치료	0.9	1.0	0.9
놀이치료	0.5	0.7	0.9
미술치료	1.1	1.1	0.9
심리행동치료	1.0	1.0	1.0
기타	1.2	1.1	1.4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률은 보면 전체적인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률은 2011년 23.0%에서 2017년 26.0%로 증가함
- 장애인재활치료서비스의 유형별 이용률을 보면, 물리치료가 2011년 20.3%에서 2017년 22.9%로 증가하였고, 직업치료 1.0%에서 2017년 1.5% 등의 순으로 증가함
-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률을 보면 물리치료가 2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어치료 2.1%, 직업치료 1.5%, 심리행동치료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은 물리치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은 언어치료와 직업치료 등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수요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률을 보면, 2017년도에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6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5세 이상 31.4%, 45세에서 64세가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19세 미만 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은 2011년 56.0%에서 2017년 도에는 69.4%로 증가함

〈표 III-73〉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연령별	전체	23.0	25.4
재활치료서비스	1~19세	56.0	62.5
이용률	20~44세	14.7	12.5
	45~64세	18.2	20.0
	65세 이상	28.1	31.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III-7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구분	전체	지체 장애	뇌병 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장애	간장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노전 증간 질장애
소득보장(생계보장)	41.0	41.0	41.2	39.6	40.4	49.1	39.9	29.9	48.0	37.4	46.0	59.7	28.4	42.7	38.4	59.5
의료보장	27.6	27.8	32.8	27.2	30.8	16.5	15.4	16.2	21.5	35.9	30.8	32.1	46.5	6.4	36.1	17.5
고용보장	9.2	9.3	5.4	10.5	6.9	9.5	17.9	4.3	8.7	7.8	0.8	0.0	1.2	32.1	7.6	11.3
주거보장(주택보장)	5.1	5.1	3.8	6.6	4.7	7.2	5.1	3.8	6.9	6.3	0.0	4.1	1.8	0.0	7.4	0.0
이동권 보장	3.0	3.4	4.5	2.2	1.7	0.0	3.1	2.9	1.4	2.4	5.4	0.0	0.0	0.0	0.6	0.0
보육, 교육 보장	1.2	0.7	0.8	1.5	0.6	6.4	4.5	18.3	0.0	0.2	0.0	0.0	0.0	0.0	0.3	0.0
문화여가·체육활동보장	1.4	1.7	0.3	1.1	1.0	1.1	1.5	2.1	0.8	1.9	0.0	1.2	4.0	0.0	2.3	0.0
장애인 인식개선	2.5	2.0	2.5	3.9	2.7	0.0	3.2	5.6	3.7	2.0	0.0	0.5	3.7	6.3	1.6	11.4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6.0	6.3	6.8	6.1	6.2	5.7	4.4	1.4	4.5	5.4	12.9	1.2	9.5	12.6	2.2	0.0
의사소통, 정보접근 보장	0.5	0.1	0.3	0.0	1.9	0.0	1.4	6.4	1.2	0.0	0.0	0.0	0.0	0.0	0.0	0.0
재난안전관리	0.3	0.4	0.3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2	0.2	0.3	0.0	0.6	0.0	0.0	0.0	0.0	0.0	4.2	0.0	2.8	0.0	1.6	0.0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면, 소득보장 및 생계보장이 모든 장애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료보장 27.6%, 고용보장 9.2%, 건강관리 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은 소득보장 41.0%, 의료보장 27.8%, 고용보장 9.3% 등의 순으로 높았고, 시각장애인도 소득보장 41.2%, 의료보장 32.8%, 고용보장 6.9%, 건강관리 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모든 장애유형에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안면장애의 경우에는 의료보장보다는 고용보장을 더욱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도 소득보장 다음으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건강관리와 같은 세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심장장애와 안면장애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현재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장애유형과 장애연령 및 장애정도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특히, 다른 장애영역보다도 복지 및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의 조기예방과 치료 등을 포함한 교육과 돌봄 그리고 직업훈련과 고용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III. 장애인 복지수요 진단

〈표Ⅲ-75〉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이용율

구분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생활 지원센터	재활 지원센터	수화 통역센터	장애인 특별운송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자립생활 센터	지적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장애 등급	1-2등급	25.8	3.0	7.6	3.0	3.0	3.0	15.2	1.5	3.0	1.5
	3-4등급	2.9	11.4		2.9		1.0		2.9		1.0
	5-6등급		6.1		1.5	.8	.8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9.7	.4	2.7	.8	1.6	.8	3.5	.4	4
	정신적장애	7.9	28.9	2.6	7.9	2.6			7.9	2.6	5.3
	내부기관장애			9.1					9.1		
전체		1.0	12.1	.7	3.3	1.0	1.3	.7	4.2	.3	.7
구분	정신건강 증진센터	장애인 재활 병의원	정신요양 시설 의료기관	정신재활 시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 치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 치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	장애인 단체
장애 등급	1-2등급	3.0	1.5	4.5	.0	6.1	1.5	4.5	.0	.0	.0
	3-4등급		1.0			.0			.0	.0	.0
	5-6등급		1.5		.0				.0	.0	.8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4	1.6		.0			.0	.0	.8
	정신적장애	2.6		7.9	.0	10.5	2.6	7.9	.0	.0	.0
	내부기관장애				.0				.0	.0	.0
전체		.7	1.3	1.0	.0	1.3	.3	1.0	.0	.0	.7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 전라북도 장애인만을 추출하여 복지시설의 현재 이용율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관이 1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특별운송 4.2%, 장애인체육관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시설의 향후 희망율을 보면, 장애인특별운송이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재활병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생활지원센터 등의 순임

〈표Ⅲ-76〉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희망율

구분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생활 지원센터	재활 지원센터	수화 통역센터	장애인 특별운송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자립생활 센터	지적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장애 등급	1-2등급	9.1	21.2	16.7	16.7	18.2	19.7	3.0	31.8	12.1	13.6
	3-4등급	6.7	9.5	4.8	9.5	9.5	9.5	1.0	31.4	3.8	5.7
	5-6등급	3.0	5.3	.8	6.1	6.1	6.1		20.5	1.5	1.5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2.7	8.5	5.0	7.8	9.7	8.9	1.2	28.7	3.9
	정신적장애	23.7	23.7	13.2	23.7	15.8	23.7			15.8	10.5
	내부기관장애			9.1						18.2	9.1
전체		5.5	10.1	5.9	9.4	10.1	10.4	1.0	26.7	4.6	5.5
구분	정신건강 증진센터	장애인 재활 병의원	정신요양 시설 의료기관	정신재활 시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 치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 치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단체
장애 등급	1-2등급	9.1	30.3	4.5	3.0	15.2	16.7	6.1	10.6	12.1	9.1
	3-4등급	5.7	17.1	1.9	2.9	1.0	1.0		1.9	1.0	1.0
	5-6등급	3.8	18.9						.8	3.0	2.3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4.7	20.5					1.2	3.1	2.7
	정신적장애	13.2	23.7	13.2	13.2	28.9	31.6	10.5	18.4	13.2	7.9
	내부기관장애			18.2							2.6
전체		5.5	20.8	1.6	1.6	3.6	3.9	1.3	3.3	4.2	3.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표Ⅲ-77〉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구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 보장	문화여가 생활체육 활동보장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건강 관리
장애 등급	1-2등급	43.9	21.2	3.0	3.0	1.5	6.1	1.5	19.7
	3-4등급	52.4	17.1	4.8	3.8	3.8	1.0	1.0	2.9	10.5
	5-6등급	40.2	22.7	9.1	4.5	2.3	1.5	1.5	3.0	14.4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41.5	23.3	5.4	3.5	3.1	1.9	1.2	2.7	1.9
	정신적장애	65.8	5.3	10.5	2.6	5.3	10.5
	내부기관장애	45.5	9.1	18.2	18.2	9.1
전체	44.6	20.5	6.5	3.9	2.6	2.3	1.0	2.3	1.6	14.7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소득보장이 4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보장 20.5%, 장애인건강관리 14.7%, 고용보장 6.5%, 주거보장 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장애인의 욕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의 경우 소득보장을 원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체적 장애인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장애인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장애유형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Ⅲ-78〉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2순위

구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 보장	문화여가 생활체육 활동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소통 정보접근 보장	없음
장애 등급	1-2등급	12.1	30.3	6.1	18.2	9.1	4.5	1.5	6.1	9.1	1.5	1.5
	3-4등급	14.3	39.0	7.6	6.7	10.5	1.9	3.8	2.9	1.9	10.5	1.0
	5-6등급	13.6	35.6	6.1	13.6	5.3	1.5	2.3	3.8	0.8	12.9	4.5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13.6	36.0	5.4	11.2	8.1	1.9	2.7	4.7	0.8	11.6	1.2
	정신적장애	15.8	31.6	10.5	18.4	5.3	5.3	2.6	2.6	7.9
	내부기관장애	9.1	36.4	18.2	9.1	9.1	9.1	9.1
전체	13.7	35.5	6.5	12.1	7.8	2.6	2.6	3.9	1.0	11.1	1.0	2.3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 2순위와 3순위에서도 의료보장과 주거보장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다른 정책수요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Ⅲ-79〉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3순위

구분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고용 보장	주거 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 보장	문화여가 생활체육 활동보장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건강 관리	의사소통 정보접근 보장	재난 안전 관리	기타	없음
장애 등급	1-2등급	9.1	6.1	10.6	12.1	12.1	9.1	4.5	7.6	1.5	18.2	1.5	1.5	6.1
	3-4등급	10.5	8.6	13.3	12.4	12.4	1.0	9.5	2.9	3.8	21.0	1.0	3.8
	5-6등급	9.8	14.4	8.3	16.7	9.8	3.0	5.3	3.8	3.0	13.6	2.3	0.8	9.1
장애 유형	신체적장애	10.1	11.2	9.7	14.3	12.4	3.1	7.0	3.5	2.7	17.1	1.2	0.4	0.4
	정신적장애	5.3	7.9	15.8	13.2	5.3	7.9	5.3	5.3	5.3	15.8	5.3	7.9
	내부기관장애	27.3	9.1	9.1	9.1	18.2	27.3
전체	10.1	10.7	10.4	14.0	11.1	3.6	6.5	4.2	2.9	17.3	1.6	0.3	0.3	6.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중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

4) 교육 및 직업훈련 훈련 지원 현황

- 장애인의 교육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특수학교는 총 17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국립 5개소, 공립 78개소, 사립 92개소 등으로 구성됨
- 장애영역별로 보면, 지적장애인 특수학교가 121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20 개소, 청각장애 14개소, 시각장애 13개소 등의 순으로 설치
- 설립형태별로 보면, 총 177개의 특수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는 78개소, 사립학교는 92개소로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14개소 더 많이 설치
- 전국의 특수학교는 총 17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전라북도는 공립 6개소 그리고 사립 4개소로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립보다는 공립 특수학교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음
- 장애영역별로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시각장애 1개소, 청각장애 1개소, 지적장애 6개소 그리고 지체장애 2개소로 구성
- 정서장애학교는 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북 등 총 5개 지역에서 총 7개의 학교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특수학교 배치자수 1인당 특수학교수를 보면, 전라북도는 114명으로 전국 평균인 148.11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표Ⅲ-80〉 특수학교 현황

구분	설립별 학생수				장애영역별 학교수					특수교육 배치자수	특수학교 배치자 1인당 특수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서울	3	8	19	30	3	4	15	5	3	30	4,397	146.57
부산	-	8	7	15	1	1	12	1	-	15	1,814	120.93
대구	-	3	6	9	1	1	4	2	1	9	1,621	180.11
인천	-	5	4	9	1	1	6	1	-	9	1,497	166.33
광주	-	3	2	5	1	-	3	1	-	5	1,016	203.20
대전	3	2	5	10	1	-	3	1	-	5	1,057	211.40
울산	-	2	2	4	-	1	3	-	-	4	775	193.75
세종	-	1	-	1	-	-	1	-	-	1	132	132.00
경기	2	11	22	35	-	2	29	3	1	35	4,723	134.94
강원	-	5	2	7	1	1	5	-	-	7	903	129.00
충북	-	3	7	10	2	1	4	2	1	10	1,262	126.20
충남	-	5	2	7	-	-	6	1	-	7	1,035	147.86
전북	-	6	4	10	1	1	6	2	-	10	1,148	114.80
전남	-	3	5	8	1	1	6	-	-	8	1,064	133.00
경북	-	3	5	8	-	-	7	-	1	8	1,458	182.25
경남	-	7	2	9	-	-	9	-	-	9	1,564	173.78
제주	-	2	1	3	-	-	2	1	-	3	453	151.00
총계	5	78	92	175	13	14	121	20	7	175	25,919	148.11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Ⅲ-81〉 학교과정 설치별 학생 수

구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장애영역별 학교수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서울	30	8	21	26	26	26	24	3	4	15	5	3
부산	15	7	10	12	13	12	9	1	1	12	1	
대구	9	-	4	9	9	9	9	1	1	4	2	1
인천	9	1	6	8	8	8	7	1	1	6	1	
광주	5	4	2	5	5	5	4	1		3	1	
대전	5	1	5	5	5	5	5	1		3	1	
울산	4	-	3	4	4	4	4		1	3		
세종	1	1	1	1	1	1	1			1		
경기	35	1	30	30	32	32	25		2	29	3	1
강원	7	-	7	7	7	7	6	1	1	5		
충북	10	1	10	10	10	10	10	2	1	4	2	1
충남	7	1	3	7	7	7	6			6	1	
전북	10	1	4	9	9	9	6	1	1	6	2	
전남	8	-	7	8	8	8	8	1	1	6		
경북	8	-	4	8	8	8	8			7		1
경남	9	-	5	9	9	9	8			9		
제주	3	-	3	3	3	3	3			2		
총계	175	26	125	161	164	163	143			2	1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특수학교의 학교과정 설치별 학생수를 총 10개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유치원 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9개교 그리고 전공과에서 6개 학교와 특수학교 교과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에 비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면, 지적장애인 7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156명, 자폐성 장애 155명 등의 순임
-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학교 대상자는 총 1,148명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895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77.9%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1,14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인 25,919명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7년 25,798명보다도 약 120명정도 증가한 25,919명이고 이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0년 약 23,776명보다도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여전히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1992년 2만명을 초과한 이래 2010년 2.4만명, 2013년 2.5만명을 초과하여 2018년 현재 25,919명으로 증가함
-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는 근래에 다소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완만한 증가는 장애인이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혹은 일반학급을 선호하기 때문임

〈표Ⅲ-8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구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소계
서울	361	304	1,894	829	31	859	-	-	-	119	4,397
부산	78	55	909	294	10	382	3	5	2	76	1,814
대구	65	50	927	246	-	314	14	-	-	5	1,621
인천	96	55	824	193	5	295	24	-	1	4	1,497
광주	108	13	530	176	1	172	2	-	-	14	1,016
대전	115	22	546	111	-	250	3	-	-	10	1,057
울산	20	38	499	67	9	123	1	-	1	17	775
세종	1	-	66	18	-	40	1	-	-	6	132
경기	31	51	2,805	595	8	1,172	15	1	8	37	4,723
강원	79	18	563	52	3	158	9	3	14	4	903
충북	171	98	590	176	11	180	6	-	-	30	1,262
충남	3	3	680	152	2	181	8	-	1	5	1,035
전북	48	14	740	156	4	155	14	2	1	14	1,148
	(4.2)	(1.2)	(64.5)	(13.6)	(0.3)	(13.5)	(1.2)	(0.2)	(0.1)	(1.2)	(100.0)
전남	66	15	725	118	4	124	6	-	-	6	1,064
경북	3	11	1,045	127	5	233	14	1	2	17	1,458
경남	12	9	881	288	5	349	2	8	-	10	1,564
제주	3	6	166	82	116	78	2	-	-	-	453
총계	1,260	762	14,390	3,680	214	5,065	124	20	30	374	25,919
	(4.9)	(2.9)	(55.5)	(14.2)	(0.8)	(19.5)	(0.5)	(0.1)	(0.1)	(1.4)	(100.0)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라북도가 총 1,148명으로 이중 지적장애가 7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 155명 등의 순임
-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부분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148명의 77.9%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지적장애인은 14,390명으로 전체 장애 학생의 55.6%를 차지하고 있고, 자폐성 장애인은 5,065명으로 전체 장애학생의 19.5%를 차지하고 있어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70%를 상회하고 있음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제외한 기타 장애학생은 지체장애인인 1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시각장애(4.9%), 청각장애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도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중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면 지체장애 13.6%, 시각 장애 4.2%, 청각장애 2.9)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0.3%)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는 자폐장애인과 지적장애 인 등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음

〈표Ⅲ-8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 (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사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장애영아	교사	
계	177	4,843	26,084	8,746	1,755	8,200	11,105	50,812	11,477	7,777	14,884	15,687	375	550	92,958
서울	30	801	4,362	1,453	377	808	1,358	6,246	1,359	965	1,975	2,036	135	46	12,779
부산	15	352	1,802	630	119	489	575	2,743	585	601	1,412	1,505	-	32	6,050
대구	9	274	1,591	535	66	324	454	2,044	458	460	1,170	1,228	11	23	4,874
인천	9	283	1,535	455	62	466	648	3,345	655	479	1,068	1,125	3	29	6,008
광주	5	197	1,026	347	39	216	275	1,321	279	231	478	524	-	17	2,871
대전	5	168	1,023	317	53	270	357	1,760	371	229	443	461	13	20	3,257
울산	4	157	804	257	35	198	265	1,266	265	199	483	501	8	18	2,579
세종	1	30	145	50	9	93	109	364	112	50	74	74	-	6	583
경기	36	867	4,862	1,742	384	2,048	2,955	13,824	3,263	1,600	2,916	3,039	77	76	21,802
강원	7	176	844	328	57	360	383	1,593	385	263	408	439	11	37	2,887
충북	10	257	1,264	413	77	368	468	2,076	471	387	588	629	12	25	3,981
충남	7	205	1,067	348	47	495	684	3,105	693	331	416	441	10	35	4,623
전북	10	224	1,135	376	91	359	421	1,710	421	425	766	851	-	34	3,696
전남	8	192	1,110	361	88	451	579	2,455	582	213	257	264	9	56	3,838
경북	8	251	1,460	443	138	518	624	2,569	624	521	864	911	36	37	4,976
경남	10	315	1,605	537	86	637	820	3,730	823	665	1,202	1,262	21	51	6,618
제주	3	94	449	154	27	100	130	661	131	158	364	397	29	8	1,536

자료 : 교육부(2019) 2019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한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는 2019년 기준 전라북도가 총 10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특수학교 내 특수학급은 2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특수학급은 359개 학교에 421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총 1,710명이 재학중임
- 전라북도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3,696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인 92,958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학령기별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은 초등학생이 1,434명, 고등학생 1,148명, 중학생 773명 그리고 유치원생이 216명 등으로 구성
-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과 유치원생 등의 순임
- 문제는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의 경우 대부분 발달장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정규교과과정을 졸업한 이후에는 별도의 교육이나 돌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표Ⅲ-84〉 학령기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구분	일반학교 학생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서울	85,209	424,598	216,302	259,187	985,296	889	5,298	2,635	3,919	12,741	1	1.2	1.2	1.5	1.3			
부산	44,408	152,757	77,011	91,040	365,216	505	2,520	1,251	1,650	5,926	1.1	1.6	1.6	1.8	1.6			
대구	38,475	125,160	66,164	78,245	308,044	257	1,936	1,067	1,595	4,855	0.7	1.5	1.6	2	1.6			
인천	42,390	159,040	76,561	84,907	362,898	488	2,638	1,073	1,573	5,772	1.2	1.7	1.4	1.9	1.6			
광주	24,632	88,626	45,437	53,891	212,586	135	1,160	589	943	2,827	0.5	1.3	1.3	1.7	1.3			
대전	24,012	83,453	42,675	49,332	199,472	285	1,260	662	1,118	3,325	1.2	1.5	1.6	2.3	1.7			
울산	18,507	67,148	31,889	37,627	155,171	175	1,100	500	813	2,588	0.9	1.6	1.6	2.2	1.7			
세종	6,393	24,865	10,070	8,574	49,902	86	220	97	99	502	1.3	0.9	1	1.2	1			
경기	189,620	752,638	358,522	393,221	1,694,001	1,481	8,903	4,362	6,064	20,810	0.8	1.2	1.2	1.5	1.2			
강원	15492	73810	38252	53028	180582	169	1,128	612	993	2,902	1.1	1.5	1.6	1.9	1.6			
충북	17,562	85,342	41,869	48,368	193,141	314	1,528	792	1,388	4,022	1.8	1.8	1.9	2.9	2.1			
충남	28,077	120,747	56,603	65,619	271,046	362	1,938	871	1,323	4,494	1.3	1.6	1.5	2	1.7			
전북	24,297	97,606	50,859	62,354	235,116	216	1,434	773	1,148	3,571	0.9	1.5	1.5	1.8	1.5			
전남	19,671	94,147	47,271	58,254	219,343	175	1,565	843	1,127	3,710	0.9	1.7	1.8	1.9	1.7			
경북	39,573	130,358	63,672	78,060	311,663	233	1,962	1,025	1,629	4,849	0.6	1.5	1.6	2.1	1.6			
경남	51,266	191,719	90,925	102,658	436,568	349	2,762	1,350	1,960	6,421	0.7	1.4	1.5	1.9	1.5			
제주	6,097	40,096	19,306	21,088	86,587	93	679	286	407	1,465	1.5	1.7	1.5	1.9	1.7			
총계	675,681	2,712,110	1,333,388	1,545,453	6,266,632	6,212	38,031	18,788	27,749	90,780	0.9	1.4	1.4	1.8	1.4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장애인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총 11개의 특수학교에서 교직원 351명, 교사 10명 그리고 교장 등을 포함한 총 교사는 330명임
- 특수학교의 장애영역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적장애학교로 총 8개교에 이르고 다음과으로 청각장애학교 1개, 시각장애학교 1개, 지체장애학교 2개교 등임

〈표Ⅲ-85〉 전라북도 장애인 특수학교 교육지원 현황

구분	장애영역	전체 학교수	교직원(계)		교원(계)		교장		교사		교사(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북		11	466	305	351	249	11	8	10	5	330	236
공립		6	290	218	220	177	6	5	6	4	208	168
전주선회학교	청각장애	50	37	39	31	1	1	1	1	-	37	30
군산선회학교	지적장애	55	40	46	36	1	-	1	1	1	44	35
다솜학교	지적장애	41	31	35	28	1	1	1	1	1	33	26
전주유화학교	지적장애	23	19	15	15	1	1	1	1	1	13	13
전주은화학교	지적장애	83	65	54	43	1	1	1	1	-	52	42
현율학교	지적장애	38	26	31	24	1	1	1	1	1	29	22
사립		5	176	87	131	72	5	3	4	1	122	68
전북맹이학교	시각장애	28	12	23	10	1	1	1	1	-	21	9
전북해화학교	지적장애	56	37	42	32	1	1	1	1	-	40	31
전주자음학교	지적장애	12	8	6	6	1	1	-	-	-	5	5
동암치들학교	지적장애	46	14	33	10	1	-	1	1	-	31	10
전북푸른학교	지적장애	34	16	27	14	1	-	1	1	1	25	13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Ⅲ-86〉 2018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 업 률	
			보건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기공 제과 제빵	이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서울	261	3	-	17	-	1	2	28	1	2	3	1	-	-	8	63	24.2
부산	126	6	4	45	1	-	-	5	1	-	3	1	9	-	-	69	56.9
대구	161	-	7	66	-	1	7	5	3	4	8	-	3	-	6	110	68.3
인천	109	1	-	13	-	-	-	7	6	1	26	-	2	-	3	58	53.7
광주	73	-	3	22	-	-	4	5	-	-	3	-	-	1	4	42	57.5
대전	116	2	1	7	1	-	-	11	-	1	12	-	1	-	-	34	29.8
울산	98	2	-	17	-	-	-	-	-	6	5	4	1	-	5	38	39.6
세종	8	-	-	3	-	-	-	-	-	-	1	-	3	-	-	7	87.5
경기	376	1	1	68	4	2	15	-	10	21	31	1	12	1	28	194	51.6
강원	100	2	-	3	-	-	7	2	-	2	8	-	3	1	6	32	32.7
충북	102	1	-	10	-	-	7	6	1	4	-	-	-	1	4	33	32.7
충남	89	-	-	34	-	-	6	-	-	5	2	-	2	-	7	56	62.9
전북	87	-	1	1	-	1	3	4	-	1	3	-	4	-	10	28	32.2
전남	91	1	3	-	-	-	6	4	1	6	2	-	4	-	13	39	43.4
경북	185	-	2	18	-	-	8	-	-	8	2	-	3	1	12	54	29.2
경남	146	1	2	15	-	-	5	-	-	4	2	-	3	1	2	34	23.4
제주	12	-	-	2	-	-	-	-	-	1	3	-	-	-	-	6	50.0
계	2,140	20	24	341	6	5	70	77	23	66	114	7	50	6	108	897	42.3

자료 : 이해경 외(2018) 복지, 교육, 고용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8년 기준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총 87명이 이수하였고, 이중 취업자는 총 28명으로 취업률은 32.2%수준임
- 장애학생에게 직업에 대한 향후 진로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과정 중에 직업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를 2015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는 총 21개교 이고 이중에서 전라북도는 전주은화학교 2017년도에 지정되어 다양한 직업관련 현장실습과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표Ⅲ-87〉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지정연도	운영 학교
2015	부산해마루학교, 대전원명학교, 원주청원학교, 청주혜원학교, 진주혜평학교
2016	울산행복학교, 다원학교, 다솜학교, 함평영회학교, 제주영송학교
2017	대구보명학교, 미주홀학교, 성은학교, 아산성심학교, 전주은화학교, 경산자인학교, 경남은혜학교
2018	부산솔빛학교, 대구덕희학교, 광주선광학교, 성세재활학교

자료 : 이해경 외(2018) 복지, 교육, 고용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3. 전라북도 장애인복지 공급 진단

1) 장애인복지 공급 현황

-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462개소, 이용시설 711개소 그리고 기타 시설 61명으로 구성

〈표Ⅲ-88〉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현황

구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생활시설	100	60	85	27	52	30	33	15	8	8	9	8	16	11	462	
이용시설	7	180	98	103	71	19	38	47	31	17	20	23	10	19	28	711
기타	4	16	4	7	6	5	5	4	6		1		1	1	1	61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원 및 현원을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총 정원이 14,922명이지만 현원은 10,40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69.7%정도 밖에 되지 않음
-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의 이용정원은 3.5만명이지만 이용자는 3.5천명으로 이용정원대비 이용율은 9.8%정도임
- 지역별로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정원충족률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가령 전주시의 경우 생활시설의 정원충족률은 69.4%인데 반하여 남원시는 정원충족률이 8.7%밖에 되지 않음
- 따라서 지역별로 지원충족률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복지재단 내 장애인복지 관련 인프라 구축은 이 같은 지역의 다양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Ⅲ-89〉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충족률)	
정원	생활시설	2,811	2,186	3,035	984	1,202	748	1466	286	253	160	218	228	1,001	344	14,922
	이용시설	10,081	3,836	3,708	3163	930	3670	2075	1269	502	1141	2388	219	881	1417	35,280
	기타	121	0	218	10	0	251	0	375		92	0	0	0	0	1,067
현원	생활시설	1,953	1,679	2,558	769	104	600	1111	221	210	106	196	202	402	289	10,400 (69.7%)
	이용시설	(14.3)	(1.3)	(16.1)	(0.8)	(83.0)	(1.0)	(17.1)	(1.9)	(5.8)	(11.0)	(0.0)	(22.8)	(0.0)	(1.0)	(9.8%)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표Ⅲ-90〉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현황

구 분	시설종류	개수	총사자 수		생활인(이용인)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시설유형	합 계	188	1,987	1,858	2,169,765	2,169,410	지원 164, 미지원 24
	소 계	71	1,159	1,060	2,000	1,758	지원 66, 미지원 5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법인	40	1,018	933	1,658	1,448
		개인	10	108	94	233	2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9	24	24	89	7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	9	9	20	20
	소 계	95	675	672	2,167,155	2,167,130	지원 76, 미지원 19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13	300	298	1,618,116	
	장애인주민보호시설		33	145	145	555	53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	66	69	101,442	
	장애인수어통역센터		15	69	67	57,933	
	시각장애인 접자도서관		2	8	6	117,434	
	장애인 체육관		5	23	23	266,044	
	접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사설		0				
	장애인수련시설		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12	64	5,631		미지원 12
	계	22	153	126	610	522	지원 22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 계	21	148	121	610	522	지원 21
	장애인보호작업장		19	125	99	530	459
	장애인근로사업장		2	23	22	80	6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소 계	1	5	5	지원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5	5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전라북도의 주요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7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95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1개소,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법인 시설이 총 40개소이고, 개인시설이 10개소로 설치되어 있고, 법인시설의 경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24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총 95개소이고, 이중 장애인 복지관 13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3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개소, 장애인수어통역센터 1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21개소 설치되어 있고, 이중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9개소,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이외에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전주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표 III-91〉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지표정의)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1.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1. 복지관 2. 주간보호시설 3. 체육시설 4. 수련시설			
2.증증장애인 거주시설	5. 생활이동지원센터	1. 보호작업장		
3.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6. 수화통역센터	2. 근로사업장	생산품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4.장애인 단기거주시설	7. 접자도서관	3. 직업적응훈련시설		
5.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 접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8. 재활치료시설			

-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이 2009년 397개소에서 2018년 1,527개소로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도 386개소에서 651개소로 약 두 배 정도 증가함

〈표 III-92〉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거주시설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1,505	1,517	1,527
직업재활시설	386	417	456	478	511	541	560	582	625	651
지역사회재활시설	1,563	1,701	1,820	1,140	1,184	1,213	1,248	1,303	1,333	1,373
생산품판매시설	-	-	16	16	16	17	17	17	17	17
의료재활시설	-	-	17	17	18	18	18	20	19	19

-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별 추이를 보면 복지관은 2006년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고, 주간보호시설도 같은 기간 12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2006년 105개소에서 2018년 187개소로 약 82개소 증가함

〈표 III-93〉 전라북도 장애인시설 유형별 현황 및 추이

연도별	계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접자도서관	재활치료시설
2006	105	34	2	11	12	10	12	1	12	9	2	
2007	120	45	2	12	12	10	13	1	13	10	2	
2008	131	46	2	16	13	10	14	1	15	12	2	
2009	140	51	2	16	14	10	17	1	15	12	2	
2010	152	52	2	21	16	11	20	1	15	12	2	
2011	158	52	2	24	17	11	22	1	15	12	2	
2012	164	53	2	24	18	11	25	1	15	13	2	
2013	170	53	2	22	19	12	25	1	15	15	2	4
2014	171	51	2	20	20	12	26	1	15	15	2	7
2015	178	52	2	21	20	12	26	3	15	15	2	10
2016	178	50	2	21	20	12	29	3	15	15	2	9
2017	182	50	2	20	22	13	29	3	15	15	2	11
2018	187	50	2	21	22	13	32	4	15	15	2	11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표Ⅲ-94〉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구분	지역	시설명	입소자		종사자		정원총족율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지체 장애인 시설	전체		169	134	76	69	79.3
	원주군	은혜의동산	21	21	11	11	100.0
	원주군	국제재활원	50	48	33	31	96.0
	전주시	동암재활원	70	44	21	18	62.9
	정읍시	성모의 집	28	21	11	9	75.0
지적 장애인 시설	익산시	전북보성원	50	45	29	27	90.0
	전체		1,162	1,043	682	626	89.7
	고창군	아름다운마을	50	49	28	28	98.0
	고창군	느티나무	15	15	9	8	100.0
	군산시	구세군군산목양원	60	50	36	31	83.3
	군산시	나포길벗공동체	40	30	25	25	75.0
	군산시	나눔의집	30	29	17	16	96.7
	김제시	지구촌마을	29	28	12	12	96.6
	김제시	사론의 집	20	20	9	9	100.0
	김제시	요한의집	15	14	8	8	93.3
	무주군	하은의집	30	30	24	22	100.0
	순창군	로뎀나무	29	23	9	7	79.3
	순창군	함께사는마을	40	33	23	23	82.5
	순창군	주향의집	14	11	10	9	78.6
	원주군	다애공동체	18	18	10	8	100.0
	원주군	예수재활원	29	29	16	14	100.0
	원주군	베데스다의집	15	14	9	7	93.3
	익산시	청해원	134	132	70	70	98.5
	익산시	훈훈한집	50	42	32	29	84.0
	익산시	작은자마의집	50	42	33	33	84.0
	익산시	가나안시랑의집	20	20	12	11	100.0
	익산시	동그라미	50	46	34	33	92.0
	익산시	사랑원	30	30	26	26	100.0
	임실군	로뎀하우스	30	29	22	22	96.7
	장수군	별일장애인의집	15	15	9	8	100.0
	전주시	소화잔달네집	40	33	25	22	82.5
	전주시	평안의집	20	20	12	12	100.0
	정읍시	행복의집	29	28	15	11	96.6
	정읍시	만복원	60	41	31	22	68.3
	정읍시	정읍천사마을	36	30	27	24	83.3
	정읍시	자애원	84	67	41	33	79.8
	정읍시	나눔빌(나눔의집)	25	23	13	10	92.0
	정읍시	화평의집	25	22	13	10	88.0
	진안군	흰마실	30	30	22	22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재구성

- 전라북도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을 보면, 자체장애인시설은 원주, 전주, 정읍 등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정원총족률은 79.3%정도 수준임
- 지적장애인 복지시설도 전주를 포함하여 군산 등 3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총 정원은 1,162명이지만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1,043명으로 정원총족률은 89.7%정도임

-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남원, 무주, 부안)은 관련시설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음

〈표Ⅲ-95〉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구분	지역	시설명	입소자		종사자		정원총족율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전체		380	315	269	250	87.5	
	남원시	편한세상	40	38	31	30	95.0	
	남원시	평화의집	40	23	20	20	57.5	
	부안군	동근마음보금자리	30	6	24	9	20.0	
	원주군	무자개가족	30	28	22	23	93.3	
	원주군	새봄원	40	40	29	29	100.0	
	원주군	함께사는집	30	29	23	23	96.7	
	익산시	청록원	45	37	30	30	82.2	
	익산시	덕암	50	46	32	30	92.0	
	익산시	홍주원	40	36	30	29	90.0	
	익산시	밝은집	35	32	28	27	91.4	
	전주시	금선백련마을	30	29	25	24	96.7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정읍시	자애드승원	53	49	35	33	92.5	
	익산시	맑은집	50	37	32	29	74.0	
	전체		20	20	9	9	100.0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익산시	새소망 단기보호시설	10	10	4	4	100.0	
	전주시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0	10	5	5	10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전체		93	70	17	17	75.3	
	고창군	공동생활가정 아름다운마을	4	4	1	1	100.0	
	군산시	해오름 1호	8	8	1	1	100.0	
	군산시	해오름 2호	4	4	1	1	100.0	
	군산시	해비라기	4	4	1	1	100.0	
	군산시	나현네집	4	3	2	2	75.0	
	김제시	허울	9	9	1	1	100.0	
	남원시	남원복지관부설 공동생활가정	4	4	1	1	100.0	
	남원시	동지공동생활가정	4	0	-	0	0.0	
	완주군	예인평안의집	4	4	1	1	100.0	
	익산시	동그라미 희망의집	4	4	1	1	100.0	
	익산시	한우리공동생활가정	4	4	1	1	100.0	
	익산시	동그라미은혜의집	4	4	1	1	100.0	
	전주시	희망해 1호	4	4	1	1	100.0	
	전주시	손수레공동생활가정	4	4	1	1	100.0	
	전주시	작은예수의집	9	5	2	2	55.6	
	전주시	작은나눔의집	7	5	1	1	71.4	
	전주시	자림공동생활가정 1호	4	0	-	0	0.0	
	전주시	자림공동생활가정 3호	4	0	-	0	0.0	
	전주시	자림공동생활가정 2호	4	0	-	0	0.0	
	전주시	희망해 2호	4	4	1	1	100.0	
	정읍시	자야해피홈	4	4	2	2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재구성

-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2개 시설이 설치 운영중에 있고, 이들 시설의 입소 현원은 315명으로 정원 350명 대비 87.5%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음
- 장애영유아 시설은 전라북도에 한 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입소정원은 총 50명에 37명이 생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2개 시설에 20명이 생활하고 있고, 장애인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은 총 21개 시설에 70명이 생활하고 있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등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95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전주시가 25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군산시 11개소, 익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8개와 9개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은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임실과 순창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체육시설도 전라북도 1개소를 포함하여 전주, 군산, 정읍, 김제 등 총 5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3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음

〈표Ⅲ-9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2018.12.31.기준 / 단위:개소)

구분	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어 통역센터	점자 도서관	점자 도서및녹음 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계	95	13	5	33	0	15	15	2	0	12
도	4	1	1			1	1			
전주시	25	1	1	14		1	1	2		5
군산시	11	1	1	4		1	1			3
익산시	8	1		4		1	1			1
정읍시	9	1	1	3		1	1			2
남원시	6	1		3		1	1			
김제시	5	1	1	1		1	1			
완주군	5	1		1		1	1			1
진안군	4	1		1		1	1			
무주군	3	1				1	1			
장수군	4	1		1		1	1			
임실군	2					1	1			
순창군	2					1	1			
고창군	3	1				1	1			
부안군	4	1		1		1	1			

주1.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주2.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표Ⅲ-9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구분	종사자			이용인수 (연인원)	연면적 (부지/건물)
	정원	현원	기타		
계	300	298	49	1,618,116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42	42	10 (비우처 6, 개발원 4)	409,019	20,301 / 6,65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23	22	7 (지역활동1 도서관1, 목욕탕2 활동보조1 비우처2)	122,672	1,437 / 1,968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9	29	5 (외부지원1 자부담4)	139,728	1,686 / 2,509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29	29	2 청년일자리 1명 영양사 1명(자부담)	170,232	2,682 / 3,053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25	24	1 (육아휴직)	143,873	2,278 / 1,819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7	27	7 (자부담 2, 외부지원 5)	172,033	2,522 / 2,158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2	22	10 (비우처 등)	143,639	6,296 / 2,183
완주군장애인복지관	18	18	8 (군비 4 비우처3 자부담1)	70,958	1,594 / 621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16	16	1 (군비1 바우처1)	19,260	11,022 / 1,350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18	18	-	52,543	3,754 / 3,063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18	18	-	53,538	1,311 / 653
고창군장애인복지관	18	18	-	61,259	3,428 / 926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15	15	1 (바우처1)	59,362	35,960 / 1,609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전라북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총 13개 시설에 연 이용인원이 162만명 정도이고, 이중에서도 전북장애인복지관이 40.9만명, 전주장애인복지관 12.3만명, 군산장애인복지관 13.9만명 등이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사례관리상담, 역량강화,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Ⅲ-9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구분	이용인수 (연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세부내역										비고
		상담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지원	장애인가 족 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 옹호지원	직업 지원	지역 사회 네트 워크	평생 교육 지원	사회 서비스지 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체육관운 영	
계	1,741,641	30,576	215,962	31,700	59,710	125,630	101,940	133,774	193,928	640,237	203,292	
전북	409,019	6,869	6,414	3,765	4,726	20,429	30,299	6,386	14,732	112,107	203,292	
전주	122,672	1,627	23,132	2,728	17,638	7,357	5,843	12,234	31,468	20,645		
군산	144,185	4,708	21,733	2,835	13,018	5,780	9,074	6,803	25,936	54,298		
익산	170,232	2,687	24,982	582	7,027	18,721	13,813	13,706	35,007	53,707		
정읍	143,873	3,618	9,489	748	765	11,159	4,764	17,246	-	96,084		
남원	172,033	4,957	73,671	8,451	1,610	26,045	6,581	5,176	27,365	18,177		
김제	143,639	867	3,011	819	1,131	9,781	7,835	11,167	27,652	81,376		
완주	70,958	865	10,313	2,251	5,265	6,010	4,498	18,165	7,904	15,687		
진안	63,322	159	10,278	3,524	1,613	942	2,496	5,794	7,124	31,392		
무주	52,543	927	7,490	1,823	4,205	1,305	5,813	4,400	-	25,790	특화 790	
장수	53,538	893	6,277	1,967	751	4,726	4,283	4,757	-	25,782	외부지원 4,102	
고창	61,259	1,285	14,251	997	330	4,945	3,999	5,390	-	30,062	외부지원 182	
부안	134,368	1,114	4,921	1,210	1,631	8,430	2,642	22,550	16,740	75,130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표Ⅲ-99〉 주간보호시설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설수	주간보호시설	30	11	4	4	3	3	1	1	1	-	1	-	-	1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	14	5	2	1	2	1	1	1	-	1	-	-	-	-
이용자 수	주간보호시설	450	150	50	71	44	50	15	12	15	-	18	-	-	14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	103	39	4	9	26	10	10	10	-	6	-	-	-	-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3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고,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등의 지역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음
-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은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그리고 진안 등 6개 지역만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자를 보면,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약 450명 정도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야간보호시설에서는 약 103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야간돌봄사업은 전라북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주시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시간은 18시에서부터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 치료시설은 전라북도에 총 12개소에 연 이용인원은 5,631명이고,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5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빌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부분 장애아동들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임

〈표Ⅲ-100〉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현황

시군	시 설 명	이용인수 (연인원)	종사자 (명)	비 고
계	5개 시군 12개소	5,631	64	
전주	하늘땅 빌달센터	600	5	
	예순운동 빌달센터	720	6	
	전라북도 특수심리& 운동빌달센터	600	4	
	하멜언어 청각센터	216	1	
	회망찬 빌달재활센터	480	6	
군산	소리엘 언어심리센터	312	5	
	피티팬 음악놀이 치료센터	960	9	
	브레이聃	420	5	
익산	파란나라 빌달연구 센터	324	4	
정읍	현정아동 빌달센터	495	6	
	도담아동 빌달센터	50	6	
완주	이령아동 빌달통합 지원센터	454	7	

-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21개소에서 약 522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호작업장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최저임금의 30%이상 유지하도록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은 주로 행정봉투나 쓰레기봉투, 복사용지, 화장지, 물티슈, 현수막 등의 생활용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전주시를 포함하여 시군단위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14개 시군 중에서는 순창군, 고창군, 남원시 등 세 개 시군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은 전체 522명 중에서 시설거주자가 148명 그리고 재가장애인 374명으로 시설장애인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III-1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군	시설명 (시설유형)	생산품	종사 인원	근로인원		
				정원	계	시설인 재가인
계	21개소 (도1, 시군20)		121	610	522	148 374
전주 (3)	전북장애인 보호작업장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7	30	30	4 26
	동암자활자립장	두부, 임기공	5	30	20	10 10
	기린보호작업장	복사용지, 쇼핑백, 임기공	6	30	30	7 23
	더불어삶	화장지	4	20	12	- 12
군산	주진장애인차별작업장	한지 양말류	8	40	40	16 24
	해피드림	제과제빵, 임기공	7	42	41	16 25
	동그라미플러스	육포, 서각, 압화	7	45	40	20 20
	보성원자활자립장	인마 및 자접서비스	3	20	15	8 7
익산 (4)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업 (BF클린)	6	40	32	15 17
	자애자립장	새송이버섯, 바누	5	30	26	13 13
	만복보호작업장	침기름, 들키름, 전자부품가공	3	18	18	8 10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물티슈	7	30	30	- 30
완주 (4)	행복한집	식품류 (김치) 등	4	20	15	6 9
	희망별전소 1호점	현수막, 장갑	4	20	15	- 15
	희망별전소 2호점	조미김, 월병소금	4	20	12	- 12
	완주떡메마을(근로사업장)	전통 (웰빙) 떡	11	50	31	7 24
진안	굿데이	홍삼초코파이 홍삼액	5	30	24	6 18
무주	반디누리 작업장	콩나물, 두부	5	20	18	- 18
장수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옹기 및 도자기	5	25	21	- 21
임실	임실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업, 임기공	4	20	20	12 8
부안	바다의향기(근로사업장)	조미김, 자연김	11	30	32	- 32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표Ⅲ-1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현황

시 설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단위:천원)		비고
	월평균액	월평균액	월평균액	월평균액	최소	
평 균	301	389	424	463	234	1,136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592	619	663	663	350	3,300
동암지활지립장	331	349	368	424	177	884
기린보호작업장	324	355	388	618	246	3,000
더불어삶				462	432	509
추진장애인지립작업장	591	572	546	762	235	1,700
해피드림	264	353	373	421	258	978
동그라미플러스	347	346	430	437	226	787
보성원자활지립장	71	99	142	118	40	480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399	324	404	368	197	787
자애지립장	114	304	342	394	224	753
만복보호작업장	71	82	81	111	75	135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287	324	428	544	211	2,100
행복한집	357	290	290	373	234	585
희망별전소1호점	391	370	375	429	148	1,574
희망별전소2호점	280	296	432	413	267	814
완주떡메마을	708	743	846	871	453	1,645
굿데이	-	359	396	351	158	787
반디누리작업장	245	228	272	353	39	557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	77	131	113	132	66	311
임실군장애인보호작업장				320	210	570
바다의향기	1,065	1,169	1,175	1,162	665	1,590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 대부분 쓰레기봉투나 복사 용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전라북도 특화 상품은 부족한 상황
- 정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새송이 버섯 등으로 영농관련 생산품을 제외하면 다수 생산품들이 기초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인건비를 보면, 2018년 기준 최소는 23.4만원에서 최대 113.6만원으로 급여편차가 약 9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인건비 평균액은 2018년 기준 48.3만원으로 2015년 30.1만원에 비해서 약 18만원 이상 증가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로 평균 인건비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조미김을 생산하는 직업재활시설이 116.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만복보호작업장이 근로장애인에게 가장 적은 월평균 11.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월평균 임금에 있어서도 생산품목별로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형태별로 다소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표Ⅲ-103〉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황

구분	종사자			이용인수 (연인원)	면적 (연면적)	연락처	설치 일자
	정원	현원	기타				
계	9	9		10,749			
전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	3	3		4,984	272	232-1258	15. 5. 1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 산돌	3	3		4,407	967	461-4460	16. 8.21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사랑복지재단	3	3		3,017	325	853-7008	17.11.1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2018년 기준 평균 인건비를 보면, 월평균 인건비는 46.3만원이었고, 최소 23.4만원 그리고 최대 113.6만원이었음
- 지역별로는 근로장애인의 인건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완주떡메 마을, 바다의 향기,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평균임금이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015년 전주시를 시작으로 군산, 익산 등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 이용인원은 약 1.07만명 정도임
-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지역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연 4.9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4.4천명 그리고 익산시 평생교육센터는 3.0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
-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세부프로그램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우선 대부분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성인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은 운영중에 있음
- 전라북도 평생교육센터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도 문화예술교육분야 그리고 직업능력향상 교육분야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총 19개의 개별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고, 군산시 12개, 익산시 13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표Ⅲ-104〉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프로그램 현황

센터명	이용인 (연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세부내역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비고 (프로 그램수)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 독교육	직업능력향 상교육	인문교양교 육	문화예술교 육	시민참여교 육	상담	
계	12,408	0	585	4,355	858	5,693	527	90	300
전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4,984	-	-	2,859	492	970	293	70	300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4,407	-	360	706	144	3,079	98	20	12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3,017	-	225	790	222	1,644	136	-	13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2) 장애인고용 공급 현황

-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의 인구비율은 17개 시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장애인의 직업훈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7.04%로 전남 7.47%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연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임
- 국가단위에서 장애인의 직업훈련 인프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직업능력개발원은 전국적으로 20개 지사와 5개 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8개 훈련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하지만 전라북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장애인의 직업훈련에서 상당한 사각지대 발생
-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상담에서부터 맞춤형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과 일자리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용복지 인프라 구축 필요
- 전라북도는 장애인 고용인프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훈련센터의 설치 이외에는 아직 까지 국가차원의 장애인직업훈련인프라는 미설치

〈표 III-105〉 장애인고용공단 지역인프라 현황

지역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비율	고용훈련 인프라
전남	142,174	1,903,914	7.47	. 전남직업능력개발원(함평) . 전북맞춤훈련센터((전주))
전북	131,303	1,864,791	7.04	
강원	99,959	1,550,806	6.45	
경북	172,533	2,700,398	6.39	
충남	128,503	2,096,727	6.13	. 천안안산맞춤훈련센터(아산)
충북	95,844	1,591,625	6.02	
제주	35,104	641,597	5.47	
경남	183,510	3,373,871	5.44	. 청원맞춤훈련센터(청원)
부산	171,384	3,498,529	4.90	. 부산직업능력개발원(부산)
대구	119,766	2,484,557	4.82	. 대구직업능력개발원(대구) .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예정)
대전	72,180	1,514,370	4.77	. 대전직업능력개발원(대전)
광주	69,233	1,469,214	4.71	.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광주)
인천	138,304	2,943,069	4.70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인천)
세종	10,623	243,048	4.37	
울산	50,205	1,172,304	4.28	
경기	533,259	12,716,780	4.19	.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일산) . 청각장애인훈련센터(고양) . 경기직업능력개발원(예정)
서울	391,753	9,930,616	3.94	.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 서울맞춤훈련센터(서울)
전국	2,545,637	51,696,216	4.92	

자료 : 이중섭 외(2018) 전북연구원

- 국가단위에서 장애인의 체계적인 직업훈련 제공하는 시설들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장애인훈련센터, 그리고 공단지원 직업훈련기관으로 구성
- 장애인직업훈련의 중추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은 부산, 대전, 전남 등의 지역에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소규모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인 훈련센터는 맞춤훈련센터 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4개소, 청각장애인 훈련센터 1개소 등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일산에 설치된 직업능력개발원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경인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권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구권은 대구와 경상북도를 관할권으로 하고 있고, 대전권은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등 네 개 지역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 등 총 4개 지역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음
- 한편, 훈련센터는 맞춤훈련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청각장애인 훈련센터 등 총 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맞춤훈련센터는 사업주와의 약정에 맞춰 기업의 장애인 구인수요에 맞춰 장애인 훈련생을 모집·훈련을 통해 수료생을 우선 채용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공단지원 직업훈련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우선선발 및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을 선발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경중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직업교육 중심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인인 한국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일산,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전남 등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은 각 지역별로 직업훈련분야가 특성화되어 있는데, 가령, 일산지역은 지능형 기계, 스마트정보, 디자인 등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부산은 해양디자인 제과제빵, 디지털건축설계 등으로 특성화 되어 있음

〈표III-10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현황

유형	개수	지역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맞춤훈련센터	서울, 천안, 창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훈련센터	1개소	일산
	청각장애인훈련센터	
공단지원 직업훈련기관	34개 기관(캠퍼스)	수도권(5), 경인(4), 강원(3개), 충청(5개), 호남(5개), 광주, 김제, 목포, 익산, 순천, 대구경북(5개), 부산 경남(5개), 특성화대학, 다솜고교
	민간직업훈련기관	27개 기관

〈표Ⅲ-107〉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현황

구분	훈련분야 현재	2018년 8월 이후	특화훈련
일산	지능형기계,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인쇄출판미디어, 귀금속공예, IT융합		
부산	해양디자인, CAD/CAM, 전자, 스마트정보, 외식음용제과제빵, 푸드앤크페리스타, 디지털건축설계, 메카트로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전자융복합 · 전자정보융복합 · 디자인융용융복합 	산학연계과정, 자격증과정, 장년특화과정, 여성특화과정, 정신특화과정, 실무(발달)과정, 푸드마스터과정
대구	스마트경(경회계, 서비스마케팅), CAD/CAM,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패션디자인		※ 푸드마스터과정은 부산, 대전에 서만 운
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CAD/CAM, 스마트정보, 디자인, 외식음용제과제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전자융복합 · 정보디자인융복합 	
전남	금형디자인,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 공단사업안내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은 권역별로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고, 대부분의 직업교육은 전자, 기계, 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기계, 스마트정보, 그리고 디자인 등의 직업훈련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은 해양도시의 특성에 맞춰 해양디자인과 디지털건축설계 그리고 제과제빵 등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일산, 부산, 대구 등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단일 직업훈련 프로그램보다는 융복합분야의 특성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가령, 기계전자융복합, 전자정보융복합 그리고 디자인융용융복합분야로 훈련분야를 제공하고 있음
-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전남직업능력개발원도 기계전자 융복합 그리고 정보디자인 융복합 분야를 특성화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장애인의 고용훈련 중추기관으로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장애인의 고용 능력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그 설립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5 개소에 불과한 현재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물리적 인프라는 향후 개선되어야 함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직업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현재 권역별로 5개소에 불과한 장애인고용교육 인프라는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업훈련 교육분야도 전자와 기계 그리고 제과제빵 등의 서비스업에만 집중되어 있어 향후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일자리 수요를 감안하여 새로운 분야의 직업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은 2018년부터 기계와 전자, 그리고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고, 각 지역별로 일반훈련분야와 영역별 특성화 분야에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일반훈련분야의 경우 컴퓨터, 디자인, 전자, 정보기술, 실무작업 등의 분야는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귀금속공예분야, 인쇄출판미디어분야, IT융합분야, 시스템 방제분야 등은 일산, 부산, 대전 등의 일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에 있음
- 장애인의 직업훈련분야도 현재 IT와 제조, 전자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유형별 직업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표준사업장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총 7개소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최소 1개소에서 3개소 표준사업장 개설
- 표준사업장의 업종을 보면, 대부분 업종이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농산물 도소매, 세탁업 등의 일부 업종으로 참여하고 있음
- 표준사업장의 운영 지역을 보면, 전주시가 2개, 익산시가 3개, 군산시 3개, 정읍시 1개, 완주군 2개, 순창군 1개 등임

〈표III-108〉 전라북도 표준사업장 현황

구분	표준사업장	지역	업종	비고
2013년 (7개)	(유)용문전자	정읍시	제조업(자동차 솔레노이드 밸브)	일반
	아주실업	군산시	제조업(세정제, 방향제)	일반
	주식회사 김강득	군산시	제조업(김치류)	일반
	(주)익산하이테크	익산시	제조업(신발류(전투화, 방한화, 안전화, 활동화 등))	일반
	유한회사온누리 친환경농업회사법인	익산시	농산물 도소매	일반
	미음건강사업단	전주시	제조업(우산, 보온병, 수건, USB, 세면세트, 포대, 쓰레기봉투, 환풍기, 선풍기)	일반
	(유)타밀	남원시	제조업(종이컵)	일반
제2014년 (1개)	제너럴바이오(주)	완주군	제조업(화장품 및 바이오원료 제조 등)	일반
제2015년 (1개)	(주)뉴라이트	순창군	제조업(찻술 등)	일반
제2016년 (3개)	(유)번영식품 농축산회사법인	군산시	제조업(돈육 가공 등)	일반
	(주)강동오케이	전주시	제조업(제과, 제빵)	일반
	(유)청정클린	익산시	세탁업	일반
제2017년 (1개)	(주)포엠	완주군	제조업(가로등주 등)	일반

〈표Ⅲ-109〉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총괄

구 분	인원 (명)	예산액 (천원)	지원내용
계	961명	2,551,39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0	18,571	·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상담(비우자)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600	120,000	·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일시적 휴식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비용지원	20	61,250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 심판청구 비용, 후견활동비 지원
발달장애인자원센터	1개소	65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지원 정보 제공·연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및 부모교육(19년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추가) · 발달장애인 상담 지원, 권익옹호 활동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90	1,015,000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비우자) 월 88시간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184	628,571	·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비우자) 일일 2시간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56	5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아주기별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자료 : 전라북도(2018) 내부자료

- 특히 다른 장애유형보다도 복지 및 고용인프라가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고용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전라북도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모상담, 가족휴식, 공공후견인, 주간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에 약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시설이 설치운영중에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국민체육시설이 전주시에 1개소 운영중에 있음

〈표Ⅲ-110〉 장애인 국민체육시설 현황

선정연도	지역	추진현황	운영여부
2012년 (1개)	광주시구	2015년 5월 개관	운영중
2013년 (1개)	제주도 제주시	2018년 12월 개관	운영중
2014년 (5개)	부산 사하구	2018년 9월 개관	운영중
	인천 연수구	2017년 8월 개관	운영중
	대전 유성구	2018년 3월 개관	운영중
	경기 시흥시	2018년 12월 개관	운영중
	충남 아산시	2018년 6월 개관	운영중
2015년 (4개)	충북 충주시	2019년 5월 개관	운영중
	전북 전주시	2018년 4월 개관	운영중
	전남 여수시	2018년 6월 개관	운영중
2016년 (1개)	경남 사천시	2019년 2월 개관	운영중
	대구 수성구	2019년 3월 개관	운영중
2017년 (2개)	경북 포항시	2019년 12월 개관	예정
	세종시	2019년 12월 개관	예정
2018년 (1개)	강원도 홍천군	2019년 12월 개관	예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장애인국민체육시설 현황

IV



자림복지재단 기본구상 관련 지역주민 조사

IV. 자립복지재단 기본구상 관련 지역주민 조사

- 자립복지재단의 기본재산활용에 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장애인 당시자와 장애인 부모, 장애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함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장애인 당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고 장애인부모는 장애인부모회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장애인전문가조사는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진행
- 자립복지재단 활용 관련 조사는 총 407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이 중 장애인 당시자 177명, 장애인 부모 138명, 장애인 전문가 92명이 응답
- 장애인 당시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88명이었고,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인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부 및 정신장애가 41명으로 구성됨
- 발달장애인의 자립복지재단 관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응답자 특성을 보면, 발달장애 44.2%, 자폐성 장애 38.4% 그리고 중복장애 17.4% 등의 순임
- 장애인관련 전문가조사에서는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84.5%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가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IV-1〉 장애인 당시자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장애인 당사자	성별	남성	88	49.7	100만원 미만	129	72.9
		여성	88	49.7	월평균 100만원 이상	43	24.3
		결측	1	.6	가계소득 결측	5	2.8
		합계	177	100.0	합계	177	100.0
장애인 당사자	연령	50대 미만	62	35.0	1-2급	78	44.1
		50대 이상	114	64.4	2-3급	52	29.4
		결측	1	.6	4-5급	43	24.3
		합계	177	100.0	결측	4	2.3
장애인 유형		신체장애	132	74.6	합계	177	100.0
		내부/정신장애	41	23.2			
		결측	4	2.3			
		합계	177	100.0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41	29.7	발달장애	61	44.2
		여성	97	70.3	자폐성장애	53	38.4
		합계	138	100.0	중복장애	24	17.4
					합계	138	100.0
장애인 부모	월평균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70	50.7	모두도움필요	31	22.5
		300만원 이상	68	49.3	일부도움필요	86	62.3
		합계	138	100.0	혼자생활가능	21	15.2
					합계	138	100.0
장애인 전문가	경력	5년 미만	27	29.3	장애인이용시설	78	84.8
		5년 이상	65	70.7	특수학교/교육기관	14	15.2
		합계	92	100.0	합계	92	100.0

〈표IV-2〉 자림복지재단 건립방식 및 활용방안

대상	구분	건립방식					활용방안		
		전라북도 건립	전북/전주 공동건립	중앙정부 건립	중앙/전북 공동건립	중앙/전북/전주 공동건립	전체 리모델링	부분 리모델링	전체 신축건립
성별	남성	17.6	27.1	16.5	17.6	21.2	43.7	20.7	35.6
	여성	36.6	14.6	3.7	9.8	35.4	60.0	18.8	21.2
연령	50대 미만	27.1	22.0	8.5	11.9	30.5	44.3	21.3	34.4
	50대 이상	27.5	20.2	11.0	14.7	26.6	55.4	19.6	25.0
장애인	장애 유형	신체장애	26.8	15.7	9.4	15.0	33.1	49.6	20.6
	내부/정신장애	30.8	35.9	12.8	10.3	10.3	56.4	20.5	23.1
장애 등급	1-2급	28.9	18.4	10.5	11.8	30.3	39.0	20.8	40.3
	2-3급	24.5	22.4	10.2	14.3	28.6	60.8	19.6	19.6
	4-5급	27.5	25.0	7.5	15.0	25.0	61.9	21.4	16.7
	전체	27.4	20.8	10.1	13.7	28.0	51.4	20.2	28.3
성별	남성	12.2	4.9	2.4	80.5	26.8	73.2		
	여성	2.1	14.4	1.0	5.2	77.3	20.6	72.2	7.2
소득	300만원 미만	7.1	14.3		1.4	77.1	24.3	71.4	4.3
	300만원 이상	2.9	8.8	1.5	7.4	79.4	20.6	73.5	5.9
장애인 부모	자녀	빌달장애	6.6	16.4		1.6	75.4	19.7	77.0
	장애 자폐성장애	5.7	7.5	1.9	9.4	75.5	22.6	69.8	7.5
	유형	중복장애		8.3		91.7	29.2	66.7	4.2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9.7		3.2	83.9	29.0	64.5	6.5
생활	일부도움필요	3.5	12.8		5.8	77.9	17.4	76.7	5.8
능력	혼자생활가능	14.3	9.5	4.8		71.4	33.3	66.7	
	전체	5.1	11.6	.7	4.3	78.3	22.5	72.5	5.1
성별	남성	5.9	29.4	8.8	23.5	32.4	38.2	38.2	23.5
	여성	17.9	19.6	10.7	28.6	23.2	26.3	63.2	10.5
장애인 전문가	근무 이용시설	12.8	25.6	11.5	26.9	23.1	34.6	48.7	16.7
	기관 교육기관	15.4	15.4		23.1	46.2	14.3	78.6	7.1
전문가	근무 5년 미만	7.4	18.5	7.4	37.0	29.6	25.9	55.6	18.5
	경력 5년 이상	15.6	26.6	10.9	21.9	25.0	33.8	52.3	13.8
	전체	13.2	24.2	9.9	26.4	26.4	31.5	53.3	15.2
	전체 케이스	16.4	18.4	6.8	13.4	45.1	37.0	45.7	17.4

- 건립방식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건립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45.1%로 가장 많았고,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부분 리모델링이 45.7%로 가장 많았음
- 대상별로는 장애인 당사자는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공동건립(28.0%)에 이어 전라북도 건립(27.4%)방안이 높았고, 장애인 전문가는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건립(26.4%)이 높게 나타남
- 자림복지재단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분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이 45.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체 리모델링 37.0%, 전체 신축건립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상자 별로 보면 장애인은 전체 리모델링이 51.4%로 많았으나 장애인부모(72.5%)와 장애인 전문가(53.3%)는 부분 리모델링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응답이 많아 대상별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IV-3〉 자립원 사건 인지 정도

대상	구분	전혀 모른다 ⓐ	모르는편이다 ⓑ	보통이다 ⓒ	조금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모른다 ⓐ+ⓑ	알고 있다 ⓓ+ⓔ
성별	남성	24.1	18.4	18.4	26.4	12.6	42.5	39.0
	여성	18.2	21.6	17.0	34.1	9.1	39.8	43.2
연령	50대 미만	16.1	21.0	30.6	22.6	9.7	37.1	32.3
	50대 이상	23.0	19.5	10.6	34.5	12.4	42.5	46.9
장애인 유형	신체장애	21.4	16.0	16.0	35.1	11.5	37.4	46.6
	내부/정신장애	19.5	34.1	19.5	14.6	12.2	53.6	26.8
장애 등급	1~2급	17.9	20.5	20.5	32.1	9.0	38.4	41.1
	2~3급	13.5	25.0	19.2	30.8	11.5	38.5	42.3
	4~5급	35.7	11.9	7.1	28.6	16.7	47.6	45.3
전체		21.0	19.9	17.6	30.1	11.4	40.9	41.5
성별	남성	2.4	7.3	22.0	41.5	26.8	9.7	68.3
	여성	1.0	5.2	12.4	40.2	41.2	6.2	81.4
소득	300만원 미만	2.9	5.7	14.3	32.9	44.3	8.6	77.2
	300만원 이상		5.9	16.2	48.5	29.4	5.9	77.9
장애인 부모	자녀 별달장애	1.6	3.3	14.8	42.6	37.7	4.9	80.3
	장애 자폐성장애		9.4	11.3	39.6	39.6	9.4	79.2
유형	중복장애	4.2	4.2	25.0	37.5	29.2	8.4	66.7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19.4	25.8	48.4	6.5	74.2
생활	일부도움필요		8.1	14.0	41.9	36.0	8.1	77.9
	능력 혼자생활기능		4.8	14.3	57.1	23.8	4.8	80.9
전체		1.4	5.8	15.2	40.6	37.0	7.2	77.6
성별	남성	2.9	8.8	5.9	47.1	35.3	11.7	82.4
	여성	3.5	7.0	15.8	56.1	17.5	10.5	73.6
장애인 전문가	이용시설 기관	3.8	9.0	10.3	50.0	26.9	12.8	76.9
	교육기관			21.4	71.4	7.1	0.0	78.5
근무 경력	5년 미만	7.4	22.2	14.8	51.9	3.7	29.6	55.6
	5년 이상	1.5	1.5	10.8	53.8	32.3	3.0	86.1
전체		3.3	7.6	12.0	53.3	23.9	10.9	77.2
전체 케이스		10.3	12.3	15.5	38.9	22.9	22.6	61.8

- 자립원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 38.9%, 매우 잘 알고 있다 22.9%로 알고 있는 경우가 60%를 상회하며 매우 높게 나타남
- 대상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자립원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40.9%로 알고 있다 41.5%와 비교 시 매우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 장애인 당사자보다 장애인부모(77.6%), 장애인 전문가(77.2%)가 자립원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특성별로 보게 되면 남성(39.0%)보다는 여성(43.2%)장애인이 자립원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6.9%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신체 장애인이 46.6%로 내부 및 정신장애인 26.8%에 비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V-4〉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대상	구분	경제적문제	문화여가시설 부족문제	직업훈련 취업문제	재활치료기관 부족문제	교육기관부족 문제	장애인편견/ 차별문제	이동권/교통 시설접근문제	기타
장애인	성별	남성	43.0	12.8	12.8	17.4	3.5	2.3	3.5
		여성	42.9	2.4	16.7	9.5	3.6	8.3	15.5
	연령	50대 미만	33.9	10.2	27.1	5.1	5.1	13.6	3.4
		50대 이상	48.2	6.4	7.3	18.2	2.7	.9	12.7
장애인 부모	장애 유형	신체장애	48.1	8.5	10.9	13.2	3.1	3.1	10.9
		내부/정신장애	29.7	5.4	27.0	13.5	5.4	10.8	5.4
	장애 등급	1-2급	36.5	9.5	12.2	17.6	4.1	4.1	12.2
		2-3급	51.0	2.0	23.5	5.9	3.9	7.8	2.0
		4-5급	46.3	12.2	4.9	17.1	2.4	2.4	14.6
		전체	42.9	7.6	14.7	13.5	3.5	5.3	9.4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12.2	4.9	58.5	7.3	12.2	4.9	
		여성	8.2		63.9	4.1	15.5	7.2	1.0
	소득	300만원 미만	17.1	2.9	61.4	2.9	10.0	5.7	
		300만원 이상	1.5		63.2	7.4	19.1	7.4	1.5
장애인 부모	자녀	빌달장애	8.2	1.6	63.9	4.9	16.4	3.3	1.6
		장애 자폐성장애	5.7	1.9	69.8		15.1	7.5	
	유형	중복장애	20.8		41.7	16.7	8.3	12.5	
		자녀 모두도움필요	9.7	3.2	54.8	9.7	16.1	3.2	3.2
	생활	일부도움필요	11.6	1.2	64.0	3.5	12.8	7.0	
	능력	혼자생활가능			66.7	4.8	19.0	9.5	
		전체	9.4	1.4	62.3	5.1	14.5	6.5	.7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43.8	15.6	12.5	3.1	6.3	3.1	15.6
		여성	7.3	9.1	40.0	5.5	9.1	9.1	20.0
	근무	이용시설	23.1	12.8	26.9	5.1	7.7	6.4	17.9
		교육기관			50.0		10.0	10.0	30.0
	근무	5년 미만	20.8	8.3	33.3	8.3	8.3	12.5	8.3
	경력	5년 이상	20.3	12.5	28.1	3.1	7.8	4.7	23.4
		전체	20.5	11.4	29.5	4.5	8.0	6.8	19.3
		전체 케이스	26.3	6.3	34.6	8.6	8.3	6.1	8.3
									1.5

-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전체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문제가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문제 26.3%, 재활치료기관 부족문제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상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이 42.9%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전문가는 직업훈련 및 취업문제의 어려움이 각각 62.3%, 29.5%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남성은 경제적문제의 어려움이 43.8%로 많았으나 여성은 직업훈련 및 취업문제의 어려움이 40.0%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부모의 경우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문제의 어려움이 60%를 상회하며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IV-5〉 전라북도에서 가장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구분	장애인종합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문화 체육시설	장애인직업 훈련/일자리 연계시설	장애인재활 치료시설	장애인심리 상담시설	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장애인보건 의료시설	기타
장애인	성별 남성	27.7	18.1	16.9	18.1	10.8	3.6	4.8	
	여성	12.8	9.0	37.2	11.5	9.0	10.3	3.8	6.4
	연령 50대 미만	21.1	10.5	42.1	5.3	7.0	10.5	1.8	1.8
	50대 이상	20.2	15.4	18.3	20.2	2.9	10.6	4.8	7.7
	장애 유형 신체장애	20.5	16.4	28.7	12.3	2.5	9.0	4.1	6.6
	내부/정신장애	16.7	5.6	22.2	25.0	11.1	16.7	2.8	
	장애 등급 1-2급	18.1	16.7	27.8	12.5	2.8	15.3	2.8	4.2
	2-3급	22.9	6.3	39.6	12.5	4.2	10.4	2.1	2.1
	4-5급	21.1	18.4	7.9	23.7	5.3	2.6	7.9	13.2
	전체	20.5	13.7	26.7	14.9	4.3	10.6	3.7	5.6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2.0	4.9	68.3	4.9				
	여성	14.4	2.1	77.3	5.2	1.0			
	소득 300만원 미만	20.0	2.9	70.0	7.1				
	300만원 이상	13.2	2.9	79.4	2.9	1.5			
	자녀 발달장애	14.8		78.7	6.6				
	장애 자폐성장애	9.4	7.5	79.2	1.9	1.9			
	유형 중복장애	37.5		54.2	8.3				
	자녀 모두도움필요	25.8		58.1	16.1				
	생활 일부도움필요	16.3	4.7	76.7	1.2	1.2			
	능력 혼자생활가능	4.8		90.5	4.8				
전체	16.7	2.9	74.6	5.1	.7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6.3	40.6	12.5	6.3	6.3	25.0	3.1	
	여성	9.3	22.2	40.7	7.4	11.1	9.3		
	근무 이용시설	7.7	32.1	26.9	6.4	10.3	15.4	1.3	
	기관 교육기관	11.1		55.6	11.1		22.2		
	근무 5년 미만	16.7	16.7	33.3	4.2	12.5	16.7		
	경력 5년 이상	4.8	33.3	28.6	7.9	7.9	15.9	1.6	
	전체	8.0	28.7	29.9	6.9	9.2	16.1	1.1	
	전체 케이스	16.3	13.2	44.6	9.6	4.1	8.0	1.6	2.6

- 전라북도에서 가장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시설이 44.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종합사회복지시설 16.3%, 장애인 문화체육 시설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전문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장애인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시설(29.9%)에 이어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이 28.7%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전문가의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은 장애인문화체육시설(40.6%), 여성은 장애인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시설(40.7%)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한편,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남성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이 27.7%, 여성은 장애인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시설 부족이 37.2%로 나타났고, 내부 및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부족이 25.0%로 높게 나타남

〈표IV-6〉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1

대상	구분	일상생활지원		심리재활지원		직업훈련지원		직업재활지원		취업고용지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장애인	성별 남성	39.0	61.0	13.3	86.7	29.6	70.4	23.2	76.8	30.5	69.5
	성별 여성	50.6	49.4	17.3	82.7	13.8	86.3	8.8	91.3	8.5	91.5
	연령 50대 미만	53.7	46.3	32.1	67.9	46.0	54.0	30.2	69.8	37.7	62.3
	연령 50대 이상	40.2	59.8	7.1	92.9	11.6	88.4	10.0	90.0	10.8	89.2
	장애 신체장애 유형	47.7	52.3	9.4	90.6	14.5	85.5	12.8	87.2	14.3	85.7
	내부/정신장애	33.3	66.7	33.3	66.7	47.2	52.8	27.8	72.2	36.1	63.9
	장애 등급 1-2급	60.0	40.0	15.9	84.1	25.8	74.2	20.6	79.4	20.3	79.7
	등급 2-3급	47.1	52.9	13.7	86.3	27.5	72.5	15.7	84.3	19.6	80.4
	등급 4-5급	16.7	83.3	11.9	88.1	9.5	90.5	9.8	90.2	14.6	85.4
	전체	44.6	55.4	15.2	84.8	22.2	77.8	16.6	83.4	20.0	80.0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80.5	19.5	22.0	78.0	2.4	97.6		100.0		100.0
	성별 여성	82.5	17.5	13.4	86.6	5.2	94.8	3.1	96.9	3.1	96.9
	소득 300만원 미만	77.1	22.9	17.1	82.9	4.3	95.7	2.9	97.1	1.4	98.6
	소득 300만원 이상	86.8	13.2	14.7	85.3	4.4	95.6	1.5	98.5	2.9	97.1
	자녀 발달장애인	75.4	24.6	23.0	77.0	3.3	96.7	1.6	98.4	1.6	98.4
	장애인 자폐성장애 유형	83.0	17.0	5.7	94.3	5.7	94.3	1.9	98.1	1.9	98.1
	중복장애인	95.8	4.2	20.8	79.2	4.2	95.8	4.2	95.8	4.2	95.8
	자녀 모두도움필요	77.4	22.6	22.6	77.4	3.2	96.8		100.0		100.0
	생활 일부도움필요	81.4	18.6	11.6	88.4	5.8	94.2	3.5	96.5	3.5	96.5
	능력 훈자생활기능	90.5	9.5	23.8	76.2		100.0		100.0		100.0
장애인 전문가	전체	81.9	18.1	15.9	84.1	4.3	95.7	2.2	97.8	2.2	97.8
	성별 남성	18.2	81.8	9.4	90.6	21.9	78.1	15.6	84.4	15.6	84.4
	성별 여성	21.8	78.2	14.5	85.5	27.3	72.7	25.5	74.5	21.8	78.2
	근무 이용시설	18.2	81.8	13.0	87.0	20.8	79.2	19.5	80.5	18.2	81.8
	근무 교육기관	33.3	66.7	9.1	90.9	54.5	45.5	36.4	63.6	27.3	72.7
	근무 5년 미만	15.4	84.6	11.5	88.5	26.9	73.1	23.1	76.9	19.2	80.8
	경력 5년 이상	22.2	77.8	12.9	87.1	24.2	75.8	21.0	79.0	19.4	80.6
전체 케이스	전체	20.2	79.8	12.5	87.5	25.0	75.0	21.6	78.4	19.3	80.7
	케이스	52.2	47.8	14.8	85.2	16.5	83.5	12.6	87.4	13.6	86.4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52.2%로 많았으며, 이어서 직업훈련지원 서비스 16.5%, 심리재활지원서비스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부모의 경우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이 81.9%로 장애인(44.6%)과 장애인 전문가(20.2%)의 이용경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부모와 장애인전문가에 비해 서비스별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재활지원서비스의 경우 50대 미만 장애인(32.1%)과 내부 및 정신장애인(33.3%)의 이용경험이 높았고, 직업훈련지원서비스 역시 50대 미만(46.0%), 내부 및 정신장애인(47.2%)의 이용경험이 높은 수준이었음
- 심리재활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부모 중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용경험이 23.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IV-7〉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2

대상	구분	주간보호(돌봄)지원		야간보호(돌봄)지원		주거지원		탈시설 지원지원		보건의료지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장애인	성별 남성	19.5	80.5	9.8	90.2	29.6	70.4	16.0	84.0	41.5	58.5
	여성	13.8	86.3	4.9	95.1	18.8	81.3	2.5	97.5	39.5	60.5
	연령 50대 미만	15.4	84.6	15.1	84.9	25.5	74.5	15.7	84.3	30.8	69.2
	50대 이상	17.1	82.9	3.6	96.4	23.4	76.6	6.4	93.6	44.6	55.4
	신체장애 유형	16.9	83.1	5.6	94.4	26.6	73.4	8.9	91.1	45.2	54.8
	내부/정신장애	13.5	86.5	10.8	89.2	13.9	86.1	8.3	91.7	22.2	77.8
	장애 등급 1-2급	24.6	75.4	12.9	87.1	23.5	76.5	13.4	86.6	31.9	68.1
	2-3급	9.8	90.2		100.0	29.4	70.6	2.0	98.0	43.1	56.9
	4-5급	12.5	87.5	7.5	92.5	17.5	82.5	10.0	90.0	48.8	51.2
	전체	16.6	83.4	7.3	92.7	24.1	75.9	9.3	90.7	40.2	59.8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9.3	70.7	2.4	97.6	4.9	95.1	2.4	97.6	29.3	70.7
	여성	12.4	87.6	3.1	96.9	1.0	99.0		100.0	30.9	69.1
	소득 300만원 미만	15.7	84.3	2.9	97.1	4.3	95.7	1.4	98.6	37.1	62.9
	300만원 이상	19.1	80.9	2.9	97.1		100.0		100.0	23.5	76.5
	자녀 장애	18.0	82.0	3.3	96.7	3.3	96.7		100.0	32.8	67.2
	자폐성장애	17.0	83.0	3.8	96.2	1.9	98.1	1.9	98.1	30.2	69.8
	유형 중복장애	16.7	83.3		100.0		100.0		100.0	25.0	75.0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96.8		100.0		100.0		100.0	29.0	71.0
	생활 일부도움필요	26.7	73.3	4.7	95.3	3.5	96.5		100.0	37.2	62.8
	능력 혼자생활가능		100.0		100.0		100.0	4.8	95.2	4.8	95.2
장애인 전문가	전체	17.4	82.6	2.9	97.1	2.2	97.8	.7	99.3	30.4	69.6
	성별 남성	21.9	78.1	15.6	84.4	9.4	90.6	9.4	90.6	12.5	87.5
	여성	12.7	87.3	7.3	92.7	12.7	87.3	7.3	92.7	20.0	80.0
	근무 이용시설	18.2	81.8	11.7	88.3	13.0	87.0	9.1	90.9	15.6	84.4
	교육기관		100.0		100.0		100.0		100.0	27.3	72.7
	근무 5년 미만	15.4	84.6	11.5	88.5	15.4	84.6	7.7	92.3	11.5	88.5
	경력 5년 이상	16.1	83.9	9.7	90.3	9.7	90.3	8.1	91.9	19.4	80.6
전체 케이스	전체	15.9	84.1	10.2	89.8	11.4	88.6	8.0	92.0	17.0	83.0
	케이스	16.7	83.3	6.4	93.6	13.4	86.6	5.9	94.1	31.5	68.5

- 보건의료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전체적으로 31.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야간보호지원 서비스(6.4%), 탈시설 지원지원서비스(5.9%)의 이용경험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 이었음
- 보건의료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이용경험이 40.2%로 장애인부모(30.4%)와 장애인전문가(17.0%)에 비해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이 24.1%로 장애인부모(22%), 장애인 전문가 (11.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특성별로 보면 여성(18.8%)보다는 남성 (29.6%)장애인, 내부 및 정신장애인(13.9%)보다 신체장애인(26.6%)이, 장애등급별로는 2~3급 장애인(29.4%)이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8〉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

대상	구분	인권상담 교육지원		사회적응훈련지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성별	남성	29.3	70.7	27.7	72.3	36.1	63.9	43.4	56.6	20.7	79.3	41.0	59.0	
	여성	23.8	76.3	14.6	85.4	18.3	81.7	51.9	48.1	8.8	91.3	49.4	50.6	
연령	50대 미만	37.3	62.7	32.1	67.9	39.6	60.4	54.7	45.3	28.8	71.2	39.6	60.4	
	50대 이상	21.6	78.4	15.3	84.7	20.7	79.3	43.8	56.3	8.2	91.8	47.3	52.7	
장애인 유형	신체장애	23.4	76.6	14.3	85.7	24.6	75.4	46.5	53.5	12.2	87.8	46.0	54.0	
	내부/정신장애	36.1	63.9	41.7	58.3	33.3	66.7	50.0	50.0	21.6	78.4	40.5	59.5	
장애 등급	1-2급	28.4	71.6	23.5	76.5	33.8	66.2	44.9	55.1	19.1	80.9	45.7	54.3	
	2-3급	21.6	78.4	15.7	84.3	17.6	82.4	52.9	47.1	9.8	90.2	51.0	49.0	
	4-5급	29.3	70.7	21.4	78.6	26.2	73.8	42.9	57.1	15.0	85.0	39.0	61.0	
전체		26.5	73.5	21.2	78.8	27.3	72.7	47.3	52.7	14.8	85.2	44.8	55.2	
성별	남성	9.8	90.2	7.3	92.7	14.6	85.4	12.2	87.8	17.1	82.9	22.5	77.5	
	여성	7.2	92.8	6.2	93.8	11.3	88.7	12.4	87.6	15.5	84.5	45.4	54.6	
소득	300만원 미만	10.0	90.0	10.0	90.0	12.9	87.1	10.0	90.0	18.6	81.4	38.6	61.4	
	300만원 이상	5.9	94.1	2.9	97.1	11.8	88.2	14.7	85.3	13.2	86.8	38.8	61.2	
장애인 부모	자녀	발달장애	6.6	93.4	8.2	91.8	16.4	83.6	11.5	88.5	19.7	80.3	37.7	62.3
	장애	자폐성장애	9.4	90.6	7.5	92.5	13.2	86.8	15.1	84.9	15.1	84.9	47.2	52.8
유형	중복장애	8.3	91.7		100.0		100.0	8.3	91.7	8.3	91.7	21.7	78.3	
	자녀	모두도움필요	9.7	90.3	3.2	96.8	12.9	87.1	12.9	87.1	16.1	83.9	48.4	51.6
생활	일부도움필요	7.0	93.0	9.3	90.7	12.8	87.2	12.8	87.2	16.3	83.7	35.3	64.7	
	능력	혼자생활가능	9.5	90.5		100.0	9.5	90.5	9.5	90.5	14.3	85.7	38.1	61.9
전체		8.0	92.0	6.5	93.5	12.3	87.7	12.3	87.7	15.9	84.1	38.7	61.3	
성별	남성	15.6	84.4	21.9	78.1	25.0	75.0	31.3	68.8	15.6	84.4	21.9	78.1	
	여성	10.9	89.1	21.8	78.2	20.0	80.0	23.6	76.4	18.2	81.8	16.4	83.6	
장애인 전문가	근무 기관	이용시설	13.0	87.0	20.8	79.2	18.2	81.8	24.7	75.3	18.2	81.8	16.9	83.1
	교육기관	9.1	90.9	27.3	72.7	45.5	54.5	36.4	63.6	9.1	90.9	27.3	72.7	
근무 경력	5년 미만	7.7	92.3	23.1	76.9	26.9	73.1	26.9	73.1	15.4	84.6	15.4	84.6	
	5년 이상	14.5	85.5	21.0	79.0	19.4	80.6	25.8	74.2	17.7	82.3	19.4	80.6	
전체		12.5	87.5	21.6	78.4	21.6	78.4	26.1	73.9	17.0	83.0	18.2	81.8	
전체 케이스		16.8	83.2	16.1	83.9	20.7	79.3	30.2	69.8	15.7	84.3	36.7	63.3	

-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30.2%,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의 이용경험은 36.7%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비해 이용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47.3%)과 장애인 전문가(26.1%)의 경우 장애인문화여가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가장 많았으나 장애인부모는 장애인체육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이 38.7%로 가장 많았음
- 한편, 인권상담 교육지원의 이용경험은 장애인이 26.5%로 장애인 부모(8.0%)와 장애인 전문가(12.5%)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는 50대 미만 장애인이 37.3%, 장애 유형별로 내부 및 정신장애인이 36.1%로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IV-9〉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1

대상	구분	일상생활지원					심리재활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2.6	7.9	39.5	39.5	10.5	21.7	47.8	26.1	4.3	
	여성	4.8	7.1	28.6	47.6	11.9	23.5	35.3	35.3	5.9	
연령	50대 미만		6.5	45.2	35.5	12.9	16.0	48.0	32.0	4.0	
	50대 이상	6.0	8.0	28.0	48.0	10.0	31.3	31.3	31.3	6.3	
장애인 유형	신체장애	4.5	6.0	35.8	41.8	11.9	25.9	40.7	25.9	7.4	
	내부/정신장애	8.3	33.3	50.0	8.3	8.3	41.7	50.0			
장애 등급	1-2급	4.3	8.7	39.1	37.0	10.9	15.0	55.0	25.0	5.0	
	2-3급	4.0	4.0	16.0	60.0	16.0	30.0	20.0	50.0		
	4-5급		11.1	55.6	33.3		33.3	33.3	22.2	11.1	
	전체	3.7	7.4	34.6	43.2	11.1	22.0	41.5	31.7	4.9	
성별	남성		17.6	14.7	67.6		33.3		66.7		
	여성	1.3	1.3	7.5	16.3	73.8	7.7	38.5	46.2	7.7	
소득	300만원 미만	1.8	1.8	9.1	16.4	70.9	8.3	33.3	25.0	33.3	
	300만원 이상			11.9	15.3	72.9		40.0	30.0	30.0	
장애인 부모	자녀 발달장애		2.1	4.3	21.3	72.3	7.1	42.9	14.3	35.7	
	장애인 자폐성장애			13.6	9.1	77.3		66.7	33.3		
유형	중복장애	4.3		17.4	17.4	60.9		60.0	40.0		
	자녀 모두도움필요			12.0	20.0	68.0		71.4	14.3	14.3	
생활	일부도움필요	1.4	1.4	11.4	11.4	74.3	10.0	30.0	20.0	40.0	
	능력 혼자생활가능			5.3	26.3	68.4		60.0	40.0		
	전체	.9	.9	10.5	15.8	71.9	4.5	36.4	27.3	31.8	
	성별	남성	10.0		30.0	60.0	16.7	16.7	66.7		
장애인 전문가	여성		5.9	41.2	41.2	11.8		64.3	28.6	7.1	
	근무 기관	이용시설	5.0		35.0	50.0	10.0	6.3	37.5	50.0	6.3
근무 경력	교육기관		14.3	42.9	42.9			100.0			
	5년 미만		16.7	50.0	16.7	16.7	20.0	60.0		20.0	
	5년 이상	4.8		33.3	57.1	4.8		46.7	53.3		
	전체	3.7	3.7	37.0	48.1	7.4	5.0	50.0	40.0	5.0	
전체 케이스		2.3	3.6	22.5	29.7	41.9	13.3	42.2	32.5	12.0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한다가 41.9%로 나타났고, 심리재활지원서비스의 경우 보통 42.2%, 만족 32.5% 등으로 만족도가 높기는 하나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43.2%)과 장애인 전문가(48.1%)는 만족한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 부모의 경우 매우 만족이 71.9%로 나타나 장애인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심리재활지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 부모는 매우 만족이 31.8%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과 장애인 전문가는 만족한다가 각각 31.7%, 40.0%로 장애인부모에 비해 만족도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IV-10〉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2

대상	구분	직업훈련지원						직업재활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장애인	성별 남성	2.9	14.7	44.1	29.4	8.8	3.7	14.8	37.0	40.7	3.7		
	성별 여성		21.4	64.3	14.3			26.7	66.7	6.7			
	연령 50대 미만		7.1	60.7	25.0	7.1		12.0	60.0	24.0	4.0		
	연령 50대 이상	4.8	28.6	33.3	28.6	4.8	5.6	27.8	27.8	38.9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3.3	16.7	50.0	20.0	10.0	3.2	19.4	48.4	25.8	3.2		
	장애 1-2급	4.0	8.0	64.0	16.0	8.0	4.2	12.5	54.2	25.0	4.2		
	장애 2-3급		26.7	26.7	40.0	6.7		27.3	36.4	36.4			
	장애 4-5급		25.0	37.5	37.5			28.6	28.6	42.9			
	장애 전체	2.0	16.3	49.0	26.5	6.1	2.3	18.6	46.5	30.2	2.3		
	성별 남성		100.0										
장애인 부모	성별 여성		60.0	20.0	20.0			66.7		33.3			
	소득 300만원 미만		66.7	33.3				100.0					
	소득 300만원 이상		33.3	33.3	33.3				100.0				
	자녀 발달장애		50.0	50.0				100.0					
	장애 자폐성장애		66.7	33.3				100.0					
	유형 중복장애			100.0					100.0				
	자녀 모두도움필요		100.0										
	생활 일부도움필요		40.0	40.0	20.0			66.7		33.3			
	능력 혼자생활가능												
	장애 전체	50.0	33.3	16.7			66.7		33.3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11.1	33.3	55.6				57.1	42.9				
	성별 여성	15.8	52.6	15.8	15.8		11.8	64.7	11.8	11.8			
	근무 이용시설	14.3	52.4	28.6	4.8		5.0	70.0	20.0	5.0			
	근무 교육기관	14.3	28.6	28.6	28.6		25.0	25.0	25.0	25.0			
	근무 5년 미만	25.0	37.5	25.0	12.5		16.7	50.0	16.7	16.7			
	경력 5년 이상	10.0	50.0	30.0	10.0		5.6	66.7	22.2	5.6			
	전체	14.3	46.4	28.6	10.7		8.3	62.5	20.8	8.3			
	전체 케이스	1.2	18.1	47.0	26.5	7.2	1.4	17.1	50.0	27.1	4.3		

- 직업훈련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26.5%, 매우 만족한다 7.2%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업재활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 27.1%, 매우 만족 43%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장애인 부모의 경우 직업훈련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50.0%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재활지원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불만족이 66.7%로 나타나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직업훈련지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남성의 경우 55.6%로 여성 15.8%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업재활지원서비스 또한 만족한다고 남성이 42.9%로 여성 11.8%보다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정도에 그치고 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IV-11〉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3

대상	구분	취업고용지원					주간보호(돌봄)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3.0	12.1	42.4	39.4	3.0	8.0	12.0	48.0	20.0	12.0
	여성	44.4	44.4		11.1		5.9	23.5	29.4	29.4	11.8
연령	50대 미만	12.5	45.8	37.5	4.2		23.5	52.9	17.6	5.9	
	50대 이상	5.3	26.3	36.8	31.6		12.5	12.5	29.2	29.2	16.7
장애 유형	신체장애인	3.3	23.3	43.3	30.0		8.6	17.1	37.1	22.9	14.3
	내부/정신장애인			45.5	45.5	9.1			75.0	25.0	
장애 등급	1~2급	23.8	47.6	28.6			15.4	42.3	26.9	15.4	
	2~3급	8.3	16.7	25.0	41.7	8.3	28.6	28.6	14.3	28.6	
	4~5급		12.5	37.5	50.0		14.3	14.3	42.9	14.3	14.3
	전체	2.3	18.6	41.9	34.9	2.3	7.1	16.7	40.5	23.8	11.9
성별	남성						33.3	8.3	41.7	16.7	
	여성	33.3	33.3	33.3			38.5	15.4	30.8	15.4	
소득	300만원 미만	100.0					36.4	36.4	27.3		
	300만원 이상			50.0	50.0		35.7	21.4	35.7	7.1	
장애 부모	자녀 별들장애	100.0					54.5	36.4	9.1		
	장애 자폐성장애		100.0				10.0	30.0	40.0	20.0	
	유형 중복장애			100.0			50.0	25.0	25.0		
	자녀 모두도움필요						100.0				
생활	일부도움필요	33.3	33.3	33.3			33.3	12.5	37.5	16.7	
	능력 혼자생활가능										
	전체	33.3	33.3	33.3			36.0	12.0	36.0	16.0	
성별	남성	42.9	57.1				10.0	60.0	30.0		
	여성	6.3	43.8	37.5	12.5			78.6	7.1	14.3	
장애 전문가	근무 이용시설	5.3	47.4	42.1	5.3		5.0	65.0	20.0	10.0	
	교육기관		25.0	50.0	25.0			100.0			
	근무 5년 미만	50.0	33.3	16.7				71.4	14.3	14.3	
	경력 5년 이상	5.9	41.2	47.1	5.9		5.9	70.6	17.6	5.9	
	전체	4.3	43.5	43.5	8.7		4.2	70.8	16.7	8.3	
	전체 케이스	1.4	14.5	42.0	37.7	4.3	4.4	17.6	40.7	25.3	12.1

- 취업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만족이 37.7%, 매우만족 4.3%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간보호지원서비스 역시 만족이 25.3%, 매우 만족 12.1%로 불만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대상별로 보게 되면 장애인의 경우 취업고용지원서비스를 만족하는 경우 남성이 39.4%로 여성 11.1%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 미만 장애인이 37.5%, 장애 유형별로는 내부 및 신체장애인이 45.5%, 장애 등급별로는 4~5급 장애인이 50.0%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간보호지원서비스를 만족하는 경우를 대상별로 보게 되면 장애인의 경우는 여성 장애인이 29.4%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부모의 경우 남성이 41.7%, 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역시 남성이 30.0%로 성별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음

〈표IV-12〉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4

대상	구분	야간보호(돌봄)지원					주거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장애인	성별 남성	5.3	21.1	57.9	10.5	5.3	8.7	17.4	39.1	30.4	4.3
	여성	11.1	11.1	66.7	11.1		7.7	7.7	61.5	23.1	
	연령 50대 미만		21.4	57.1	14.3	7.1	6.7	6.7	46.7	40.0	
	50대 이상	15.4	15.4	61.5	7.7		10.0	20.0	45.0	20.0	5.0
	장애 유형 신체장애	9.1	13.6	63.6	9.1	4.5	10.3	10.3	48.3	27.6	3.4
	내부/정신장애	33.3	66.7				25.0	50.0	25.0		
	장애 등급 1-2급	5.6	11.1	66.7	11.1	5.6	10.0	10.0	40.0	35.0	5.0
	2-3급	25.0	25.0	25.0	25.0		12.5	12.5	37.5	37.5	
	4-5급		50.0	50.0			33.3	66.7			
	전체	7.1	17.9	60.7	10.7	3.6	8.3	13.9	47.2	27.8	2.8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100.0			50.0			50.0	
	여성			100.0					100.0		
	소득 300만원 미만			100.0			33.3		33.3	33.3	
	300만원 이상			50.0	50.0						
	자녀 빌딩장애			50.0	50.0				50.0	50.0	
	장애 자폐성장애			100.0			100.0				
	유형 중복장애										
	자녀 모두도움필요										
	생활 일부도움필요			25.0	75.0		33.3		33.3	33.3	
	능력 혼자생활기능										
장애인 전문가	전체			25.0	75.0		33.3		33.3	33.3	
	성별 남성	12.5		62.5	25.0				57.1	42.9	
	여성		9.1	81.8		9.1			78.6	14.3	7.1
	근무 이용시설	6.7	6.7	66.7	13.3	6.7			64.7	29.4	5.9
	기관 교육기관			100.0					100.0		
	근무 5년 미만			66.7	16.7	16.7			71.4	14.3	14.3
	경력 5년 이상	7.7	7.7	76.9	7.7				71.4	28.6	
	전체	5.3	5.3	73.7	10.5	5.3			71.4	23.8	4.8
	전체 케이스	5.9	11.8	60.8	11.8	9.8	6.7	8.3	53.3	26.7	5.0

- 야간보호지원서비스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만족이 11.8%, 매우만족 9.8%로 낮은 수준이었고 주거지원서비스의 경우 만족이 26.7%, 매우 만족 5.0%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야간보호지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은 만족 10.7%, 매우 만족 3.6%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 전문가 또한 만족이 10.5%, 매우 만족이 5.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장애인부모의 경우 만족 25.0%, 매우만족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주거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전문가는 만족이 23.8%, 매우 만족 4.8%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보통이 71.4%, 불만족이 0%로 주거지원에 대한 불만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IV-13〉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5

대상	구분	탈시설 자립지원					보건의료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장애인	성별 남성	4.8	9.5	47.6	33.3	4.8	5.6	13.9	41.7	22.2	16.7
	여성	27.3	63.6	9.1			3.8	7.7	50.0	23.1	15.4
	연령 50대 미만		17.6	41.2	35.3	5.9		10.0	50.0	35.0	5.0
	50대 이상	7.1	14.3	64.3	14.3		7.1	11.9	40.5	19.0	21.4
	장애 유형 신체장애		15.4	57.7	23.1	3.8	5.8	11.5	42.3	26.9	13.5
	내부/정신장애	33.3		33.3					62.5	12.5	25.0
	장애 등급 1-2급	5.0	15.0	45.0	30.0	5.0	3.4	6.9	48.3	27.6	13.8
	2-3급		16.7	66.7	16.7			23.1	46.2	23.1	7.7
	4-5급		25.0	50.0	25.0		11.1	11.1	27.8	22.2	27.8
	전체	3.1	15.6	53.1	25.0	3.1	4.8	11.1	44.4	23.8	15.9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100.0				18.2	27.3	54.5
	여성						3.3	13.3	20.0	63.3	
	소득 300만원 미만				100.0		3.8	7.7	30.8	57.7	
	300만원 이상							26.7	6.7	66.7	
	자녀 별들장애							10.5	15.8	73.7	
	장애 자폐성장애				100.0			25.0	25.0	50.0	
	유형 중복장애						16.7		33.3	50.0	
	자녀 모두도움필요							22.2	11.1	66.7	
	생활 일부도움필요						3.2	12.9	25.8	58.1	
	능력 혼자생활가능				100.0					100.0	
장애인 전문가	전체				100.0		2.4	14.6	22.0	61.0	
	성별 남성		66.7	33.3				57.1	42.9		
	여성	8.3	66.7	16.7	8.3			66.7	26.7	6.7	
	근무 이용시설	7.1	57.1	28.6	7.1			62.5	31.3	6.3	
	기관 교육기관		100.0					66.7	33.3		
	근무 5년 미만		80.0		20.0			80.0		20.0	
	경력 5년 이상	7.7	61.5	30.8				58.8	41.2		
전체 케이스	전체	5.6	66.7	22.2	5.6			63.6	31.8	4.5	
	케이스	2.0	11.8	56.9	23.5	5.9	2.4	6.3	38.1	24.6	28.6

- 탈시설 자립지원의 경우 만족한다 23.5%로 매우 만족한다 5.9%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지원서비스의 경우 만족 24.6%, 매우만족 28.6%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탈시설 자립지원의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의 경우 만족이 25.0%, 장애인전문가 역시 만족이 23.5%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부모의 경우 매우 만족이 100.0%로 대상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대상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부모의 경우 매우 만족이 61.0%, 만족이 22.0%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매우 만족 15.9%, 장애인 전문가는 매우 만족 4.5%로 큰 차이가 있었음
- 탈시설 자립지원서비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에 대한 만족수준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표IV-14〉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6

대상	구분	인권상담/교육지원					사회적응훈련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장애인	성별 남성	6.7	13.3	53.3	20.0	6.7	12.5	9.4	34.4	37.5	6.3
	여성	8.3	66.7	4.2	20.8		13.3	53.3	26.7	6.7	
	연령 50대 미만	8.0	64.0	20.0	8.0	4.2	8.3	54.2	29.2	4.2	
	50대 이상	7.1	14.3	53.6	7.1	17.9	13.0	13.0	26.1	39.1	8.7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5.4	8.1	59.5	10.8	16.2	9.7	9.7	41.9	32.3	6.5
	장애 1-2급	3.6	17.9	53.6	7.1	17.9	12.0	12.0	36.0	36.0	4.0
	2-3급	7.1		71.4	21.4		7.7	7.7	46.2	30.8	7.7
	4-5급		10.0	50.0	20.0	20.0		12.5	37.5	37.5	12.5
	전체	3.7	11.1	59.3	13.0	13.0	8.5	10.6	40.4	34.0	6.4
	성별 남성		75.0		25.0		33.3				66.7
장애인 부모	여성		37.5	37.5	25.0		33.3	50.0			16.7
	소득 300만원 미만		25.0	62.5	12.5		14.3	42.9			42.9
	300만원 이상		25.0	25.0	50.0		100.0				
	자녀 발달장애		20.0	80.0			40.0	20.0			40.0
	장애 자폐성장애		40.0	40.0	20.0		25.0	50.0			25.0
	유형 중복장애			100.0							
	자녀 모두도움필요		33.3	66.7			100.0				
	생활 일부도움필요		28.6	42.9	28.6		25.0	37.5			37.5
	능력 혼자생활기능			50.0	50.0						
	전체		25.0	50.0	25.0			33.3	33.3	33.3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33.3	66.7			40.0	50.0	10.0		
	여성		7.7	61.5	23.1	7.7		46.7	40.0	13.3	
	근무 이용시설		5.6	44.4	44.4	5.6		47.6	38.1	14.3	
	기관 교육기관			75.0	25.0			25.0	75.0		
	근무 5년 미만			80.0		20.0		42.9	42.9	14.3	
	경력 5년 이상		5.9	41.2	52.9			44.4	44.4	11.1	
	전체		4.5	50.0	40.9	4.5		44.0	44.0	12.0	
전체 케이스		2.3	11.4	55.7	18.2	12.5	4.9	6.2	40.7	37.0	11.1

- 인권상담 및 교육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0.7%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사회적응훈련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4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상담 및 교육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만족이 40.9%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에 비해 인권상담과 교육지원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응훈련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는 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만족이 44.0%로 장애인(34.0%)과 장애인 부모(33.3%)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이 교육기관인 전문가 일수록 만족도가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는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인권상담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

〈표IV-15〉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7

대상	구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장애인	성별 남성	5.6	16.7	36.1	30.6	11.1	8.1	8.1	35.1	27.0	21.6
	여성		25.0	56.3	18.8		11.4	37.1	20.0	31.4	
	연령 50대 미만		14.8	44.4	33.3	7.4	3.0	12.1	42.4	24.2	18.2
	50대 이상	8.0	24.0	40.0	20.0	8.0	5.1	7.7	28.2	25.6	33.3
	유형 신체장애	5.3	21.1	42.1	23.7	7.9	5.8	7.7	32.7	26.9	26.9
	내부/정신장애		8.3	50.0	41.7		11.1	44.4	22.2	22.2	
	장애 1-2급	3.3	13.3	50.0	20.0	13.3	5.6	11.1	41.7	22.2	19.4
	2-3급	8.3	33.3	33.3	25.0		5.6	5.6	38.9	27.8	22.2
	등급 4-5급		22.2	22.2	55.6		12.5	12.5	31.3	43.8	
	전체	3.8	19.2	42.3	26.9	7.7	4.1	9.6	35.6	24.7	26.0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16.7	16.7	33.3		33.3	20.0		20.0	40.0	20.0
	여성		27.3	54.5		18.2			41.7	33.3	25.0
	소득 300만원 미만	11.1	11.1	44.4		33.3	14.3		14.3	42.9	28.6
	300만원 이상		37.5	50.0		12.5			50.0	30.0	20.0
	자녀 발달장애	10.0	10.0	50.0		30.0	14.3		14.3	28.6	42.9
	장애 자폐성장애		42.9	42.9		14.3			50.0	37.5	12.5
	유형 중복장애								50.0	50.0	
	자녀 모두도움필요	25.0	25.0	50.0			25.0		75.0		
	생활 일부도움필요		27.3	54.5		18.2			27.3	54.5	18.2
	능력 혼자생활가능					100.0					100.0
	전체	5.9	23.5	47.1		23.5	5.9		35.3	35.3	23.5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40.0	40.0	20.0	8.3	8.3	25.0	33.3	25.0
	여성	6.7		40.0	40.0	13.3	6.3		31.3	43.8	18.8
	근무 이용시설	5.0		40.0	40.0	15.0	8.3	4.2	29.2	37.5	20.8
	기관 교육기관			40.0	40.0	20.0			25.0	50.0	25.0
	근무 5년 미만			42.9	42.9	14.3		14.3	14.3	42.9	28.6
	경력 5년 이상	5.6		38.9	38.9	16.7	9.5		33.3	38.1	19.0
	전체	4.0		40.0	40.0	16.0	7.1	3.6	28.6	39.3	21.4
	전체 케이스	4.3	14.9	42.6	25.5	12.8	5.1	6.8	33.9	29.7	24.6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은 전체적으로 만족이 25.5%, 불만족 12.8%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서비스의 경우 만족이 29.7%, 불만족 24.6%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의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만족한다를 기준으로 장애인 전문가가 40.0%로 다른 대상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부모의 경우 매우 만족이 2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4~5등급 장애인의 매우 만족이 43.8%로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 부모의 경우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의 매우 만족이 42.9%로 나타나 대상별 특성에 따라서도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IV-16〉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8

대상	구분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11.5	11.5	50.0	23.1	3.8	5.4	10.8	35.1	18.9	29.7
	여성		31.3	50.0		18.8	6.3	9.4	37.5	3.1	43.8
연령	50대 미만	4.0	16.0	56.0	12.0	12.0		8.0	48.0	16.0	28.0
	50대 이상	12.5	25.0	37.5	18.8	6.3	9.1	11.4	27.3	11.4	40.9
장애 유형	신체장애	10.3	17.2	44.8	20.7	6.9	7.5	9.4	32.1	15.1	35.8
	내부/정신장애		20.0	70.0		10.0		7.1	50.0	7.1	35.7
장애 등급	1-2급	9.1	13.6	54.5	18.2	4.5	8.6	8.6	40.0	14.3	28.6
	2-3급	9.1	36.4	36.4	9.1	9.1	5.9	17.6	41.2	5.9	29.4
	4-5급		14.3	42.9	14.3	28.6		6.3	12.5	18.8	62.5
	전체	7.1	19.0	50.0	14.3	9.5	5.7	10.0	35.7	12.9	35.7
성별	남성	14.3		42.9	14.3	28.6	11.1		11.1	22.2	55.6
	여성			53.3	13.3	33.3			9.1	20.5	70.5
소득	300만원 미만	7.7		46.2	15.4	30.8	3.7		7.4	25.9	63.0
	300만원 이상			55.6	11.1	33.3			11.5	15.4	73.1
장애인 부모	자녀 별들장애	8.3		41.7	16.7	33.3	4.3		8.7	34.8	52.2
	장애 자폐성장애			62.5		37.5			12.0	8.0	80.0
유형	증복장애			50.0	50.0				20.0	80.0	
	자녀 모두도움필요	20.0		80.0			6.7		20.0	13.3	60.0
생활	일부도움필요			50.0	21.4	28.6			6.7	26.7	66.7
	능력 혼자생활가능					100.0				12.5	87.5
	전체	4.5		50.0	13.6	31.8	1.9		9.4	20.8	67.9
	성별		남성	10.0	40.0	40.0	10.0		11.1	33.3	44.4
장애인 전문가	여성	6.7		60.0	26.7	6.7	7.7	7.7	38.5	38.5	7.7
	기관 이용시설	4.8	4.8	42.9	38.1	9.5	5.6	5.6	38.9	38.9	11.1
근무	교육기관			100.0					25.0	25.0	50.0
	5년 미만			66.7	16.7	16.7			40.0	20.0	20.0
경력	5년 이상	5.3	5.3	47.4	36.8	5.3	5.9		41.2	47.1	5.9
	전체	4.0	4.0	52.0	32.0	8.0	4.5	9.1	36.4	40.9	9.1
전체 케이스		5.6	10.1	50.6	19.1	14.6	4.1	6.2	26.2	20.0	43.4

- 장애인 가족지원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이 19.1%, 매우 만족이 14.6%로 전체 만족도가 33.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가 20.0%, 매우 만족 43.4%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족지원의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의 경우 만족이 14.3%, 매우 만족 9.5% 등으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부모는 매우 만족이 31.8%, 장애인 전문가는 만족이 32.0%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만족도는 장애인 부모의 경우 매우 만족이 67.9%로 장애인과 장애인 전문가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IV-17〉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1

대상	구분	일상생활지원					심리재활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1.3	3.9	19.7	13.2	61.8	1.3	5.3	21.1	17.1	55.3
	여성	2.7	15.1	11.0	71.2		4.4	19.1	25.0	51.5	
	연령 50대 미만		31.8	9.1	59.1		4.9	34.1	12.2	48.8	
	50대 이상	.9	4.7	11.3	14.2	68.9	1.0	4.8	14.4	25.0	54.8
	장애 신체장애인	.8	4.2	19.2	12.5	63.3	.9	6.5	22.2	22.2	48.1
	유형 내부/정신장애			7.1	10.7	82.1			11.4	17.1	71.4
	장애 1-2급	1.5	6.1	13.6	9.1	69.7	1.9	3.8	26.4	18.9	49.1
	2-3급			16.3	11.6	72.1		4.1	12.2	20.4	63.3
	등급 4-5급		2.5	22.5	20.0	55.0		7.3	19.5	26.8	46.3
	전체	.7	3.3	17.3	12.7	66.0	.7	4.8	20.0	21.4	53.1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4	2.4	9.8	85.4		12.2	17.1	70.7	
	여성			4.1	6.2	89.7		19.6	13.4	67.0	
	소득 300만원 미만			5.7	8.6	85.7		22.9	10.0	67.1	
	300만원 이상		1.5	1.5	5.9	91.2		11.8	19.1	69.1	
	자녀 빌딩장애인		1.6	4.9	9.8	83.6		16.4	13.1	70.5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3.8	5.7	90.6		24.5	17.0	58.5	
	유형 중복장애인				4.2	95.8		4.2	12.5	83.3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6.5	90.3		19.4	16.1	64.5	
	생활 일부도움필요		1.2	4.7	5.8	88.4		18.6	11.6	69.8	
	능력 혼자생활가능				14.3	85.7		9.5	23.8	66.7	
	전체	.7	3.6	7.2	88.4			17.4	14.5	68.1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3.2		19.4	41.9	35.5		3.3	26.7	36.7	33.3
	여성	1.9		19.2	26.9	51.9	1.9		24.1	22.2	51.9
	근무 이용시설	2.6		14.3	36.4	46.8	1.3	1.3	18.2	31.2	48.1
	기관 교육기관			71.4		28.6			87.5		12.5
	근무 5년 미만				20.0	28.0	52.0		4.0	20.0	24.0
	경력 5년 이상	3.4		18.6	35.6	42.4	1.7		26.7	30.0	41.7
	전체	2.4		19.0	33.3	45.2	1.2	1.2	24.7	28.2	44.7
	전체 케이스	.8	1.6	12.6	15.3	69.6	.5	2.2	20.1	20.4	56.8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69.6%, 조금 이용하고 싶다 15.3%로 나타나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심리재활지원서비스의 이용의향 역시 매우 이용하고 싶다 56.8%, 조금 이용하고 싶다 20.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매우 이용하고 싶은 경우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남성(35.5%)에 비해 여성(51.9%)의 이용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별로는 이용시설 전문가(46.8%)가 교육기관 전문가(28.6%)에 비해 이용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유형별로 심리재활지원서비스를 매우 이용하고 싶은 경우를 보면 내부 및 정신장애인의 이용의향이 71.4%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V-18〉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2

대상	구분	직업훈련지원					직업재활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2.6	6.6	23.7	14.5	52.6	2.7	5.4	25.7	10.8	55.4
	여성	7.6	18.2	18.2	56.1		9.8	16.4	18.0	55.7	
	연령 50대 미만	4.8	35.7	16.7	42.9		3.0	33.3	12.1	51.5	
	50대 이상	2.0	7.9	14.9	15.8	59.4	1.9	8.7	17.5	14.6	57.3
	장애 신체장애인	.9	8.2	22.7	16.4	51.8	1.0	8.6	23.8	14.3	52.4
	유형 내부(정신장애인)	3.2	3.2	12.9	12.9	67.7	3.4	3.4	10.3	10.3	72.4
	장애 1-2급	3.7	3.7	25.9	16.7	50.0	3.9	7.8	25.5	9.8	52.9
	2-3급		4.1	14.3	16.3	65.3		2.2	15.6	11.1	71.1
	등급 4-5급		15.4	20.5	15.4	48.7		12.8	20.5	23.1	43.6
	전체	1.4	7.0	21.0	16.1	54.5	1.5	7.4	21.3	14.0	55.9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4	4.9	92.7			2.4	97.6		
	여성		5.2	4.1	90.7			4.1	3.1	92.8	
	소득 300만원 미만		5.7	2.9	91.4			4.3	2.9	92.9	
	300만원 이상		2.9	5.9	91.2			1.5	2.9	95.6	
	자녀 발달장애인		4.9	1.6	93.4			3.3	1.6	95.1	
	장애 자폐성장애인		3.8	7.5	88.7			1.9	3.8	94.3	
	유형 중복장애인		4.2	4.2	91.7			4.2	4.2	91.7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3.2	90.3			6.5		93.5	
	생활 일부도움필요		4.7	3.5	91.9			2.3	4.7	93.0	
	능력 혼자생활가능			9.5	90.5					100.0	
	전체		4.3	4.3	91.3			2.9	2.9	94.2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1.9	40.6	37.5			23.3	33.3	43.3	
	여성	1.8	3.6	23.6	20.0	50.9	1.9	1.9	22.2	22.2	51.9
	근무 이용시설	1.3	2.6	20.8	29.9	45.5	1.3	1.3	19.5	28.6	49.4
	기관 교육기관			36.4	18.2	45.5			50.0	12.5	37.5
	근무 5년 미만			15.4	30.8	53.8			12.0	32.0	56.0
	경력 5년 이상	1.6	3.2	25.8	27.4	41.9	1.7	1.7	26.7	25.0	45.0
	전체	1.1	2.3	22.7	28.4	45.5	1.2	1.2	22.4	27.1	48.2
전체 케이스		.8	3.3	15.2	14.6	66.1	.8	3.1	14.5	12.8	68.8

- 직업훈련지원서비스의 이용 의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66.1%로 이용의향이 높은 수준이었고, 직업재활지원서비스 역시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68.8%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부모의 경우 직업훈련지원서비스의 경우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91.3%, 직업재활지원서비스 역시 매우 이용하고 싶다 94.2%로 나타나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의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내부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훈련지원 이용의향이 매우 높다가 67.7%로 나타나 신체장애인(51.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업재활지원서비스 역시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72.4%로 신체장애인 52.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직업재활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19〉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3

대상	구분	취업고용지원					주간보호(돌봄)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2.7	6.7	20.0	17.3	53.3	4.1	5.4	28.4	10.8	51.4
	여성		6.2	16.9	15.4	61.5	1.7	6.7	16.7	23.3	51.7
	연령 50대 미만	5.4	21.6	18.9	54.1		3.1	9.4	31.3	15.6	40.6
	50대 이상	1.9	6.7	17.3	15.4	58.7	2.9	4.9	20.6	16.7	54.9
	장애 신체장애인	.9	8.2	20.9	18.2	51.8	3.9	6.8	27.2	17.5	44.7
	유형 내부(정신장애인)	3.4		6.9	6.9	82.8		3.4	6.9	10.3	79.3
	장애 1-2급	3.8	7.5	20.8	18.9	49.1	5.9	5.9	21.6	13.7	52.9
	2-3급		2.1	14.9	6.4	76.6	2.3	9.1	22.7	18.2	47.7
	등급 4-5급		10.0	17.5	25.0	47.5		2.6	23.7	18.4	55.3
	전체	1.4	6.4	18.4	16.3	57.4	3.0	6.0	23.1	16.4	51.5
장애인부모	성별 남성			2.4	97.6		9.8	2.4	2.4	85.4	
	여성			4.1	5.2	90.7	5.2	2.1	6.2	6.2	80.4
	소득 300만원 미만			2.9	4.3	92.9	1.4	1.4	7.1	5.7	84.3
	300만원 이상			2.9	4.4	92.6	5.9	7.4	2.9	4.4	79.4
	자녀 발달장애인			3.3	1.6	95.1	3.3	8.2	3.3	4.9	80.3
	장애 자폐성장애인			1.9	5.7	92.5	5.7	1.9	5.7	3.8	83.0
	유형 중복장애인			4.2	8.3	87.5		8.3	8.3	8.3	83.3
	자녀 모두도움필요			9.7	3.2	87.1	3.2	3.2	3.2		90.3
	생활 일부도움필요			1.2	5.8	93.0	4.7	5.8	5.8	5.8	77.9
	능력 혼자생활가능					100.0		4.8	9.5		85.7
	전체			2.9	4.3	92.8	3.6	4.3	5.1	5.1	81.9
장애인전문가	성별 남성			22.6	29.0	48.4			36.7	33.3	30.0
	여성	1.9	3.7	16.7	25.9	51.9	1.9	1.9	24.1	22.2	50.0
	근무 이용시설	1.3	2.6	18.2	27.3	50.6	1.3	1.3	24.7	26.0	46.8
	기관 교육기관			22.2	33.3	44.4			62.5	37.5	
	근무 5년 미만			12.0	32.0	56.0			24.0	20.0	56.0
경력	5년 이상	1.6	3.3	21.3	26.2	47.5	1.7	1.7	30.0	30.0	36.7
	전체	1.2	2.3	18.6	27.9	50.0	1.2	1.2	28.2	27.1	42.4
	전체 케이스	.8	3.0	12.6	14.5	69.0	2.8	4.2	17.4	14.6	61.1

- 취업고용지원서비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69.0%로 높게 나타났고 주간보호지원 서비스 역시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61.1%로 이용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부모의 경우 취업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92.8%, 주간보호지원서비스 역시 매우 이용하고 싶다 81.9%로 나타나 취업과 돌봄서비스의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내부 및 정신장애인의 취업고용지원 이용의향이 매우 높다가 82.8%로 나타나 신체장애인(51.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간보호지원 서비스 역시 매우 이용하고 싶다가 79.3%로 신체장애인 44.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IV-20〉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4

대상	구분	야간보호(돌봄)지원					주거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4.1	4.1	28.4	9.5	54.1	2.7	4.1	16.2	10.8	66.2
	여성	3.3	8.2	23.0	21.3	44.3	9.8	19.7	13.1	57.4	
	연령 50대 미만	3.0	15.2	30.3	15.2	36.4	12.1	24.2	18.2	45.5	
	50대 이상	3.9	2.9	24.5	14.7	53.9	1.9	4.9	15.5	10.7	67.0
	장애 유형 신체장애	4.8	6.7	30.8	15.4	42.3	1.9	7.5	19.8	13.2	57.5
	내부/정신장애	3.4	6.9	10.3	79.3		3.6	7.1	7.1	82.1	
	장애 등급 1-2급	7.7	3.8	30.8	9.6	48.1	1.9	3.8	23.1	13.5	57.7
	2-3급	2.3	9.1	25.0	13.6	50.0	2.2	4.4	17.8	8.9	66.7
	4-5급		5.3	18.4	23.7	52.6		13.2	7.9	15.8	63.2
	전체	3.7	5.9	25.9	14.8	49.6	1.5	6.6	17.6	12.5	61.8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14.6	2.4	9.8	9.8	63.4	7.3	7.3	4.9	2.4	78.0
	여성	9.3	2.1	8.2	14.4	66.0	2.1	2.1	10.3	8.2	77.3
	소득 300만원 미만	7.1	1.4	14.3	14.3	62.9	1.4	4.3	8.6	10.0	75.7
	300만원 이상	14.7	2.9	2.9	11.8	67.6	5.9	2.9	8.8	2.9	79.4
	자녀 발달장애	14.8		9.8	8.2	67.2	3.3	4.9	9.8	8.2	73.8
	장애 자폐성장애	7.5	5.7	11.3	18.9	56.6	5.7	1.9	9.4	5.7	77.4
	유형 중복장애		8.3		12.5	79.2		4.2	4.2	4.2	87.5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6.5	87.1			12.9	6.5	80.6
	생활 일부도움필요	15.1	3.5	14.0	11.6	55.8	3.5	5.8	9.3	8.1	73.3
	능력 혼자생활가능				28.6	71.4	9.5				90.5
	전체	10.9	2.2	8.7	13.0	65.2	3.6	3.6	8.7	6.5	77.5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3.3		33.3	33.3	30.0		3.3	23.3	40.0	33.3
	여성	1.9		24.1	24.1	50.0	1.9	1.9	25.9	18.5	51.9
	근무 이용시설	2.6		24.7	26.0	46.8	1.3	1.3	20.8	27.3	49.4
	기관 교육기관			50.0	50.0			12.5	62.5	25.0	
	근무 5년 미만			16.0	28.0	56.0		4.0	24.0	12.0	60.0
경력 5년 이상		3.3		31.7	28.3	36.7	1.7	1.7	25.0	33.3	38.3
	전체	2.4		27.1	28.2	42.4	1.2	2.4	24.7	27.1	44.7
	전체 케이스	6.1	3.1	19.6	17.3	53.9	2.2	4.5	15.9	13.6	63.8

- 야간보호지원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7.3%, 매우 이용하고 싶다 53.9%로 이용의향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거지원서비스 역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3.6%, 매우 이용하고 싶다 63.8%로 높은 수준으로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야간보호지원서비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65.2%로 장애인(49.6%), 장애인 전문가(42.4%)보다 이용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77.5%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61.8%, 장애인 전문가 44.7%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IV-21〉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5

대상	구분	탈시설 자립지원					보건의료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4.1	4.1	20.5	15.1	56.2	1.4	2.7	17.8	11.0	67.1
	여성	5.1	3.4	23.7	20.3	47.5		4.6	16.9	20.0	58.5
	연령 50대 미만	3.2		32.3	19.4	45.2		8.6	22.9	22.9	45.7
	50대 이상	5.0	5.0	18.8	16.8	54.5	1.0	1.9	15.5	12.6	68.9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5.9	4.9	25.5	18.6	45.1	.9	4.6	19.4	16.7	58.3
				7.1	10.7	82.1			7.1	10.7	82.1
	장애 등급 1-2급	7.8	2.0	29.4	13.7	47.1	1.9	1.9	23.1	17.3	55.8
	2-3급	2.4	2.4	16.7	21.4	57.1		4.3	14.9	10.6	70.2
	4-5급	2.6	7.9	15.8	18.4	55.3		5.3	10.5	18.4	65.8
	전체	4.5	3.8	22.0	17.4	52.3	.7	3.6	17.4	15.2	63.0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4	4.9		2.4	90.2	2.4			4.9	92.7
	여성	2.1	1.0	3.1	4.1	89.7	1.0		8.2	7.2	83.5
	소득 300만원 미만	1.4	2.9	2.9	4.3	88.6			4.3	5.7	90.0
	300만원 이상	2.9	1.5	1.5	2.9	91.2	2.9		7.4	7.4	82.4
	자녀 별달장애			3.3	1.6	6.6	88.5		1.6	4.9	93.4
	장애 자폐성장애	5.7	1.9	3.8		88.7	3.8		13.2	9.4	73.6
	유형 중복장애				4.2	95.8				4.2	95.8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3.2	3.2	90.3			6.5	93.5
	생활 일부도움필요	1.2	2.3	2.3	4.7	89.5			7.0	9.3	83.7
	능력 혼자생활가능	9.5				90.5	9.5			4.8	85.7
	전체	2.2	2.2	2.2	3.6	89.9	1.4		5.8	6.5	86.2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3.3	43.3	33.3			26.7	36.7	36.7
	여성	1.9		24.5	22.6	50.9	1.9	1.9	19.2	21.2	55.8
	근무 이용시설	1.3		19.7	30.3	48.7	1.3	1.3	16.9	28.6	51.9
	기관 교육기관			62.5	37.5				83.3	16.7	
	근무 5년 미만			20.0	24.0	56.0			20.0	20.0	60.0
	경력 5년 이상	1.7		25.4	33.9	39.0	1.7	1.7	22.4	31.0	43.1
	전체	1.2		23.8	31.0	44.0	1.2	1.2	21.7	27.7	48.2
전체 케이스		2.8	2.3	14.7	15.3	65.0	1.1	1.7	13.9	14.8	68.5

- 탈시설 자립지원의 경우 조금 이용하고 싶다 15.3%, 매우 이용하고 싶다 65.0%로 이용 의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지원서비스 또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4.8%, 매우 이용하고 싶다 68.5%로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탈시설 자립지원 서비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9.9%로 장애인(52.3%), 장애인 전문가(44.0%)보다 이용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지원서비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6.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63.0%, 장애인 전문가 48.2%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V-22〉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6

대상	구분	인권상담/교육지원					사회적응훈련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1.4	2.7	19.2	15.1	61.6	2.7	2.7	14.7	20.0	60.0
	여성		1.6	20.6	19.0	58.7	1.6	1.6	17.7	17.7	61.3
	연령 50대 미만		2.9	25.7	22.9	48.6	2.9		25.7	22.9	48.6
	50대 이상	1.0	2.0	17.6	14.7	64.7	1.9	2.9	12.6	17.5	65.0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9	2.8	20.8	18.9	56.6	2.8	1.9	17.8	21.5	56.1
				13.8	10.3	75.9		3.4	6.9	10.3	79.3
	장애 1-2급	1.9	3.8	23.1	19.2	51.9	2.0	4.0	22.0	22.0	50.0
	2-3급			22.2	13.3	64.4	4.3		12.8	12.8	70.2
	4-5급		2.6	10.3	17.9	69.2		2.5	10.0	22.5	65.0
	전체	.7	2.2	19.7	16.8	60.6	2.2	2.2	15.9	18.8	60.9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7.3	12.2	80.5		2.4	4.9	92.7	
	여성			11.3	10.3	78.4		4.1	6.2	89.7	
	소득 300만원 미만			7.1	14.3	78.6		2.9	7.1	90.0	
	300만원 이상			13.2	7.4	79.4		4.4	4.4	91.2	
	자녀 발달장애			8.2	11.5	80.3			4.9	95.1	
	장애 자폐성장애			13.2	13.2	73.6		7.5	7.5	84.9	
	유형 중복장애			8.3	4.2	87.5		4.2	4.2	91.7	
	자녀 모두도움필요			9.7	3.2	87.1		3.2		96.8	
	생활 일부도움필요			10.5	12.8	76.7		2.3	9.3	88.4	
	능력 혼자생활가능			9.5	14.3	76.2			9.5	90.5	
	전체			10.1	10.9	79.0		3.6	5.8	90.6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3.3	40.0	36.7		22.6	32.3	45.2	
	여성	1.9	24.1	27.8	46.3		1.9	24.1	22.2	51.9	
	근무 이용시설 기관			18.2	35.1	46.8	1.3	20.8	26.0	51.9	
	교육기관	12.5	75.0	12.5				44.4	33.3	22.2	
	근무 5년 미만			20.0	36.0	44.0		12.0	36.0	52.0	
경력 5년 이상		1.7	25.0	31.7	41.7		1.6	27.9	23.0	47.5	
	전체	1.2	23.5	32.9	42.4		1.2	23.3	26.7	48.8	
	전체 케이스	.3	1.1	16.9	18.3	63.3	1.1	.8	13.0	15.7	69.3

- 인권상담 및 교육지원서비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이용하고 싶다 63.3%, 조금 이용하고 싶다 18.3%로 이용의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응훈련지원서비스 또한 매우 이용하고 싶다 69.3%, 조금 이용하고 싶다 15.7%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이용의향을 보이고 있음
- 인권상담 및 교육지원 서비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79.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60.6%, 장애인 전문가 42.4%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응훈련지원 서비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60.6%로 장애인(60.9%), 장애인 전문가(48.8%)보다 이용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IV-23〉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7

대상	구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2.6	3.9	14.3	22.1	57.1	2.7	2.7	16.0	18.7	60.0	
	여성	4.9	13.1	26.2	55.7		5.7	14.3	27.1	52.9		
	연령 50대 미만	8.3	19.4	22.2	50.0		9.3	20.9	16.3	53.5		
	50대 이상	1.9	2.9	11.7	24.3	59.2	1.9	1.9	12.6	25.2	58.3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9	5.5	14.7	28.4	50.5	.9	5.4	17.1	26.1	50.5	
	장애 1-2급	3.8	3.8	17.0	24.5	50.9	3.7	3.7	18.5	22.2	51.9	
	2-3급		4.4	11.1	26.7	57.8		4.0	14.0	26.0	56.0	
	4-5급		5.0	10.0	20.0	65.0		5.0	10.0	20.0	65.0	
	전체	1.4	4.3	13.7	23.7	56.8	1.4	4.1	15.1	22.6	56.8	
	성별 남성			4.9	17.1	78.0				9.8	90.2	
	여성			8.2	8.2	83.5			2.1	7.2	90.7	
장애인 부모	소득 300만원 미만			7.1	11.4	81.4			1.4	11.4	87.1	
	300만원 이상			7.4	10.3	82.4			1.5	4.4	94.1	
	자녀 발달장애			6.6	13.1	80.3				8.2	91.8	
	장애 자폐성장애			7.5	11.3	81.1			1.9	9.4	88.7	
	유형 중복장애			8.3	4.2	87.5			4.2	4.2	91.7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3.2	93.5			3.2		96.8	
	생활 일부도움필요			10.5	11.6	77.9			1.2	11.6	87.2	
	능력 혼자생활가능				19.0	81.0				4.8	95.2	
	전체			7.2	10.9	81.9			1.4	8.0	90.6	
	성별 남성			3.1	28.1	28.1	40.6		3.3	16.7	40.0	40.0
장애인 전문가	여성	1.9	3.7	14.8	27.8	51.9	1.9	1.9	11.1	27.8	57.4	
	근무 이용시설	1.3	1.3	18.2	28.6	50.6	1.3	2.6	11.8	34.2	50.0	
	기관 교육기관		20.0	30.0	30.0	20.0			22.2	22.2	55.6	
	근무 5년 미만			19.2	30.8	50.0			4.0	8.0	36.0	52.0
	경력 5년 이상	1.6	4.9	19.7	27.9	45.9	1.7	1.7	15.0	31.7	50.0	
전체 케이스	전체	1.1	3.4	19.5	28.7	47.1	1.2	2.4	12.9	32.9	50.6	
	전체 케이스	.8	2.5	12.6	20.1	64.0	.8	2.2	9.5	19.5	68.0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이용하고 싶다 64.0%, 조금 이용하고 싶다 20.1%로 이용의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서비스 또한 매우 이용하고 싶다 68.0%, 조금 이용하고 싶다 19.5%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이용의향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1.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56.8%, 장애인 전문가 47.1%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90.6%로 장애인(56.8%), 장애인 전문가(50.6%)에 비해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V-24〉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향 8

대상	구분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음	매우 이용하고 싶음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음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음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음	매우 이용하고 싫음
장애인	성별 남성	1.4	2.7	21.6	17.6	56.8	1.3	2.6	17.1	17.1	61.8
	여성	1.6	3.1	15.6	17.2	62.5		5.9	14.7	16.2	63.2
	연령 50대 미만	2.6	5.3	23.7	21.1	47.4		10.0	25.0	17.5	47.5
	50대 이상	1.0	2.0	16.8	15.8	64.4	1.0	1.9	12.4	16.2	68.6
	장애 유형 신체장애	1.9	3.8	21.7	17.9	54.7	.9	5.3	16.8	16.8	60.2
	내부/정신장애			6.5	16.1	77.4			10.0	16.7	73.3
	장애 등급 1-2급	3.8	1.9	18.9	26.4	49.1	1.8	3.5	17.5	17.5	59.6
	2-3급		2.2	21.7	13.0	63.0		4.2	16.7	16.7	62.5
	4-5급		5.1	12.8	10.3	71.8		5.1	10.3	15.4	69.2
	전체	1.4	2.9	18.7	17.3	59.7	.7	4.1	15.9	16.6	62.8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12.2	7.3	80.5			4.9	95.1	
	여성		1.0	13.4	5.2	80.4		1.0	4.1	94.8	
	소득 300만원 미만		1.4	7.1	8.6	82.9		1.4	7.1	91.4	
	300만원 이상			19.1	2.9	77.9			1.5	98.5	
	자녀 발달장애			14.8	3.3	82.0			3.3	96.7	
	장애 자폐성장애			15.1	9.4	75.5		1.9	5.7	92.5	
	유형 중복장애		4.2	4.2	4.2	87.5			4.2	95.8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93.5			3.2	96.8	
	생활 일부도움필요		1.2	16.3	7.0	75.6		1.2	5.8	93.0	
	능력 혼자생활가능			9.5	9.5	81.0				100.0	
	전체		.7	13.0	5.8	80.4		.7	4.3	94.9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5.8	32.3	41.9		3.2	16.1	32.3	48.4
	여성	1.9	1.9	22.2	22.2	51.9	1.9	13.0	35.2	50.0	
	근무 이용시설	1.3		16.9	28.6	53.2	1.3	1.3	14.3	29.9	53.2
	기관 교육기관		11.1	77.8	11.1			11.1	77.8	11.1	
	근무 5년 미만			16.0	36.0	48.0		4.0	4.0	36.0	56.0
경력	5년 이상	1.6	1.6	26.2	23.0	47.5	1.6	18.0	34.4	45.9	
	전체	1.2	1.2	23.3	26.7	47.7	1.2	1.2	14.0	34.9	48.8
	전체 케이스	.8	1.7	17.6	15.2	64.7	.5	1.9	9.8	16.3	71.5

- 장애인가족지원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이용하고 싶다 64.7%, 조금 이용하고 싶다 15.2%로 이용의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서비스 또한 매우 이용하고 싶다 71.5%, 조금 이용하고 싶다 16.3%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이용의향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 가족지원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0.4%로 장애인(59.7%), 장애인 전문가(47.7%)에 비해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94.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62.8%, 장애인 전문가 48.8%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IV-25〉 자립복지재단 부지 활용용도 및 우선 장애인 대상

대상	구분	자립복지재단 부지 활용 용도					우선고려 대상 장애인		
		장애인위한 복지시설	장애인/비장애인 위한 복지시설	취약계층위한 복지시설	지역주민위한 복지시설	기타	신체적 장애인	내부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43.7	24.1	17.2	14.9		63.5	9.4	27.1
	여성	31.8	34.1	25.0	8.0	1.1	69.9		30.1
	연령 50대 미만	21.3	26.2	24.6	26.2	1.6	50.0		50.0
	50대 이상	46.5	30.7	19.3	3.5		74.8	7.2	18.0
	장애 유형 신체장애	36.4	31.8	22.0	9.1	.8	76.6	2.3	21.1
	내부/정신장애	41.5	22.0	19.5	17.1		30.8	12.8	56.4
	장애 등급 1-2급	41.6	26.0	15.6	16.9		70.3	2.7	27.0
	2-3급	38.5	21.2	30.8	9.6		49.0	8.2	42.9
	4-5급	30.2	46.5	18.6	2.3	2.3	81.4	4.7	14.0
	전체	38.1	29.0	21.0	11.4	.6	66.3	4.7	29.0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90.2	4.9	2.4		2.4	4.9		95.1
	여성	91.8	7.2	1.0			6.2	1.0	92.8
	소득 300만원 미만	92.9	2.9	2.9		1.4	7.1		92.9
	300만원 이상	89.7	10.3				4.4	1.5	94.1
	자녀 빌들장애	93.4	3.3	1.6		1.6	4.9		95.1
	장애 자폐성장애	90.6	9.4				1.9		98.1
	유형 중복장애	87.5	8.3	4.2			16.7	4.2	79.2
	자녀 모두도움필요	93.5	6.5				16.1		83.9
	생활 일부도움필요	89.5	7.0	2.3		1.2	1.2		98.8
	능력 혼자생활가능	95.2	4.8				9.5	4.8	85.7
장애인 전문가	전체	91.3	6.5	1.4		.7	5.8	.7	93.5
	성별 남성	29.4	23.5	26.5	17.6	2.9	29.4	2.9	67.6
	여성	28.6	28.6	21.4	14.3	7.1	20.8	3.8	75.5
	근무 이용시설	32.1	24.4	24.4	15.4	3.8	26.9	3.8	69.2
	기관 교육기관	15.4	38.5	15.4	15.4	15.4			100.0
	근무 5년 미만	34.6	26.9	15.4	15.4	7.7	19.2	7.7	73.1
	경력 5년 이상	27.7	26.2	26.2	15.4	4.6	25.8	1.6	72.6
	전체	29.7	26.4	23.1	15.4	5.5	23.9	3.4	72.7
	전체 케이스	54.3	20.7	14.8	8.4	1.7	35.7	3.0	61.3

- 자립복지재단의 부지 활용용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용도가 54.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20.7%,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의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이 61.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체적 장애인 35.7%, 내부적 장애인 3.0%의 순으로 나타남
- 부지 활용용도에 있어서 장애인 중 남성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43.7%로 많았으나 여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34.1%로 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활용용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자립복지재단의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IV-26〉 자립복지재단의 활용 시설 우선순위 종합

대상	구분	시설 유형별 종합순위						
		돌봄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여가문화 체육시설	치료재활시설	인권보호 지원시설	장애인 주거복지시설
성별	남성	4.2	3.5	5.1	3.8	5.3	2.8	3.5
	여성	4.4	3.5	4.9	3.7	5.6	2.6	3.6
연령	50대 미만	3.7	4.2	5.3	3.8	4.9	3.3	3.2
	50대 이상	4.6	3.2	4.9	3.7	5.7	2.4	3.7
장애인	장애 유형	신체장애	4.3	3.6	5.0	3.6	5.4	2.7
	내부/정신장애	4.3	3.3	5.0	4.2	5.7	2.7	3.4
장애 등급	1-2급	3.7	3.8	4.8	4.0	5.4	3.1	3.4
	2-3급	4.6	3.5	5.5	3.4	5.6	2.3	3.6
	4-5급	4.9	3.1	4.7	3.9	5.4	2.4	3.6
	전체	4.3	3.5	5.0	3.7	5.4	2.7	3.5
성별	남성	3.2	5.9	6.0	3.6	4.3	3.1	1.9
	여성	3.1	6.0	5.9	3.8	3.8	3.6	1.7
소득	300만원 미만	3.2	6.0	5.9	3.7	4.0	3.6	1.7
	300만원 이상	3.0	6.0	6.0	3.8	4.0	3.3	1.9
장애인	부모	발달장애	2.9	5.9	6.0	3.7	3.8	1.9
	장애 자폐성장애	3.0	6.0	5.9	4.0	4.1	3.3	1.5
	유형	중복장애	3.9	6.1	5.9	3.2	4.1	2.8
	자녀	모두도움필요	4.1	6.0	5.5	3.5	4.4	3.0
	생활	일부도움필요	2.9	5.9	6.0	3.8	4.0	3.5
	능력	혼자생활가능	2.5	6.3	6.5	3.7	3.4	1.7
	전체	3.1	6.0	6.0	3.7	4.0	3.4	1.8
성별	남성	3.9	4.2	4.2	4.8	3.6	3.8	3.4
	여성	3.1	4.8	5.4	4.7	3.9	3.5	2.6
장애인	전문가	이용시설	3.4	4.3	4.9	4.8	3.8	3.7
	기관	교육기관	2.9	6.0	5.5	4.8	4.2	1.9
	근무	5년 미만	3.2	4.7	5.3	4.6	3.8	2.5
	경력	5년 이상	3.4	4.5	4.8	4.8	3.8	3.2
	전체	3.4	4.5	5.0	4.8	3.8	3.6	3.0
	전체 케이스	3.7	4.6	5.3	4.0	4.6	3.2	2.8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음

- 자립복지재단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시설별로 1순위는 7점, 2순위는 6점, 3순위는 5점, 7순위는 1점 등으로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환산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선순위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설 유형별로 우선순위도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시설이 5.3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아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시설과 치료재활시설이 각각 4.6점, 돌봄시설 3.7% 등의 순으로 활용 우선순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은 치료재활시설(5.4점)이 1순위로 나타났고, 장애인 부모는 교육시설(6.0점)과 직업훈련시설(6.0점)이 1순위로, 장애인 전문가는 직업훈련시설(5.0점)이 1순위로 나타남

〈표IV-27〉 자립복지재단에 필요한 복지시설 유형 1

대상	구분	돌봄시설				교육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소규모공동생활가정	자립주택/체육관	장애인거주시설	특수학교	탈시설전환교육시설	장애인자립훈련시설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
장애인	성별 남성	28.6	16.7	26.2	28.6	9.5	13.1	40.5	36.9
	여성	47.6	12.2	26.8	13.4	11.9	6.0	45.2	36.9
	연령 50대 미만	31.5	13.0	38.9	16.7	10.9	14.5	41.8	32.7
	50대 이상	40.2	15.2	20.5	24.1	11.5	7.1	42.5	38.9
	장애 유형 신체장애	40.5	11.1	31.7	16.7	8.7	11.0	41.7	38.6
	내부/정신장애	26.3	26.3	10.5	36.8	20.5	5.1	43.6	30.8
	장애 등급 1-2급	31.9	12.5	31.9	23.6	11.0	13.7	38.4	37.0
	2-3급	34.7	14.3	24.5	26.5	14.0	4.0	48.0	34.0
	4-5급	47.6	19.0	19.0	14.3	9.5	9.5	38.1	42.9
	전체	37.7	14.4	26.3	21.6	11.2	9.5	42.6	36.7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31.7	12.2	56.1		12.2	9.8	19.5	58.5
	여성	27.8	8.2	60.8	3.1	7.2	7.2	21.6	63.9
	소득 300만원 미만	34.3	4.3	61.4		8.6	7.1	25.7	58.6
	300만원 이상	23.5	14.7	57.4	4.4	8.8	8.8	16.2	66.2
	자녀 빌딩장애	31.1	9.8	55.7	3.3	11.5	4.9	18.0	65.6
	장애 자폐성장애	24.5	7.5	67.9		3.8	9.4	26.4	60.4
	유형 중복장애	33.3	12.5	50.0	4.2	12.5	12.5	16.7	58.3
	자녀 모두도움필요	38.7	6.5	51.6	3.2	16.1	12.9	19.4	51.6
	생활 일부도움필요	29.1	5.8	65.1		8.1	5.8	25.6	60.5
	능력 혼자생활가능	14.3	28.6	47.6	9.5		9.5	4.8	85.7
	전체	29.0	9.4	59.4	2.2	8.7	8.0	21.0	62.3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0.6	38.2	17.6	23.5	23.5	20.6	23.5	32.4
	여성	32.1	16.1	42.9	8.9	12.3	15.8	28.1	43.9
	근무 이용시설	26.9	21.8	34.6	16.7	10.3	19.2	29.5	41.0
	기관 교육기관	30.8	38.5	30.8		50.0	7.1	7.1	35.7
	근무 5년 미만	37.0	29.6	33.3		25.9	11.1	40.7	22.2
	경력 5년 이상	23.4	21.9	34.4	20.3	12.3	20.0	20.0	47.7
	전체	27.5	24.2	34.1	14.3	16.3	17.4	26.1	40.2
전체 케이스		32.3	14.9	39.6	13.1	11.5	10.8	31.3	46.4

- 자립복지재단에 필요한 복지시설은 돌봄시설의 경우 자립주택 및 체험홈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야간 보호시설 32.3%,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14.9%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교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이 46.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장애인 자립훈련시설 31.3%, 특수학교 11.5% 등의 순으로 필요유형이 많았음
- 돌봄시설의 필요시설을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은 주야간 보호시설의 필요성이 37.7%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전문가는 자립주택 및 체험홈의 필요성이 각각 59.4%, 34.1%로 많았음
- 교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은 자립훈련시설의 필요성이 42.6%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인 부모(62.3%)와 장애인 전문가(40.2%)는 직업재활훈련시설로 나타남

〈표IV-28〉 자립복지재단에 필요한 복지시설 유형 2

대상	구분	직업훈련시설						여가문화시설					
		장애인 직업상담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시설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장애인 취업연계 시설	장애인 직업체험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수영장	장애인 운동장 (실내외)	장애인 자활체육 시설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장애인부모 동아리 체험시설	
장애인	성별	남성	17.6	35.3	20.0	12.9	8.2	5.9	26.7	17.4	23.3	17.4	15.1
		여성	14.3	27.4	27.4	16.7	7.1	7.1	43.4	3.6	20.5	24.1	8.4
	연령	50대 미만	15.8	28.1	26.3	14.0	14.0	1.8	21.1	8.8	24.6	33.3	12.3
		50대 이상	16.1	33.9	21.4	15.2	4.5	8.9	41.1	11.6	20.5	15.2	11.6
	장애 유형	신체장애	17.2	30.5	21.9	17.2	7.0	6.3	35.9	11.7	21.9	18.8	11.7
		내부/정신장애	12.8	35.9	28.2	5.1	10.3	7.7	28.2	7.7	20.5	30.8	12.8
	장애 등급	1-2급	13.7	32.9	26.0	12.3	8.2	6.8	26.0	17.8	23.3	23.3	9.6
		2-3급	11.8	35.3	27.5	11.8	9.8	3.9	40.0	6.0	16.0	24.0	14.0
		4-5급	26.2	23.8	11.9	23.8	4.8	9.5	44.2	4.7	25.6	14.0	11.6
		전체	15.9	31.8	23.5	14.7	7.6	6.5	34.7	10.6	21.8	21.2	11.8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4	29.3	26.8	31.7	7.3	2.4	22.0	4.9	41.5	19.5	12.2
		여성	5.2	20.6	34.0	32.0	8.2		19.6	2.1	51.5	21.6	5.2
	소득	300만원 미만	5.7	27.1	31.4	30.0	5.7		11.4	2.9	45.7	28.6	11.4
		300만원 이상	2.9	19.1	32.4	33.8	10.3	1.5	29.4	2.9	51.5	13.2	2.9
	자녀	발달장애	6.6	24.6	26.2	34.4	8.2		18.0	1.6	47.5	24.6	8.2
		장애인	1.9	24.5	34.0	32.1	7.5		24.5	5.7	37.7	24.5	7.5
	유형	증복장애	4.2	16.7	41.7	25.0	8.3	4.2	16.7	75.0	4.2	4.2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29.0	32.3	22.6	12.9		12.9	3.2	54.8	22.6	6.5
	생활	일부도움필요	5.8	22.1	31.4	33.7	5.8	1.2	22.1	3.5	44.2	20.9	9.3
	능력	혼자생활가능		19.0	33.3	38.1	9.5		23.8		57.1	19.0	
		전체	4.3	23.2	31.9	31.9	8.0	.7	20.3	2.9	48.6	21.0	7.2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5.9	35.3	17.6	14.7	11.8	14.7	11.8	2.9	47.1	23.5	14.7
		여성	3.5	35.1	19.3	17.5	12.3	12.3	12.5	5.4	39.3	35.7	7.1
	근무 기관	이용시설	5.1	29.5	21.8	16.7	14.1	12.8	9.0	3.8	46.2	29.5	11.5
		교육기관		64.3	7.1	14.3		14.3	30.8	7.7	23.1	38.5	
	근무 경력	5년 미만		37.0	22.2	18.5	11.1	11.1	15.4	3.8	46.2	30.8	3.8
		5년 이상	6.2	33.8	18.5	15.4	12.3	13.8	10.8	4.6	41.5	30.8	12.3
		전체	4.3	34.8	19.6	16.3	12.0	13.0	12.1	4.4	42.9	30.8	9.9
		전체 케이스	9.3	29.5	25.5	21.0	8.8	6.0	24.6	6.5	35.8	23.3	9.8

- 직업훈련시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이 29.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25.5%, 장애인 취업연계시설 21.0% 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여가문화시설 중 필요시설로는 장애인체육재활시설이 35.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장애인 수영장 24.6%, 장애인 문화시설 23.3%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직업훈련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은 직업재활 훈련시설의 필요성이 31.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부모는 직업훈련시설과 취업연계시설의 필요성이 각각 31.9%로 직업과 취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여가문화시설의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 수영장의 필요성이 34.7%로 가장 많았음

〈표IV-29〉 자립복지재단에 필요한 복지시설 유형 3

대상	구분	치료재활시설				인권지원시설			
		장애인심리상담 담시설	장애인인지행 동치료시설	장애인가족상담 지원	장애인작업치료 시설	인권상담(조 사)지원시설	인권교육(연 수)시설	인권전시체험 시설	기타
장애인 유형	성별 남성	27.9	16.3	14.0	41.9	47.6	37.8	14.6	
	여성	38.1	20.2	7.1	34.5	59.5	31.6	8.9	
	연령 50대 미만	38.6	22.8	14.0	24.6	45.1	33.3	21.6	
	50대 이상	29.5	16.1	8.9	45.5	57.3	35.5	7.3	
	장애 신체장애	30.5	18.0	10.9	40.6	56.9	31.7	11.4	
	내부/정신장애	38.5	17.9	10.3	33.3	38.9	47.2	13.9	
	장애 1-2급	36.1	13.9	12.5	37.5	47.1	37.1	15.7	
	2-3급	27.5	21.6	7.8	43.1	59.2	30.6	10.2	
	4-5급	30.2	20.9	11.6	37.2	55.0	37.5	7.5	
	전체	32.9	18.2	10.6	38.2	53.7	34.6	11.7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6.8	22.0	2.4	48.8	43.9	12.2	43.9	
	여성	18.6	20.6	6.2	54.6	29.9	14.4	53.6	2.1
	소득 300만원 미만	18.6	24.3	5.7	51.4	31.4	11.4	55.7	1.4
	300만원 이상	23.5	17.6	4.4	54.4	36.8	16.2	45.6	1.5
	자녀 빌딩장애	23.0	24.6	1.6	50.8	27.9	19.7	50.8	1.6
	장애 자폐성장애	17.0	18.9	9.4	54.7	45.3	3.8	50.9	
	유형 중복장애	25.0	16.7	4.2	54.2	25.0	20.8	50.0	4.2
	자녀 모두도움필요	19.4	19.4	9.7	51.6	16.1	22.6	54.8	6.5
	생활 일부도움필요	20.9	23.3	4.7	51.2	40.7	11.6	47.7	
	능력 혼자생활가능	23.8	14.3		61.9	33.3	9.5	57.1	
	전체	21.0	21.0	5.1	52.9	34.1	13.8	50.7	1.4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6.5	23.5	29.4	20.6	52.9	26.5	14.7	5.9
	여성	21.1	28.1	24.6	26.3	52.6	29.8	14.0	3.5
	근무 이용시설	23.1	25.6	26.9	24.4	55.1	28.2	12.8	3.8
	기관 교육기관	21.4	35.7	21.4	21.4	35.7	35.7	21.4	7.1
	근무 5년 미만	22.2	29.6	37.0	11.1	63.0	22.2	11.1	3.7
	경력 5년 이상	23.1	26.2	21.5	29.2	47.7	32.3	15.4	4.6
	전체	22.8	27.2	26.1	23.9	52.2	29.3	14.1	4.3
전체 케이스		26.5	21.3	12.3	40.0	46.4	26.0	26.0	1.5

- 치료재활시설 중에서는 장애인작업치료시설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 심리 상담시설 26.5%, 장애인 인지행동 치료시설 21.3% 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인권지원시설의 경우 인권상담 지원시설의 필요성이 4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권 교육시설과 인권전시체험시설의 필요성이 각각 26.0%로 많았음
- 치료재활시설 중 필요시설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은 38.2%, 장애인 부모 역시 52.9%로 작업치료시설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나 장애인 전문가는 장애인 인지행동치료 시설이 27.2%로 가장 많았음
- 인권지원시설은 장애인 부모는 인권전시체험시설의 필요성이 50.7%로 가장 많았고 장애 인과 장애인 전문가는 인권상담시설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표IV-30〉 자립복지재단 내 장애인 교육연수 및 직업훈련시설 건립 수요

대상	구분	필요성				필요한 이유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매우 필요	장애인대상 교육시설 필요	지역의 장애인 많이 이용할수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받을수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많을것 같아서
장애인	성별 남성	72.0	15.9	9.8	2.4	52.0	8.0	2.7	21.3	16.0
	여성	56.6	37.3	6.0		30.8	11.5	3.8	25.6	26.9
	연령 50대 미만	53.6	30.4	16.1		37.0	6.5	2.2	26.1	28.3
	50대 이상	70.0	24.5	3.6	1.8	43.9	11.2	3.7	21.5	18.7
	장애 유형 신체장애	62.4	28.8	8.0	.8	37.1	10.3	4.3	25.9	21.6
	내부/정신장애	70.7	19.5	7.3	2.4	57.1	8.6		11.4	22.9
	장애 등급 1~2급	57.5	28.8	11.0	2.7	44.4	9.5	3.2	20.6	20.6
	2~3급	60.0	38.0	2.0		48.0	8.0	6.0	18.0	20.0
	4~5급	80.0	10.0	10.0		29.7	13.5		32.4	24.3
	전체	64.5	26.5	7.8	1.2	41.6	9.7	3.2	23.4	21.4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87.8	12.2			70.7	2.4		9.8	14.6
	여성	91.8	8.2			81.4	2.1	1.0	7.2	8.2
	소득 300만원 미만	90.0	10.0			78.6	4.3		7.1	10.0
	300만원 이상	91.2	8.8			77.9		1.5	8.8	10.3
	자녀 발달장애	90.2	9.8			75.4	3.3	1.6	11.5	8.2
	장애 자폐성장애	90.6	9.4			79.2			7.5	13.2
	유형 중복장애	91.7	8.3			83.3	4.2			8.3
	자녀 모두도움필요	93.5	6.5			83.9		3.2	3.2	9.7
	생활 일부도움필요	90.7	9.3			75.6	3.5		8.1	12.8
	능력 혼자생활기능	85.7	14.3			81.0			14.3	4.8
장애인 전문가	전체	90.6	9.4			78.3	2.2	.7	8.0	10.1
	성별 남성	44.1	44.1	2.9	5.9	2.9	36.7	33.3	16.7	13.3
	여성	57.9	31.6	3.5	3.5	3.5	43.8	14.6	25.0	16.7
	근무 이용시설	52.6	37.2	1.3	5.1	3.8	44.3	20.0	21.4	14.3
	기관 교육기관	50.0	35.7	14.3			22.2	33.3	22.2	22.2
근무 전문가	근무 5년 미만	63.0	25.9	3.7	3.7	3.7	26.1	21.7	30.4	21.7
	경력 5년 이상	47.7	41.5	3.1	4.6	3.1	48.2	21.4	17.9	12.5
	전체	52.2	37.0	3.3	4.3	3.3	41.8	21.5	21.5	15.2
전체 케이스		70.7	23.0	4.0	1.5	.8	55.3	9.4	1.6	17.3
										15.9
										.5

- 자립복지재단 내 장애인 교육연수 및 직업훈련시설의 건립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 70.7%, 필요 23.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는 장애인 대상 교육 시설이 필요해서가 55.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아서 17.3%, 지역장애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서 15.9%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교육연수 및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 장애 등급별로 4~5급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 같아서가 32.4%로 많았으나 3급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 대상의 교육시설이 필요해서가 45%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전문가는 교육연수 및 훈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 90%이상의 동의하고 있었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인프라의 필요 55.3%, 지역장애인의 수혜 15.9% 등의 순임

〈표IV-31〉 장애인교육연수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시설

대상	구분	장애인연수시설	숙박/교육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직업재활/치료시설	장애인취업연계시설	기타
장애인	성별 남성	14.3	8.6	32.9	35.7	8.6	
	여성	12.3	7.7	21.5	40.0	16.9	1.5
	연령 50대 미만	26.2	9.5	14.3	38.1	11.9	
	50대 이상	7.5	7.5	33.3	38.7	11.8	1.1
	장애 유형 신체장애	15.8	7.9	28.7	33.7	13.9	
	내부/장난장애	6.3	9.4	25.0	50.0	6.3	3.1
	장애 등급 1-2급	17.5	10.5	19.3	40.4	10.5	1.8
	2-3급	10.5	10.5	23.7	36.8	18.4	
	4-5급	8.1	2.7	43.2	37.8	8.1	
	전체	13.2	8.1	27.2	38.2	12.5	.7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7.3		31.7	19.5	41.5	
	여성	8.2	3.1	24.7	11.3	52.6	
	소득 300만원 미만	12.9	2.9	22.9	11.4	50.0	
	300만원 이상	2.9	1.5	30.9	16.2	48.5	
	자녀 빌달장애	4.9	1.6	31.1	9.8	52.5	
	장애 자폐성장애	11.3		18.9	18.9	50.9	
	유형 중복장애	8.3	8.3	33.3	12.5	37.5	
	자녀 모두도움필요	12.9	3.2	29.0	22.6	32.3	
	생활 일부도움필요	7.0	2.3	23.3	14.0	53.5	
	능력 혼자생활가능	4.8		38.1		57.1	
장애인 전문가	전체	8.0	2.2	26.8	13.8	49.3	
	성별 남성	7.7	15.4	46.2	11.5	19.2	
	여성	6.3	4.2	50.0	16.7	16.7	6.3
	근무 이용시설	7.4	7.4	48.5	14.7	17.6	4.4
	교육기관		14.3	57.1	14.3		
	근무 5년 미만			50.0	9.1	36.4	4.5
	경력 5년 이상	9.4	11.3	49.1	17.0	9.4	3.8
	전체	6.7	8.0	49.3	14.7	17.3	4.0
	전체 케이스	9.7	5.7	31.8	23.5	28.1	1.1

- 장애인교육연수실 및 직업훈련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시설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이 31.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 취업연계시설 28.1%, 장애인직업재활치료시설 23.5%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 및 치료시설이 38.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 취업연계시설이 49.3%, 장애인 전문가는 장애인 직업 훈련시설이 49.3%로 대상별로 필요시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
- 장애인 직업 훈련시설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 전문가 중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57.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취업연계시설에서는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수요가 57.1%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교육연수시설 중에서도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IV-32〉 장애인교육연수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대상	구분	장애인교육훈련시설 필요없어서	지역장애인이 많이 이용할수 없어서	지역장애인에 큰 도움 안될것같아	국가의개발보다 전북의 노력이 중요해서	기타
성별	남성	33.3	33.3		33.3	
	여성		33.3		66.7	
연령	50대 미만		50.0		50.0	
	50대 이상	33.3	33.3		33.3	
장애 유형	신체장애		50.0		50.0	
	내부/정신장애		100.0			
장애 등급	1-2급		50.0		50.0	
	2-3급					
	4-5급		50.0		50.0	
전체		16.7	33.3		50.0	
성별	남성	25.0	25.0	25.0	25.0	
	여성	50.0	50.0			
장애인 전문가 기관	이용시설	37.5	37.5	12.5	12.5	
	교육기관					
근무 경력	5년 미만	100.0				
	5년 이상		16.7	50.0	16.7	16.7
전체		37.5	37.5	12.5	12.5	
전체 케이스		7.1	35.7	21.4	28.6	7.1

- 장애인교육연수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관련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지역장애인의 이용 제한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시설의 설치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교육연수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지역장애인 이 많이 이용할 수 없어서가 35.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가의 개발보다 전라북도의 노력이 중요해서 28.6%, 지역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상별로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 보면 장애인의 경우 국가의 개발 보다 전북의 노력이 중요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전문가는 지역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없어서와 지역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각각 37.5%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내부 및 정신장애인은 지역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100.0%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전문가 중 5년 미만의 경우 또한 100.0%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부모의 경우 장애인 교육연수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IV-33〉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1

대상	구분	장애인교육연수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장애인	성별 남성	4.8	2.4	20.2	31.0	41.7	1.2	1.2	20.2	20.2	57.1
	여성	2.5		26.6	36.7	34.2	1.3	1.3	16.3	32.5	48.8
	연령 50대 미만	5.7		39.6	28.3	26.4	3.8	1.9	26.4	30.2	37.7
	50대 이상	2.7	1.8	15.5	37.3	42.7	.9	13.5	25.2	60.4	
	장애 신체장애	4.0	1.6	22.4	36.0	36.0	.8	1.6	15.0	30.7	52.0
	유형 내부(정신장애)	2.8		27.8	27.8	41.7	2.9		28.6	11.4	57.1
	장애 1-2급	7.4	1.5	26.5	32.4	32.4	2.9	1.4	21.4	28.6	45.7
	등급 2-3급		2.0	21.6	35.3	41.2			20.0	26.0	54.0
	4-5급	2.4		19.5	34.1	43.9		2.4	7.3	22.0	68.3
	전체	3.7	1.2	23.2	34.1	37.8	1.2	1.2	18.2	26.7	52.7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12.2	19.5	68.3				14.6	85.4
	여성	1.0		12.4	18.6	68.0				10.3	89.7
	소득 300만원 미만			10.0	20.0	70.0				12.9	87.1
	300만원 이상	1.5		14.7	17.6	66.2				10.3	89.7
	자녀 빌들장애	1.6		13.1	16.4	68.9				8.2	91.8
	장애 자폐성장애			9.4	22.6	67.9				15.1	84.9
	유형 중복장애			16.7	16.7	66.7				12.5	87.5
	자녀 모두도움필요			12.9	12.9	74.2				9.7	90.3
	생활 일부도움필요	1.2		12.8	19.8	66.3				11.6	88.4
	능력 혼자생활기능			9.5	23.8	66.7				14.3	85.7
	전체	.7		12.3	18.8	68.1				11.6	88.4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9	5.9	29.4	50.0	11.8	5.9	2.9	8.8	50.0	32.4
	여성	3.6	1.8	25.5	56.4	12.7	1.8		8.9	50.0	39.3
	근무 이용시설	3.8	2.6	25.6	55.1	12.8	3.8	1.3	10.3	51.3	33.3
	기관 교육기관		8.3	33.3	50.0	8.3				38.5	61.5
	근무 5년 미만	3.7	3.7	18.5	63.0	11.1	3.7	3.7	3.7	51.9	37.0
	경력 5년 이상	3.2	3.2	30.2	50.8	12.7	3.1		10.9	48.4	37.5
	전체	3.3	3.3	26.7	54.4	12.2	3.3	1.1	8.8	49.5	37.4
전체 케이스		2.6	1.3	20.2	33.4	42.6	1.3	.8	9.6	26.6	61.7

- 자립복지재단 부지 내 장애인 교육연수시설의 건립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33.4%, 매우 필요하다 42.6%로 필요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역시 필요하다 26.6%, 매우 필요하다 61.7%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교육연수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68.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37.8%, 장애인 전문가 12.2%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필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52.7%), 장애인 전문가(37.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는 장애부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IV-34〉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2

대상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연수생 숙박시설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장애인	성별 남성			17.9	23.8	58.3	1.2	12.2	14.6	29.3	42.7
	여성	1.2	1.2	17.3	29.6	50.6	3.8	7.5	22.5	23.8	42.5
	연령 50대 미만	1.9		31.5	29.6	37.0	3.9	9.8	29.4	23.5	33.3
	50대 이상	.9		10.0	25.5	63.6	1.8	10.0	12.7	28.2	47.3
	장애 유형 신체장애	.8		15.1	29.4	54.8	2.4	13.0	13.0	28.5	43.1
	내부/정신장애	2.8		25.0	16.7	55.6	2.8		36.1	19.4	41.7
	장애 등급 1-2급	1.4	1.4	23.2	26.1	47.8	2.9	11.8	20.6	29.4	35.3
	2-3급			15.7	25.5	58.8	3.9	2.0	23.5	23.5	47.1
	4-5급			7.3	26.8	65.9		17.5	5.0	25.0	52.5
	전체	.6	.6	17.6	26.7	54.5	2.5	9.9	18.5	26.5	42.6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9.8	90.2	7.3	7.3	17.1	14.6	53.7
	여성			3.1	12.4	84.5	7.2	8.2	15.5	12.4	56.7
	소득 300만원 미만			1.4	11.4	87.1	5.7	2.9	18.6	11.4	61.4
	300만원 이상			2.9	11.8	85.3	8.8	13.2	13.2	14.7	50.0
	자녀 별들장애			4.9	95.1		6.6	14.8	18.0	11.5	49.2
	장애 자폐성장애			5.7	17.0	77.4	9.4	3.8	9.4	17.0	60.4
	유형 중복장애				16.7	83.3	4.2		25.0	8.3	62.5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93.5	9.7	3.2	16.1	6.5	64.5
	생활 일부도움필요			3.5	11.6	84.9	5.8	9.3	18.6	12.8	53.5
	능력 혼자생활가능				19.0	81.0	9.5	9.5	4.8	23.8	52.4
장애인 전문가	전체			2.2	11.6	86.2	7.2	8.0	15.9	13.0	55.8
	성별 남성	5.9	2.9	8.8	55.9	26.5	5.9	20.6	32.4	26.5	14.7
	여성	1.8		8.9	55.4	33.9	5.5	12.7	45.5	29.1	7.3
	근무 이용시설	3.8	1.3	10.3	57.7	26.9	6.4	14.1	39.7	28.2	11.5
	교육기관				38.5	61.5		25.0	50.0	25.0	
	근무 5년 미만	3.7	3.7	7.4	51.9	33.3	7.4	18.5	37.0	29.6	7.4
	경력 5년 이상	3.1		9.4	56.3	31.3	4.8	14.3	42.9	27.0	11.1
	전체	3.3	1.1	8.8	54.9	31.9	5.6	15.6	41.1	27.8	10.0
	전체 케이스	1.0	.5	10.2	27.9	60.4	4.9	10.5	22.8	22.1	39.7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27.9%, 매우 필요하다 60.4%로 필요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연수생 숙박시설은 필요하다 221%, 매우 필요하다 39.7%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6.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54.5%, 장애인 전문가 31.9%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연수생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필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55.8%로 장애인(42.6%), 장애인 전문가(10.0%) 보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35〉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3

대상	구분	탈시설지원시설					장애인아동재활치료시설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장애인	성별 남성	4.9	14.6	30.5	50.0	2.4	1.2	11.0	31.7	53.7	
	여성	2.5	1.2	27.2	30.9	38.3	1.3		13.8	21.3	63.7
	연령 50대 미만	1.9	3.8	36.5	25.0	32.7	3.8		21.2	26.9	48.1
	50대 이상	.9	2.7	12.7	33.6	50.0	.9	.9	7.3	26.4	64.5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8	4.0	18.5	33.9	42.7	1.6	.8	11.2	28.0	58.4
	장애 1-2급	2.9	1.4	20.3	34.8	40.6	2.9		17.4	29.0	50.7
	장애 2-3급		2.0	25.5	35.3	37.3		2.0	9.8	27.5	60.8
	장애 4-5급		7.5	12.5	17.5	62.5	2.5		5.0	20.0	72.5
	전체	1.2	3.1	20.9	30.7	44.2	1.8	.6	12.3	26.4	58.9
	성별 남성	2.4	17.1	19.5	61.0	2.4	9.8	29.3	19.5	39.0	
장애인 부모	여성	1.0	2.1	12.4	21.6	62.9	4.1	14.4	34.0	14.4	33.0
	소득 300만원 미만		1.4	17.1	17.1	64.3		8.6	38.6	15.7	37.1
	300만원 이상	1.5	2.9	10.3	25.0	60.3	7.4	17.6	26.5	16.2	32.4
	자녀 발달장애		4.9	14.8	24.6	55.7	1.6	14.8	31.1	18.0	34.4
	장애 자폐성장애	1.9		7.5	20.8	69.8	5.7	15.1	30.2	17.0	32.1
	유형 중복장애			25.0	12.5	62.5	4.2	4.2	41.7	8.3	41.7
	자녀 모두도움필요			19.4	6.5	74.2	3.2	12.9	41.9	3.2	38.7
	생활 일부도움필요	1.2	2.3	11.6	26.7	58.1	2.3	15.1	27.9	18.6	36.0
	능력 혼자생활가능		4.8	14.3	19.0	61.9	9.5	4.8	38.1	23.8	23.8
	전체	.7	2.2	13.8	21.0	62.3	3.6	13.0	32.6	15.9	34.8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8.8	41.2	38.2	11.8	2.9	8.8	26.5	58.8	2.9	
	여성	7.1	1.8	26.8	46.4	17.9	7.1	7.1	28.6	44.6	12.5
	근무 이용시설	9.0	1.3	30.8	41.0	17.9	6.4	9.0	24.4	48.7	11.5
	기관 교육기관			38.5	53.8	7.7			46.2	53.8	
	근무 5년 미만	7.4	3.7	18.5	55.6	14.8	7.4	3.7	29.6	44.4	14.8
	경력 5년 이상	7.8		37.5	37.5	17.2	4.7	9.4	26.6	51.6	7.8
	전체	7.7	1.1	31.9	42.9	16.5	5.5	7.7	27.5	49.5	9.9
전체 케이스		2.6	2.3	20.9	30.1	44.1	3.3	6.6	23.0	28.1	39.0

- 탈시설 지원시설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30.1%, 매우 필요하다 44.1%로 필요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은 필요하다 28.1%, 매우 필요하다 39.0%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탈시설 지원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62.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44.2%, 장애인 전문가 16.5%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부모나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전문가간의 의견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58.9%로 장애인 부모(34.8%), 장애인 전문가(9.9%) 보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36〉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4

대상	구분	장애인아동상담지원시설					케어팜시설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장애인	성별 남성	2.4	1.2	14.6	31.7	50.0	1.2	8.4	25.3	21.7	43.4
	여성	1.2	1.2	14.8	24.7	58.0	1.2	4.9	36.6	23.2	34.1
	연령 50대 미만	3.8	1.9	23.1	30.8	40.4	1.9	5.6	44.4	25.9	22.2
	50대 이상	.9	.9	9.9	27.0	61.3	.9	7.3	23.6	20.9	47.3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1.6	1.6	13.6	30.4	52.8	.8	8.7	29.4	23.8	37.3
	장애 1-2급	2.9		20.0	32.9	44.3	2.9	8.7	31.9	21.7	34.8
	장애 2-3급		3.9	9.8	29.4	56.9		5.8	28.8	26.9	38.5
	장애 4-5급	2.5		10.0	15.0	72.5		4.9	29.3	17.1	48.8
	전체	1.8	1.2	14.6	28.0	54.3	1.2	6.7	30.9	22.4	38.8
	성별 남성	2.4	9.8	31.7	17.1	39.0			14.6	22.0	63.4
장애인 부모	여성	4.1	13.4	33.0	18.6	30.9		1.0	9.3	17.5	72.2
	소득 300만원 미만		8.6	35.7	12.9	42.9		1.4	17.1	14.3	67.1
	300만원 이상	7.4	16.2	29.4	23.5	23.5			4.4	23.5	72.1
	자녀 빌드장애	1.6	13.1	31.1	19.7	34.4		1.6	11.5	21.3	65.6
	장애 자폐성장애	5.7	15.1	30.2	15.1	34.0			5.7	20.8	73.6
	유형 중복장애	4.2	4.2	41.7	20.8	29.2			20.8	8.3	70.8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12.9	38.7	6.5	38.7			16.1	3.2	80.6
	생활 일부도움필요	2.3	14.0	27.9	19.8	36.0		1.2	10.5	22.1	66.3
	능력 혼자생활기능	9.5	4.8	42.9	28.6	14.3			4.8	28.6	66.7
	전체	3.6	12.3	32.6	18.1	33.3		.7	10.9	18.8	69.6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9	2.9	26.5	58.8	8.8	2.9	23.5	32.4	29.4	11.8
	여성	5.4	7.1	25.0	48.2	14.3	5.4	17.9	30.4	39.3	7.1
	근무 이용시설	5.1	5.1	25.6	50.0	14.1	5.1	20.5	29.5	35.9	9.0
	교육기관		7.7	30.8	61.5			15.4	46.2	30.8	7.7
	근무 5년 미만	7.4	3.7	14.8	59.3	14.8	7.4	3.7	29.6	51.9	7.4
	경력 5년 이상	3.1	6.3	31.3	48.4	10.9	3.1	26.6	32.8	28.1	9.4
	전체	4.4	5.5	26.4	51.6	12.1	4.4	19.8	31.9	35.2	8.8
전체 케이스		3.1	6.1	23.7	30.0	37.2	1.5	7.6	24.1	24.1	42.6

- 장애아동 상담지원시설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30.0%, 매우 필요하다 37.2%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케어팜 시설은 필요하다 24.1%, 매우 필요하다 42.6%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 상담지원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54.3%로 장애인 부모(33.3%), 장애인 전문가(12.1%) 보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케어팜 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69.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38.8%, 장애인 전문가 42.6%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치유시설로서 농생명을 활용한 케어팜에 대해서 장애부모의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IV-37〉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5

대상	구분	장애인직업체험시설					장애인문화체육시설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장애인	성별 남성	1.2	2.4	14.6	26.8	54.9	1.2	2.4	12.2	23.2	61.0
	여성	2.5	1.3	13.8	33.8	48.8	1.2		13.4	29.3	56.1
	연령 50대 미만	1.9	1.9	23.1	36.5	36.5	1.9	1.9	22.6	24.5	49.1
	50대 이상	1.8	1.8	10.1	26.6	59.6	.9	.9	8.1	27.0	63.1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1.6	2.4	11.4	35.0	49.6	.8	1.6	12.7	30.2	54.8
	장애 등급 1-2급	4.4	2.9	14.7	42.6	35.3	2.9		17.1	31.4	48.6
	2-3급			15.7	19.6	64.7		1.9	13.5	26.9	57.7
	4-5급		2.5	12.5	20.0	65.0		2.5	5.0	17.5	75.0
	전체	1.9	1.9	14.2	30.2	51.9	1.2	1.2	12.7	26.7	58.2
	성별 남성			4.9	7.3	87.8			2.4	14.6	82.9
장애인 부모	여성			3.1	18.6	78.4	1.0		6.2	22.7	70.1
	소득 300만원 미만			4.3	14.3	81.4	1.4		5.7	18.6	74.3
	300만원 이상			2.9	16.2	80.9			4.4	22.1	73.5
	자녀 발달장애			4.9	13.1	82.0	1.6		6.6	18.0	73.8
	장애 자폐성장애			3.8	17.0	79.2			3.8	24.5	71.7
	유형 중복장애				16.7	83.3			4.2	16.7	79.2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6.5	90.3	3.2			9.7	87.1
	생활 일부도움필요			4.7	17.4	77.9			5.8	24.4	69.8
	능력 혼자생활가능				19.0	81.0			9.5	19.0	71.4
	전체			3.6	15.2	81.2	.7		5.1	20.3	73.9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5.9	23.5	52.9	17.6				14.7	55.9	29.4
	여성	3.6		14.3	58.9	23.2	3.6	3.6	19.6	50.0	23.2
	근무 이용시설	2.6	2.6	20.5	55.1	19.2	2.6	1.3	17.9	55.1	23.1
	기관 교육기관				61.5	38.5		7.7	15.4	30.8	46.2
	근무 5년 미만	7.4		7.4	55.6	29.6	7.4	3.7	7.4	55.6	25.9
	경력 5년 이상		3.1	21.9	56.3	18.8		1.6	21.9	50.0	26.6
	전체	2.2	2.2	17.6	56.0	22.0	2.2	2.2	17.6	51.6	26.4
	전체 케이스	1.3	1.3	11.3	30.9	55.2	1.3	1.0	11.2	30.2	56.3

- 장애인 직업체험시설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30.9%, 매우 필요하다 55.2%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 또한 필요하다 30.2%, 매우 필요하다 56.3%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 직업체험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1.2%로 장애인(51.9%), 장애인 전문가(22%) 보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73.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58.2%, 장애인 전문가 26.4%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장애인 직업체험과 체육문화시설은 장애인과 장애부모에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IV-38〉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6

대상	구분	인권박물관 등 인권전시체험시설					인권연수원등 인권교육시설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장애인	성별 남성	2.4	3.7	22.0	23.2	48.8	2.4	3.7	17.1	20.7	56.1
	여성	1.2	4.9	29.6	27.2	37.0	1.2	1.2	36.6	28.0	32.9
	연령 50대 미만	1.9	3.8	32.7	26.9	34.6	1.9	1.9	39.6	22.6	34.0
	50대 이상	1.8	4.5	22.7	23.6	47.3	1.8	2.7	20.9	24.5	50.0
	장애 유형 신체장애	1.6	5.6	26.6	26.6	39.5	1.6	2.4	27.2	27.2	41.6
	내부/정신장애	2.8		25.0	16.7	55.6	2.8	2.8	27.8	11.1	55.6
	장애 등급 1-2급	2.9	7.2	29.0	30.4	30.4	2.9	4.3	24.6	33.3	34.8
	2-3급			29.4	23.5	47.1			38.5	17.3	44.2
	4-5급	2.5	5.0	15.0	17.5	60.0	2.5	2.5	15.0	17.5	62.5
	전체	1.8	4.3	25.8	25.2	42.9	1.8	2.4	26.8	24.4	44.5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4	2.4	22.0	43.9	29.3	4.9		34.1	39.0	22.0
	여성	4.1	7.2	17.5	50.5	20.6	4.1	3.1	20.6	49.5	22.7
	소득 300만원 미만	1.4	5.7	18.6	51.4	22.9		2.9	20.0	51.4	25.7
	300만원 이상	5.9	5.9	19.1	45.6	23.5	8.8	1.5	29.4	41.2	19.1
	자녀 빌드장애	4.9	9.8	26.2	41.0	18.0	3.3	3.3	32.8	45.9	14.8
	장애 자폐성장애	3.8	1.9	9.4	58.5	26.4	7.5		15.1	50.9	26.4
	유형 중복장애			4.2	20.8	45.8	29.2		4.2	25.0	37.5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6.5	16.1	29.0	45.2	6.5	3.2	16.1	29.0	45.2
	생활 일부도움필요	4.7	3.5	20.9	51.2	19.8	4.7	1.2	30.2	45.3	18.6
	능력 혼자생활가능			14.3	14.3	66.7	4.8		4.8	14.3	76.2
장애인 전문가	전체	3.6	5.8	18.8	48.6	23.2	4.3	2.2	24.6	46.4	22.5
	성별 남성	8.8	26.5	29.4	32.4	2.9	5.9	11.8	32.4	47.1	2.9
	여성	8.9	8.9	37.5	33.9	10.7	5.4	10.7	28.6	41.1	14.3
	근무 이용시설	7.7	16.7	33.3	33.3	9.0	5.1	11.5	26.9	44.9	11.5
	교육기관	15.4	7.7	46.2	30.8		7.7	7.7	46.2	38.5	
	근무 5년 미만	7.4	7.4	33.3	40.7	11.1	7.4	7.4	29.6	44.4	11.1
	경력 5년 이상	9.4	18.8	35.9	29.7	6.3	4.7	12.5	29.7	43.8	9.4
	전체	8.8	15.4	35.2	33.0	7.7	5.5	11.0	29.7	44.0	9.9
	전체 케이스	4.1	7.4	25.5	35.2	27.8	3.6	4.3	26.7	36.6	28.8

- 인권박물관 등 인권전시체험시설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35.2%, 매우 필요하다 27.8%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인권연수원 등 인권교육시설의 필요성 또한 필요하다 36.6%, 매우 필요하다 28.8%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면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48.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전문가 33.0%, 장애인 25.2%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면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46.4%로 장애인 전문가(44.0%)와 장애인(24.4%) 보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39〉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필요성 7

대상	구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족 쉼터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장애인	성별 남성	2.4	3.6	13.3	25.3	55.4	1.2	2.4	15.7	24.1	56.6
	여성	1.2	1.2	22.2	32.1	43.2	1.2	1.2	20.7	30.5	46.3
	연령 50대 미만	1.9	1.9	24.5	22.6	49.1	1.9	1.9	31.5	20.4	44.4
	50대 이상	1.8	2.7	13.5	31.5	50.5	.9	1.8	10.8	31.5	55.0
	장애 유형 신체장애	1.6	2.4	18.3	34.1	43.7	.8	2.4	17.3	32.3	47.2
	내부/정신장애	2.8	2.8	13.9	8.3	72.2	2.8		19.4	11.1	66.7
	장애 등급 1-2급	2.9	2.9	21.4	35.7	37.1	2.9	1.4	18.6	38.6	38.6
	2-3급			23.5	23.5	51.0		1.9	23.1	23.1	51.9
	4-5급	2.5	2.5	2.5	22.5	70.0		2.5	7.5	15.0	75.0
	전체	1.8	2.4	17.6	28.5	49.7	1.2	1.8	18.1	27.7	51.2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7.3	14.6	78.0		4.9	19.5	36.6	39.0
	여성				19.6	80.4		4.1	17.5	43.3	35.1
	소득 300만원 미만			2.9	14.3	82.9		2.9	12.9	48.6	35.7
	300만원 이상			1.5	22.1	76.5		5.9	23.5	33.8	36.8
	자녀 발달장애			3.3	19.7	77.0		6.6	18.0	45.9	29.5
	장애 자폐성장애				18.9	81.1		3.8	17.0	43.4	35.8
	유형 중복장애			4.2	12.5	83.3			20.8	25.0	54.2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3.2	90.3		3.2	6.5	35.5	54.8
	생활 일부도움필요			1.2	20.9	77.9		5.8	23.3	40.7	30.2
	능력 혼자생활가능				28.6	71.4			14.3	52.4	33.3
	전체			2.2	18.1	79.7		4.3	18.1	41.3	36.2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9	29.4	52.9	14.7			38.2	44.1	17.6	
	여성	3.6	1.8	19.6	53.6	21.4	7.1	3.6	28.6	39.3	21.4
	근무 이용시설	3.8	1.3	24.4	50.0	20.5	3.8	2.6	29.5	41.0	23.1
	교육기관			15.4	69.2	15.4	7.7		46.2	38.5	7.7
	근무 5년 미만	7.4	3.7	18.5	55.6	14.8	7.4	7.4	18.5	59.3	7.4
	경력 5년 이상	1.6		25.0	51.6	21.9	3.1		37.5	32.8	26.6
	전체	3.3	1.1	23.1	52.7	19.8	4.4	2.2	31.9	40.7	20.9
전체 케이스		1.5	1.3	13.5	30.5	53.3	1.5	2.8	21.3	35.4	39.0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30.5%, 매우 필요하다 53.3%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가족 쉼터의 필요성 또한 필요하다 35.4%, 매우 필요하다 39.0%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79.7%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49.7%, 장애인 전문가 19.8%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가족쉼터의 필요성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51.2%로 장애인 부모(36.2%)와 장애인 전문가(20.9%) 보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부모의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IV-40〉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향후 이용의향 1

대상	구분	장애인교육연수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장애인	성별	남성	2.4	3.5	22.4	11.8	60.0	1.2	23.5	17.6	57.6
		여성		1.3	35.4	26.6	36.7		2.6	23.4	24.7
	연령	50대 미만	1.9	5.6	44.4	18.5	29.6	3.8	30.2	30.2	35.8
		50대 이상	.9	.9	21.6	18.9	57.7	.9	20.0	17.3	61.8
	장애 유형	신체장애	1.6	3.1	26.6	21.1	47.7	1.6	21.3	24.4	52.8
		내부/정신장애			37.1	11.4	51.4	2.9	29.4	11.8	55.9
	장애 등급	1-2급	1.5	1.5	29.4	16.2	51.5	1.5	20.9	29.9	47.8
		2-3급	1.9	1.9	30.8	21.2	44.2	2.0	29.4	17.6	51.0
		4-5급			4.8	23.8	19.0	2.4	19.0	9.5	69.0
		전체	1.2	2.4	29.1	18.8	48.5	1.8	23.3	21.5	53.4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9.8	7.3	82.9			4.9	95.1
		여성			14.4	12.4	73.2			3.1	93.87.6
	소득	300만원 미만			10.0	10.0	80.0			1.4	86.90.0
		300만원 이상			16.2	11.8	72.1			2.9	7.489.7
	자녀	발달장애			11.5	14.8	73.8				9.890.2
		자폐성장애			13.2	9.4	77.4			3.8	7.588.7
	유형	중복장애			16.7	4.2	79.2			4.2	4.291.7
	자녀	모두도움필요			12.9	3.2	83.9				3.296.8
	생활	일부도움필요			14.0	11.6	74.4			2.3	8.189.5
	능력	혼자생활가능			9.5	19.0	71.4				19.081.0
장애인 전문가		전체			13.0	10.9	76.1			2.2	8.089.9
	성별	남성	3.3	3.3	20.0	36.7	36.7	3.3	3.3	16.7	40.036.7
		여성			29.8	34.0	36.2			27.7	36.236.2
	근무 기관	이용시설	1.3	1.3	26.9	34.6	35.9	1.3	1.3	23.1	37.237.2
		교육기관									
	근무 경력	5년 미만			27.3	27.3	45.5			18.2	31.850.0
		5년 이상	1.8	1.8	26.8	37.5	32.1	1.8	1.8	25.0	39.332.1
		전체	1.3	1.3	26.9	34.6	35.9	1.3	1.3	23.1	37.237.2
		전체 케이스	.8	1.3	22.8	19.2	55.9	.3	1.1	15.6	19.863.3

- 자립복지재단 내 장애인 교육연수시설이 건립된다면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9.2%, 매우 이용하고 싶다 55.9%로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이용의향 또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9.8%, 매우 이용하고 싶다 6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교육연수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76.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48.5%, 장애인 전문가 35.9%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9.9%로 장애인(53.4%)과 장애인 전문가(37.2%)보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41〉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2

대상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연수생 숙박시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다	매우 이용하고 싫다
장애인	성별 남성	3.5	21.2	16.5	58.8	2.4	4.8	26.5	20.5	45.8	
	여성	3.9	26.0	16.9	53.2	2.5	3.8	30.4	16.5	46.8	
	연령 50대 미만	9.6	32.7	19.2	38.5	1.9	7.7	36.5	17.3	36.5	
	50대 이상	.9	18.9	16.2	64.0	2.7	2.7	24.5	19.1	50.9	
	장애 신체장애	3.2	22.2	19.0	55.6	2.4	4.8	27.2	17.6	48.0	
	유형 내부(정신장애)	5.7	25.7	11.4	57.1	2.9	2.9	31.4	22.9	40.0	
	장애 1-2급	4.4	25.0	19.1	51.5	1.5	3.0	35.8	13.4	46.3	
	2-3급	4.0	24.0	12.0	60.0	5.8	5.8	21.2	25.0	42.3	
	등급 4-5급	2.4	16.7	19.0	61.9	4.9	22.0	19.5	53.7		
	전체	3.7	23.3	17.2	55.8	2.5	4.3	28.4	18.5	46.3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4.9	95.1		9.8	7.3	19.5	7.3	56.1	
	여성		7.2	8.2	84.5	8.2	7.2	13.4	8.2	62.9	
	소득 300만원 미만		2.9	7.1	90.0	5.7	4.3	14.3	10.0	65.7	
	300만원 이상		7.4	7.4	85.3	11.8	10.3	16.2	5.9	55.9	
	자녀 발달장애			8.2	91.8	6.6	9.8	14.8	9.8	59.0	
	장애 자폐성장애		11.3	7.5	81.1	13.2	5.7	11.3	5.7	64.2	
	유형 중복장애		4.2	4.2	91.7	4.2	4.2	25.0	8.3	58.3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96.8	6.5	3.2	12.9	3.2	74.2	
	생활 일부도움필요		7.0	7.0	86.0	9.3	7.0	17.4	8.1	58.1	
	능력 혼자생활가능			19.0	81.0	9.5	14.3	9.5	14.3	52.4	
장애인 전문가	전체		5.1	7.2	87.7	8.7	7.2	15.2	8.0	60.9	
	성별 남성			26.7	36.7	36.7	6.7	6.7	33.3	26.7	26.7
	여성		2.1	25.5	42.6	29.8		12.8	31.9	25.5	29.8
	근무 이용시설	1.3	25.6	39.7	33.3	2.6	10.3	33.3	25.6	28.2	
	기관 교육기관										
근무 5년 미만	근무 5년 미만		18.2	31.8	50.0		9.1	31.8	18.2	40.9	
	경력 5년 이상	1.8	28.6	42.9	26.8	3.6	10.7	33.9	28.6	23.2	
	전체	1.3	25.6	39.7	33.3	2.6	10.3	33.3	25.6	28.2	
전체 케이스		1.8	17.2	18.2	62.8	4.8	6.6	24.6	16.1	47.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8.2%, 매우 이용하고 싶다 62.8%로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연수생 숙박시설의 이용의향 또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6.1%, 매우 이용하고 싶다 4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7.7%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55.8%, 장애인 전문가 33.3%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연수생 숙박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60.9%로 장애인(46.3%)과 장애인 전문가(28.2%)보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42〉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3

대상	구분	탈시설지원시설					장애인아동재활치료시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4.8	2.4	18.1	24.1	50.6	7.2	1.2	20.5	22.9	48.2
	여성	1.3	2.6	33.3	23.1	39.7		5.2	26.0	16.9	51.9
	연령 50대 미만	3.9	5.9	41.2	19.6	29.4	2.0	8.0	38.0	16.0	36.0
	50대 이상	2.7	.9	18.2	25.5	52.7	4.5	.9	16.2	22.5	55.9
	장애 유형 신체장애	3.2	1.6	25.8	25.8	43.5	4.8	1.6	22.4	22.4	48.8
	내부/정신장애	2.9	5.7	22.9	17.1	51.4		8.8	23.5	14.7	52.9
	장애 등급 1-2급	3.0		29.9	22.4	44.8	4.4	2.9	29.4	23.5	39.7
	2-3급	5.9	2.0	27.5	31.4	33.3	6.0	4.0	18.0	22.0	50.0
	4-5급		4.9	14.6	17.1	63.4			17.1	14.6	68.3
	전체	3.1	2.5	25.5	23.6	45.3	3.7	3.1	23.0	20.5	49.7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2.4	17.1	12.2	68.3		22.0	2.4	17.1	12.2	46.3
	여성	1.0	3.1	12.4	12.4	71.1	30.9	8.2	14.4	10.3	36.1
	소득 300만원 미만	1.4	1.4	15.7	10.0	71.4	32.9	2.9	11.4	11.4	41.4
	300만원 이상	4.4	11.8	14.7	69.1		23.5	10.3	19.1	10.3	36.8
	자녀 빌딩장애	1.6	3.3	11.5	13.1	70.5	23.0	6.6	13.1	14.8	42.6
	장애 자폐성장애		3.8	13.2	11.3	71.7	32.1	9.4	17.0	9.4	32.1
	유형 중복장애			20.8	12.5	66.7	33.3		16.7	4.2	45.8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12.9	6.5	77.4	38.7	3.2	9.7	3.2	45.2
	생활 일부도움필요		3.5	15.1	11.6	69.8	23.3	9.3	19.8	9.3	38.4
	능력 혼자생활가능		4.8	9.5	23.8	61.9	33.3		4.8	28.6	33.3
	전체	.7	2.9	13.8	12.3	70.3	28.3	6.5	15.2	10.9	39.1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6.7	3.3	36.7	26.7				40.0	33.3	26.7
	여성	2.1	4.3	23.4	38.3	31.9	2.1	4.3	27.7	31.9	34.0
	근무 이용시설	3.8	3.8	28.2	33.3	30.8	1.3	2.6	32.1	32.1	32.1
	기관 교육기관										
	근무 5년 미만			18.2	36.4	45.5			27.3	22.7	50.0
장애인 전문가	경력 5년 이상	5.4	5.4	32.1	32.1	25.0	1.8	3.6	33.9	35.7	25.0
	전체	3.8	3.8	28.2	33.3	30.8	1.3	2.6	32.1	32.1	32.1
	전체 케이스	2.4	2.9	21.8	21.5	51.5	12.2	4.2	22.0	19.4	42.2

- 탈시설 지원시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21.5%, 매우 이용하고 싶다 51.5%로 이용의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의 이용의향 역시 조금 이용하고 싶다 19.4%, 매우 이용하고 싶다 4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탈시설 지원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70.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45.3%, 장애인 전문가 30.8%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49.7%로 장애인 부모(39.1%)와 장애인 전문가(32.1%)보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43〉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4

대상	구분	장애인아동상담지원시설					케어팜시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다	매우 이용하고 싫다
장애인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6.0	3.6	20.5	22.9	47.0	6.0	1.2	23.8	22.6	46.4
	여성	3.8	25.6	21.8	48.7		2.6	5.1	39.7	16.7	35.9
	연령 50대 미만	9.8	33.3	21.6	35.3		5.8	5.8	38.5	26.9	23.1
	50대 이상	4.5	.9	18.0	23.4	53.2	3.6	1.8	27.9	17.1	49.5
	장애 신체장애 유형 내부/정신장애	4.0	3.2	23.2	24.8	44.8	4.0	2.4	32.5	21.4	39.7
	장애 1-2급	3.0	6.0	28.4	23.9	38.8	2.9	2.9	36.8	22.1	35.3
	2-3급	5.8	3.8	15.4	28.8	46.2	5.9	5.9	29.4	19.6	39.2
	등급 4-5급			19.5	14.6	65.9	2.4		23.8	19.0	54.8
	전체	3.1	3.7	22.8	22.8	47.5	4.3	3.1	31.3	20.2	41.1
	성별 남성	22.0	2.4	17.1	17.1	41.5			17.1	12.2	70.7
	여성	29.9	8.2	16.5	12.4	33.0	1.0		11.3	9.3	78.4
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소득 300만원 미만	32.9	2.9	14.3	10.0	40.0	1.4		14.3	8.6	75.7
	300만원 이상	22.1	10.3	19.1	17.6	30.9			11.8	11.8	76.5
	자녀 발달장애	19.7	6.6	13.1	18.0	42.6			9.8	13.1	77.0
	장애 자폐성장애	34.0	9.4	20.8	7.5	28.3	1.9		13.2	9.4	75.5
	유형 중복장애	33.3		16.7	16.7	33.3			20.8	4.2	75.0
	자녀 모두도움필요	38.7	3.2	12.9	3.2	41.9	3.2		12.9		83.9
	생활 일부도움필요	22.1	9.3	20.9	12.8	34.9			14.0	11.6	74.4
	능력 혼자생활가능	33.3		4.8	33.3	28.6			9.5	19.0	71.4
	전체	27.5	6.5	16.7	13.8	35.5	.7		13.0	10.1	76.1
	성별 남성			40.0	36.7	23.3	6.7	10.0	30.0	26.7	26.7
	여성	2.1	2.1	31.9	29.8	34.0	4.3	14.9	19.1	29.8	31.9
장애인 전문가	근무 이용시설 교육기관	1.3	1.3	35.9	32.1	29.5	5.1	12.8	24.4	28.2	29.5
	근무 5년 미만			27.3	22.7	50.0			22.7	31.8	45.5
	경력 5년 이상	1.8	1.8	39.3	35.7	21.4	7.1	17.9	25.0	26.8	23.2
	전체	1.3	1.3	35.9	32.1	29.5	5.1	12.8	24.4	28.2	29.5
전체 케이스		11.6	4.2	23.3	21.4	39.4	3.2	4.0	23.2	18.2	51.5

- 장애아동 상담지원시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21.4%, 매우 이용하고 싶다 39.4%로 이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케어팜 시설의 이용의향은 조금 이용하고 싶다 18.2%, 매우 이용하고 싶다 5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장애아동 상담지원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47.5%로 장애인 부모(35.5%)와 장애인 전문가(29.5%)보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케어팜 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76.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41.1%, 장애인 전문가 29.5%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44〉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5

대상	구분	장애인직업체험시설					장애인문화체육시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다	매우 이용하고 싫다
장애인	성별 남성	2.4	1.2	16.9	20.5	59.0	1.2	1.2	19.3	16.9	61.4
	여성	1.3	2.6	24.4	24.4	47.4			23.1	19.2	57.7
	연령 50대 미만	3.8	3.8	26.9	28.8	36.5		2.0	27.5	15.7	54.9
	50대 이상	.9	.9	17.3	20.0	60.9	.9		18.2	19.1	61.8
	장애 신체장애	1.6	1.6	20.0	25.6	51.2	.8	.8	22.6	21.0	54.8
	유형 내부(정신장애)	2.9	2.9	20.0	14.3	60.0			14.3	8.6	77.1
	장애 1-2급	1.5	3.0	25.4	29.9	40.3			28.4	17.9	53.7
	2-3급	1.9	1.9	19.2	17.3	59.6	2.0		17.6	21.6	58.8
	등급 4-5급		2.4	14.6	17.1	65.9		2.4	14.6	14.6	68.3
	전체	1.9	1.9	20.4	22.8	53.1	.6	.6	21.1	18.0	59.6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4	12.2	85.4			2.4	12.2	85.4	
	여성		9.3	9.3	81.4			7.2	11.3	81.4	
	소득 300만원 미만		7.1	8.6	84.3			7.1	11.4	81.4	
	300만원 이상		7.4	11.8	80.9			4.4	11.8	83.8	
	자녀 발달장애		6.6	9.8	83.6			6.6	16.4	77.0	
	장애 자폐성장애		9.4	11.3	79.2			5.7	9.4	84.9	
	유형 중복장애		4.2	8.3	87.5			4.2	4.2	91.7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93.5			6.5	3.2	90.3	
	생활 일부도움필요		9.3	10.5	80.2			5.8	12.8	81.4	
	능력 혼자생활가능			23.8	76.2			4.8	19.0	76.2	
	전체		7.2	10.1	82.6			5.8	11.6	82.6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30.0	36.7	33.3			16.7	36.7	46.7	
	여성	2.1	29.8	36.2	31.9	2.1		27.7	42.6	27.7	
	근무 이용시설	1.3	29.5	35.9	33.3	1.3		23.1	39.7	35.9	
	기관 교육기관										
	근무 5년 미만		18.2	31.8	50.0			18.2	36.4	45.5	
	경력 5년 이상	1.8	33.9	37.5	26.8	1.8		25.0	41.1	32.1	
	전체	1.3	29.5	35.9	33.3	1.3		23.1	39.7	35.9	
	전체 케이스	1.1	.8	17.5	20.9	59.8	.5	.3	15.9	20.2	63.1

- 장애인 직업체험시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20.9%, 매우 이용하고 싶다 59.8%로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의향은 조금 이용하고 싶다 20.2%, 매우 이용하고 싶다 63.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직업체험시설의 이용의향을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대상별로 보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82.6%로 장애인(53.1%)과 장애인 전문가(33.3%)보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2.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59.6%, 장애인 전문가 35.9%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45〉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6

대상	구분	인권박물관 등 인권전시체험시설					인권연수원등 인권교육시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전혀 이용하고 싫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싫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싫다	매우 이용하고 싫다	
장애인	성별 남성	3.6	26.5	13.3	56.6	1.2	3.6	19.3	15.7	60.2		
	여성	5.1	40.5	20.3	34.2		2.6	48.7	17.9	30.8		
	연령 50대 미만	9.6	28.8	23.1	38.5	2.0	5.9	43.1	11.8	37.3		
	50대 이상	1.8	35.5	13.6	49.1		1.8	29.1	19.1	50.0		
	장애 신체장애	4.0	36.8	17.6	41.6	.8	1.6	37.1	16.9	43.5		
	유형 내부/정신장애	5.7	20.0	14.3	60.0		8.6	20.0	17.1	54.3		
	장애 1-2급	4.5	40.3	19.4	35.8	1.5	3.0	38.8	19.4	37.3		
	2-3급	1.9	36.5	17.3	44.2		2.0	39.2	17.6	41.2		
	등급 4-5급	4.9	19.5	12.2	63.4		2.4	19.5	12.2	65.9		
	전체	4.3	33.3	16.7	45.7	.6	3.1	33.5	16.8	46.0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2.4	4.9	41.5	29.3	22.0	4.9	4.9	39.0	34.1	17.1	
	여성	3.1	3.1	47.4	21.6	24.7	4.1	1.0	46.4	23.7	24.7	
	소득 300만원 미만	2.9	42.9	27.1	27.1		1.4	41.4	28.6	28.6		
	300만원 이상	5.9	4.4	48.5	20.6	20.6	8.8	2.9	47.1	25.0	16.2	
	자녀 발달장애	3.3	6.6	52.5	18.0	19.7	3.3	3.3	52.5	21.3	19.7	
	장애 자폐성장애	3.8	1.9	37.7	32.1	24.5	7.5	1.9	39.6	30.2	20.8	
	유형 중복장애			45.8	20.8	33.3			33.3	33.3	33.3	
	자녀 모두도움필요	3.2	32.3	19.4	45.2		6.5		35.5	19.4	38.7	
	생활 일부도움필요	4.7	3.5	51.2	20.9	19.8	4.7	2.3	48.8	24.4	19.8	
	능력 혼자생활가능			4.8	42.9	42.9		4.8	38.1	47.6	9.5	
장애인 전문가	전체	2.9	3.6	45.7	23.9	23.9	4.3	2.2	44.2	26.8	22.5	
	성별 남성	3.3	10.0	33.3	23.3	30.0	3.3	6.7	26.7	33.3	30.0	
	여성	2.1	8.5	23.4	31.9	34.0		6.4	29.8	29.8	34.0	
	근무 이용시설	2.6	9.0	28.2	28.2	32.1	1.3	6.4	29.5	30.8	32.1	
	기관 교육기관											
경력	근무 5년 미만			4.5	18.2	22.7	54.5			4.5	22.7	22.7
	5년 이상	3.6	10.7	32.1	30.4	23.2	1.8	7.1	32.1	33.9	25.0	
	전체	2.6	9.0	28.2	28.2	32.1	1.3	6.4	29.5	30.8	32.1	
전체 케이스		1.6	5.0	36.8	21.7	34.9	2.1	3.4	36.6	23.3	34.5	

- 인권박물관 등 인권전시체험시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21.7%, 매우 이용하고 싶다 34.9%로 이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인권연수원 등 인권교육시설의 이용의향은 조금 이용하고 싶다 23.3%, 매우 이용하고 싶다 34.5%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인권전시체험시설의 이용의향을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대상별로 보게 되면 장애인이 45.7%로 장애인 전문가(32.1%)와 장애인 부모(23.9%)보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게 되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46.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전문가 32.1%, 장애인 부모 22.5%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46〉 자립복지재단 내 건립시설의 이용의향 7

대상	구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가족 쉼터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다소 이용하고 싶지않다	보통	조금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장애인	성별 남성	3.6	17.9	20.2	58.3	2.4	3.6	16.7	21.4	56.0	
	여성	2.5	36.7	26.6	34.2			28.2	29.5	42.3	
	연령 50대 미만	5.7	35.8	22.6	35.8		3.8	26.9	26.9	42.3	
	50대 이상	1.8	22.5	23.4	52.3	1.8	.9	19.8	24.3	53.2	
	장애 신체장애	1.6	29.1	26.0	43.3	1.6	2.4	24.6	27.8	43.7	
	유형 내부(정신장애)	8.6	17.1	14.3	60.0			11.4	17.1	71.4	
	장애 1-2급	1.5	30.9	27.9	39.7	1.5	1.5	25.0	30.9	41.2	
	2-3급	3.8	32.7	21.2	42.3	2.0	2.0	23.5	25.5	47.1	
	등급 4-5급	2.4	14.6	17.1	65.9		2.4	17.1	14.6	65.9	
	전체	3.0	26.8	23.2	47.0	1.2	1.8	22.1	25.2	49.7	
장애인 부모	성별 남성		4.9	17.1	78.0			36.6	31.7	31.7	
	여성		6.2	10.3	83.5		3.1	32.0	24.7	40.2	
	소득 300만원 미만		4.3	10.0	85.7		1.4	32.9	28.6	37.1	
	300만원 이상		7.4	14.7	77.9		2.9	33.8	25.0	38.2	
	자녀 발달장애		3.3	18.0	78.7		1.6	42.6	26.2	29.5	
	장애 자폐성장애		7.5	9.4	83.0		1.9	26.4	34.0	37.7	
	유형 중복장애		8.3	4.2	87.5		4.2	25.0	12.5	58.3	
	자녀 모두도움필요		6.5		93.5			19.4	19.4	61.3	
	생활 일부도움필요		7.0	12.8	80.2		3.5	40.7	24.4	31.4	
	능력 혼자생활가능			28.6	71.4			23.8	47.6	28.6	
	전체		5.8	12.3	81.9		2.2	33.3	26.8	37.7	
장애인 전문가	성별 남성		3.3	23.3	40.0	33.3		33.3	33.3	33.3	
	여성		4.3	21.3	38.3	36.2	2.1	2.1	23.4	31.9	40.4
	근무 이용시설		3.8	21.8	38.5	35.9	1.3	1.3	26.9	32.1	38.5
	기관 교육기관										
	근무 5년 미만			13.6	36.4	50.0			13.6	40.9	45.5
	경력 5년 이상		5.4	25.0	39.3	30.4	1.8	1.8	32.1	28.6	35.7
	전체		3.8	21.8	38.5	35.9	1.3	1.3	26.9	32.1	38.5
	전체 케이스		2.1	18.2	22.4	57.4	.8	1.8	27.2	27.2	43.0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싶다 22.4%, 매우 이용하고 싶다 57.4%로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가족 쉼터의 이용의향은 조금 이용하고 싶다 27.2%, 매우 이용하고 싶다 4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이용의향을 대상별로 보면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부모가 81.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47.0%, 장애인 전문가 35.9%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가족 쉼터의 이용의향을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기준으로 대상별로 보면 장애인이 49.7%로 장애인 전문가(38.5%)와 장애인 부모(37.7%)보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47〉 장애인전문가 간담회 주요 논의결과

구분	논의 내용
장애인 인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과 인권의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는 방향을 설정 자립원이 폐쇄된 이유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 인권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자립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권의식을 고취 필요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의 활용 자립재단 내 역사성에 기반한 인권의 상징적 시설 설치 필요 경증장애인중심의 직업재활이나 직업훈련이 아닌 중증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시설 필요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이 어려울 경우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구상 필요
장애인 전문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졸업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얻어 자립할 수 있는 능력개발 시설 필요 일자리(직업) 이외에도 기본적인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필요 평생교육센터를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평생교육과 직업재활 및 교육시설, 공동생활과 관련한 주거지원, 문화여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컨벤션센터, 인권과 관련한 박물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유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
장애인부모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직업재활이전에 자립지원 시설 필요(실질적인 자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체험胡同 등 시설 필요 별별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자립훈련과 돌봄의 통합적 지원), 장애부모님의 정보교류와 모임 성인기 자녀의 성교육 등 장애아대상 교육기관 필요, 탈시설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일과 주거공간의 통합, 성인별달장애아동의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재활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필요 자립부지 내 평생교육센터는 접근성이 어려움으로 적합치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자립재단 내 자립학교를 활용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필요 전라북도 및 전주시가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역사회 도처에 설치한다면 자립학교내 평생교육센터 설치는 불필요 자립재단 내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찬성 하지만 일부 부지라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전제되어야 함(케어팜 활용 장애인돌봄시설은 적극 찬성)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원을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통합의 공간으로 구성 자립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와 문화 그리고 직업재활의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 국가의 정책동향 그리고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자료 : 이중섭 외(2018) 전북연구원 내부자료를 중간보고회 논의자료와 종합하여 정리

- 한편, 기본구상 연구 이전 자립복지재단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단계와 본 연구의 중간보고회에서 진행된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는 자립원 활용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부모회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과의 네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장애인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의 구축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
- 또한, 자립복지재단을 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다만,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자립복지재단의 상징성보다는 현재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기반하여 당장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

V



국내외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V. 국내외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1.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의 방향은 국가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까지 총 5차 종합계획이 수립됨
-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과 포용사회’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책목표로 복지건강지원체계구축,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활성화,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그리고 권리 및 안전강화 등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
- 또한 5차 종합계획에서는 5개 분야의 22개 중점과제 그리고 중점과제 이하에 약 7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중에서도 주요정책으로는 장애인소득보장급여체계 개편, 탈 시설 주거지원강화, 빌달장애인 지원강화 그리고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등이 제시됨

〈표V-1〉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추진 개요(1998~2017년)

구분	제1차(1998~2002)	제2차(2003~2007)	제3차(2008~2012)	제4차(2013~2017)	제5차(2018~2022)
비전 와 평등 보장	장애인의 원전한 사회참여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정책 목표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 인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 서비스 개발·제공 ② 통합교육 확대 ③ 안전적 장애인 고용 실현 ④ 디지털 복지사회 구축 ⑤ 장애인 이동편의체계 구축	① 장애인 복지 및 건강증진 ②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③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현 ④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현 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확대 ⑥ 권리 및 안전강화 ⑦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⑧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리 증진	① 복지건강지원체계 개편 ②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③ 사회참여 활성화 ④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⑤ 권리 및 안전강화 ⑥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⑦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리 증진	
세부 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주요 정책	· 장애 범주 확대 · 장애인 고용 지원	· 장애수당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 · 문호비우처 도입	· 장애인연금 도입 · 장애인활동지원스 도입	· 장애등급제 개편 및 ·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 시범 사업	· 장애인소득보장급여 개편 ·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 빌달장애인 지원강화 ·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참여 부처	3개 부처	5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자료: 관계부처 협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제구성.

〈표V-2〉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 중점과제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활성화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권익 및 안전강화
1. 탈시설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2. 탈시설 및 주거지원강화 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의 확대 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 마련	1. 장애인소득보장 급여 체계 개편 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3. 장애인 편의증진, 의사소통 4.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5.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육성 한 기반 마련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3. 장애인 편의증진, 의사소통 4.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5.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6. 장애인 편의증진, 의사소통 7.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8.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강화 9.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여행 10. 장애인체육 및 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1. 장애인 인권보호강화 2. 재난 안전지원시스템 강화 3. 빌달장애인 서비스지원 강화 4.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5.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여행 6. 장애인체육 및 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1. 장애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재난 안전지원시스템 강화 3. 빌달장애인 서비스지원 강화 4.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5.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여행 6. 장애인체육 및 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자료: 관계부처 협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재구성.

- 5차 장애인정책 중점과제의 5대 분야의 22개 핵심과제를 보면, 복지건강지원체계 개편에서는 탈시설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활동지원 내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자립지원강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소득보장 급여체계 개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사회참여활성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정보접근성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분야 그리고 권익 및 안전강화 분야에서는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원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빌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이처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핵심방향은 탈시설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및 직업 재활활성화를 통한 소득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이동권 강화와 장애인 교육권 강화 그리고 빌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탈시설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광역시도에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전환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장애아동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어 있음
-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문제시 되어온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문제를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장애영역보다도 빌달장애인을 정책의 중점과제로 제시하여 세부사업으로 제시한 점이 가장 특징적임
- 빌달장애인의 경우 그동안의 장애인 정책이 주로 지체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에게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빌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강조됨
- 빌달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활전문치료를 포함하여 돌봄을 위한 평생교육인프라의 구축 등이 핵심사업으로 제시됨

2.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열악한 취업률과 고용율을 신장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중임
- 하지만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이로인해 장애인의 고용율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계획 수립중
- 장애인의무고용율 개선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까지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율을 상향하고, 민간기업과 의무고용율 적용기준이 동일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부문도 3.4%로 상향 조정함
-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율은 2014년 2.54%에서 2015년 2.62% 그리고 2017년 2.7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표V-3〉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획(안)

구분	91년~08년	09년	10년~11년	12년~13년	14년~16년	17년~18년	19년	비고
국가	공무원	2.0%	3.0%			3.2%	3.4%	정원기준
자치단체	근로자	미적용		2.3%	2.5%	2.7%	2.9%	3.4%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0%		3.0%	3.0%	-3.0%	3.2%	3.4%
								상시근로자 기준
민간기업				2.3%	2.5%		2.7%	2.9%
								3.1%

자료: 관계부처 협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재구성.

- 2017년 기준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율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은 2.85%, 비공무원 4.65% 그리고 공공기관 3.08%, 민간기업 2.61% 등임
- 장애인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보면, 공무원은 82.7%, 비공무원 89.8% 등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비교적 높은 의무이행율을 보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58.6%, 민간기업은 45.7% 등으로 행정기관보다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V-4〉 '17.6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구 분	사업체수	장애인수*	고용률	이행비율
계	28,218	213,381(173,209)	2.73(2.22)	46.8
정부	공무원	313	24,367(21,130)	2.85(2.47)
	비공무원	294	13,037(9,686)	4.65(3.46)
공공기관	599	13,312(11,609)	3.08(2.69)	58.6
민간기업	27,012	162,665(130,784)	2.61(2.10)	45.7

자료: 관계부처 협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재구성.

〈표V-5〉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구분	노동수요측면	노동공급측면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무 고용제 개편 · 표준사업장 요건 완화 및 지원확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훈련 체계 혁신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 장애학생 통합취업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청년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 · 여성 및 장년장애인의 고용, 유지지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무고용율 · 장애고용 이행률 · 평균임금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36.5%→ 2022년 38.0% 2017년 46.8%→ 2022년 60.0% 2017년 73.6%→ 2022년 77.0% 	

자료 : 고용노동부(2018)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최종안

-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율은 민간기업 중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 이행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수준임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비전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를 통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으로 설정하고 노동수요측면 그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동공급측면에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중점과제를 보면, 노동수요측면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편, 표준사업장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고,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장애인직업훈련 체계 혁신,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그리고 장애학생 통합취업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중증 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장애인의 취업역량강화, 여성 및 장년 장애인의 고용, 유지 지원 등을 제시함
- 이 같은 세부적인 중점과제를 통해서 장애인의무고용율은 2022년까지 38.0%로 확대하고, 장애인고용 이행률도 60.0% 상향하며 평균임금격차는 77.0%로 완화하겠다는 성과목표도 함께 제시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자치단체·공공·민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스타트업 등의 모델화와 사업화를 위한 허브 공간 필요하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제시함
- 이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과 직무를 발굴하고 현장에 확산하기 전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험공간 마련 필요
- 또한, 표준사업장의 테스트베드 및 장애인의 창업공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화되고 있음, 즉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창업공간 마련

〈표V-6〉 직능별 고기능·신규 훈련직종(안)

구분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훈련 직종	ICT융합개발, SW개발 웹디자인, 스마트기계 등	스마트팩토리, IT전기전자 제어설계 등	사물인터넷(IoT) 개발, 전자제어 스마트기계 등	3D프린팅, IT 서비스 등	드론SW개발, IT기반전기시스템, 스마트 금형설계 등

자료 : 고용노동부(2018)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최종안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테스트 베드 설치 필요성 역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바리스타, 무인점포, 팩시터) 등 지원할 계획
-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신산업수요에 맞춰 새롭게 개편할 계획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고기능 신규훈련 직종 안에서는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은 ICT 융합개발, SW개발 웹디자인, 스마트기계 등

3.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추진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의 평생케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생애주기별 핵심사업을 선정 발표
-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에서는 생애주기를 발달장애애인,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그리고 전체 주기로 범주화하고 영유아기에는 핵심사업으로 발달장애인정밀검진비 지원, 통합유치원 및 특수학급의 확대 그리고 부모교육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됨
-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신설, 특수학급 확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고, 청장년기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설, 중증장애인고용 및 근로지원인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됨
- 또한 중노년기에는 장애인검진기관의 확대와 건강주치의제도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전체 생애주기에는 권역별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확대, 공공후견인 법률지원확대 등의 사업이 핵심사업에 포함됨
-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리고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복지부의 돌봄대책 그리고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책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및 직업훈련 대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됨

〈표V-7〉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생애주기	주요과제
영유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명 → 7,000명)로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개 → 17개) 및 특수학급 확대(731학급 → 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 ('19년 4,000 → '22년 2만 2000명)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교, 1만 325 학급 → 197교, 1만 1575 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18년 7개소 → '19년 13개소)
청장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19년 1,500명 → '22년 1만7,00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18년 2,500명 → '19년 5,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8년 1,200명 → '19년 3,000명)
중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선택제 도입 등)
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 8개소) · 공공후견안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 기초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 명 → 2만 명)

자료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2018)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자료

-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10대 과제와 24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발달장애인의 정밀검진에서부터 직업훈련 및 취업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으로 제시
-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정밀검진비를 7천명까지 지원하고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을 60개소, 통합유치원을 17개소 설치할 계획임
- 또한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197개교까지 확대하고 특수학급도 1.1만 학급으로 확대하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던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바우처도입을 통해 2.2만명(청소년방과후 수요 100%)까지 지원할 예정임
-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 1.7만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확대하여 총 6.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해서는 휴식지원을 현행 1만명에서 2만명까지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거점 병원도 현행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할 예정임
- 또한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건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확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등도 관련 세부사업에 포함됨
-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발달장애가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사회적응에 따른 지역사회통합이 가장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른 시기에 장애가 출현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이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가 충분치 않아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가족까지도 상당한 부양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때문임
- 실제로 2018년 기준 발달장애인 수는 22.6만명에 이르고 있고(지적장애인 20.1만명, 자폐성 장애인 2.5천명)으로 매년 3/6%p정도 증가추세에 있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예산도 현재보다도 약 세배 이상 증액한다는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고용율을 현행 23%에서 36%로 높이고 갈 곳 없이 집에만 방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비율도 현행 26%에서 향후 2% 이하까지 낮출 계획임
-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그리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건립과 맞춤형 훈련센터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약 1.2천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표V-8〉 제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 중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 행정기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 (시·도) 지역 실정을 감안한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운영 · (국기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등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및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및 지원 확대 ·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급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 ·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를 통한 장애인 교육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확대도 병행 추진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평생 교육 접근성 제고 ·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자료 : 교육부(2017)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또한 발달장애인의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기반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제시
-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학령기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기회를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지원확대 등을 제시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기반구축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그리고 학령기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기회를 잃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의 확대 등을(교육부, 2017)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세부계획 제시
-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시스템 등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예정
- 이외에도 시도의 지역상황을 감안한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장애유형에 맞는 학력인정 맞춤형 평생교육시스템 개발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시
- 장애인 평생교육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는 계획수립에 더하여 전담기구 구축 그리고 시도 광역단위에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구축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및 운영을 제시

4.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화

- 2018년 5월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되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그리고 동법 제86조에 의해 연1회 그리고 1시간 이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함
- 2017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 1,638,425개소, 교육 대상자 수 14,526,473명으로 2022년까지 매년 1,000명씩 5,000명 이상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나 무장애 교육공간과 담당교수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주기적 보수교육
- 특히, 최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유형이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효과성이 높은 체험형 등 다양화·세분화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인력 필요성이 대두
- 동법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근로자로서 1인 사업주도 포함), 임원, 이사 등의 관리자나 상급자를 포함하여 소속직원 전체가 교육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에서는 향후 직장 내 사내강사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으로 법안 통과 시 인식개선 강사 양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
- 교육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추가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① 직장 내 장애인 차별 상담과 구제 조치 등과 같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 ② 업종별 우수 기업 장애인 고용 사례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한 내용 등으로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이 법에 따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최근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근로장애인의 기존의 부수적 업무에 대한 보조 뿐 아니라 장애인노동자의 전반적인 직업생활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
-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유형 별 맞춤형 교육을 받은 전문 지원인력 양성이 필요

〈표V-9〉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범위

주제	목적	대상	교육방법	주요기관
인권교육	장애인인권 인권일반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공무원 일般시민	강의, 사이버교육	국기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의 이해 및 예방중심, 장애체험	아동, 청소년, 비장애인 전문가 등	강의, 현장체험	국립재활원 복지관
	장애인학생과 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장애인체험	학생, 교직원	강의, 강사초청 시청각자료 활용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고용주 인식개선	사업주 비장애인근로자	사이버강의 집체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방송콘텐츠 이용 대국민 홍보	국민, 학생	UCC공모, 방송, 영상을	장애인먼저 운영 실천본부 인식개선센터
강사양성교육	인식개선강사 양성	장애인, 비장애인	강의, 실습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장애인 훈련 및 취업지원 기능을 하는 평가사·훈련교사·진로지도 상담사 등 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수가 1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독립적인 교육 인프라 및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
- 장애인인식교육을 위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또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교육기관의 지정시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강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강사를 계속하여 두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결국,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 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고용공단에서도 장애인고용율이 낮은 기업 그리고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 학생, 장애인과 가족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실무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과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과정 그리고 사이버연수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이 중 장애인인식개선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표V-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프로그램 내용

교육과정명	교육과정 구성	교육방법	교육시간
고용평등 인식개선교육 (8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이해하기 • 장애인과 함께하기 •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한 이해 • 직장내 성희롱이란? •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판단요건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 	사이버연수원	4시간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하모니 (7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로보는 장애 ·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1 •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2 •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3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하기 • 고용전후 고려할 사항 고용상 장애차별이 아닌 경우 	사이버연수원 포이트용 콘텐츠	3시간
장애 및 에티켓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개념 및 시대적 변천 • 장애인 응대 에티켓 	사이버연수원 포이트용 콘텐츠	1시간
장애인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 •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사례 	사이버연수원 포이트용 콘텐츠	2시간
장애, 함께 생각해보기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장애인이란? • 장애유형별 이해 I · II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사이버연수원 포이트용 콘텐츠	2시간
장애인과 함께하기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한 장애인과 함께하기 I · II · III · IV 	사이버연수원 포이트용 콘텐츠	2시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재구성

- 특히,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하여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평가사와 상담사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운영이 필요하나, 관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5. 사회적 농업(케어팜)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도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시책을 마련중에 있고, 최근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 농식품부는 2019년도에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을 통해서 케어팜을 비롯한 사회적 농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전략 제시
-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
-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추진전략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통한 따뜻한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략목표로 사회적 농장 확대, 농촌주민 공동체 활성화, 농업 및 농촌가치화산 등 세 가지를 제시함
-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을 위한 연차별 추진과제로는 기반조성단계(2019~2020), 도약단계(2021~2022), 그리고 확산단계(2023~)로 구분하고 사회적 농장을 최대 100개소 확대하고 사회적 농업의 등록제 도입, 그리고 공공기관 구매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표V-11〉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

비전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확대 ·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 농업계 내외에 농업 및 농촌의 가치 확산 		
연차별 주요과제	기반조성(2019~2020)	도약(2021~2022)	확산(2023~)
분야별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2019 : 18개소→2020:30개소) · 온라인플랫폼 구축(2019) · 성과지표 개발(2019) · 지원센터 설치(2020) · 법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확대 (2021:50개소→2022: 70개소) · 분야별 거점농장 운영 · 사회적농업교육홍보 확대 · 돌봄공동체조성(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확대 (2023 : 100개소) · 등록제 도입(2023) · 공공기관 구매추진 · 커뮤니티케어 등 복지제도연계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사회적 농업추진전략(2019. 3. 15)

〈표V-12〉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구성비
합 계	54	54	54	60	60	62	58	33	435	100
소득사업유형	47	50	51	47	43	38	27	11	314	72.2
사회서비스 제공형	4	2	0	4	4	5	6	4	29	6.7
복합형	3	2	3	9	13	19	25	18	92	2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분야별 정책현황

-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추진계획은 사회적 농업 육성법(2018. 12)의 발의를 계기로 농업을 연계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과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치유와 재활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적 농업의 실행조직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 등을 주요 대상자로 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유통과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농업인과 취약계층간의 상호작용으로 추진할 계획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의 핵심사업조직은 사회적 농장 혹은 거점농장은 시범사업단계를 거쳐서 2020년까지 총 1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임
- 사회적 농장은 예비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으로 분류하여 지원계획을 차별화할 계획인데, 예비 사회적농장은 사회적 농장의 참여를 원하는 농업사업자가 사회적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치유와 재활 등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행사나 공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사회적 농장을 추진하는 거점농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농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농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자문, 체험, 현장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농업의 연결망을 지원할 계획임
- 농촌진흥청(2018)에서는 치유농업(Agro-healing)의 성장을 위한 2단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제시
-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농업의 다각화 일환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표V-13〉 사회적 농업 발전 계획

1단계(2013~2017)	2단계(2018~2022)	3단계(2023~)
치유농업 도입	치유농업 정착	치유농업 안정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법 제정 · 치유농업 정착 방안 수립 · 치유농업 R&D 중장기 계획수립 ·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 치유농업 인정기준 도입 · 치유농업 예산확보 ·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 · 치유농업 성공사례 도출 · 치유농업 가치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원회 구성 · 복지, 고용 등 관련법 개정 · 치유농업 국가계획 수립 · 융복합 R&D 전략 시행 · 치유농업 인력제도 정착 · 치유농업 인정제도 시행 · 치유농업 중장기 예산 · 치유농업 운영자 지원체계 조성 · 치유농업 산업화 조성 · 치유농업 통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련법 개선 · 국가 및 지방계획 수립 · 사업성과 평가 제도화 · 융복합 R&D 성과 평가 · 치유농업 인력제도 개선 · 치유농업 인정제도 개선 · 치유농업 예산제도 도입 · 운영자 지원체계 정교화 · 산업체 지원기반 확대 · 치유농업 통계 GDP반영

자료 : 농촌진흥청(2018) 치유농업 정착 2단계 전략 주чин 보도자료

- 농진청(2018)이 발표한 사회적 농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총 3단계로 구성된 발전계획 상에서 1단계는 제도화 단계로서 치유농업의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과 계획의 수립 그리고 전문인력양성 등의 세부실천과제 추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계획 2단계에서는 치유농업 국가위원회 구성, 복지 및 고용관련법의 개정, 치유농업 국가계획의 수립과 관련 인력의 양성 등을 세부 실천 계획으로 제시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치유농업 인력제도와 인정제도의 개선과 함께 예산제도 운영 추진 예정
- 사회적농업 혹은 케어팜이나 치유농장 등의 사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한 중요 방법으로서 2000년대부터 활용

〈그림V-1〉 치유농업활용 케어팜의 영역 및 효과



자료 : 김경미(2014) 6차산업 활성화 릴레이시마니 자료집

VI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안

VI.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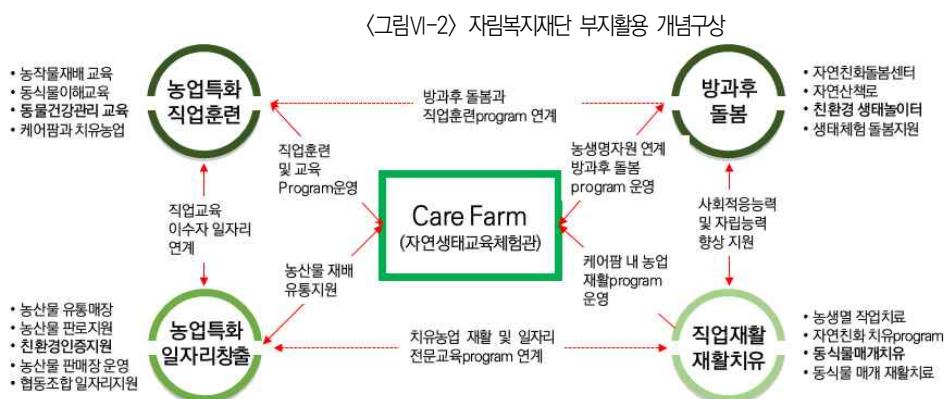
1.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향

-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의 활용은 자립복지재단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역사성을 복기하고 지역사회의 완전한 장애인의 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필요
-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의 활용을 위한 가치는 ‘역사성’, ‘실용성’, 그리고 ‘통합성’에 기초하여 공간 재구상 필요
- 역사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립복지재단의 폐쇄 이전 이용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를 역사적 상징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에서 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와 상징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임
- 두 번째 가치인 실용성은 자립복지재단의 공간이 갖는 경제적 특성에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규모에 적합한 적절한 시설로 구성되어야 함
- 실용성의 가치에는 자립복지재단의 공간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최적화된 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라북도 다수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 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
- 자립복지재단이 실용성의 관점에서 공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
- 자립복지재단의 궁극적 지향점은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지역의 특성 그리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주요 경향을 반영한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

〈그림VI-1〉 자립복지재단 활용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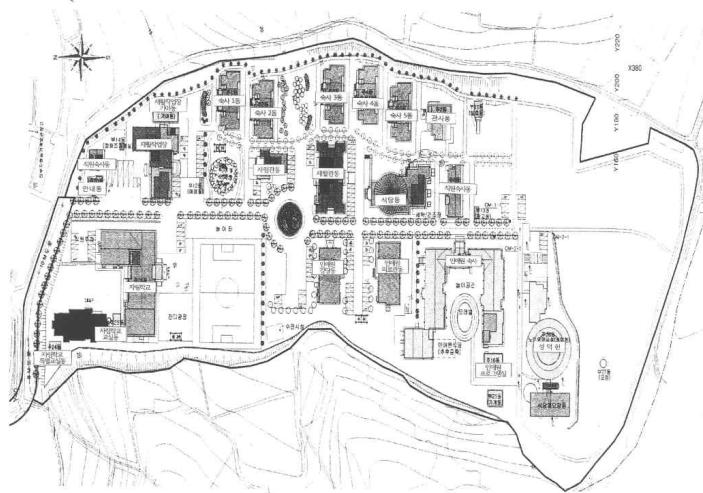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전라북도의 장애인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시자의 관점에서의 객관적 욕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세 번째 가치는 통합성으로 자립복지재단의 공간은 장애인만의 고립된 공간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공간으로 조성
- 자립복지재단은 단순히 장애인을 시설에서 수용하던 공간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시설로 조성 필요
- 이 같은 세 가지 가치체계에서 자립복지재단이 구상될 경우 기본재산 활용의 기본방향은 ‘인권과 돌봄’, ‘재활과 치유’ 그리고 ‘여가와 힐링’으로 구체화
- 인권과 돌봄은 자립복지재단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인권친화적인 공간의 조성 그리고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공간으로 조성
- 또한 장애인의 생애주기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재활과 치유가 가능한 전문적인 시설로 재구조화해야 함
- 장애인의 정규교육 이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사회적응능력의 향상,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한 치유와 재활의 공간으로 조성
- 또한 자립복지재단은 전라북도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여가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 필요
- 여가와 힐링의 공간은 단순히 자립복지재단이 장애인만을 위한 분절된 공간이 아닌 장애인과 장애인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연과 함께 쉬고 다양한 여가를 체험할 수 있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 여가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자립복지재단의 자연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태자연체험, 산책로 등의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자립복지재단 부지현황 및 환경 분석

- 자립복지재단의 부지는 지적용도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설정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내에 장애인거주시설,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5개 유형의 8개 복지시설로 구성
- 자립복지재단 내 사회복지시설로는 장애인공동작업장 3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 소,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그리고 노인요양원 1개소 등 설치
- 자립복지재단의 기존 시설물은 장애인특수학교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로 구성됨

〈그림VI-3〉 자립복지재단 대상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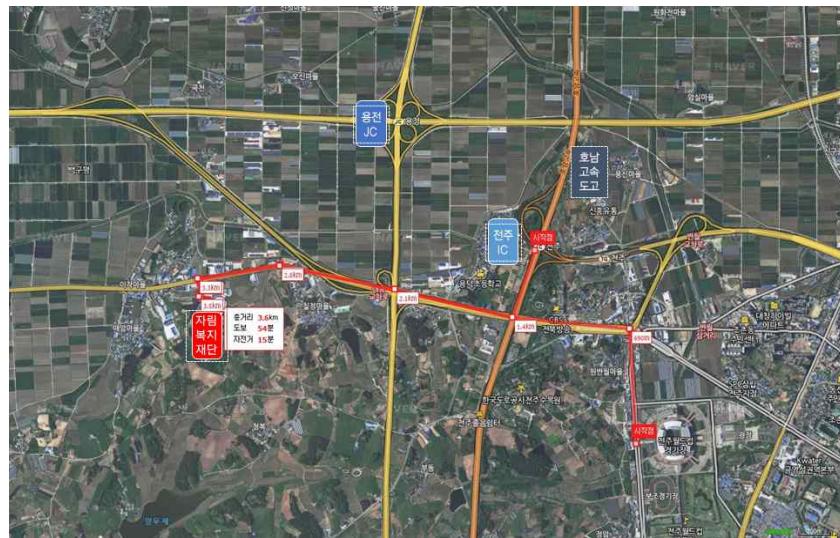
- 자립복지재단은 성덕동뿐만 아니라 평화동과 반월동에도 위치하고 있고, 기본계획 구상 대상지역은 성덕동 토지로 면적은 70,953m²로 기본재산의 가액은 약 42.3억원 정도임
- 여기에 총 6개 유형의 복지시설은 재산가액이 127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성덕동의 자립복지재단의 건물과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170억원 정도임

〈표VI-1〉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현황

구 분	면 적	용 도	소재지	재산가액
평화동 토지	37,685m ²	임 야	평화동3가 산40-1	22,000천원
성덕동 토지	70,953m ²	전,답,도로 등	성덕동 377,477등	4,234,718천원
성덕동 건물	12,792m ²	자립원 등	성덕동 477번지외 21동	12,723,178천원
반월동 건물	204m ²	공동생활가정	삼오A 103-308등 3개소	196,000천원

자료 : 전라북도(2018) 내부자료

〈그림VI-4〉 자림복지재단 교통망



- 자림복지재단의 교통망은 호남고속도로인 전주IC에서 자림복지재단까지 약 3.3km의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인 용전JC에서도 약 3.2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인근 주요시설인 월드컵경기장도 자림복지재단까지 약 3.5km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
- 다만, 자림복지재단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의 국도이고 외곽도로에서 자림복지재단까지의 진입로는 왕복 2차선으로 설치되어 있음
- 자림복지재단의 부지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자림복지재단의 연결도로와 진입도로는 다소 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자림복지재단을 장애인의 인권과 고용 그리고 돌봄이 연계된 통합형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는 점에서 향후에는 재단으로의 연결도로와 진입도로는 확장공사가 불가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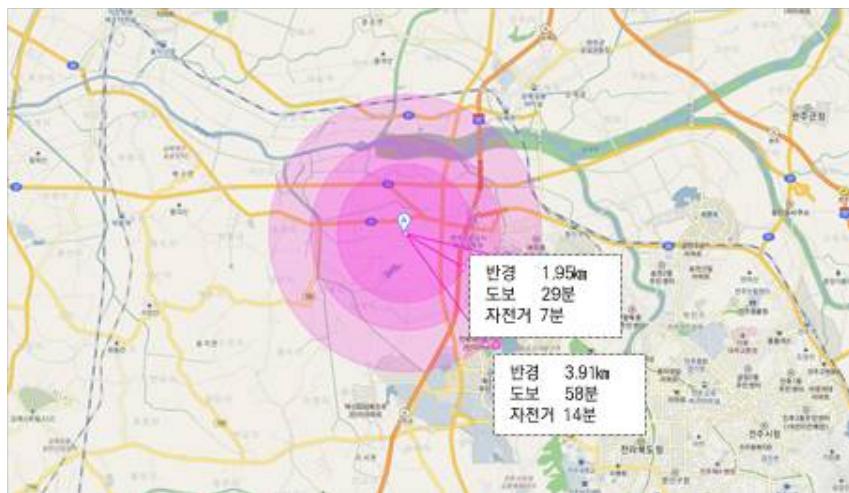
〈그림VI-5〉 자림복지재단 연결도로



〈그림VI-6〉 자림복지재단 진입도로



〈그림VI-7〉 자림복지재단 인근지역 거리



- 자림복지재단의 인근 지역의 반경 거리를 분석해 보면, 전주한옥마을과는 약 14km 내외에 위치하고 있고, 전라북도청과도 반경 10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음
- 자림복지재단으로의 광역교통망(고속도로)의 주요진입로인 전주IC 외는 반경 2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접근성은 매우 용이함
- 특히, 자림복지재단은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주 완주 혁신도시와도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림복지재단 내 장애인 관련 주요 사업(케어팜이나 장애인치유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과의 연계도 용이함
- 자림복지재단에서 농촌진흥청은 8km, 원예특작과학원 10.5km, 국민연금공단 8km, 국립농업 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 등도 10km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의 다양한 농생명 산업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계 사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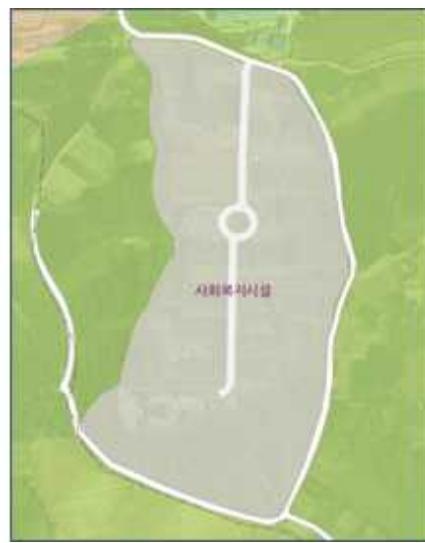
〈그림VI-8〉 자림복지재단 인근지역 거리



〈그림VI-9〉 자림복지재단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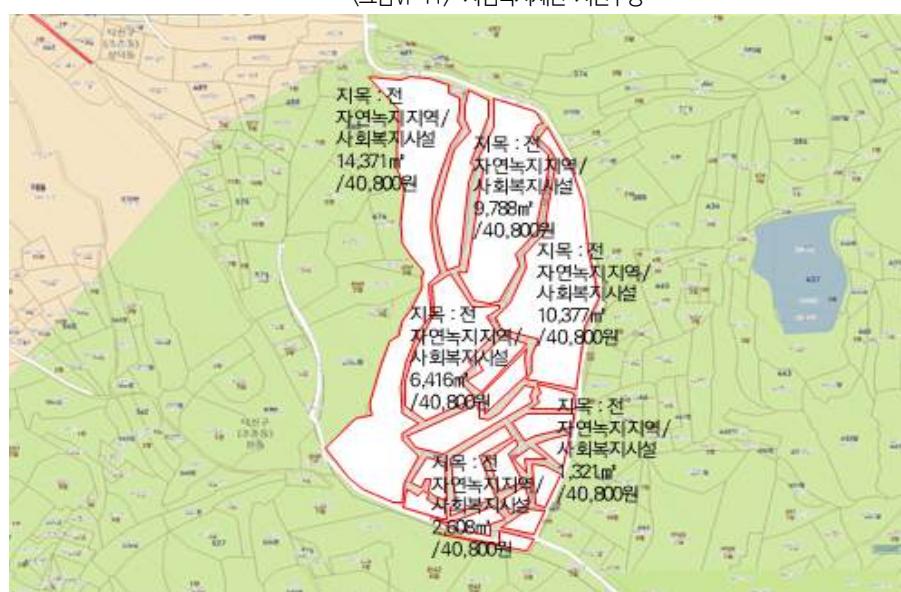


〈그림VI-10〉 자림복지재단 지적용도



- 자림복지재단은 지적도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음
- 자림복지재단의 자연녹지는 노인요양시설 배후에 조성된 공간으로서 규모면에서 장애인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가능
- 한편, 자림학교는 자림학교동, 특별교실동, 교실동 등으로 건축되어 있고,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신규건축물로 리모델링 등을 통한 운영방안 고민 필요
- 자림원은 총 5개 숙사동과 직원숙사동, 관사동, 식당동, 매점동, 창고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건축면적은 3,598.20m²로 조성됨

〈그림VI-11〉 자림복지재단 지번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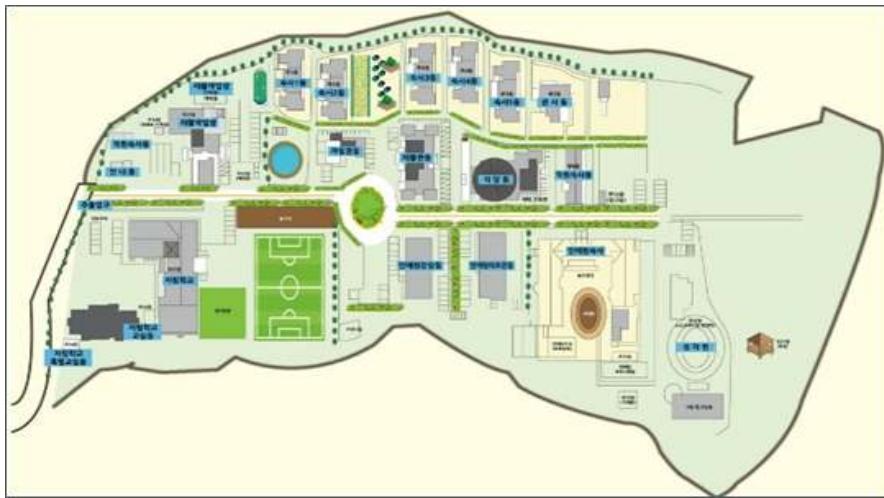


- 자림복지재단의 지적도상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자림복지재단 내 주요부지는 지목상 전답(밭농사를 위한 토지)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자림복지재단 내 부지이외에도 활용이 인근 자연녹지의 경우 활용가능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물의 증축 혹은 추가 시설의 수요에 따라서는 인근부지 활용 가능
 - 자림복지재단 인근 자연녹지의 활용가능부지는 향후 추가시설로 논의하게 될 케어팜 등의 자연치유공간 조성에 적합한 부지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추가 논의 필요
 - 자림복지재단 인근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도상으로 인근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구성
 - 한편, 자림복지재단의 주요 부지 중에서 추가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경우 개발가능공간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인 임야 약 $6,574m^2$ 정도 이용가능
 - 자림복지재단의 공간 내 주요시설에 대한 구상이 장애인 직업체활과 교육연수 그리고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종합커뮤니티센터로 구상될 경우 현재 자림복지재단 내 공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임야로 구성된 자연녹지지역의 공간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그림VI-12〉 자림복지재단 인근 도시계획상 부지



〈그림VI-13〉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 전술한 바와 같이 자립복지재단은 교통접근로 인근지역에 전주 IC가 위치하고 있고, 국도로서 용정 JC가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이용접근성도 매우 훌륭한 편임
- 다만, 자립복지재단의 진입로가 왕복 2차선 국도로 설치되어 있어 향후 자립복지재단의 시설규모에 맞춰 교통량의 확대에 따른 진입로 확장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립복지재단 내 주요 시설물을 보면, 입구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자립학교, 운동장, 인애원, 숙사동, 성덕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지활작업장, 자립숙사동, 자활관 그리고 식사동이 위치하고 있음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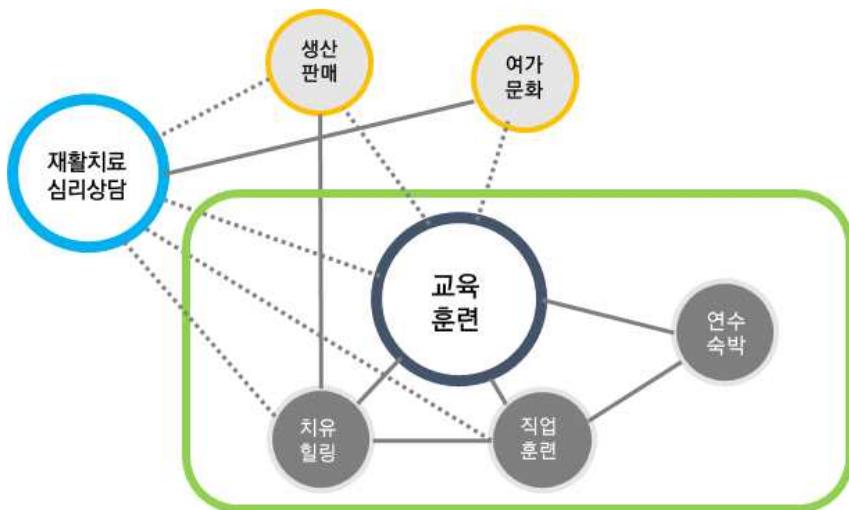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기본구상

VII.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기본구상

1.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상 방향

- 자립복지재단의 공간구성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국외 장애인재활 및 직업인프라의 구축방향, 그리고 장애인복지욕구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장애교육훈련 그리고 장애인힐링과 여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조성 필요
- 또한, 자립복지재단 내 각 시설물의 공간은 모든 공간이 상호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시설간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
- 또한, 자립복지재단의 광범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구상중인 시설과 지역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현실적 고민도 필요
- 이 같은 구상 하에서 자립복지재단은 크게 교육훈련(연수) 그리고 재활치료를 핵심사업으로 상호 연계가능한 시설의 배치를 통해서 지역장애인의 주된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
- 교육훈련시설은 장애인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국가정책의 흐름에 조응하여 장애인인식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한 교육 및 연수시설을 거점으로 연수숙박(집체교육), 직업훈련(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연계) 그리고 치유와 힐링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

〈그림VII-1〉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성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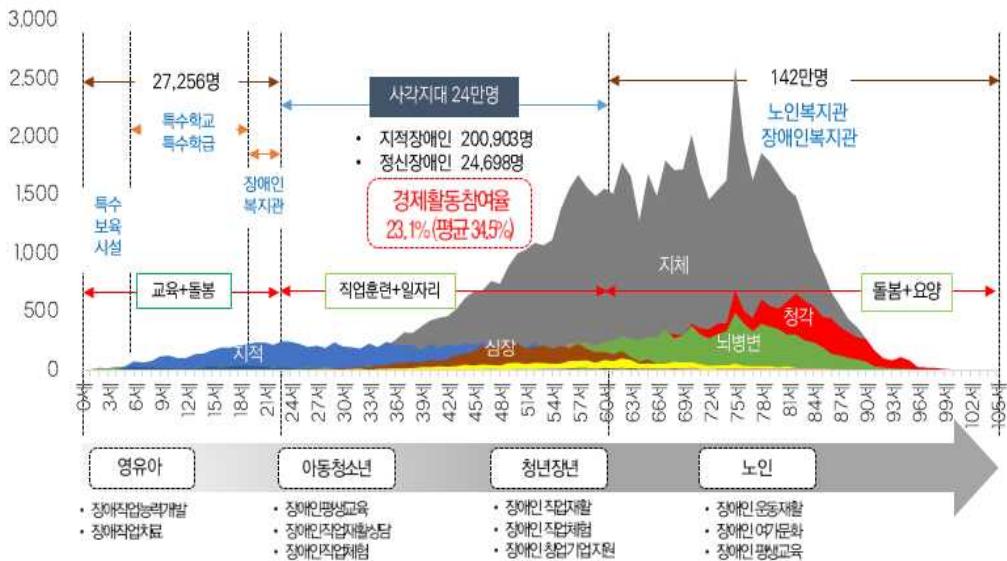
〈표VII-1〉 자립복지재단 주요 공간의 기능과 특징

구분	내용	목적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 장애인고용사업주 장애인취업향상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 지역주민 장애인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교육program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능력향상
연수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육연수생 집체교육을 위한 숙박시설 · 장애인 교육훈련 연수생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 장애부모 및 장애인단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힐링 ·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동 장애정도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동 원예 및 식물재배 체험 프로그램 교육 · 장애아동 동물체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능력향상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고용향상
치유힐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 케어팜 치유단지 운영 · 장애인 적합 케어팜 운영프로그램 실습 ·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 돌봄형 체험농장 운영 · 장애인 케어팜 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치유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방과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 재활치료향상 · 장애인 사회재활 강화
재활치료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치료재활센터 운영 · 장애아동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음악치료실 운영 · 장애인 직업상담실 운영 · 장애부모 양육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사회적응력 강화 · 장애부모 양육부담경감 · 장애인직업능력향상
생산판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농산물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 운영 식당 및 카페 운영 · 장애인 휴게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일자리 창출 · 장애인생산품 판매증진
여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여가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종합체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 · 장애아동 수중재활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신체능력향상 · 장애인 재활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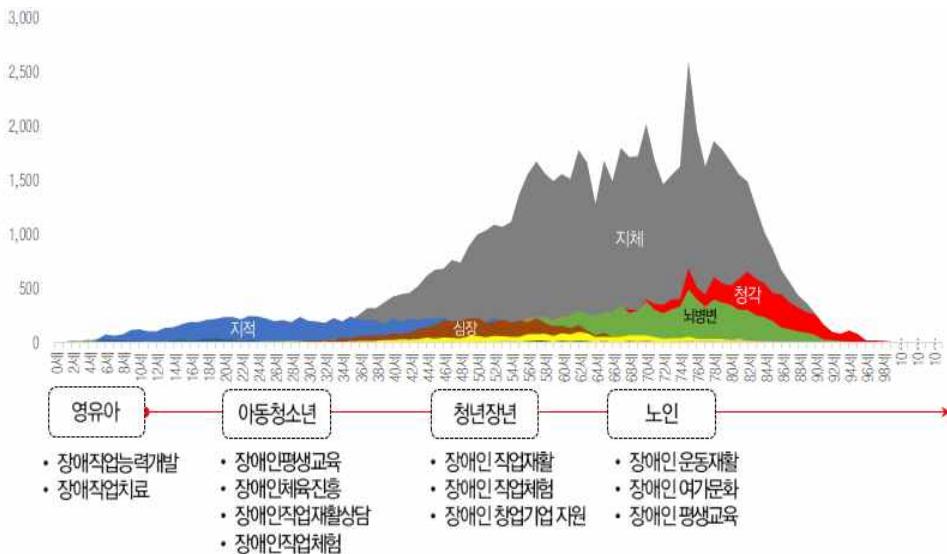
- 자립복지재단의 주요공간의 기능과 특징을 보면, 교육훈련 공간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연수숙박 공간의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교육연수생 집체교육, 장애인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단체 및 부모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직업훈련의 공간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장애정도별 맞춤형 직업훈련, 장애아동 원예 및 식물재배 교육훈련, 장애아동 동물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치유와 힐링의 공간에서는 농생명 케어팜 치유단지 조성, 장애인 적합 케어팜 운영프로그램 실습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부모를 위한 돌봄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은 장애아동 및 장애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주민과 장애아동이 함께 쉴 수 있는 판매장 및 카페로 조성
- 생산과 판매의 공간에서는 장애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소비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 배치
- 여가문화 공간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신체적 재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 설치
-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성은 사업유형별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형 지원 시설로 조성
- 특히,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고용에 방점을 둔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서에 맞는 통합형지원시설로 설치하되, 현재 장애인의 고용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을 특성화하여 종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공간 활용 필요
 - 장애유형 중에서도 취업과 일자리, 고용에 있어 상당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간설계 필요
 - 장애유형중에서도 돌봄, 일자리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보다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빨итель장애인의 욕구가 공간구성과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특성화 필요(한국 지체장애 고용율 42.5→지적장애 고용율 25.4%, 지적장애인 고용율 한국 25.4%→일본 51.9%)

〈그림VII-2〉 전국 연령대별 등록장애인 현황 및 정책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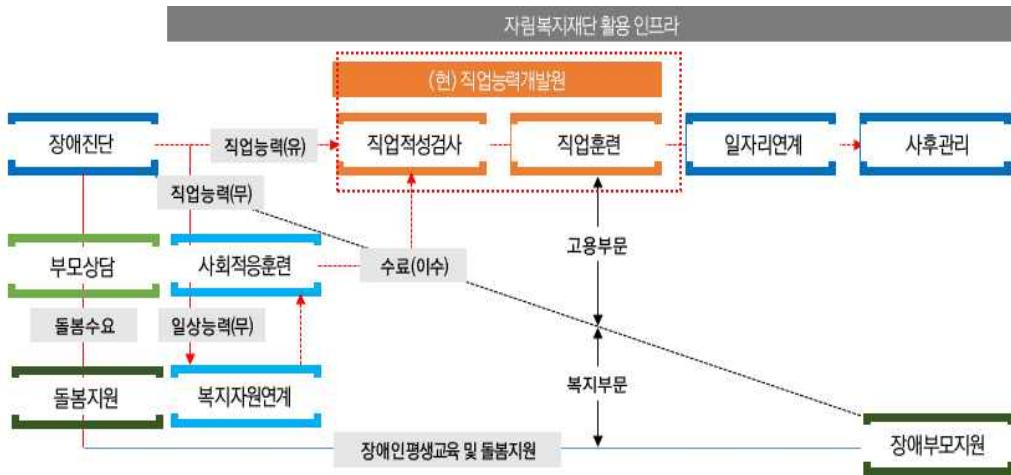


〈그림VII-3〉 전라북도 연령별 장애인현황 및 정책욕구 진단



-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은 2018년 기준 1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의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인 4.9%보다도 약 2.2%p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수요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19세 미만 장애청소년의 경우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20세에서 50세까지의 청년 및 장년 장애인은 직업훈련과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은 일자리나 직업훈련 등의 경제적 욕구보다는 돌봄과 요양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다만, 6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주로 장애인복지분야 보다는 노인돌봄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주된 정책 대상은 60세 이하의 아동과 청장년 장애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함
- 특히, 다른 장애의 유형보다도 학령기 졸업 이후 성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함
- 학령기까지는 장애아동의 돌봄과 교육이 특수학교와 제도권 교육체계 내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학령기 이후에는 지역사회내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과 교육체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자립복지재단의 주요 공간에 대한 구상에서는 지역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정책적 지원이 취약한 학령기 이후 장애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가 있음

〈그림VII-4〉 자립복지재단 주요 공간의 기능과 특징



- 자립복지재단 내 활용부지의 활용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나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배제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함
- 현재 장애인의 고용 및 복지전달체계에서 장애의 진단과 그에 따른 직업적성검사와 직업훈련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일자리 연계나 사후관리는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 부모 및 장애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이전에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에 맞는 사회적응훈련도 일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부재한 상황임
-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의 지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이외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자립복지재단은 전술한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전달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각각의 전달체계가 개별 장애인이나 개별사업중심으로 파편화되지 않고 자립복지재단 내 전체 공간에서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함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및 부모까지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용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표VII-2〉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중요한 정책영역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진단 및 판정	정확하고 타당한 장애진단과 판정	행동특성을 고려한 재진단과 판정	
재활치료	효과있고 다학제적인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조기개입	연속성 있고 통합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유지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변화에 대응 조기노화와 관련된 건강지원 노화에 대한 건강지원
보육 및 교육	특수교육시스템이 구비된 보육서비스에 접근	내실있는 통합교육 특수교육, 전환교육 이수	평생교육에의 접근
고용		전환교육 내실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접근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조기교실 및 방과후 보호서비스 접근	충분하고 질좋은 주간보호 서비스, 거주공간 접근 건강보호와 통합된 복지서비스 제공
소득보장	발달장애인 보호비용 확보		발달장애인 당사자 소득보장
권익보장	권익보장(자기결정 정보제공, 보호, 의사소통지원, 비인권적서비스 에서의 보호)	권익보장(자기결정 정보제공, 보호, 의사소통지원, 비인권적 서비스에서 의 보호)	의사소통지원, 비인권적 서비스에서 의 보호) 성년후견 지원서비스에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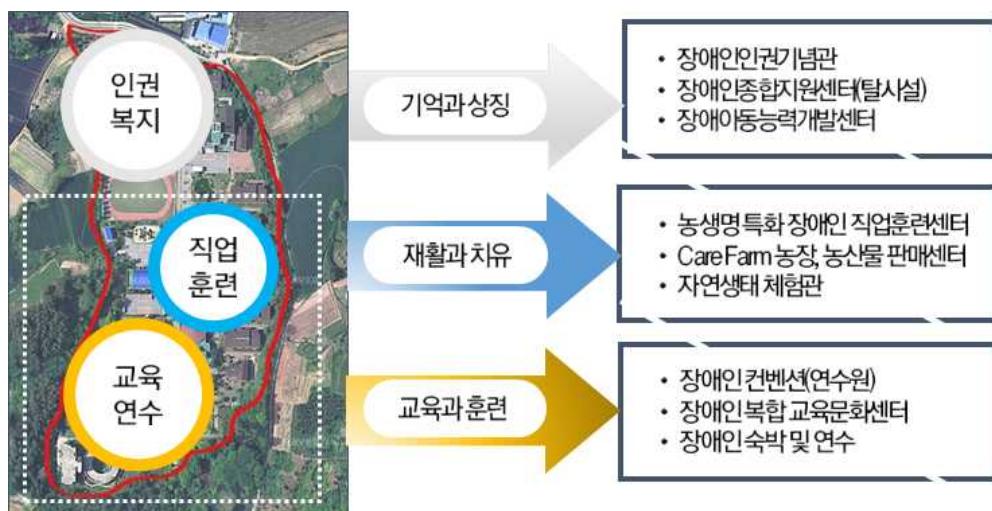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의 적극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은 복지사업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노출
- 따라서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과 직업훈련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통합 돌봄지원기관 필요
-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함께 고용능력발전 이전단계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훈련과 사회적응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훈련 이전에 재활훈련프로그램 서비스 필요
- 전술한 바와 같이 자립복지재단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맞는 맞춤형 일상생활훈련 및 직업재활 등에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대상으로는 일정한 의사결정능력과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체장애인보다는 일상 생활능력이 낮고 자립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시설활용의 필요성 강조
- 자립복지재단 관련 욕구에서는 사업의 영역은 영유아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 기별 정책수요의 반영 그리고 사업대상으로는 신체장애인보다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등의 발달장애인, 사업의 내용으로는 의료적 재활에서부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이르는 사회 및 경제활동 전 영역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자립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통합형 시설로 조성하되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의 정책영역 중 자립에 필요한 훈련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용복지인프라로 구축 필요

2.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상 계획

- 자립복지재단은 자립원 역사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인권과 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장애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의 공간이 구상되어야 함
- 아울러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와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도모 할 수 있는 교육과 연수의 공간이 구상되어야 함
- 전체적으로 자립복지재단은 인권과 복지,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연수의 세 가지 공간구상을 가지고 각각의 공간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시설이 구상되어야 함
- 인권과 복지의 공간에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장애인 인권박물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고용능력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능력개발센터 등의 시설이 구상되어야 함
- 직업훈련 공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시설로는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농생명 특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care farm 농장, 그리고 농산물 판매센터, 자연생태 체험관 등의 시설이 검토되어야 함
- 특히, 직업훈련을 위한 공간에서는 전라북도의 다양한 농생명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식물과 동물 등을 활용한 장애인일자리 연계전략 그리고 그에 필요한 직업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교육연수공간에서는 교육공간으로서 장애인컨벤션, 장애인복합교육문화센터, 그리고 장애인생활관 등의 연수와 체험 그리고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되어야 함

〈그림VII-5〉 자립복지재단 주요 공간의 기능과 특징



3. 자립복지재단 공간 내 주요시설물 운영 사례 검토

1) 인권박물관 운영 사례

-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인권박물관은 캐나다 인권박물관으로 이 박물관은 2013년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헌장(Canadas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공포 21주년을 기념하여 에스페재단, 캐나다 연방정부, 마니토바 지방정부, 위니펙시 등의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권박물관 설립을 공식화(이유혁, 2016)
- 이후 연방정부 스티븐 하퍼수상이 인권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격상하고 인권박물관을 채울 주요 주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2014년 9월 공식 개관하게 됨
- 캐나다의 인권박물관에는 캐나다 원주민의 인권역사를 포함하여, 흑인과 여성, 장애인의 인권발전의 역사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 인권의 역사 등을 소개(넬슨만델라, 여성 인권운동, 난민운동 등)하고 있음
- 2019년도에는 캐나다 인권박물관에는 넬슨만델라의 흑인인권운동, 난민문제 그리고 르완다의 학살 문제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캐나다 인권박물관은 전세계의 다양한 시민의 견학과 함께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권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를 다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서울시에 건립되어 있음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대지면적 345.5 m², 건축면적 308. m², 연면적 248.69m²) 지하 1층에는 일본군 위한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VII-6〉 캐나다 인권박물관



〈그림VII-7〉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 인권박물관은 자립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예방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필요
- 다만, 인권박물관이 자립복지재단의 사건에 한정하여 단순한 전시의 공간 그리고 기억의 공간으로만 활용되기에는 관련 컨텐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박물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필요
- 인권박물관을 복지시설 전반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 전반의 인권을 소재로 다루는 전시 그리고 체험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세부 시설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교육의 공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의 교육공간 여기에 비장애인 전체를 아우르는 인권교육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 필요
- 다만 인권박물관은 독립적인 시설물보다는 인권교육과 연계한 부속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에서 인권박물관을 인권교육시설의 주요사업으로 구상하여 시설물 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인권연수시설의 건립을 제안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인권교육현황에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8시간 미만이었고, 8시간 이상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과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18)
- 특히,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인권교육분야에서도 노동인권분야의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노동인권분야의 교육이 실시된 곳은 전체의 2%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체계적이고 인권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노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인권연수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인권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인권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권연수기관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인권연수원은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연수시설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등이 주된 교육대상자라는 점에서 자립복지재단의 역사성과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2)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총괄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타시도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2018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탈시설지원업무를 핵심업무로 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장애인복지단체와 시설의 지원 평가자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의 업무를 수행함
-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경영지원팀, 교육홍보팀, 자립생활지원팀, 기획팀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장애인 복지수요조사와 정책개발, 장애인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
- 광주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자치법규인 조례에 설치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조례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크게 8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한 기관·법인·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장애인복지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 평가·자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복지지원의 빌굴 및 데이터베이스 국축,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
-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수요조사 및 정책개발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사업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주된 사업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의 종합지원센터는 종합민원상담,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지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지원 등의 사업 명시
- 경기도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출연재단인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요조직으로는 전략기획팀, 총무팀, 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 교육운영팀, 네트워크팀 그리고 자립생활지원팀 등이 있음

〈표VII-3〉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구분	사업내용	분야
종합상담	민관이 연계하여 장애인의 각 분야별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 * 내방상담, 온라인상담, 전문상담 등 형태	일상생활, 공공정책, 건강 및 의료분야, 직업 및 진로분야, 안전 및 권리분야, 등급제 폐지 등 정부정책분야, 자립지원분야, 여성장애인 권리 등 분야 상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현장중심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교육 및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종사자특화교육,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맞춤형 도우미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제공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능동적 참여 확대 및 완전한 지역사회통합 지원	발달장애인 풋살대회, 장애인문화예술사진 공모전, 장애인 음악제, 장애인 낫타단 등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상담, 자립훈련, 자립체험, 일상생활지원 등의 종합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내 총 34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 찾아가는 자립전환교육을 통한 자립인식개선 및 당사자, 가족역량강화 * 자립지원절차 : 자립신청→상담/입주연계→체험홈→자립생활주택→지역사회자립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홈 역량강화교육, 자립생활단기 체험실습 등)
장애인 복지 현장지원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간 net-work 구축/장애인단체간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운영	현장에 기반한 장애인정책 및 컨텐츠 개발단운영 장애인복지소통활성화 사업 장애물 없는 무장애환경(barrier free) 기술 지원 장애인 적합직종개발 및 일자리 연계
장애인관광지원 사업	경기도내 장애인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지원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관광버스지원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여가참여의 기회 제공	무장애 관광도시 지원(경기여행 누림카 운영) 경기여행 누림버스 운영 온동네 경기투어버스 운영

- 경기도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교육과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 특히,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전환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타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상담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장애인의 여가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와 음악제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립을 위한 상담에서부터 자립생활체험과 지역사회자립에 이르는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자립전환을 위해 자체 체험홈을 34개 운영하고 있고, 방문형 자립전환교육을 통해서서 자립인식개선과 장애가족의 자립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고용과 돌봄까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설로서 일본의 고베 행복타운도 참고할 만한 사례임
- 일본 고베에 위치한 행복촌은 총 면적이 205ha(62.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복지복합타운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베의 행복촌에는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여가 및 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 복지 복합 커뮤니티 시설임
- 행복촌은 노르웨이의 복지센터의 모델을 참고삼아 1971년도에 기본개념에 대한 구상을 시작한 이후 1980년 종합건립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을 진행하였고, 1987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체육시설로서 테니스장을 개원하였다. 이후 1988년도에는 고베재활병원 등을 개원하면서 현재의 행복촌을 구성하게 됨
- 고베의 행복촌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 그리고 180병상의 재활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치매전문병원, 요양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
- 특히, 고베의 행복촌은 크게 문화여가, 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교육 및 연수 등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음
- 우선 문화여가시설로는 골프장, 테니스장, 운동장, 온천, 일본식 전통정원, 캠핑 및 야영장 등이 주요시설로 위치하고 있고,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자립지원시설, 공동작업장, 직업훈련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음

〈그림VII-8〉 고베 행복촌 복지복합타운



- 보건의료시설로는 재활전문병원, 양호노인홈, 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시설로는 세미나실과 숙박, 식당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이외에도 행복촌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농업을 활용해서 치유와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복지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농장은 장애인과 노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시설로 설치하였고, 이곳에서는 감자와 화초 등을 재배하고 있음

〈표VII-4〉 고베 행복촌 주요시설물 현황

주요사진	시설문	시설주요 기능
	고베 행복촌 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베행복촌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재단법인 고베시민복지진흥협회가 고베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음 고베행복촌의 총면적은 205ha이고 복지시설만 46.1ha(22.5%), 도시공원 158.9ha(77.5%) 총공사는 약 400억엔
	행복촌 내 일본정원 (산책,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베행복촌이 거주자뿐만 아니라 고베시민이 함께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회전식 연못 주위의 분위기로 설계된 일본식 정원 일본식 정원은 연못, 폭포, 잔디광장, 차실 등 총 1.4ha로 구성
	행복촌 내 장애인재활을 위한 식물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과수원 공간을 활용하여 약 200여종의 약초와 약목을 재배 약용식물의 학습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총 조성면적은 0.3ha로 조성
	행복촌 내 자연산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촌내에는 실외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 산책로 조성 실외문화여가시설로는 자동차캠핑장, 자연공원, 텐트캠핑장 등으로 조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로는 테니스장, 양궁장, 운동광장, 구기장, 야외볼링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으로 조성
	행복촌 진입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촌은 총 17개의 사회복지 및 종합연수시설과 일본정원을 포함한 여가문화시설 그리고 총 11개의 스포츠 및 여가문화시설로 조성된 대규모 사회복지 문화복합타운으로 1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국도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

- 고베 행복촌은 크게 4개의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 간호, 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가를 촉진하는데 있고, 둘째, 고령자, 장애인, 아동, 여성, 근로자 등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함
- 세째, 고베시의 재택복지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연구,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록이 넘치는 자연속에서 모든 시민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
- 마지막으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및 스포츠레크레이션 등 관련분야의 연대를 꾸리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이일본의 행복촌의 운영현황을 보면, 시설의 자체수입이 전체 재정의 20~3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0~80%는 고베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 행복촌의 총 예산은 1년 약 27억엔(약 27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재정의 약 50%는 고베 시로부터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50%는 이익금과 주차시설의 이용료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행복촌은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인해 고베 시로부터의 예산의 재정지원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고베시의 행복촌 건립사업은 고베가 시로 승격한 것을 기념하여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치적 과정에서 출발하였고, 건립당시에는 고베시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았던 베를경제의 시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등의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음
- 하지만 최근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베시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행복촌의 이용자는 고베시의 거주자를 우선 이용자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고베시민에게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촌의 이용자 중에는 고베시민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의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행복촌은 한 개 마을을 복지시설로 구성한 사례로서 행복촌이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진입도로를 편리하게 구축하여 이용접근성을 향상시킨 것도 특징적인 사례임
- 행복촌으로의 진입은 고속도로 2개 그리고 일반국도로 1개가 모두 행복촌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애인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접근성도 매우 훌륭하게 확보한 상황임
- 한편, 행복촌의 운영은 고베시민복지진흥회(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활시설과 병원은 관련 법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3) 장애아동 능력개발센터

- 장애아동능력개발센터는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아동의 사전 조기개입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
- 장애아동능력개발센터는 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감각운동발달 그리고 행동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아가족의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 복지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 공공후견지원, 권리구제 그리고 자격관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및 교육지원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은 크게 언어와 청능, 인지와 행동, 그리고 심리, 감각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영역의 발달지연을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한 치료방법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 감각운동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표VII-5〉 발달재활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및 내용

유형	구분	내용
언어	언어재활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잠재되어 있는 언어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며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돋는 치료기법
	청능재활	듣기능력을 진단하여 현재의 듣기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잔존능력을 사용하여 수용적 의사소통을 이루는데 기여함을 일차적 목표로 둠
미술재활	미술재활	미술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고 또한 장애아동이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상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적구조와 조직을 제공하는 것
	음악재활	장애아동에게 음악을 듣게 하거나 적절한 연주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통합과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등 치료적 효과를 추구하는 심리치료법
심리	행동재활	현재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수정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행동수정기법으로 어떤 형태의 부정적 행동 형태이든 이를 긍정적 행동 형태로 변환하고자 하는 치료기법
	놀이재활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놀이를 이용하는 치료기법
운동	심리운동	운동치료와 심리치료의 중간적 위치로 신체를 매기로 신체기능 개선에 일차적 목적이 있는 운동치료와 주로 인간의 감성이나 인지 등 정신적 심리적 건강 개선에 우선적 목적을 두고 이해하는 치료
	인지재활	인지발달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을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라서 아동의 현행 발달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는 치료기법
감각	감각통합	신체 또는 외부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신경적 기능이 발달하기 위하여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감각자극을 조작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위하여 감각을 조직화하는 치료기법
	운동재활	장애아동의 기능적인 활동을 개선시켜 보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4), 권봉목(2016), 김기수 외(2016) 재인용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 능력개발센터를 국가단위에서 추진하는 지역은 없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발달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과 광역시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보건소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적정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는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영아교육실, 유아교육실, 아동교육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재가지원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아동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근거를 갖추고 있고, 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상담 및 검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제공, 재활치료,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서구는 보건소 내에 생활지원팀을 두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운영,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외에도 대전서구보건소에서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기족을 위한 기족캠프, 야외학습,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화성시에서도 서부권역과 동부권역, 북부와 동탄권역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센터를 운영하여 언어치료와 작업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화성시의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와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의 사회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화성시의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아동을 제외하고는 재활치료프로그램의 일정부분에서 소정의 실비를 받고 있는데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는 회당 12,000원, 인지치료와 언어치료 그리고 심리치료는 회당 10,000원, 특수체육치료프로그램은 회당 4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

〈표VII-6〉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제공프로그램 및 이용료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인지 치료	언어 치료	심리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감각 통합	특수 체육
12,000원 / 회									
			10,000원 / 회						
						7,000원 / 회			40,000원/회

자료 : 화성시 보건소(2019) 홈페이지

- 한편, 일본에서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아동재활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의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는 1970년에 개설된 소아와 아동 전문병원임
- 공립으로 설치된 본 의료센터는 아동대상 329개 병상 그리고 장애아동이 입주해서 생활 할 수 있는 90개의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통합시설임
- 다만,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아동전문의료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이고, 특히,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는 질병군으로는 소아암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는 아동거주시설 내에 아동전문병원으로서 아동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편의시설로 도서관 등을 함께 두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임

〈표VII-7〉 별달재활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및 내용

주요시설	주요내용
종합진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진료과, 응급실과 중환자과 임상 공학과로 구성 · 진료 부서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내과(전문의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의 내과 질환 전문 진료 실시 · 혈액·증양과 내분비 대사과 감염 면역과 신장 내과, 유전과 알레르기과, 신경 내과, 순환기 내과로 구성 · 소아 외과 질환이나 수술을 담당.
외과(전문의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과, 정형 외과, 재활 의학과, 성형 외과, 신경 외과, 심장 혈관 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치과, 마취과, 병리 진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정신과 의사를 중심으로 마음의 진료 외래, 입원 치료 실시 · 또한 심리 치료 · 가족 면접 · 일반 병동의 가족 및 직원의 상담 등을 실시
모자보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과 모성 내과, 산부인과로 구성된 종합 주 산기 보자 의료 센터 · 고위험 임산부 및 병적 신생아 · 미숙아를 대상으로 산모 반송의 수입과 마취과와 모성 내과와 연계하여 응급 대응을 신생아 병동에는 모니터 장비 등 첨단 의료 장비가 다수 정비되어 중증 아동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 (NICU) 이 구비, 또한 구급차에 의한 신생아 이송 등 지원
진단의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기술과, 검사과, 약제과, 영양 관리과 별달 지원과 (임상 심리학과 언어 청각과, 물리 치료학과, 작업 요법 학과)로 구성 ·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증장애인아동 돌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서 중증의 자적 장애와 자체 부자유과를 겸비한 어린이 입소 · 병원이나 자체 부자 유아 시설 등 긴밀하게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와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은 모든 아동 상담소를 통해 진행 · 중증장애인아동돌봄시설에는 장애아동(유아)시설로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입소하여 정형외과적 치료, 기능 훈련 (재활)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임
완화돌봄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임상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연구소에서는 소아에 대한 치료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센터 · 내부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술서를 포함하여 연구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갖추고 있고, 외부도서관도 장애아동과 장애아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래도서관에는 환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질환에 대한 해설서, 투병기, 환자의 동아리 모임 관련 회보, 아동서, 복지관련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음, · 또한 아동환자들이 놀 수 있는 별도의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음

자료 :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2019) 소개소, <http://kcmc.kanagawa-pho.jp/about/files/info-ko1504.pdf>

〈표VII-8〉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의 주요시설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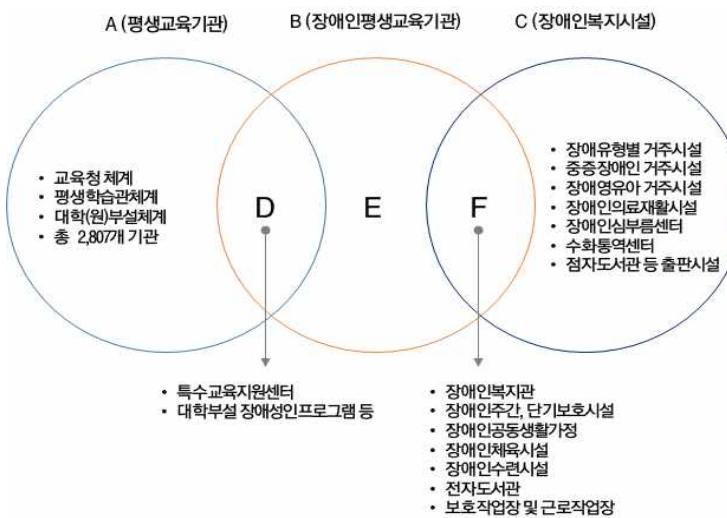
구분	주요시설	관련 내용
도서 열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도서실로 질병이나 건강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음(질병해설서, 환자의 투명기, 환자모임 관련 회보, 복지관련 정보자료, 아동서적 등) 서적대출과 열람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수집 등 가능 외래도서실 내에는 입원아동과 장애아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도 설치되어 있음
옥상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정원으로 중증 장애아동 및 장애인이 직접 정원을 손질하면서 자유나 재활하는 공간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심는 활동, 그리고 정원을 선택하면서 정신적 자유와 재활을 돋는 공간
아동 장난감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이나 입원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교실을 만들어 운영중임 장난감 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장난감을 비치하고 있어 장애아동 및 입원아동이 심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놀이와 치유의 공간으로 운영

-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입주시설로서 중증장애아동 시설과 지체장애아동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 이처럼 일본에서 장애아동 전문의료기관에서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가나가와 어린이 의료시설 이외에는 없음
-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증심신장애아동 시설은 다른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중증 지체장애아동 시설은 정형외과적 수술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임
- 이처럼 가나가와 어린이 의료센터는 단순히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거주시설까지 함께 운영함으로써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의료센터 내의 모자보건국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보기기관 그리고 재택의료 등의 다양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정규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내 돌봄이나 교육체계의 미흡에 따른 학령기 장애인의 졸업 이후 성인장애인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하여 군산시와 익산시가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령기 졸업 이후 성인 장애인의 돌봄수요에 비추어보면 아직까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2조)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조)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규학교 졸업이후에는 지역사회내에서 적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장애정도에 맞는 직업훈련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단위 평생교육센터의 설치는 필요함

〈그림VII-9〉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개념적 구분



자료 : 송소현 외(2011), 최복천(2016) 재인용

-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일부 지방장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센터는 인천시의 서구가 설치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서 이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2,362m²의 규모로 설치
- 인천시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약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일부 예산(40억원)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기부로 추진됨
- 인천 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자립생활지원팀, 전환교육지원팀, 직업교육지원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일제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인천 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1층에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립생활반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과 함께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전환교육반을 4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문화여가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정보화 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로 구성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기관(재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3층 발달장애아동의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교육반을 4 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조리실습실과 같은 사회적응훈련실 그리고 대회의실과 아외공연장 등을 통한 교육공간도 조성되어 있음
- 이처럼 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돌봄과 재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훈련, 일상생활지원훈련, 직업훈련 그리고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발달장애인 통합정보관리 및 보호,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호보,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자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자립생활의 체험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성

〈그림VII-10〉 인천시 서구 평생교육센터 입구



〈그림VII-11〉 인천시 서구 평생교육센터 전체 시설



5) 농생명 특화 장애인직업훈련 센터

- 장애인직업훈련은 한국고용공단 주도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 5개의 권역별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중임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훈련 분야를 보면, 일산은 지능형기계와 전자, 디자인과 인쇄 및 출판 등으로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부산은 해양디자인 전자, 스마트정도 등 의 분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권역에 해당하는 전남은 금형디자인,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그리고 드론 조종 등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직업능력개발원은 2018년도에만 직접훈련 1,613명,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 618명 그리고 특별교육과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1,330명, 단기직무교육 796명, 공공부문 사이버훈련 327명, 그리고 직업체험프로그램 3,248명 등이 교육을 이수함

〈표VII-9〉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정 및 훈련분야

기관	훈련분야	융합전공
일산	지능형기계,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인쇄출판미디어, 귀금속공예, 융합소프트웨어	디자인+IT융합
부산	해양디자인, CAD/CAM, 전자, 스마트정보, 디지털건축설계, 시스템제어, 스마트메카트로닉스	기계+시스템제어
대구	스마트경영(경영회계, 서비스마케팅), CAD/CAM,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지능형로봇제어	정보+전자
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CAD/CAM, 스마트정보, 디자인, 3D프린팅	기계+전자+디자인
전남	금형디자인,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드론조종	기계+전자+정보+디자인
화성(경기남부)	19년 탄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사업설명서

- 직업능력개발원 이외에도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요구하는 장애인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훈련센터를 전국에서 6개소 운영중에 있음
- 맞춤훈련센터는 2017년 451명 그리고 2018년에는 547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취업률은 약 96.5%정도임
- 맞춤훈련센터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전공이외의 취역역량강화를 위해 교양 직장예절, 이미지메이킹, 스피치, 팀워크 등 사회성program, 등반 등 신체능력 향상 program, 임상미술치료와 심리상담 등의 심리재활 program 등을 제공하고 있고, 훈련지원을 위해 수화통역 및 심리상담과 체력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표VII-10〉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교육프로그램 현황

구분	대상	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원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컴퓨터응용기계분야	○	○	○	○	○
	디자인분야	○	○	○	○	○
	전자분야	○	○	○	○	○
	구급속공예분야	○				
	인쇄출판미디어분야	○				
	건축분야	○				
양성과정	외식분야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	○		
	정보기술분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업교육훈련 이수가 가능하고, 노동 능력이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한 자	○	○	○	○
	의상분야	● 학력제한없음		○		
	실무작업분야	○	○	○	○	○
	IT융합분야	○				
	시스템제어분야	○				
	네일아트	○				
	시각장애	○	○	○	○	○
	청각장애	○	○	○	○	○
장애영역별 특성화훈련	정신장애	○	○	○	○	○
	노병변장애	○	○	○	○	○
	지적장애	○	○	○	○	○
	재자지향성훈련	○	○	○	○	○
특별과정 및 재활프로그램	양성훈련지원프로그램	○	○	○	○	○
	정부·공공부문 채용시험준비	●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	○	○	○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	○	○	○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체험	○	○	○	○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공단홈페이지 참고, 이중섭 외 (2018) 재인용

- 장애인직업훈련 분야는 주로 컴퓨터, 디자인, 의상, 외식분야, IT융합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어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는 케어팜 혹은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직업재활과 취업의 연계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임
- 별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도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직업체험,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등 6개 지역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표VII-11〉 별달장애인 훈련센터 교육과정

기관	훈련분야		
직업훈련	장애인유형별 특화 훈련	별달장애인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자)	1개월 ~ 6개월
직업체험	기초과정	특수교육 대상(고1)	4시간 이상
	심화과정	특수교육 대상(고2 ~ 고3)	20시간 이상
인프라지원	특별과정	별달장애인 구직자	20시간 이상
	부모교육	별달장애인 보호자	2시간 이상
	교사교육	특수교육 담당자	2시간 이상
	사업주교육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2시간 이상
	전문가 네트워크	별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2시간 이상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사업설명서

6) 고용복합 커뮤니티센터(연수+교육 기능)

-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교육, 장애인의 직업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연수시설임
-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된 기능은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기능을 포함하여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기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행정기관 연수원의 경우 대강당을 포함하여 운동장, 테니스장, 교육시설, 체육시설, 생활관(기숙사실) 등을 갖추고 있음
- 현재 장애인고용을 주제로 한 복합연수시설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연수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음

〈표VII-12〉 행정기관 교육연수시설 현황

구분	연수시설	이용시설(일반인 가능)	건축물용도	지역	건립
경호실	경호아전교육원			서울 종로구	2006
감사원	감사교육원		공공업무시설	경기 파주시	1999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충북 청주시	2007
미래창조과학부	우정공무원교육원	모든 시설		충남 천안시	1999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대강당, 강의실, 운동장, 테니스장	교육연구시설	대구 동구	2015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 및 업무시설	서울 서초구	1991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충북 진천군	1986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연구시설	경기 과천시	1981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시설(대강당, 컨퍼런스홀,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 건강편의시설(체육시설 일부 등)	교육연구시설	전북 원주군	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분임실, 운동장, 테니스장, 생활관, 구내식당	교육연구시설	전남 나주시	2013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인천 서구	19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시설(강의실, 대강당),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제주 서귀포시	201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동(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생활관	교육연구시설	부산 기장군	1991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연구시설	경기 수원시	2015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시설, 생활관,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충남 천안시	1995
조달청	조달교육원			경북 김천시	2014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시설(강당, 회의실, 강의실), 기숙사실	교육연구시설	대전 서구	2009
	경찰교육원	강당동, 운동장,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충남 아산시	2015
경찰청	경찰수사연구원 중앙경찰학교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1984 1987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교육연구, 복지시설 업무시설	충남 천안시	1986
	중앙소방학교			충남 천안시	1986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연구, 업무시설	전남 여수시	2014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육연구시설	경기 남양주시	1990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전 유성구	1993

자료 : 이상만·차주영(2015)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교육연수시설은 대체로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인식개선, 장애인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관련 설비시설이 필요함
- 아직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은 체험과 교육 그리고 전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 교육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한편, 장애인 대상 연수시설은 무엇보다도 주요 교육시설의 설비가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중요함
- 일본의 장애인연수시설인 오사카의 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진입로에서부터 화장실 그리고 호텔, 식당, 대강당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이 무장애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이 매우 편하게 설치되어 있음
- 실내 시설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실외) 이외 카펫을 설치하여 이동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한 대피를 위해 복도에 점등기를 내장하여 긴급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 엘리베이터도 버튼식 이외에 자체장애인인 휠체어에서 원하는 목적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발로 터치가 가능한 풋스위치 설치
- 이처럼, 장애인 연수시설은 연수시설 내 장애인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외부시설에서 장애인연수시설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 일본의 빅아이(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인근에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입지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특히, 지하철역에서 국제장애인교류센터까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만큼 장애인의 이동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체화되어 있음
- 일본의 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대연회장, 숙박호텔, 연수실(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자료실(베리어프리 프라자), 식당(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시설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신청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숙박시설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이 이동상의 문제없이 편리하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식 침대의 설치 그리고 낙상방지 등의 전자식 안전장치가 설비된 화장실 등을 설치함
- 따라서 장애인 교육관련 연수시설 건립시에는 이 같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상되어야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위해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조성도 함께 구상되어야 함
- 여기에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의 공간이 아닌 장애인과 장애가족 그리고 비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 필요

-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BIG-I(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유엔장애인 10년을 기념하여 후생노동성이 일본 전역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건립됨
- 장애인이 직접 시행하는 국제교류활동과 예술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활발한 교류와 사회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본의 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약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을 중심으로 연수실, 장애인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그리고 레스토랑 등이 설비됨
- 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①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기능, ② 중증 및 중복장애인 교류기능, ③ 장애인이 예술과 문화 증진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기능으로서 ④ 대규모 재해시의 구호지원기능 등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오사카 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장애인국제행사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장애인 관련 다수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그림VII-12〉 일본 오사카 BIG-I 개관

전경



건립	· 후생노동성
운영	· 빅아이와 함께 하는 기구
주소지	· 오사카부 사카이시 미나미 구茶山台1-8-1
구조	· 철근콘크리트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8,000평방미터 · 연 면 적 : 12,000평방미터
건물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홀 : 최대 15,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객석, 휠체어 이용의 경우 최대 1000석 이용가능(이중 휠체어 전용 좌석은 최대 300석) · 연 수 실 : 대연수실, 중연수실, 소연수실 · 숙박시설 : 35실(전용욕실, 화장실, 양실 26실, 일본식 방 6개, 중증장애인 지원회의실) · 레스토랑 : 50석 · 주차장 : 실태 41대, 실외 27대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 론 트 : 09:00~21:00 · 레스토랑 : 07:00~21:00(최종 주민 20:30) · 숙박시설 :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무휴

자료 : 오사카장애인국제교류센터 homepage 참고 재구성

<그림> 일본 오사카 BIG-I 주요시설물 현황

주요사진	시설문	시설주요 기능
	오사카 빅아이 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빅아이(장애인국제교류센터)는 총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사카시에서 건립한 국제장애인교류시설입니다. 오사카 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숙박시설, 대강당, 세미나시설, 카페테리아, 교육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빅아이 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빅아이는 인근지역에 쇼핑몰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에서 빅아이까지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빅아이의 정문에는 국제장애인 교류행사의 안내와 함께 행사관련 주요 소식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강당 (전시 및 문화공연 행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빅아이의 대강당은 1,500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은 접이식 좌석과 함께 매립식 좌석으로 설계하여 좌석을 매립한 이후 실내에서 문화와 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세미나실 (교육 및 연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빅아이는 공연시설로서 대강당과 교육 및 연수시설로서 중소규모의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미나실도 개폐형으로 조성하여 소규모 및 중규모의 시설로 조립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연수규모에 따라 세미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장애 프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빅아이는 숙박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숙박예약 등을 위한 프론트와 함께 무장애 프라자를 조성하여 관련 독서활동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프라자에는 다양한 책자 그리고 컴퓨터 등 인터넷 시설을 구비하여 빅아이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일본의 국제장애인교류센터는 장애인의 교육연수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주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고, 모든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장비와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위한 행사와 전시를 위해 1.5천명이 수용 가능한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고, 다목적실은 전시와 공연뿐만 아니라 체육관 등의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대강당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들은 모든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대강당의 경우 장애인좌석을 매립식으로 설치하여 공연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한편, 농생명 특화 장애인 교육 인프라의 사례로는 독일의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캠프장이 유사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데,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캠프장은 뮌헨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시설로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아동이 자연에서 서로 어울리며 생활하는 방식을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과 놀이(문화)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시설은 독지가의 해당부지에 대한 기부를 시작으로 주정부인 바이에른 정부 등이 체험장을 건립하여 비영리 장애인권익옹호단체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바르타바일 캠프장은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난 이후 약 1,650마르크의 예산을 가지고 1995년 착공하여 1997년에 완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및 야영을 위한 종합 여가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캠프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교류와 문화 및 여가 그리고 교육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야영장의 전체 규모는 약 2.7ha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8,1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간으로, 바르타바일 캠프장은 식당과 속소동 등을 주요공간으로 약 6개의 주요건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여가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교육 공간, 숙박공간, 야영공간, 그리고 체험공단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음
- 바르타바일 청소년 수련원은 주정부 약 115억원의 지원을 받아 1997년 완공하고 난 이후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특히,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야영장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학습, 상호 존중, 티안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존중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 야영장은 단순히 아동청소년만이 아닌 장애가족이나 비장애인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일반 회사나 협회 등의 행사나 세미나 등의 교육 및 연수공간으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음
-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야영장은 식당 및 숙소동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성인은 3.6유로, 아동은 최소 2.6유로에서 최대 3.1유로의 요금을 지불

〈표VII-13〉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 캠프장

시설	구분	주요 내용
독일 바르타바일 아동청소년 캠프장	기능	장애와 비장애인이 만나는 교류 캠프장
	준공	1997년
	규모	전용면적 약 27,000m ²
	건축비	1650마르크(1995년 환율적용, 약 115억원)
	구성현황	식당, 숙소동 등 6개 건물
	운영주체	장애인권익운동단체(L VKM)
이용요금		성인 : 3.5 유로, 어린이 2.6 ~ 3.1 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음)

7)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 장애인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체육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하는 장애인형국민체육진흥센터로 구분됨
- 2018년 현재 장애인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전용체육시설 40개소,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47개소 등 총 87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2018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에서 2018년에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음
- 전라북도의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전주지역도 장애인의 인구수 등 의 정책수요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도 전주 등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장애인 체육시설은 추가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총 19개소이고, 운영프로그램은 총 88개이지만 이들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성향임
- 따라서 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체육시설 등 총 3개소에 불과함

〈그림VII-13〉 생활체육서비스 수혜지역 현황



〈그림VII-14〉 생활체육서비스 사각지대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 다음으로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전북은 문체부가 설치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개소 그리고 복지부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 3개소 등 총 4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주시가 1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7개소, 장수군과 순창군이 각각 6개소, 정읍시 5개소, 완주군 4개소 등임
-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주시 1개소, 정읍시 1개소 그리고 김제시 1개소 등으로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이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각지대 장애인 수는 전주시가 약 3.3만명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2개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군산시와 익산시도 각각 2개소 이상의 추가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장애인 중에서 체육시설의 수요가 있지만 공급량의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약 1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비장애인 수는 약 61.5만명 정도로 추정됨
- 이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할 경우 향후 장애인체육시설은 전라북도에 총 10개소 정도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김미옥 외, 2018)
- 전라북도의 장애인전용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전주시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의 체육 및 건강에 대한 욕구의 증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함

〈표VII-14〉 장애인설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분포도

구분	공급시설 수(합계)	장애인 시설수	총 인구수	장애인 인구수	사각지대 비장애인 수	사각지대 장애인 수	정책수요	지역균형 수요
전주시	14	1	653,172	32,966	54,566	32,966	2	0
군산시	3	0	278,518	17,552	83,759	17,552	2	0
익산시	7	0	321,811	20,129	46,794	20,129	2	0
정읍시	5	1	130,786	9,989	68,821	9,989	1	0
남원시	3	0	109,460	7,755	49,174	7,755	1	0
김제시	3	1	111,345	9,420	74,779	9,420	1	0
완주군	4	0	140,368	7,813	81,502	7,813	1	0
진안군	1	0	30,781	2,725	21,248	2,725	0	0
무주군	3	0	23,149	2,490	8,715	2,490	0	0
장수군	6	0	31,607	2,343	8,055	2,343	0	0
임실군	2	0	52,560	3,199	40,449	3,199	0	0
순창군	6	0	37,005	2,966	15,125	2,966	0	0
고창군	7	0	65,365	5,722	25,772	5,722	0	1
부안군	1	0	60,913	5,276	36,245	5,276	0	1
전체	65	3	2,046,840	130,345	615,004	130,345	10	2

자료 : 김미옥 외(2018).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표VII-15〉 장애인설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분포도

지역	총수요	수요 지자체	수요지자체 및 필요 개소 수
서울		0	
부산		0	
대구	4	3	달성 1, 동구 2, 북구 1
인천	1	1	계양
광주	4	2	광산구 2, 북구 2
대전	1	1	동구
울산	2	2	울주, 중구
세종	1	1	세종시
경기	30	16	고양3, 광주, 김포, 남양주 3, 성남, 수원 2, 시흥 2, 안산 2, 안성, 양주, 용인 4, 이천, 파주 2, 평택 2, 포천, 화성 3
강원	2	2	강릉, 춘천
충북	6	3	제천, 청주 4,, 증주
충남	9	7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2, 천안 2
전북	10	7	군산 2, 김제, 남원, 완주, 익산 2, 전주 2, 정읍
전남	7	5	고흥, 나주, 목포, 순천 2, 여수 2
경북	9	7	경산, 경주, 구미, 김천, 상주, 안동, 포항 3
경남	13	6	거제, 김해 3, 밀양, 양산, 진주 2, 창원 5
제주	3	2	서귀포, 제주시 2
합계	102	65	

자료 : 김미옥 외(2018).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김미옥의 연구(2018)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별로 장애인 체육시설의 총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에서 전라북도는 총 수요가 10개소정도로 추정되고 추가로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완주, 익산(2개), 전주(2개), 정읍 등인 곳으로 나타남
- 특히, 전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장애인인구수가 많아 1개소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2개소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국민체육진행센터는 주로 생활체육관, 사격장, 수영장,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대부분의 체육센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 광주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76억 원(국비 50억원, 시비 26억원)으로 건립

〈그림VII-15〉 인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그림VII-16〉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표VII-16〉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및 사업비

구분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가 · 낮은 고령화율 · 기본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정체 · 인구 밀집 · 고령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가 · 빠른 도시화 · 기본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인구 규모 · 높은 고령화율 · 인구 감소
필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5레인) · 영유아풀 · 다목적체육관 · 실내놀이터 · 헬스장 · 다목적실 · 조깅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5레인) · 마사지풀/워킹풀 · 소규모체육관 · 헬스장 · 다목적실 · 조깅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5레인) · 워킹풀/영유아풀 · 소규모체육관 · 실내외놀이터 · 헬스장 (실버웨이트존) · 다목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3레인, 마사지풀) 또는 체육관 · 헬스장 (실버웨이트존) · 다목적실
권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력 100 · 놀이형 체육공간 · 보육 및 문화공간 · 암벽등반 · 옥상공간(테니스, 풋살,골프) 연습장) · VR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력 100 · 다목적룸 · 문화교실 · 옥상공간 (골프연습장) · VR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력 100 · 탁구장 · 노인건강실 (메디컬룸) · 옥상 골프연습장 · VR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력 100 · 노인건강실 (메디컬룸) · 옥상 게이트볼장 · VR실 · 조깅트랙
규모	3,760㎡	2,956㎡	2,956㎡	2,332㎡
사업비	90억	70억	70억	55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기이드라인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모델은 4가지 형태로서 도시성장형과 도시특화형, 소도시 성장형과 소도시 특화형으로 구분
- 각각의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유형에 따라 필수시설과 권장시설 그리고 규모와 지원 사업비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임
- 2019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의 건립계획으로 일반형 3개소, 생활밀착형(일반형) 30개소, 그리고 생활밀착형(장애인) 30개소 등을 계획함
- 특히,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도에 약 30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을 제시하였고, 지원예산으로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정책지원 예정
- 장애인의 체육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립복지재단내 장애인의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건립 필요

〈표VII-17〉 2019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구 분	'19년 예산(백만원)	수량(개소)	시설내용	지원액(비율)
일반형	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또는 체육관 기반 실내체육관 · 수영장기본/다목적체육관/체육관복합형 중 선택 	재정자립도별 27~30억원(정액)
생활밀착형 (일반형)	30,0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체육시설 · 도시성장/특화형, 소도시성장/특화형 중 선택 	30억원(정액)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30,0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우선 이용권 보장), 비장애인 이용 체육시설 · 체육관/수영장/종목특화형 중 선택 	30~40억원(정액)
근린생활형	80,000	80	근린생활권 중심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10억원(정액)
합 계	140,400	142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19) 2019년도 업무현황

〈표VII-18〉 장애인 체육센터 현황

구분	장애인구 수	총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구 비율	기존 장애인체육시설*				기초 지자체 수	시군구 장체회 수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기타**	소계		
서울	391,027	15.6%	0	8	1	9	25개	14개
부산	168,950	6.7%	1	2	0	3	16개	2개
대구	117,111	4.7%	1	2	0	3	8개	0개
인천	135,623	5.4%	1	1	0	2	10개	0개
광주	68,569	2.7%	1	1	0	2	5개	2 개
대전	71,425	2.8%	1	3	0	4	5개	1개
울산	49,533	2%	0	2	0	2	5개	1개
세종	9,845	0.4%	1	0	0	1	0개	0개
경기	522,437	20.8%	1	6	0	7	31개	27개
강원	98,928	3.9%	1	0	3	4	18개	3개
충북	94,688	3.8%	1	2	1	4	11개	8개
충남	126,406	5%	1	2	1	4	15개	12개
전북	130,345	5.2%	1	3	2	6	14개	11개
전남	141,578	5.6%	1	2	0	3	22개	8개
경북	169,643	6.8%	1	4	0	5	23개	3개
경남	180,665	7.2%	1	2	0	3	18개	1개
제주	34,278	1.4%	1	0	0	1	2개	0개
합계	2,511,051	100%	15	40	8	63개	228개	93개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19) 2019년도 업무현황

-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계획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문체부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1개소, 복지부 및 지자체 체육시설이 3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장애인체육센터는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한편, 생활체육시설은 크게 국민체육지원센터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기초생활체육시설 저변확산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센터는 30억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표VII-19〉 생활체육시설 유형 및 지원목적

구분	지원액	지원목적
국민체육센터	30억 원 내외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형, 체육관형, 복합형의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충, 지역주민의 건강 및 체육복지 기반 마련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4~9억	초·중·고 학교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체육복지 향상에 기여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시설별 상이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장, 체험센터, 실내체육관 등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립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별 상이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우려 사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육 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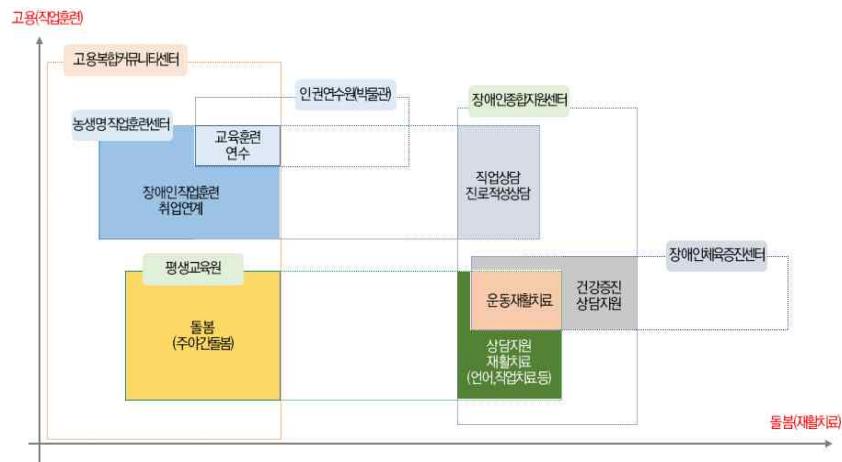
〈표VII-20〉 자립복지재단 주요 시설별 건립 적합성 검토

구분	핵심사업	자립복지재단 건립 적합성				종합
		욕구 정합성	지역 적합성	재원확보 가능성	파급효과	
인권연수원(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전시 인권교육 인권체험 및 자료전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상징성 우위 장애인의 욕구정합성은 낮음 장애인의 현실적 욕구충족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지원 장애인 진로직업상담 장애인 치료재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장애인 욕구 우위 장애인 돌봄에서 고용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지원 강화 전라북도, 시군의 상당한 재정부담은 향후 과제
장애인아동능력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아동재활치료 장애인아동사회적응훈련 장애인가족 정시심리지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아동의 높은 욕구수렴 장애인아동 사회적응에서부터 직업교육에 이라는 전과정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아동 돌봄(주야간)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평생교육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아동 돌봄수요 수렴 가능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가능 전라북도 및 시군 상당한 재정부담은 향후 과제
농생명특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 장애인 농생명 창업지원 장애인 농산품 판매지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생명 유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가능 장애인 직업훈련 기반 구축시 국가기관 건립 타당성 논의 필요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직업훈련, 교육 장애인 취업연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인프라 필요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전 인식개선 교육과정 필수 중앙부처와 연계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장애인체육진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여가문화 지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체육체육 지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여가문화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인프라 구축 가능 전주시 장애인체육진흥센터 건립 이후 추가 건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설득논리 개발 필요

- 자립복지재단의 주요 시설별로 건립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장애아동능력개발센터는 현재의 장애의 욕구에 비추어 가장 정합성이 높은 시설로 분류됨
- 다만, 이들 시설은 국가차원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장애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건립되는 지역단위 시설로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됨

- 이에 반해 농생명특화 장애인직업훈련센터와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장애인 체육진흥센터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하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욕구의 부합정도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은 보통수준임
- 하지만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장애아동능력개발센터, 농생명특화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장애인체육진흥센터 등의 시설은 모두 장애인의 고용능력향상,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의 체육문화향우 및 건강증진 등의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은 각자의 고유 특성을 가지고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건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설 중 일부는 사업의 내용에서 상당한 중복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실제 건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각 시설의 유형중 공통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과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건립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농생명 특화 직업훈련센터, 평생교육원 그리고 인권연수원 등의 시설과 교육, 취업연계 등의 사업의 내용에서 중복이 나타날 수 있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평생교육원, 장애인체육진흥센터, 농생명특화 직업훈련센터 등과도 직업훈련과 재활치료 등의 사업에서 중복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중복이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핵심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중복사업의 연계 혹은 사업추진을 통해서 필요시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설의 건립이 검토되어야 함(유사시설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독립시설로 건립하는 것은 지양)

〈그림VII-17〉 주요시설별 기능별 중복사업 검토



〈그림VII-18〉 자립복지재단 주요 시설의 연계 효과



- 전술한 자립복지재단의 검토 시설 중 적합시설이 조성될 경우 자립복지재단 내 다양한 장애인 관련 서비스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 및 맞춤형 직업교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케어팜을 비롯한 전라북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장애인 농장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능력의 유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고용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바로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고 고용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은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소정의 직업교육 훈련과 사회적응 훈련 등을 받은 이후 일정한 고용능력이 확인된 상태에서 장애인 농장이나 치유농장 등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 또한, 장애인농장이나 식물원 등에서 생산된 생산품 등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여 장애인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애인의 인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이처럼, 자립복지재단이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원,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케어팜 등이 건립될 경우 각각의 시설이 가진 고유기능에 더하여 상호 연계와 조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원의 창출이 견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립복지재단의 적합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건립하되 건립이후에는 각각의 시설들간의 상호 연계를 위한 운영방식의 체계화도 함께 고민되어야 함

4. 전라북도 특화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구상

1) 농업명 특화 치유농업(케어팜)의 개념 및 유형

- 치유농업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치유농업은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지역주민,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와 치료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2018)에서는 치유농업 산업화 기반계획을 제시하면서 치유농업을 농업, 농촌자원(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환경과 문화)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
- 치유농업은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는 ‘Green care’로 통용되는 경향이며, 농업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Care farming’도 폭넓게 사용. 국가에 따라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으로 쓰기도 함(농촌진흥청, 2018)
- 이외에도 일부에서는 녹색치유(green car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녹색치유는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동물을 이용한 동물매개치료, 그리고 농장의 체험을 통한 치유농장 등의 많은 의미를 포괄함
- 치유농업은 1980년대부터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식물이나 원예뿐만 아니라 말이나 애완견 등의 동물, 그리고 농장체험 등의 농작업을 주된 내용으로 농촌의 다양한 환경을 결합한 신체적 정신적 치유로 활용되면서 발전됨

〈표VII-21〉 치유농업의 유형

구분	개념 및 주요내용	사업유형
농업치유	농업치유는 치유농장, 원예치료, 힐링 체험 캠프 등 농업 활동과 관련한 치유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장(농작물 생산, 수확체험) · 원예치료(치료정원, 원예 프로그램 등) · 힐링체험 캠프(아토피 치료)
동물치유	동물 치유는 동물과 교감하는 동물매개치료, 치유승마, 낙농체험 등 동물과 여리 활동을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매개 치료 · 재활승마, 치유승마 · 낙농체험
산림치유	숲에는 도시보다 많은 양의 음이온이 분포하고 있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움직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실내운동보다 효과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소리 · 피톤치즈 · 맨발걷기, 휴식, 체조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가정원예, 주밀텃밭, 학교텃밭, 옥상텃밭 등 도시지역과 도시 근교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 농업 체험이나 신선한 채소 생산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원예, 치료정원 등 · 주밀텃밭 · 학교텃밭 · 도시빌딩 텃밭 등

자료 : 전영현·임송수(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제196호

〈그림VII-19〉 치유농업의 유형



- 최근에 치유농업은 케어팜 혹은 사회적 농업 등으로도 통칭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케어팜은 농업을 활용한 치유의 개념이 강조된 것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청소년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 치유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치유농업은 사회원예 혹은 치료원예, 동물매개 개입, 케어팜, 친환경 치료활동 그리고 자연치유 등으로 분류됨
- 사회원예의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예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동물매개개입의 경우 동물과의 교감 혹은 동물을 이용한 재활이나 치료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됨
- 최근 동물매개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 혹은 발달장애 등을 대상으로 동물매개활동 그리고 상호작용적 매개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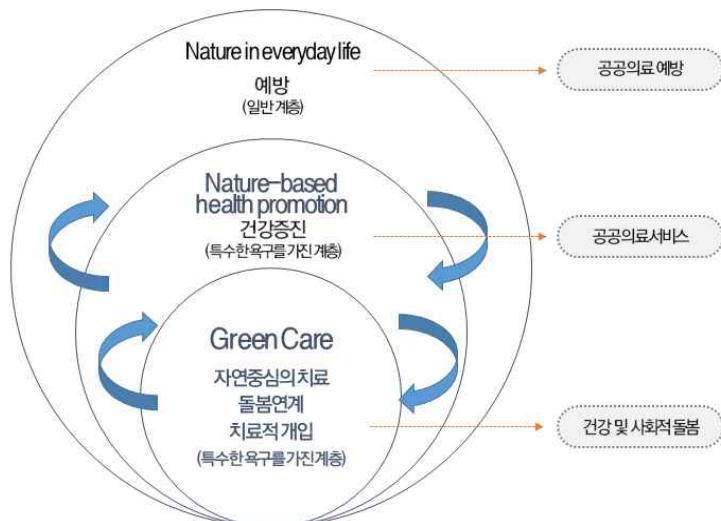
〈표VII-22〉 케어팜의 방법과 관계기관

구분	제공자 및 연계기관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공 자 : 치료, 치유, 특수한 개입 · 파트너쉽 : 1차 의료기관, 정신보건팀, 사회서비스, 약물 및 알코올 치료기관, 기타 보건관련 기관
사회적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공 자 : 사회적 재활, 지역사회 재생, 생활기술(life skills) · 파트너쉽 : 약물 및 알코올 재활기관, 보호관찰서비스, 비행청소년지원기관, 난민지원 기관, 기타 취약계층 지원 기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공 자 : 대안교육, 특수교육 및 보육시설, 육구불만 청소년 참여 · 파트너쉽 : 대안학교, 기타 교육기관, 학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공 자 : 취약계층 지원, 노업 및 관리기술, 직업훈련, 보호노동 · 파트너쉽 : 성인학습 및 교육기관, 약물 및 알코올 재활기구, 보호관찰 서비스, 비행청소년 지원, 기타 보호고용제도

자료 : 유한대학교(2013). 녹색치유농업의 해외실태 및 국내도입 전략개발. 농촌진흥청

- 케어팜은 동물매개활동이 동물을 소재한 치유나 재활에 있다고 한다면, 케어팜은 식물을 이용한 치유나 재활이라고 할 수 있음
- 케어팜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다수 유럽국가들에서 발달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료와 치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영국의 케어팜은 사회기술, 기본기술, 직업기술, 동물보조 개입 및 원예치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팜의 대부분은 학습장애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 자폐증 등의 다양한 집단이 대상이 됨
- 영국의 케어팜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에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치유와 치료 그리고 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가령, 발달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계층은 자연을 활용한 치료중심의 돌봄을 통해 치료적 개입을 실시하고, 중간단계에서는 자연 중심의 건강증진을 통해서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케어팜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연을 매개로 예방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케어팜은 건강 및 사회적 돌봄에서부터 공공의료서비스 그리고 일반 주민을 위한 예방적 치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포하고 있음

〈그림VII-20〉 영국 Care Farm의 영역



자료 : carefarms & Gardens(2019). Care Farming Explained
<https://www.carefarminguk.org/care-farming-explained>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케어팜은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특수 교육, 사회교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는 성인이나 아동, 자폐아동,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자 등이 주된 대상이 됨
- 두 번째 단계는 제한된 욕구(defined need)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가축, 애완동물, 농작물 재배, 목공제작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됨
- 네덜란드의 케어팜 유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되고 있는데, 한 유형의 케어팜은 복지시설과 계약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서는 케어팜이 지역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돌봄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여 케어팜을 활용한 돌봄과 재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함
- 두 번째 유형은 케어팜 농장과 개인이용자가 계약을 맺어 돌봄이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전술한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매개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한 개인이 직접 케어팜 농장과 계약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임

〈표VII-23〉 네덜란드 케어팜 유형

유형	내용
케어팜과 복지시설간의 계약을 통한 치유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팜이 지역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등과 돌봄서비스 계약체결 ·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케어팜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농업(원예, 동물매개 치유) 등 활동서비스 제공 · 농업 관련 돌보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 중에서 농업 활동을 좋아하는 이용자를 선별하여 돌봄 농장에 보내면 케어팜에서는 다양한 농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제공
개인이용자와 케어팜 농장간의 계약을 통한 치유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케어팜을 지정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개인이 바우처카드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서 케어팜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돌봄서비스 제공받고 적정한 이용료 지불 · 이용자는 케어팜 기관과 돌봄서비스 이용계약을 상호 맺고 이용자는 비용 지불, 케어팜기관은 농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국가지정 장기요양 기관과 장기요양대상자간 의 계약을 통한 치유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자가 케어팜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하여 농업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케어팜 농장과 지자체 계 약에 의한 치유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팜 기관(농장)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돌봄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돌봄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내 케어팜운영 을 통한 치유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접 케어팜을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이용자 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활동 돌봄서비스 제공

- 세 번째 유형은 국가가 지정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자가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케어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장기요양기관이 케어팜의 전문성을 가지고 원예치료나 동물치료 등의 치유 및 재활프로그램을 장기요양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임
- 세 번째 유형이 가능한 것은 케어팜이 국가의 제도적 유형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치유 및 재활의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이외에도 케어팜 농장과 지자체의 계약 그리고 복지시설 내 자체 케어팜 운영을 통한 치유농장의 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한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이처럼, 네덜란드는 케어팜이 국가의 장기요양의 공식적인 서비스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자체적으로 원예치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케어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편 네덜란드의 케어팜 대상자는 크게 아동, 청소년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체로 케어팜은 장애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치료와 치유 그리고 비장애인과 일반 아동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케어팜의 주된 대상은 크게 5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음
- 케어팜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하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동물을 이용한 케어팜의 프로그램은 주로 동물의 유형에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가령, 당나귀를 활용한 케어팜 프로그램은 사료먹이기, 마구간 청소, 바닥건초놓기, 채소먹이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토끼는 정원가꾸기와 바닥 건초 놓기 등의 체험활동이 가능함

〈표VII-24〉 네덜란드 케어팜 대상

구분	주요대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폐, 학습 장애, ADHD,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6~14세 어린이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그룹 활동과 부모님께 즐거운 시간 제공 가능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지원, 관심, 지도를 받는 청소년 중 18세가 넘은 자 청소년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 그리고 약한 인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작장애, 정신질환, 자폐증, 뇌 손상(선천적, 후천적), 장기 실직자, 번 아웃증후군(업무 또는 사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노인(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일과를 보내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노인(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의 한 종류)로 고통 받는 55세 이상의 노인 · 노인에게 좋은 하루를 제공하고 파트너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 · 노련한 동반자가 있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 중에서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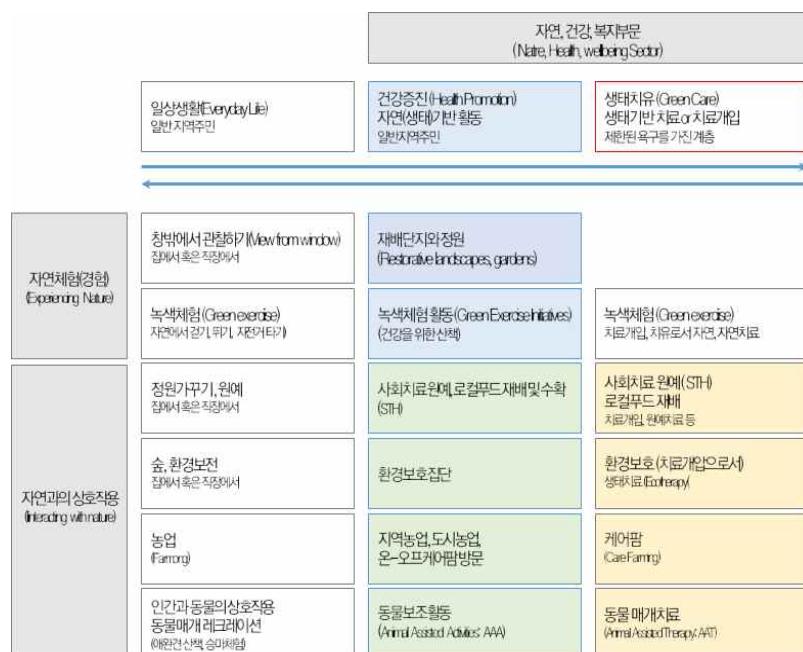
〈표VII-25〉 케어팜 동물관련 활동

물주기 (watering)	사료먹이기 (Feeding)	건조먹이기 (Feeding driedgrass)	마구간청소 (Cleaning)	초지(정원) 가꾸기 (Cleaning) Meadow & Garden	바닥 건조놓기 (Put the hay on the floor)	신선채소 먹이기 (Feeding fresh vegetable)
염소 (Goat)						
당나귀 (Donkey)						
토끼 (Rabbit)						
닭 (Chiken)						
앵무새 (Parrot)						
소 (Cow)						
비둘기 (Pigeon)						

자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4). 치유농업 방법론 평가체계 연구. 농촌진흥청

- 전술한 바와 같이, 케어팜은 체험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상호작용의 주체로서 자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와 재활 그리고 치료프로그램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연체험은 숲으로 조성된 산책로는 걷는 것, 재배단지와 농업마을을 활용하여 체험식 농업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자연과의 상호작용 즉, 정원재배, 환경보호,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매개치료 등의 활동이 있음
- 케어팜의 대상도 일반지역주민에서부터 제한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 및 재활이 있을 수 있다.

〈그림VII-21〉 자연(생태)중심 활동의 범위



자료 : Gibbons, D et al(2017) Care farming and green care in Salford

〈표VII-26〉 치유농업을 위한 교육훈련기관(MBO)

구분	설명
Groene Welle AOC	치유기업 작업관리자
Bast AOC	치유와 안전
Citaverde Colleng	사회적 치유 및 자연웰빙
Helicon AOC	자연과 복지를 위한 활동관리자 치유기업 작업관리자
Wellantcollege	인간, 자연과 건강 인간, 말과 건강
Prinsentuin College	치유, 자연과 건강
Edudelta college	동물건강 기업의 작업관리자
Friesland AOC	중급 치유와 환경
Clusius College	중급 축산분야 치유기업
Warmonderhof	농부

자료 : zorgboerderijgids.nl

- 한편, 케어팜은 전문지식으로서 농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치유와 재활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치유농업의 양성과정으로 6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양성과정은 1단계에서 접수시험, 2단계에서 기본직업의 능력, 학습, 3단계 기술학습 그리고 4단계와 5단계에서 각각 지식과 경험이 통합된 현장실습,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 노동시장 진입이후 사후교육 등으로 진행됨
- 특히,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의 교육을 고교 직업교육(MBO)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내용은 치유농업 작업관리자, 자연과 건강, 동물건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케어팜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처럼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네덜란드처럼 케어팜이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지만 일부 농촌지역의 관광 및 소득산업과 연계하여 케어팜이 일부 추진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케어팜의 경우 초등학생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케어팜이 많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팜에서는 다문화가정이 10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케어팜이 94개, 소외가정 86개, 문제행동청소년 8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 케어팜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나 재활의 개념보다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습이나 체험위주의 케어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 박경미(2015) 차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비전과 과제 자료집 재구성

- 해외에서 케어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벨기에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케어팜은 돌봄서비스의 제공의 경제적 비용청구가 가능하고, 직업재활 등과 연계하여 참여수당도 지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케어팜이 돌봄이나 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케어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및 정비비용을 지원하고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표VII-27〉 국외 사회적 농장(케어팜) 지원 주요정책

구분	관련법	내용	
		주요지원	주요재원
이탈리아	· 사회적협동조합법 (1991)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 사회적농업법 (2015)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고용취약계층의 임금 보조	사회보험
		교육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직업교육 참여수당 및 교육 운영비 지원	유럽 연합, 사회 기금
		국유지 사용 우선권	
		공공조달 및 공공일자리 선정 우선권	
네덜란드	· 장기요양법 (2014)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 사회지원법 (2014)	돌봄농업지원센터 운영(1999~2008)	농업부, 보건복지부
	· 청소년아동법 (2014)		
벨기에	· 현금급여지급 관련법령제정 (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지급 시설장비 비용 지원 플란더스녹색돌봄지원센터 운영(2004~)	사회보험 농업부 5개 주 정부
		시설 정비 비용 지원	
		인력기술 지원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장애인 직업교육 운영 예산 지원 공공 직업소개소(헬로워크) 운영	
일본	· 장애인자립지원법 (2006)	고령자대상 사회적 농장 설립 지원	후생노동성
	· 빈곤생활자자립지원법 (2015)	빈곤계층대상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자료 : 김정섭(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생명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① 후버 끌라인 마리언달(Hoeve Klein Mariëndaal)

- Hoeve Klein Mariëndaal은 청년을 포함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아동, 자폐아동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생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이곳에서는 원예와 동물, 그리고 공방을 활용하여 장애인 등의 치유와 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Hoeve Klein Mariëndaal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음
- Hoeve Klein Mariëndaal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고, 유기농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함께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장애인의 농생명 관련 직업연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간활동, 환경내에서의 학습활동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직업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Hoeve Klein Mariëndaal의 주된 이용자는 발달장애, 정신질환 장애인, 자폐아동, 치매노인 등이고, 자폐아동의 경우 주말을 이용하여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케어팜단지에서는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일, 카페에서 음식과 주문, 서빙 등의 단순하면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체험과 관련된 교육영역으로는 원예학, 녹색환경, 동물관리, 스토리, 케이터링, 요리와 제과제빵, 창작활동 등 맞춤형 고용통합프로그램 등 임
- Hoeve Klein Mariëndaal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농장동물케어, 농작물(야채, 꽃, 허브 및 과일) 재배 및 수학체험(심기, 파종, 관리, 수확 등), 카페와 테라스 등에서의 서빙, 자연경관 관리, 공방프로그램 등임
- 또한 장애인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포장을 통해서 외부의 수익을 창출 함으로써 관련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도 기여하고 있고 장애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농약없이 재배한 유기농으로 대부분은 기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됨
- 즉, 장애인과 자폐아동이 손수 재배한 농작물을 이곳 케어팜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됨

〈표VII-28〉 Hoeve Klein Mariëndaal 재배 농작물

구분	주요 농작물
애채	호박, 옥수수, 콩, 파, 사탕무, 양파, 무, 마늘, 양배추, 양상추 등
과일	붉은 건포도, 건포도, 구즈베리 등
허브	파슬리, 향신료, 로즈마리, 백리향 등

구분 : Hoeve Klein Mariëndaal 홈페이지

- 한편, 동물농장에서는 염소, 당나귀, 소, 토끼, 닭 등을 직접 키우고 관리하고 있고, 농장의 이용자 중에는 비장애인도 함께 포함되어 참가자를 위해서 당나귀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체험농장에서는 유기농채소를 포함하여 약 40여종을 재배하고 있고, 과일은 딸기, 라즈베리, 허브 등을 통한 원예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Hoeve Klein Mariëndaal에서는 자연산책로를 조성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부모, 지역주민 등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Hoeve Klein Mariëndaal는 주변 자연녹지를 산책로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함
- 자연산책로도 산책하기 좋은 코스를 세 개 유형으로 조성하여 코스별로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표VII-29〉 Hoeve Klein Mariëndaal 주요 현황

구분	주요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Diependalseweg 4, 6813 GE Arnhem · Care farm 뿐만 아니라 cafe eh 함께 운영 · 정식 직원 4명, 파트타임 4명 근무, 함께 일하는 케어팜 고객 15명, 지원봉사자 50명 ·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사단법인 케어팜 & 찻집("Cooperation Boeren Zorg")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버 끌라인 마리언달 코디네이터 이고 와헤닝언 대학교 선임연구관인 얀 하싱크 (Jan Hassink) 교수가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목적 : 정신, 지체 부지유자, 정신과 문제자, 장기 실업자, 범아웃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을 구제 · 돋는 고객들과 지역주민 혹은 농장주들과 연결해 주고 협력하도록 함. □ 케어팜 외에 찻집 운영, 회의실 제공, 가게 운영, 산책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팜 내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자연경관이 좋은 산책로 코스를 세 개 유형으로 조성하여 코스별로 안내책자를 배포,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산책로는

자료 : Hoeve Klein Mariëndaal(2019) 재구성

② 독일 호프굿 오버펠트 (Hofgut Oberfeld)

- 독일의 호프굿 오퍼펠트(Hofgut Oberfeld)에는 장애인뿐만 비장애인도 함께 생활하는 통합형 사회치유농원이라고 할 수 있음
- 호프굿 오퍼펠트(Hofgut Oberfeld)에서는 농업 고유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치즈생산, 제과제빵,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농장, 농산물 직판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곳에서 장애인은 단순히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고, 치즈만들기, 빵만들기 등의 직업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직판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음
- 호프굿 오퍼펠트(Hofgut Oberfeld)에는 약 52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약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이곳은 Hofgut Oberfeld(SHO)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원예치료, 미술치료, 승마를 이용한 재활승마 등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음

〈표VII-30〉 Hofgut Oberfeld 주요 현황

시설물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생활하는 통합형 사회치유농원 · 농업생산활동은 치즈제조, 제과제빵, 교육농장, 판매장(직판장), 장애인 생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60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장애인시설에는 20명 정도가 생활) · 주간에는 주변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방과후에는 원예치료, 미술치료, 재활승마 등의 다양한 재활 및 치유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주말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fgut는 장애인과 보조자 2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1년에 설치 운영 ·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원예 및 낙농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유치원 집단, 학교수업, 기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현장체험교육도 진행 · 교육농장에서는 인근의 아동청소년 및 학생뿐만 아니라 병원 등과 연계하여 실습 및 체험 장소로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판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고 인근 카페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직판장에는 약 100개 이상의 농산물을 전시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찾고 상품을 구매,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 지역주민이 장애인 공동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인근의 마을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사진출처 : Hofgut Oberfeld 홈페이지

③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돌봄농장 (zorgboerderij paradijs)

- 파라다이스 케어팜은 돌봄중심의 치유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장애아동들에게 동물과 원예를 통해서 교육과 치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파라다이스 돌봄농장은 농업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예술치료사, 교육전문가, 환경교육전문가, 아동상담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장애아동, 경증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곳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파라다이스 돌봄농장에서는 일평균 최소 20명 이상에게 농업을 매개로 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
- 경증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을 매개한 활동, 달걀 등 포장, 수공예와 목공예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자폐아동을 대상으로는 연령별로 동물돌보기, 원예치료, 농업을 매개한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폐아동의 일상생활능력 강화, 재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파라다이스 케어팜의 주된 이용자는 아동의 경우 자폐아동이나 학습장애인, 성인의 경우 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 노인의 경우 치매노인이나 독거 등임
-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우 동물기르고 돌보는 일, 농장이나 인근의 산책로는 걷는 것, 계란 등의 포장이나 식사준비를 도우는 일 등의 활동을 한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채소의 재배와 수확, 직거래 판매장의 판매지원 그리고 말이나 소 등의 동물을 돌보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VII-31〉 zorgboerderij paradijs 주요 현황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생활하는 통합형 사회치유농원 · 농업생산활동은 치즈제조, 제과제빵, 교육농장, 판매장(직판장), 장애인 생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60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장애인시설에는 20명 정도가 생활) · 주간에는 주변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방과후에는 원예치료, 미술치료, 재활 승마 등의 다양한 재활 및 치유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주말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에 장애아동(자폐성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재활승마는 대부분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치매돌봄으로 하루 70유로)

사진출처 : <https://www.landbouwzorg.nl/index.php?pagid=53&dg=zb> 재구성

④ 캠프힐 지적장애인 공동체 마을 (Camphill Spirit)

- 캠프힐은 1940년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외곽에 위치한 Camphill에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위해 K, Konig박사와 R, Steiner박사가 설립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및 통합공동체임
- 캠프힐은 지적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서 농업을 매개로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학습 교육 및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캠프힐의 설립은 다른 케어팜과는 달리 지적장애인의 부모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농장을 구입하여 마을공동체로 조성한 사례로서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은 정부지원금 80%가 투입되어 조성됨

〈표VII-32〉 Camphill 주요현황

시설물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힐은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동체와 작업공간(농장이나 목공소 등)이 함께 구성된 장애인마을 공동체임 · 캠프힐은 마을내 지역주민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 각각의 주거공동체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co-worker,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교사 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힐의 농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업지도교사(Meister) · 캠프힐은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농장에서 얻은 수확물로 자급자족하고 공동의 소유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음 · 캠프힐의 주된 운영은 장애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교사 등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힐 공동체는 장애인을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자(special needs)로 정의하고 장애아동에서부터 성인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돌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특히, 캠프힐 공동체는 장애인이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거점으로 인근 마을주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업교사 등이 장애인의 자립과 특수한 욕구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힐 공동체는 주로 농촌공동체에 자립자고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자급자족의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캠프힐을 찾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고, 생활환경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캠프힐 공동체는 다양한 공동체로 조성하여 특수한 교육, 훈련, 사회치료 등을 제공함

사진출처 : <http://www.camphill.org.uk> 재구성

- 캠프힐에는 현재 장애부모와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총 120명이 생활하고 있고,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창출과 안정적은 소득원을 제공해주고 있음
- 캠프힐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직원이 함께 생활하면서 치유와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재 캠프힐에는 약 80여명의 장애인과 이들을 케어하는 3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생활
- 캠프힐은 9개의 소규모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는 최소 8명 이내의 장애인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각자의 그룹홈에는 책임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아동의 생활상의 지원과 경제적 운영상의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음
- 캠프힐 공동체는 스코틀랜드를 시작으로 29150년에는 영국과 북아일랜드로 확대되었고,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까지도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체로 확대되었고, 지난 수십년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각각의 환경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수립함
- 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만 1,700명에 이르는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그리고 성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48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가령, 영국의 뉴튼디 camphill은 스코틀랜드 북동쪽인 에버딘에 위치하고 있고, 약 80명에서 90명정도의 성인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만 약 100명이 넘는 인력이 지원하고 있음

〈그림VII-23〉 스코틀랜드 캠프힐 공동체 현황



자료 ://www.camphill.org.uk/silo/files/introduction-to-camphill-communities.pdf

⑤ 네덜란드 드포트 돌봄농장 (zorgboerderij paradijs)

- 네덜란드 드포트 케어팜은 장애아동이 아닌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물이나 원예 등을 활용하여 치유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임
- 최근에는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빨달장애아동이나 알코올 등의 중독자를 대상으로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 케어팜의 운영방식이 동물이나 식물을 활용하여 치매노인의 정진질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외보다는 실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드포트 케어팜은 2005년 낮 동안만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13년 이후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드포트 요양원의 특징은 대규모 정신질환자의 수용보다는 소규모의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용정원도 20명 안팎에 불과하고 가구의 구성도 7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음

〈표VII-33〉 네덜란드 드포트 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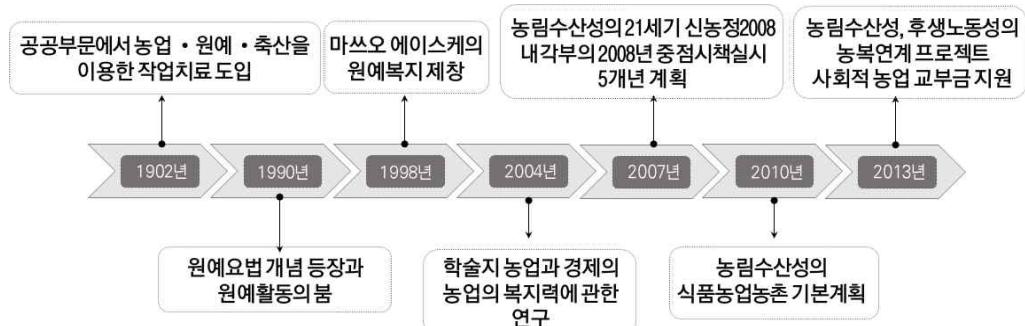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의 De port는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케어팜을 활용한 치매노인 돌봄시설 운영 중 · De port는 노인요양시설로서 24시간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요양시설을 기반으로 원예와 동물매개치유 등의 시설을 주된 인프라로 구축하여 케어팜을 활용한 치매노인의 심리·정신적 안정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노인을 돌보는 주야간보호시설과 함께 동물과 식물(원예)을 활용하여 참여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 견인 · de port는 민간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출발하여 현재에는 국가지원에서 치매 노인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요양시설로 확대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시설 주변에 자연친화적인 생태체험장, 동물농장 등을 조성하여 치매어르신의 식물 및 동물과의 교감확대를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 · de port는 현재 27명의 치매노인이 총 3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동물교감, 정원관리, 동물기르기(닭, 염소, 토끼, 소, 양 등)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노인의 정서적 안정 도모

사진출처: www.deport.nl 재구성

⑥ 일본 복지농장

- 일본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농생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로서 이른바 ‘복지농업’을 통해서 농업을 장애인의 자립과 치유의 매개로 활용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²⁾
- 일본의 복지농업의 역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장애인의 농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한 장애인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른바 농업을 매개로 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신농정 2008’ 등이 제시함으로써 농업분야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주된 계획으로 제시하게 됨
- 일본은 1992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농업과 원예 그리고 축산을 이용한 작업치료를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신농정 2008’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됨
- 일본은 신농정 2008 계획을 통해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농업분야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고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0년에 수립된 식품 농업·농촌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과 보건의료 그리고 돌봄의 공간으로서 농산어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계획을 제시함

〈그림VII-24〉 일본의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정



자료 전영현·임승수(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제196호

2) 유럽에서는 취약계층의 농업을 이용한 사회적 재활과 고용을 사회적 농업, 케어팜, 치유농장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복지농장이라는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치유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지 고취를 도모하는 모든 농업활동에 대해 원예요법, 원예복지, 농복연계, 복지농업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들은 광의의 의미로 치유, 재활, 치료, 여가를 목적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영현·임승수, 2016).

〈표VII-34〉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개념

구분	대상	정의
원예요법 (園藝療法)	요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의료나 복지영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원예를 통해 지원하는 활동
원예복지 (園藝福祉)	모든 사람	원예의 효과 및 혜택을 누림으로서 인간의 복지(행복)을 도모하는 활동
복지농업 (福祉農業)	장애인, 고령자, 생활곤궁자 등 사회취약계층	농업의 복지력을 활용하여 레크레이션, 치료, 치유,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을 하는 모든 농업관련 활동
농복연계 (農福連駁)	장애인 고령자, 생활곤궁자 등 사회취약계층	농업축면과 복지축면의 연계로 농업분야에서 취약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혹은 거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총칭

자료 전영현임승수(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제196호

- 농업분야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기본계획(2008~2012)에 따른 중점시책 실시 5개년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분야로 농업법인을 강조함
- 즉, 그동안 단순노무직의 보호고용형태로만 활발하게 논의되던 장애인의 일자리 분야를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여 농생명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의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를 제공함
- 2017년에 수립한 농산어촌 진흥교부금의 주요내용에서는 농복연계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약 5억엔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
- 농복연계대책에는 농업분야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및 부대시설 등의 경비지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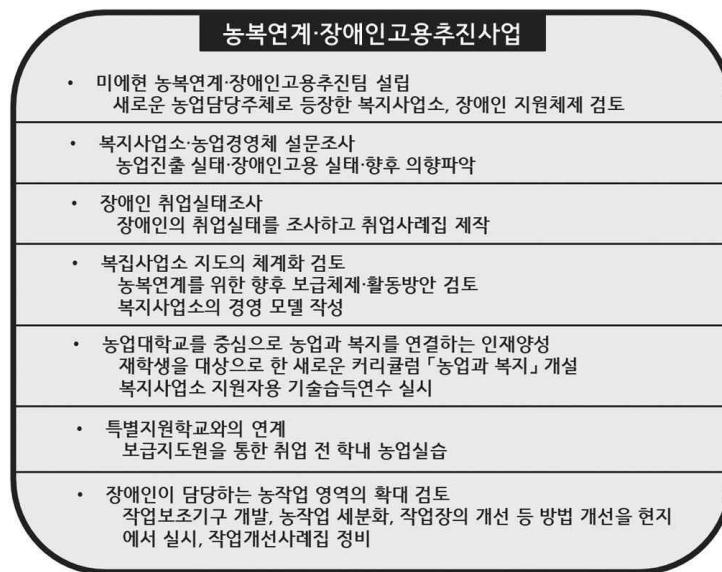
〈표VII-35〉 2017년 농산어촌 진흥교부금의 주요내용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150억엔, 약 1,500억원)			
정책목표 : 2020년까지 도시와 농산어촌 교류인구를 1,450만명까지 증가→농산어촌의 자립, 발전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및 지역활성화 대책	산촌 활성화 대책	농산어촌 활성화와 정비대책
[39억엔(약 390억원)]	[10억엔(약 100억원)]	[약 95억엔(약 950억원)]	[5억엔(약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이 가지는 지원이나 식을 관광교육복지지원 등에 활용하는 지역, 인비운드 관광을 위해 농산어촌에 숙박체 험을 추진하는 지역 등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활동지원 · 의욕적인 도시청년 등 지역의 인재를 장기적으로 유입하려는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해 목재, 목탄, 산나물 등 산촌지원을 하는 지역의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읍면 등이 추진하는 농산어촌의 정주환경 정비지원 · 지역간 교류촉진의 실현에 필요한 농산물 가공, 판매시설 · 도농교류 거점시설 경비지원 · 도농교류 거점시설 정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에 장애인, 고령자 등 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농장 및 부대시설 등의 경비지원 · 복지와 연계한 농업 활동 체계 구축, 보급, 개발 활동 지원

자료: 전영현임승수(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제196호

- 일본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
- 일본의 교토부에서는 2017년도에 건강복지부 지원과에서 지자체 최초로 농복연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토부에서는 농복연계사업의 핵심인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재활을 농업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에게는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주고 있음
- 2018년 교토부 농복연계 예산 규모는 7,650만엔이며, 농복연계센터 운영비 1,700만 엔, 보조금(사회적 농업 경영체 지원비) 5,200만엔 등으로 구성됨(정도채, 2017)
- 2018년 현재 총 32개의 사회적 농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농경지 총 면적은 57,281m²임. 일부 경영체의 경우 농지 없이 가공·유통에만 참여(정도채, 2017)
-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일본의 케어팜은 유한회사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검사, 판매 그리고 관광농업까지 수행하게 되고, 생산된 농산 품을 사회복지법인에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거두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법인과 케어팜 유한회사는 업무위탁관계를 맺고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케어팜 유한회사는 복지법인 이외 복지사업소와도 농업을 매개로 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한 주기적인 재활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아오모리현도 농업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협약하에서 필요경비의 지원 그리고 농업관련 시범적 경작 및 재배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농작업에 10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그림VII-25〉 아오모리현의 농복연계 추진사업(2016~2017)



자료 : 흥지영·황수철(2017). 일본의 사회적 농업. 계간농정연구 65호

〈표VII-36〉 일본 농정복지 사례

구분	복지분야 → 농업분야		농업분야 → 복지분야	
	별도 주체 설립	동일조직	별도 주체 설립	동일조직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농업분야의 주체	유한회사 시네트 사카이	사회복지법인 코코롱	유한회사 오카야마현 노소	교마루엔
복지분야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커뮤니티네트워크		NPO법인 오카야마	주식회사
후쿠이 아와라사무소			자립지원센터	
지역	후쿠이현	후쿠시마현		
농업생산 법인	○	-	○	○
농업생산 부문	수도작	24ha	채소·두류	0.8ha
	노지채소,	4ha		
	과수		양계	2,000
	관광농장 (하우스)	약 300평	(채관)	마리 규모
농업관련 부분	농산품가공 (곶감, 쌀과자), 정미작업, 관광농원(딸기수확)	직매소·카페 운영, 농산품가공	NPO법인에 작업수탁 : [파, 방울토마토 수확· 조정작업, 커트용 파 제조]	
	사회복지법인(모체) 사업소에 업무위탁	· 취업이행지원사업 · 취업계속지원A형 사업 · 취업계속지원B형사업	별도 설립한 NPO법인 (취업계속지원A형사업 소)에 업무위탁	· 일반취업 · 복지시설 업무위탁 · 특례회사 업무위탁
장애인수	8명 (지적장애)	65명 (정신장애)	45명 (지적장애 중심)	22명 (정신장애, 지적장애 중심)
직원수	사원 8명, 파트타임 1명 [사회복지법인 사업소에 상근·비상근 11명]	상근 17명, 파트타임 19명	사원 6명 [NPO법인에 사원·파트타임 20명]	사원·파트타임 38명 (장애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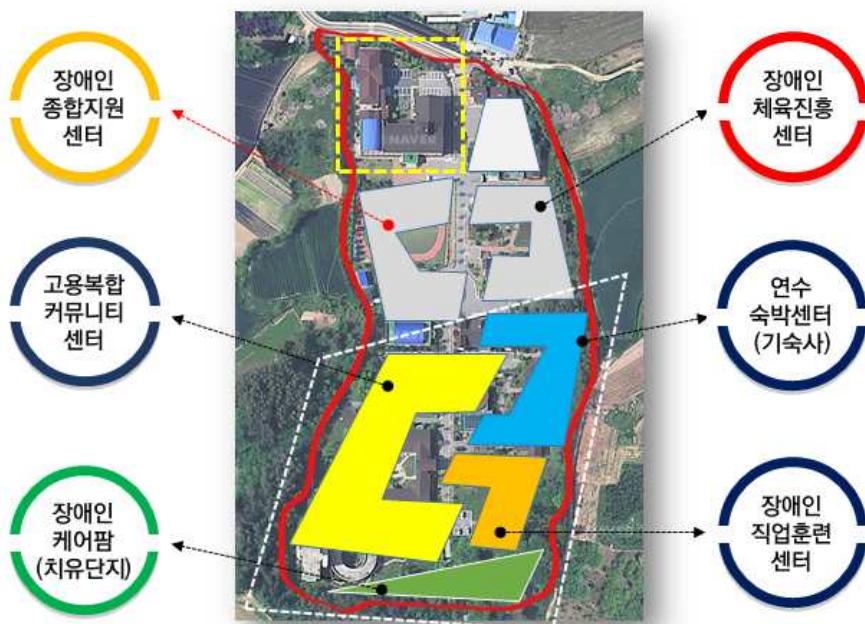
자료 : 코사바유리에(2017), 흥지영향수첩(2017) 일본의 사회적 농업: 농업과 복지의 연계. 계간농정 63호

- 일본의 복지농장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복지분야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들이 농업분야의 영농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농업의 영농법인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케어팜의 사업추진은 복지분야에서 농업분야로 연계하거나 본 사업이 농업분야인 경우 복지분야로 연계한 경우로 분류됨
- 복지법인이 농업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케어팜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제시되고 있고, 농업법인에서 복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농업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도 케어팜이 추진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의 케어팜은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농업법인에서 별도의 사회복지 혹은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만큼 매우 보편적인 형태의 사업이 되고 있음

5. 자립복지재단 공간 주요시설물 구상

- 자립복지재단의 주요 공간에 대한 시설물은 전술한 국가차원의 장애인고용 복지정책 동향 그리고 지역장애인의 복지수요 여기에 지역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크게 국가단위의 개발과 지역단위의 개발 등으로 분리하여 사업 추진
- 국가단위의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라고 하는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연수 기관 설치
-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연수시설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서부터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고용관련 복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로 건립
- 아울러 자립원의 농지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치유를 위한 자연치유단지, 즉 케어팜을 조성하여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 케어팜은 전라북도의 특화산업으로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의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식물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운영

〈그림VII-26〉 자립복지재단 공간 주요시설 구상



〈그림VII-27〉 자립복지재단 주요시설의 역할과 기능



- 자립복지재단의 공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용과 복지사업을 매개로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고용기업, 장애아동 및 장애가족,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의 공간으로 조성
-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돌봄 및 재활치료, 장애부모의 상담 및 힐링, 그리고 장애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직업능력상담,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상담, 그리고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참여를 위해 장애인 직업교육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상담을 포함하여 직장 내 장애인친화환경 조성, 사업주의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등의 사업 추진
- 지역주민 등을 위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다양한 교육공간 및 자연생태체험장 등을 활용한 여가문화프로그램 향유,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 자연생태체험 및 교육 등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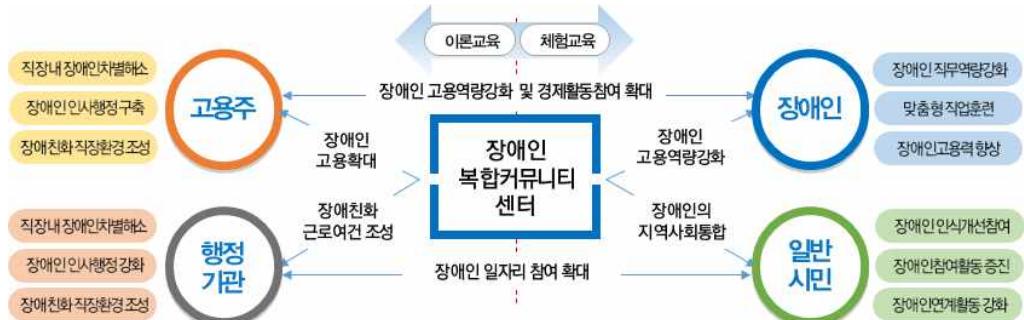
〈표VII-37〉 자립복지재단 주요시설의 역할과 기능

구분	주요시설물	주요사업
장애인교육연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홀(전시장, 공연장, 대극장) · 세미나실(대교육실, 중교육실, 소교육실) · 자료실, 도서관 등 편의시설 ·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교육 · 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연수숙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스토랑(식당, 카페) · 교육생 기숙사실 · 장애인 및 장애가족 숙박(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수생 숙박 · 지역주민 여가문화지원
장애인직업훈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RE FARM 교육센터 · 실내유리온실(실내교육장) · 장애인 창업보육실 ·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 장애인 직업재활 및 치유
장애인케어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연생태체험장 · 자연캠핑장(장애인, 지역주민 등) · 실외 치유화훼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연생태 돌봄 · 장애인 주야간 돌봄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수영장 · 농구장, 풋살경기장(실내) · 체력검진실, 보건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 장애인 여가문화지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심리상담 지원실 · 장애부모 및 가족 상담실 · 장애부모 돌봄지원실 ·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탈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탈시설 지원 · 장애인 및 장애부모 심리상담
인권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권 상담실 · 장애인인권 전시실 · 인권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및 전시

- 자립복지재단의 주요시설물로는 크게 장애인교육연수관을 포함하여 장애인연수숙박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장애인케어팜, 장애인체육진흥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인권교육관 등임
- 장애인교육연수관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다목적 홀(전시장, 공연장, 대극장), 세미나실, 자료실, 도서관, 교수연구실 등이 주요시설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 함
- 장애인연수숙박센터는 장애인교육연수생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및 지역주민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식당, 카페, 교육생의 생활관 등을 설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고용기업의 사업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생의 숙박과 함께 지역주민의 여가문화지원 등의 사업 추진
- 다음으로 장애인직업훈련센터는 전라북도의 특화산업인 농생명분야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치유를 담당할 수 있는 CARE FARM에 적합한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시설로 설치

- 장애인체육진흥센터는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를 위해 실내수영장을 포함해 실내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한 내부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장애인의 기초체력에 대한 검진과 건강상담을 위한 시설로서 체력검진실과 보건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함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그리고 장애아동과 장애부모 등 장애 가족 돌봄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설치 운영
- 특히,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국가의 중요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 탈시설 지원상담, 탈시설 지원 체험,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 여기에 시설장애의 약 70%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정착을 위한 심리재활치료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
- 장애인케어팜은 장애인의 재활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치유재활센터와 함께 자연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생태체험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장애인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조성
-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관은 장애인의 인권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 그리고 교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 자립복지재단의 공간에 대한 주요시설물이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7가지 형태로 구체화된다면, 관련 대상별 주요사업은 크게 4가지 대상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
- 먼저 장애인고용기업을 대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장애인의 고용환경개선,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취업장애인과 구직장애인에 대해서는 직무역량강화, 맞춤형 보수교육을 통한 장애인 고용능력향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음
- 그리고 장애아동과 장애가족에게는 케어팜과 연계하여 장애인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장애인인식개선과 장애인참여활동증진, 그리고 여가문화 프로그램 향유 등의 사업 등이 제공될 수 있음

〈그림VII-28〉 자립복지재단 공간구상에 따른 주요대상별 사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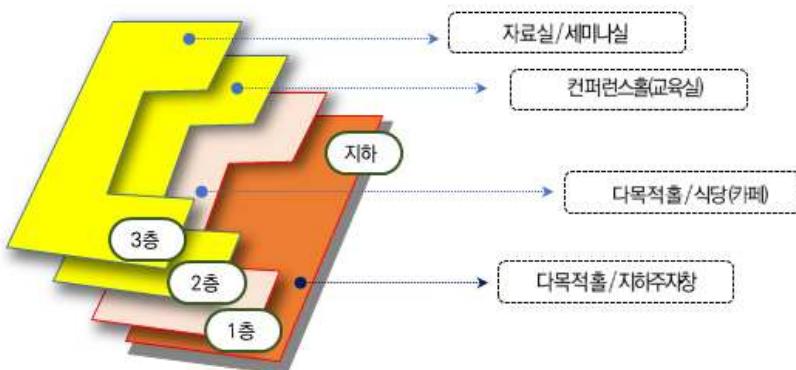


6. 자립복지재단 주요시설물 유형별 사업내용

1)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 3층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건축물 내에 다목적홀, 식당(카페), 컨퍼런스홀(교육실, 세미나실, 중회의실), 자료실 등을 설치
- 다목적홀은 장애인 관련 국제교류행사, 대규모 인원 대상 교육, 예술작품 전시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
- 최근 들어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목적홀은 대규모 장애인 국제행사 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좌석수 배치
- 다목적홀의 좌석은 총 1,500석으로 설치하고 전체 좌석의 약 50%정도는 장애인의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좌석으로 설치
- 다목적홀은 지하층과 연결하여 2층의 대강당으로 조성하여 전시 및 대규모 교육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 1층은 다목적홀과 함께 식당 및 카페를 조성하여 연수시설을 이용한 연수생이나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2층은 컨퍼런스홀과 함께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소규모 그룹 단위 교육 및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층의 교육실은 교육인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회실 등으로 조성
- 3층은 장애인 인권관련 다양한 도서를 보유하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및 자료시설로 설치하고 소규모 세미나실도 함께 조성

〈그림VII-29〉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구상



〈표VII-38〉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요 시설 및 활용

구분	주요공간 활용	비고
다목적 훌 교육실 (세미나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훌(공연, 전시 등),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교육 및 연수 ·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등 · 국제장애인 교류 행사, 장애인 고용 전시 행사 · 장애인다목적 체육 및 여가 활동 · 장애인직업역량 강화 이론교육 등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교육생, 장애인 휴식공간 · 장애아동, 비장애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및 비장애인 소규모 문화예술 실내 공연 · 장애인 및 비장애인 독서 및 휴식공간(작은동서관 등을 통한 지역주민이용) 	
식당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이용인(교육생 및 연수생) 대상 식사 · 장애인 단체 행사참여인원 리셉션 · 일반지역주민 대상 식사(수의사업) · 호텔이용자(숙박동) 식사 및 카페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요시설물은 **다목적홀, 자료실, 그리고 식당(카페) 등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시설 설치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대강당은 최소 700석에서 최대 1,000석 정도의 규모로 설치 되어, 연수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카페와 자료실, 도서관 등을 설치

〈표VII-39〉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교육 컨벤션)

구분	자활연수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 연수센터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수원 컨벤션센터	일본(오사카) 장애인국제교류센터
시설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 · 교육관(컨퍼런스룸) · 생활관 (268명 숙박) · 자료실 · 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 · 강의실 · 식당 · 비즈니스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 · 생활관 · 편의시설(식당,카페) · 자료실 ·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홀 · 중소회의실 · 컨벤션 훌 · 야외광장 · 하늘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다목적홀) · 교육실(세미나실) · 숙박(호텔) · 식당(카페)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 180석 · 컨퍼런스룸 80석 	· 총 216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000석 (3개홀 분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00석 · 장애인석 300석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 39,250㎡ [약 1.187평] · 생활관 6,070㎡ [약 1,836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4,288㎡ [약 1,300평] · 건축면적 7,433㎡ [약 2,254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층 · 연면적 5,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50,005㎡ · 연면적 97,602㎡ [지하2층, 지상5층] 	
대강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회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연 ·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국제교류 · 장애인관련 행사 · 장애인작품 전시 · 예술작품 공연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총 120석 · 자료실(도서관) · 전산교육실 · 보건실 · 놀이공간(당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센터 · 양호실 · 체육실(휴게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교수실 · 강의실 · 전산실습실 · 분임도의실 · 보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실(판매시설 등) · 주차장 총 68대 · 다이닝룸(V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총 50석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노동시장 진입의 전제조건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고용장애인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기능이 핵심기능임
-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공간이 아닌 장애인과 사업주, 지역주민 그리고 장애인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
-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장 사업주와 지역주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 가족을 위해서는 상담과 재활 그리고 돌봄과 여가문화,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핵심기능인 교육과 연수는 단순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을 향상 그리고 근로장애인의 근로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은 장애 이해, 인권실무, 인식개선, 직업 교육 등의 분야로 세분화하고 체험교육도 장애체험, 생태체험, 무장애체험 그리고 문화 체험 등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체험프로그램으로 교육진행
- 교육대상은 장애인고용의 잠재적 기관인 모든 사업체의 고용주, 비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부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의 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인권감수성 향상, 장애인고용능력향상, 장애인 관련 공공행정 등의 과정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인권향상, 장애인고용율 향상, 인권기반 공공행정유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증진

<그림VII-30>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대상 및 방법(안)



〈그림VII-31〉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과정(안)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그리고 훈련프로그램을 영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 이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program 운영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공무원, 장애인근로자, 아동청소년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론실무교육과 체험교육 등을 병행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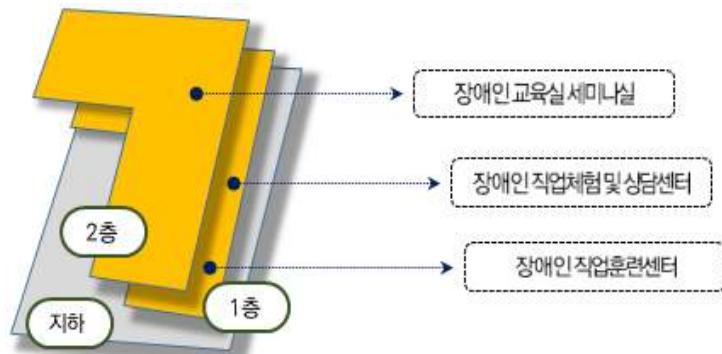
〈표VII-40〉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분야	실무이론교육	체험교육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이해 장애인 관점 인권행정 향상 장애인 차별행정 예방 장애인 인권감수성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이해(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인 인권행정 기초인권행정기준(아이드리인) 장애인 사설 운영 지침(제도, 규정) 장애인 인권기반 행정지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근로자 직무역량강화 장애인 맞춤형 직업자활, 직업교육 장애인 맞춤형 직업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 행정역량강화 교육과정 장애인정보화 기술 교육 장애인 유형별 직업자활 농생명 연계 치유농장 운영방법 및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관점 인권행정 향상 장애인 차별행정 예방 장애인 인권감수성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행동특성과 능력 이해 장애인 학생의 권리와 인권 장애인 학생 관련 제도와 규정 장애인 학생 학내규정 소개(우수사례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관점 인권보호 기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인권제도 및 자침 장애인직업자활시설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일자리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편의시설(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인권제도 및 자침 장애인직업자활시설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기구 체험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장애인 권리보호 직장 내 장애인 차별예방 직장 내 장애인 인권보호 행정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 이해교육(고용장려금제도 등) 장애인 의사소통 방법(원접근성 향상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사행정 직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장애인 고용기업 현장견학 장애인 유형별 장애체험(시각, 청각, 지체 등) 무장애 건축물 견학(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기구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용 이해교육(고용장려금제도 등) 장애인 유형별 장애체험(시각, 청각, 지체 등) 무장애 건축물 견학(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기구 체험

2)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 장애인의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농생명 특화 직업훈련 인프라로 구축
- 장애인직업훈련센터에서는 케어팜의 주요 농생명 지원을 교육할 수 있는 실습시설과 교육시설로 설치
- 농업분야에서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 유통 및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조성
- 농업특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식물원, 장애인 치유농장, 장애인농산품 판매 시설, 장애인농장 직업훈련 시설 및 체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필요
- 1층은 장애인의 농생명을 매개로한 케어팜에 실질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직업훈련 시설 설치
- 케어팜의 농생명 지원활용 장애인 치유와 재활을 위한 고용인력의 창출을 위해 직업체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 운영
- 2층은 장애인 직업체험, 특히, 케어팜 관련 농작물 재배 등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내수목원, 실내 비닐하우스 등의 설비를 갖춘 교육공간으로 조성
- 아울러 장애인직업훈련센터의 이용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진로적성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3층은 장애인 대상 소규모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장애정도와 유형별로 맞춤형 직업교육이 가능한 세미나실로 조성
- 장애인직업훈련센터의 주요 공간은 농생명 지원을 활용한 농생명 특화 직업훈련센터의 기능에 맞춰 식물원, 농업기술교육실 등 설치(장애인직업훈련센터는 향후 케어팜 등에서 바로 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농생명 전문인력 교육시설로 조성)

〈그림VII-32〉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세부공간 구상



〈표VII-41〉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주요 사업

구분	주요공간 활용	비고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고용장애인 고용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장애인 직업체험 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진로작성검사 · 장애인 적합 직업체험 및 장애인 창업훈련센터 운영 · 장애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 · 장애인 케어팜 연계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교육 	
장애인 교육실 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훈련 이론교육(케어팜 등 농생명 관련 이론교육) · 장애인 적합직종개발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직업훈련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산을 포함하여 현재 5개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업훈련분야는 전자, 디자인, 외식, 스마트 정보 등 이공계 열 중심으로 구성
- 최근 농생명 지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케어팜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된 직업훈련 인프라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전라북도는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농생명 특화지원을 활용하여 농업을 매개로한 케어팜 등을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교육공간 조성
- 자립복지재단 내 장애인직업훈련센터는 농생명 관련 직업훈련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체험교육공간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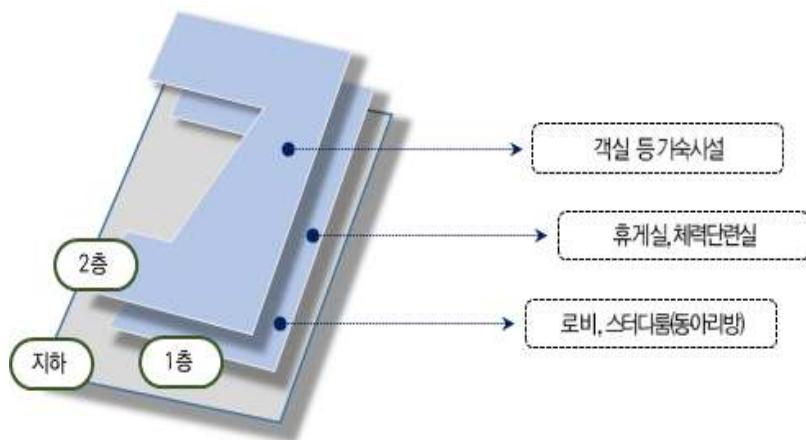
〈표VII-42〉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유사시설 현황

구분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부산 직업능력개발원	대구 직업능력개발원	대전 직업능력개발원	전남 직업능력개발원												
개원	1991년	2000년	2002년	2000년	2010년												
직업 훈련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기계 · 전자 스마트정보 · 디자인 · 인쇄출판미디어 · 균금속공예 · IT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디자인 · CAD/CAM · 전자, 스마트정보 · 외식용제과제빵 · 푸드앤크페 바리스 타 · 디지털건축설계 · 메카트로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경화계 · 서비스마케팅 · CAD/CAM · 전자, 스마트정보 · 디자인 · 패션디자인 · 외식용제과제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디스플레이 · CAD/CAM · 스마트정보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형디자인 · 전자 · 스마트정보 · 디자인 												
특화 훈련	산학연계과정, 자격증과정, 장년특화과정, 여성특화과정, 정신태화과정, 실무(발달)과정, 푸드마스터과정 ※ 푸드마스터과정은 부산, 대전에서만 운영																
면적	<table border="1"> <tr> <td>부지</td><td>33,892m²</td> <td>44,276m²</td> <td>18,000m²</td> <td>10,667m²</td> <td>47,101m²</td> </tr> <tr> <td>건물</td><td>14,896</td><td>7,512m²</td><td>10,325m²</td><td>9,081m²</td><td>9,951m²</td> </tr> </table>	부지	33,892m ²	44,276m ²	18,000m ²	10,667m ²	47,101m ²	건물	14,896	7,512m ²	10,325m ²	9,081m ²	9,951m ²				
부지	33,892m ²	44,276m ²	18,000m ²	10,667m ²	47,101m ²												
건물	14,896	7,512m ²	10,325m ²	9,081m ²	9,951m ²												

3)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 및 교육관

- 장애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위한 훈련센터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 특히, 사업장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연수가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과 연수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시설로서 객실과 스터디실을 갖춘 생활동 및 연수동이 필요함
- 대부분의 국가 연수시설 혹은 공공기관의 연수시설 들도 자체 연수교육기관 설치와 함께 연수 및 교육생의 집체교육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음
- 장애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이용 연수생이 소정의 교육기관 혹은 연수기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의 설치 필요
- 또한,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생활관은 교육연수생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
- 생활관의 1층은 로비동과 스터디룸 조성을 통해서 연수시설의 연수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조성
- 생활관 1층은 연수생뿐만 아니라 케어팜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 일반 지역주민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부모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간으로 조성
- 2층은 소정의 교육기간 동안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 연수생 등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을 위해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로 설치
- 또한 2층의 일부시설은 건강증진 및 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연수생이 기본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공간 조성
- 3층은 연수생이 교육기간동안 생활할 수 있는 객실 및 숙박동으로 조성하여 운영

〈그림VII-33〉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 및 교육관



-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연수시설들은 연수생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위해 자체 생활관을 설치 운영중임
- 공공기관인 자활연수원이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도 자체 연수시설로서 생활관을 갖추고 있고, 이들 생활관에는 주요시설은 객실을 포함하여 로비, 체력단련실, 휴게실, 비즈니스룸 등을 갖추고 있고 일부 교육시설에서는 보건실이나 교육실,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음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도 주된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실의 객실을 포함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
- 특히,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된 이용자가 교육기간 동안 이용하는 연수생이지만 교육기간 이외에는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조성
- 일본 오사카의 장애인국제교류센터는 장애인의 전시 및 국제교류 등의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숙박을 위한 객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객실을 호텔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시설 운영
- 비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도 세미나나 교육시설 이용 혹은 케어팜 등의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객실이용을 위해 일반 호텔과 유사한 형태로 객실을 설치하여 운영
- 교육연수실은 최소 1일 최대 200명 이상 숙박이 가능한 객실로 구성하고 숙박공간 이외에 보건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

〈표VII-43〉 교육연수 관련 유사시설 현황

구분	자활연수원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일본(오사카) 장애인국제교류센터
연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 미팅룸 · 로비 · 체력단련실 · 휴게실 · 비즈니스룸 · 북카페(24시간 자유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 편의점 · 체력단련실 · 교육프로그램실(새암터) · 휴게실 · 비즈니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동(단층형, 복층형) · 거실 · 부모자실 · 지도교사실 · 세탁실 · 휴게실 및 휴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 객실(장애인실, 가족실) · 프리자센터 · 자료실 · 프론트 · 식당(카페)
개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실(6실) · 2인실(126실) · 미팅룸(8명/2실) · 장애인실(2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실(12실) · 2인실(142실) · 4인실(10실) · 15인실(2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실 (양실 26실) · 2인실 (일본식 6실) · 2인실 (혼합 2실) · 중증가족 (1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6,070㎡ [약 1,836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8,849㎡ [약 2,681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154,777㎡ · 건축면적 4,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사용 기능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80명

〈표VII-44〉 오사카 장애인국제교류센터 숙박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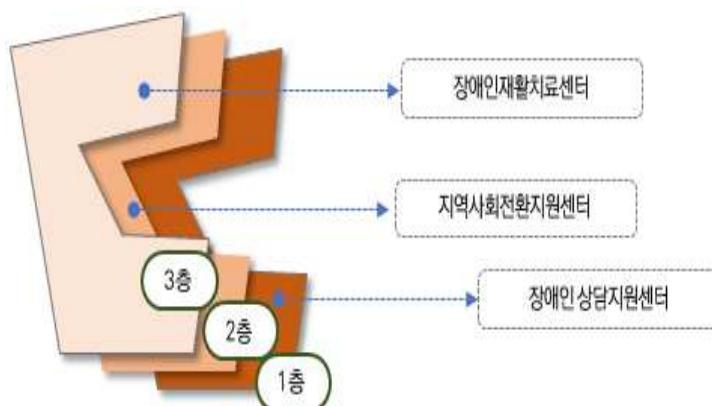
2인실 객실(양실, 전통실)	장애인가족용 객실	장애인편의시설
 <p>입구 옷장 화장실 침대 침대 ソファ (エクストラベッド) 베란다</p>	 <p>입구 이불장 옷장 욕실 세면대 침대 베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식과 서양식을 혼합하여 설치 장애인과 가족(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이동 상 보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장애인의 욕실사용과 화장실 사용이 용이하도록 큰 욕조설치
 <p>입구 옷장 화장실 이불장 베란다</p>	 <p>입구 옷장 세면대 이동루프 침대 침대 화장실 욕실 베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객실로 조성 장애인안전욕조설치 신체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루프설치(주행승강리프트 설치) 중증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조성 (침대-화장실-욕실 연결)

- 장애인을 위한 숙박시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곳은 오사카에 위치한 빅아이(국제장애인 교류센터)로서 이 시설은 서양식과 일본식을 혼합하여 2인 객실과 함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도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대형객실도 함께 설치
- 특히, 중증장애인도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내에 주행승강리프트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침대, 화장실, 욕실을 연결하여 장애인가족과 장애인이 편하게 세면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 따라서 자립복지재단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생활동도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함께 장애인가족도 함께 여가와 힐링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객실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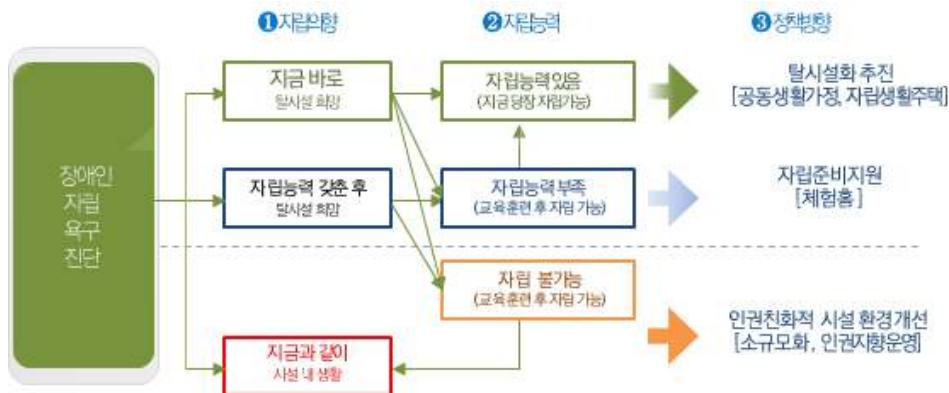
4)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을 위한 지원시설로서 중앙정부의 지역 사회전환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는 전라북도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 자립훈련, 자립생활상담 및 자립생활체험 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상담, 훈련, 체험, 자립 등의 자립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설로 설치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탈시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직업훈련 이전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1층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정도, 고용능력정도, 장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
- 1층의 장애인상담지원센터는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직업훈련 혹은 사회적응훈련 등의 경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설치하여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시설로 구성
- 2층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서 탈시설 상담, 탈시설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 탈시설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및 거주장애인 자립역량강화사업 추진
- 2층의 장애인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내에는 자립생활상담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 생활 교육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자립역량강화 사업 중점 추진
- 3층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혹은 자립역량이 부족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
-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등의 재활치료실을 설치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 강화

〈그림VII-34〉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층별 구상



〈그림VII-35〉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자립지원 절차(안)



자료 :이종섭 외(2017) 전북연구원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체험,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실(미술치료, 언어치료, 재활치료, 작업 치료 등이 가능한 시설),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체험홈, 탈시설 자립지원 상담센터 등을 설치하여 장애아동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요 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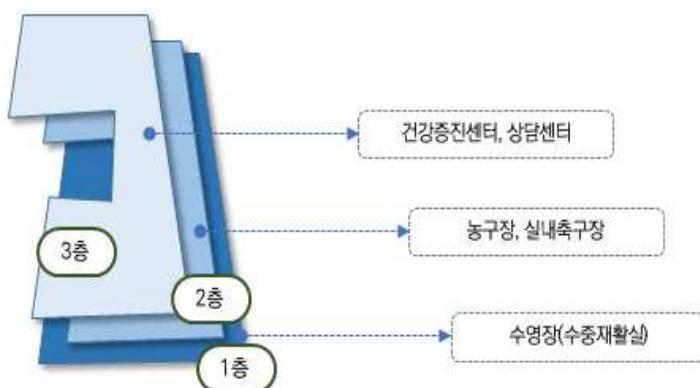
〈표VII-45〉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사시설

구분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자립전환지원센터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장애인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교육 및 협력 장애인복지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상담, 정보제공 장애인복지지원개발 장애인복지 관련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종합민원상담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현장지원 경기여행누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지원팀 (3명) 교육홍보팀 (3명) 자립생활전환팀 (7명) 기획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팀 (5명) 총무팀 (16명) 스마트 상담팀(4명) 교육운영팀 (6명) 네트워크팀 (7명) 자립전환 TF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운영지원팀 장애인자립전환지원팀 <p>* 총 5명(관장 바상근)</p>
시설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 7,298㎡(2,207평) 대지 : 8,763㎡(2,650평) 주차구역 : 총 11대 건축 : 지상3층, 지하1층) 편의시설 : 풋살 경기장 	

5)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 장애인 체육진흥센터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증진 그리고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 장애인 체육진흥센터의 건립모형은 문화관광체육부의 2가지 유형 중에서 지역수요에 맞춰 선택적 건립 추진
- 장애인체육진흥센터는 체육활동증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를 위한 시설로서 체육관형보다는 수영장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VII-36〉 장애인체육진흥센터 종별 구상



- 장애인체육진흥센터는 3층으로 건립하되 1층은 건립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영장 그리고 2층에는 체육관(농구장, 실내축구장) 등을 설치하고 3층은 건강증진센터와 상담센터 등을 설치

〈표VII-46〉 국민체육진흥센터 관련 유형별

구분	체육관형 (80개)	수영장형 (40개)
모델안	<p>체육관형_도입시설</p> <p>체육관, 소체육관, 다목적룸 락커룸, 가족실 등</p> <p>헬스장, GX, 수중운동등실, 운동처방실, 프론트 등</p>	<p>수영장 복합형_도입시설</p> <p>수영장, 헬스장, GX, 다목적룸 락커룸, 가족실 등</p> <p>수영장(8례인), 유아풀, 프론트 등</p> <p>지하 수영장 설비</p>
사업 내용	<p>* 지자체의 종목별 수요(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농구, 배드민턴, 사격, 역도, 유도, 탁구, 펜싱 등)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p> <p>* 특수학교 내 체육관 건립,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능</p>	<p>* 수영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종목별 수요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p>
소용예산	체육기금 30억	체육기금 40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방안 보도자료

〈표VII-47〉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모델

구분	권장면적 (m ² , 연면적 기준)	수영장형 (40개)
수영장 기본형	약 2,161 m ²	수영장(25m×4~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다목적 체육관형	약 1,867 m ²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체육관 복합형	약 4,029 m ²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체육센터 역할 및 시설확충 필요성

-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시군구가 아닌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있고, 지원모델도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영장 및 체육관을 포함함
- 지원규모는 개소당 50억원의 정액을 지원하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추가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함
- 따라서 장애인 체육진흥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제안 모형에 맞춰 공간설계 필요
- 특히, 체육진흥센터의 두 가지 모형중에서 장애인과 함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
- 체육진흥센터에는 1층 수영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증진과 함께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 공간으로 활용
- 2층은 농구장과 풋살 등 실내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활동 지원

〈그림VII-37〉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의 층별 배치모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체육센터 역할 및 시설확충 필요성

〈표VII-48〉 국민체육진흥센터 공간구성 및 시설면적(안) : 도시성장형

구분	주요시설	면적	비고
옥외	풋살장	805.0㎡	243.9평
	조깅트랙	97.0㎡	29.4평
	설비 및		산책로 및 조깅 트랙
	공용면적	72.0㎡	21.8평
	소계	(1,118.0㎡)	(338.8평)
지상3층	지상3층		
	다목적체육관	595.0㎡	180.3평
	다목적실	315.0㎡	95.5평
	물품보관소	76.0㎡	23.0평
	회장실	46.8㎡	14.2평
	공용면적	85.2㎡	25.8평
	소계	1,118.0㎡	338.8평
지상2층	지상2층		
	헬스장	613.2㎡	185.8평
	GX	130.0㎡	39.4평
	프리웨이트 존	65.0㎡	39명(15.5㎡/인)
	회장실	46.8㎡	14.2평
	사무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공용면적	130.0㎡	25.8평
지상1층	지상1층		
	수영장	832.0㎡	252.1평
	탈의실(남)	56.0㎡	17.0평
	탈의실(여)	56.0㎡	17.0평
	샤워실(남)	88.0㎡	26.7평
	샤워실(여)	88.0㎡	26.7평
	강사실 및		5례인(25m X 7.5m), 특수풀 등
수영장	공용면적	109.0㎡	40명(2.2㎡/인)
	소계	1,274.0㎡	33.0평
	수영장	250.0㎡	386.1평
주차장	(752.0㎡)	(227.9평)	수처리시설, 공조기, 열교환기 등
합계	3,760.0㎡	1,139.4평	25대 도입, 지하 및 야외 조성 (운동시설 법정주차대수 150㎡ 당 1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체육센터 역할 및 시설확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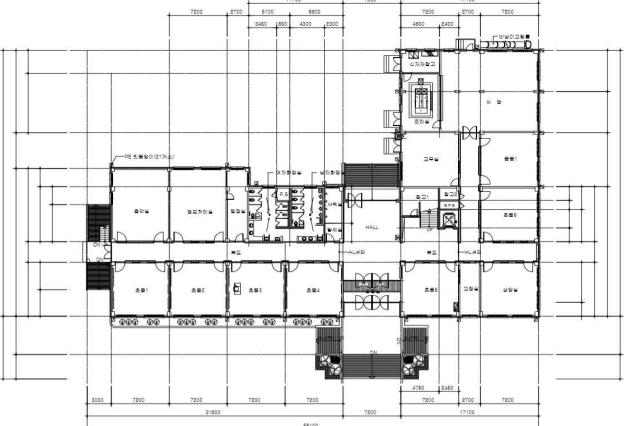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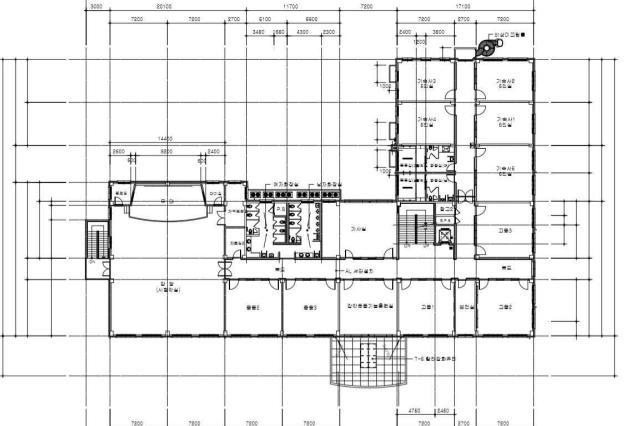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센터의 공간구성 예시를 보면, 지상 3층의 건축물에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권장시설로서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유소년 및 영유아 수영장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자립복지재단도 1층 수영장을 중심으로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운동처방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조성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성장형모델에서는 기본체육시설로 수영장(25m, 5례인),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헬스장으로 제시하고 있음

6) 자립학교(평생교육관)

- 자립학교는 특수학교로 운영되던 교육시설로서 자립복지재단 시설폐쇄 이후 일부 학생들의 전원 등의 조치로 인해 장애아동의 교육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자립학교는 발달장애인의 주된 욕구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최적화된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학교부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평생교육센터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 개설 운영
- 평생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자립역량강화, 의사소통능력강화, 문제해결역량강화 그리고 공동체 역량강화 등의 과정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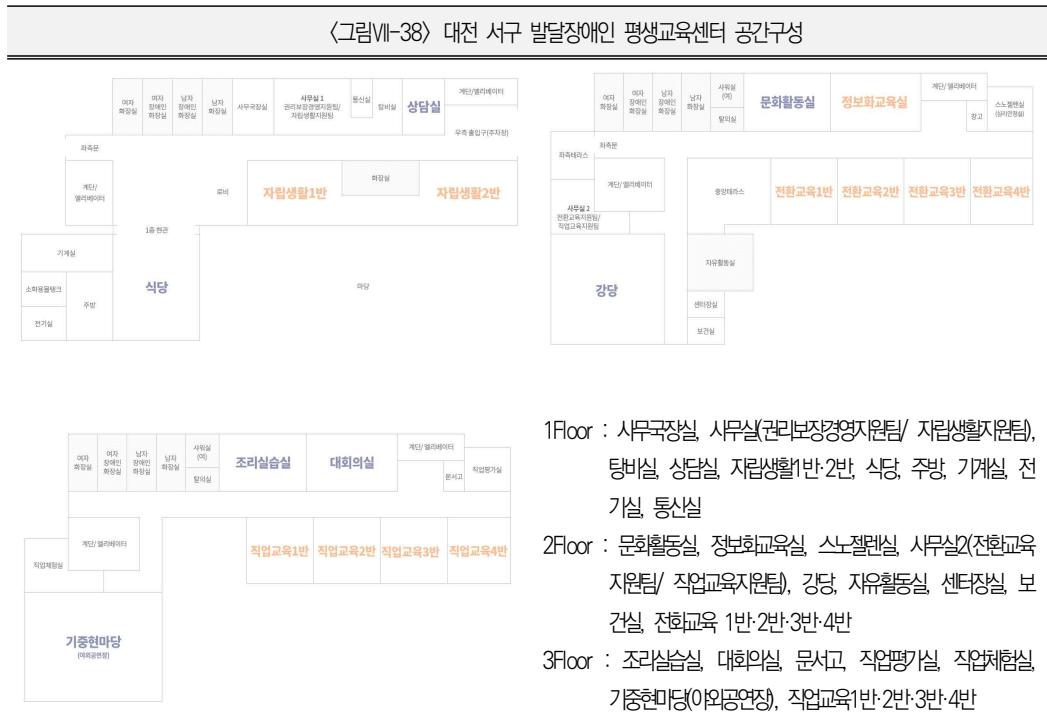
〈표VII-49〉 자립학교 평면도 및 시설구성

평면도	시설구성
	<p>1층 평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실 · 정보처리실 · 초등1~6실(6실) · 행정실 · 교장실 · 상담실 · 교무실 · 조리실 · 식자대창고 · 화장실
	<p>2층 평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시청각실) · 중등2반, 중등3반 · 고등1반, 고등2반, 고등3반 · 기술사실(1~6실) 5인실 · 감각운동기능훈련실 · 가사실 · 목욕실 · 자료실 · 화장실

〈표VII-50〉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례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천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	강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초문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 사회교육 · 수학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기초 · 사회기초 · 한문기초
사회기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교육 · 자립생활교육 · 여가활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지원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사회자립생활지원서비스
건강관리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트레이닝 프로그램 · 재활체육 프로그램 · 건강위생관리 교육 · 심리운동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술 · 자립기술 · 자기관리
직업기술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직업기술교육 · 일자리 텁색교육 · 직업윤리교육 · 직업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생활전환교육서비스 · 직업활동기본교육 · 컴퓨터 응용교육 · 자격증반(제과제빵 교육 등)
단과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문화배우기 program · 도예 program · 심리운동 program · 네일아트 program · 언어치료 program · 자격증취득 program · 디아이트 program · 웃음치료 program · 가요부르기 program · 기능대회준비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기술 · 기초수활동 · 기초사회활동 · 자기주장훈련 · 미술치료 · 요리치료 · 무용치료 · 원예치료 · 자체 숙박프로그램 · 지역사회활동
조사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조사 · 장애인기초조사 DB구축 · 전문자문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평생교육 관련 연구 · 장애인 온라인정보제공 · 자원봉사자 교육 등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센터장 · 1사무국장 · 1부장 · 2팀(지체운영팀, 교육개발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센터장 · 1부장 · 4팀(권리보장경영지원팀, 자립생활지원팀, 전환교육팀, 직업교육팀) · 2팀(지체운영팀, 교육개발운영팀)
특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체험실 운영 	
	<p>※ 자립생활 2반/전환교육4반/직업교육4반 운영</p>	

- 타지역의 평생교육센터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서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능력향상, 탈시설 지원 그리고 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 세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히,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자립생활 체험을 위한 실습 및 체험공간으로서 자립생활반(2반), 전환교육반(4반), 그리고 직업교육반(4반)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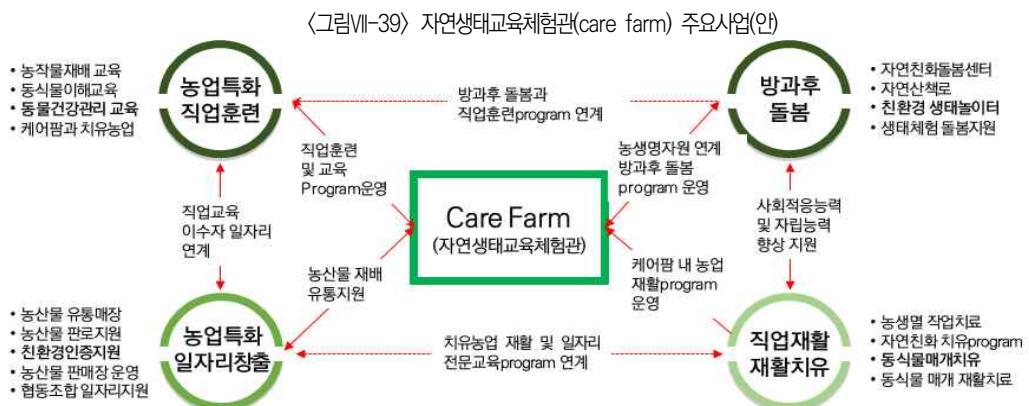


사진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빌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home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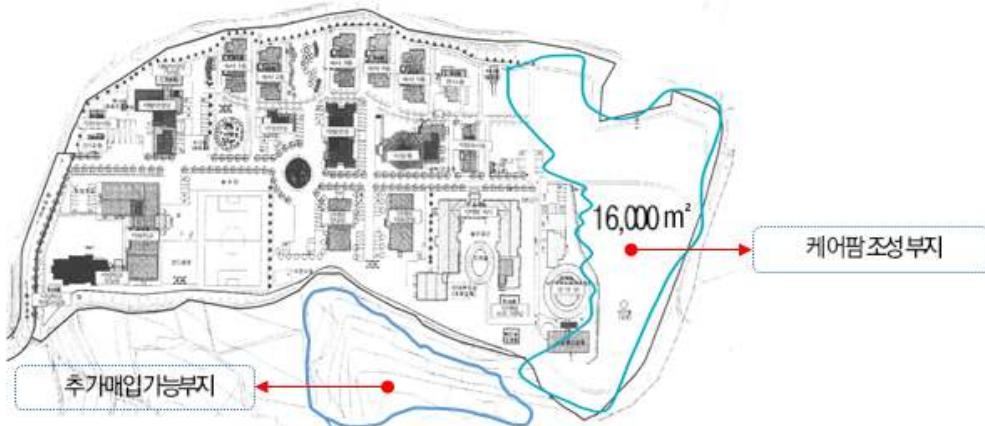
- 빌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중에서 타지역에 비해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전 서구 빌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임
- 인천서구 빌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상 3층의 연면적 2,362m²의 규모로 설치된 빌달장애인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교육센터로서 19세 이상 성인 빌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인천 서구 빌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빌달장애인의 자립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지원팀(2개반), 전환교육지원팀(4개반), 직업교육지원팀(4개반)의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체험보다는 교육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인천 서구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자립생활과 전환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천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천서구 빌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직업교육관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일상생활교육지원, 직업교육지원, 자격증 취득교육과정 운영, 직업실습지원, 그리고 여가생활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7) 자연생태 체험관(Care Farm)

- 자연생태체험관은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그리고 치료, 일자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험공간으로 조성
- 자연생태교육체험관은 자립복지재단 녹지공간을 농생명 특화 재활치유단지로 조성하여 방과후 돌봄, 직업재활치유, 직업훈련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적 지원 시설로 조성
- 방과후돌봄은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자연공간을 활용하여 생태놀이터, 아외캠핑장, 자연체험 돌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은 직업재활 및 재활치유서비스의 제공으로 이 단계에서는 직업 훈련 이전단계에서 장애아동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농생명 지원을 활용하여 지원
- 장애정도가 비교적 중증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으로의 과정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 재활프로그램에 투입하여 동물매개치유, 동식물 활용 재활치료, 자연치화 치유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을 제공하도록 시설 조성
- 자연을 활용한 재활치유를 위해서는 케어팜 내에 동식물 활용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공간 내에 소규모 식물원, 치유산책로 등의 공간 조성
- 다음으로 케어팜 자연생태교육체험관은 농업특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고용능력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
- 마지막으로 소정의 직업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농산물 판로지원 및 인증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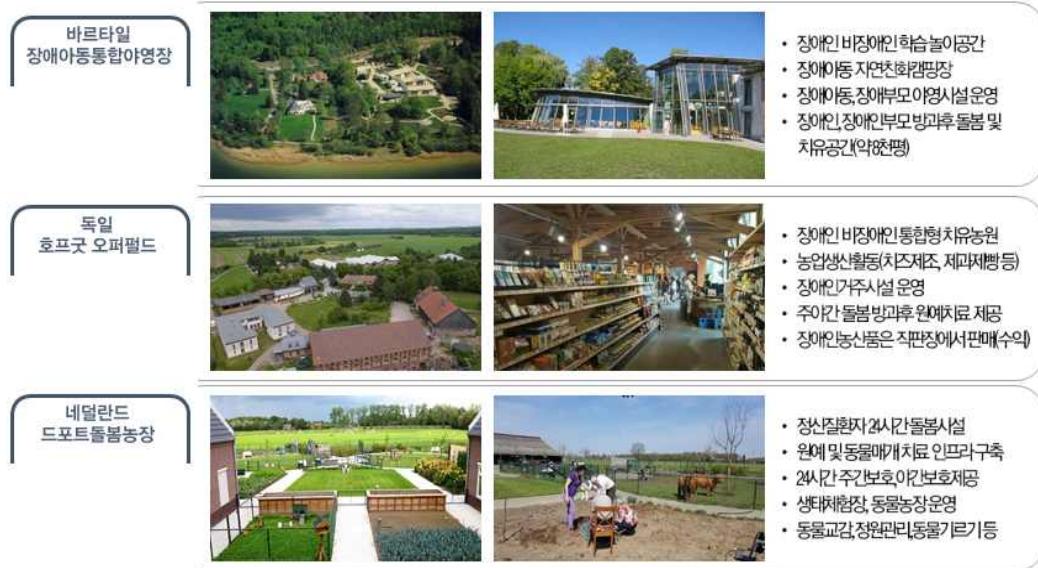


〈그림VII-40〉 케어팜 조성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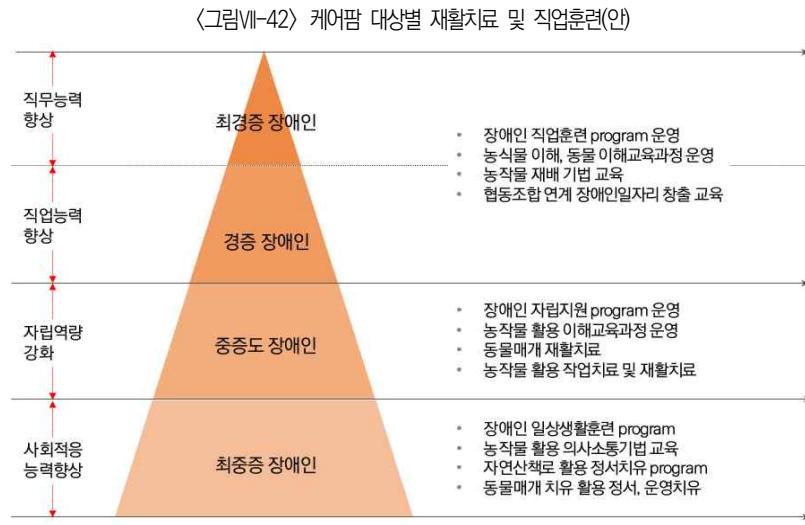
- 케어팜의 조성부지는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현 뒤편이 자연녹지 약 16,000m²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
- 케어팜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방과후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케어팜 내에는 농작물(유기농 채소, 과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식품을 재배할 수 있는 유리정원 등의 설비시설을 설치
- 또한, 케어팜 단지 내에는 동식물, 가축 등을 기르고 돌볼 수 있는 농원도 함께 조성하여 장애아동이 동물과 함께 교감함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으로 하여금 유기농채소를 재배하고, 동식물을 돌보고, 농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문 및 서빙하는 일까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향상 견인
- 케어팜 단지내에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의 공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프로그램 운영
- 케어팜의 단지 내 다양한 활동은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다른 기관(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등의 다양한 재활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아울러 케어팜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부모도 함께 일하고 쉴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장애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맡긴 이후 장애부모들이 함께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그림VII-41〉 국외 케어팜 운영 사례



사진출처 : Hofgut Oberfeld, deport.nl, Hofgut Oberfeld homepage 재구성

- 국외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역량강화와 재활치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케어팜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유럽의 사례를 활용하여 자립복지재단 내 케어팜 치유단지 조성 필요
- 케어팜은 경증장애인에서부터 중증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의 정도에 따른 돌봄-재활-직업훈련-일자리연계 등으로 단계적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 자립복지재단의 케어팜은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까지 치유와 재활 그리고 직업훈련이 one-stop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축
-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에서부터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농촌 체험형으로 개발하여 운영
- 경증장애인은 농식물, 동물 등을 활용하여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직업재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 바로 농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고용인력 양성
- 직업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직업훈련 이수 장애인과 구인을 원하는 협동조합과의 연계 추진



- 케어팜의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은 최중증장애인에서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단계별 돌봄 및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
- 최중증장애인은 사회적응능력향상을 목표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
- 중증장애인은 자립역량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자립지원프로그램, 재활치료, 농작물을 활용한 작업치료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 경증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과 직무능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직업훈련과 농작물의 재배 등의 실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운영

〈그림VII-43〉 자립복지재단 내 케어팜 단지 주요공간구상



VIII



자림복지재단 부지 활용 건축기본계획

VIII. 자립복지재단 부지 활용 건축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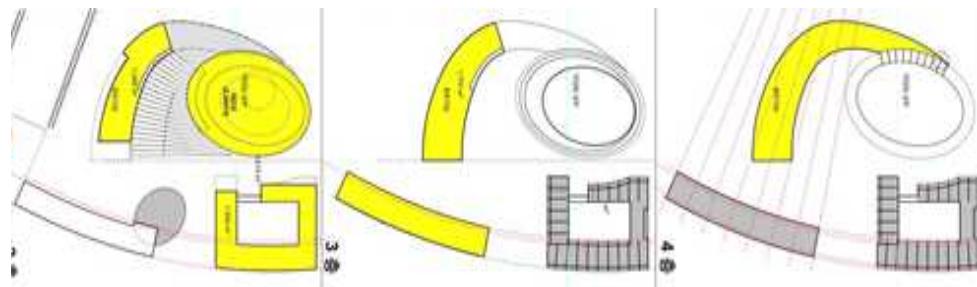
1. 자립복지재단 기본자산 부지활용 배치계획

- 자립복지재단 내 부지는 농생명 지원을 연계한 장애인직업훈련과 고용연수 복합센터로 건립
- 자립복지재단의 부지는 크게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관련 시설의 배치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의 직업훈련, 인식개선교육, 체계적인 연수를 위한 숙박 등의 시설로 구성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상담, 사회적응훈련, 장애인 체육여가활동 증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설로 구성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시실(공연장) 약 600석, 세미나실(강의동), 카페테리아(식당), 직업훈련센터(농생명특화 직업훈련) 설치
- 타원형 건물에 연결형 건축을 통해 아외공연장 등 설치를 통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통합적 교육훈련 시설 배치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숙박동(장애인연수생활관)을 설치하고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그림VIII-1〉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배치도



〈그림Ⅷ-2〉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배치계획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결형 건축을 통해 야외공연장과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장애인연수생활관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적 고용연수시설로 운영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를 랜드마크로 케어팜과 농생명특화 직업훈련, 고용연계와 교육연수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형 시설로 건축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세 개의 주요 건축물(① 장애인고용복합센터, ② 장애인직업훈련센터, ③ 장애인연수생활관으로 구성)과 함께 자연녹지부분을 케어팜으로 조성하여 장애인고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농생명 분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견인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교육연수기능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연수숙박시설도 함께 건립하여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건축

〈그림Ⅷ-3〉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배치계획



〈그림VIII-4〉 자림복지재단 부지활용 배지도(1안)



- 다만, 자립복지재단의 건축계획에서 현 자립학교부지는 장애인부모의 존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현재 자립학교의 건물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하는 안과 새롭게 신축하는 안으로 검토 필요
 - 자립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안(1안)과 자립학교를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는 안(2안)으로 건물배치계획 수립
 - 1안의 경우 현 자립학교를 존치한 상황에서 일부 부분변경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는 안이고 2안의 경우 자립학교도 새로운 장애인평생교육관으로 신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에서부터 자립생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

〈그림VIII-5〉 자림복지재단 부지활용 배치도(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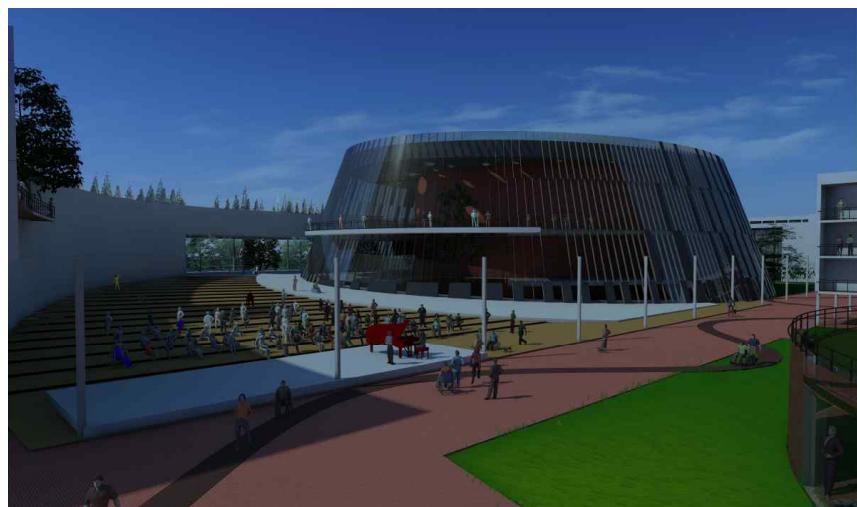


2.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 부지활용 조형계획

1)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① 장애인고용복합센터($9,862\text{m}^3$), ② 장애인직업훈련센터 ($6,255\text{m}^3$), ③ 장애인연수생활관($8,285\text{m}^3$)으로 구성
- 장애인고용복합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교육, 연수, 전시컨벤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핵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복합센터의 건축면적은 약 $9,862\text{m}^3$ 로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연수, 장애인국제교류세미나 등을 위한 대강당, 전시컨벤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세미나실, 중회의실, 대강당(전시컨벤션홀),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
- 장애인고용복합센터는 인근 중요 건축물인 장애인직업훈련센터와 장애인연수생활관 등과 함께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핵심건축물임
- 장애인고용복합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시설 그리고 대규모 전시 및 공연 시설로 조성
- 장애인고용복합센터는 최대 600석까지 이용가능한 대규모 공연장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공간으로서 세미나실(강의동) 그리고 편의시설로서 카페 및 식당 등의 시설물을 배치

〈그림VIII-6〉 장애인 고용복합센터



〈그림VIII-7〉 장애인직업훈련센터(케어팜 연계)



-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의 건축면적은 6,255m²로서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직업훈련능력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위해 직업훈련실습실, 직업훈련 교육실, 직업훈련 체험실 등의 교육 및 체험시설로 설치
-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는 농생명 지원을 활용하여 케어팜과 연계한 농생명 특화 직업 훈련시설로 건축물 구성
- 장애인직업훈련센터의 주요시설은 장애인직업훈련교실, 장애인농생명 교육실습실, 교수연구실, 자료실(장애인고용교육 관련 자료), 휴게실 등으로 구성
-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의 직업훈련분야는 농생명분야로 특성화하여 원예치료, 농작물 재배, 동식물 체험 등으로 교과목을 구성하고 인근에 조성하는 케어팜과 연계하여 실습교육과 이론 교육 병행
- 장애인직업훈련센터는 장애인의 고용능력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업훈련 욕구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험실습실과 이론교육실을 소규모로 세분화하여 구성
- 장애인직업훈련센터는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과 함께 농생명 분야 장애인 고용능력 향상을 위해 영농분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실습 및 이론교육 프로그램 마련
-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내 식물원 등을 설치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원예치료 등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연계
- 장애인직업훈련센터의 건축부지 인근에는 케어팜을 함께 설치하여 장애인농생명 직업훈련 및 장애인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그림Ⅲ-8〉 장애인 연수생활관



- 장애인연수생활관의 건축면적은 약 8,285m²로서 장애인교육연수생을 위한 숙박시설 그리고 휴게시설과 교육시설로 건축
- 장애인연수생활관은 장애인뿐만아니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호텔식 기숙사로 건축
- 장애인연수생활관은 장애인고용복합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등 교육연수생의 숙식을 위한 숙박시설과 식당, 휴게실(카페) 등의 시설로 건축
- 장애인연수생활관의 객실은 주된 이용자인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이용의 장애가 없도록 하고 객실은 1인실, 2인실, 6인실, 가족실 등으로 건축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
- 생활관의 객실은 중증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장치(침대 이동보조, 욕실이동보조 등)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간설계

2)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① 장애인종합지원센터(7,815m²), ② 장애인체육진흥센터(6,242m²), ③ 장애인평생교육관 (4,474)m²으로 구성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건축면적은 7,815m²로서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의 상담실, 재활치료실(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탈시설 자립지원센터, 체험홈, 자립생활교육 지원실 등으로 구성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상담에 기초하여 사회 적응훈련, 사회재활훈련,

〈그림VIII-9〉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3층 건축물은 일부 공간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부모가 함께 쉴 수 있는 힐링의 시설로 건축
- 다음으로 장애인체육진흥센터의 건축면적은 6,242m²로서 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체육공간으로서 수영장, 실내경기장(농구장, 배구장 등), 체력증진센터, 건강상담센터 등 설치하여 체육활동과 건강 및 보건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인체육진흥센터는 총 3층으로 건축하여 1층은 수영장, 3층은 체육관 등의 시설로 건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접근성 향상 견인
- 장애인체육진흥센터 외관은 투명유리로 설계하여 아외 경기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장애인평생교육관(전 자립학교 부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그림VIII-10〉 장애인 국민체육진흥센터



〈그림VIII-11〉 장애인 평생교육관



-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관은 건축면적 4,474㎡으로서 장애아동의 평생교육 및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건축
- 장애인평생교육관은 상담실, 장애아동 교육실(교육1반~3반), 장애부모 쉼터(휴게실), 장애인직업체험실 등으로 설치

3. 자립복지재단 활용 기본구상 건축예산

- 자립복지재단의 총 6개 건축물(리모델링시 5개 건축물)의 총 건축면적은 약 42만㎡로서 단지조성비 포함 총 건축비는 1,450.7억원으로 추정
-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9.7천억원, 장애인직업훈련센터 6.3천억원, 연수생활관 8.2천억 원, 장애인평생교육관 4.5천억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7.8천억원 등임

〈표VIII-1〉 자립복지재단 활용 기본구상 건축예산(안)

구분		건축면적(m ²)	건축사업비(억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1. 장애인 평생교육관	4,474	98.50
	2.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7,815	172.00
	3. 장애인 체육 진흥센터	일반실 체육관(3층) 수영장(1층)	3,514 1,412 1,316 77.31 46.59 72.38
장애인 고용복합 커뮤니티센터	4. 연수 숙박관	8,285	207.13
	5.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6,255	137.61
	6. 장애인 고용복합센터	9,862	450.00
단지조성비			189.22
총 건축사업비		42,933	1450.7

〈그림VIII-12〉 장애인 평생교육관 세부조감도



- 장애인평생교육관의 건축면적은 $4,474\text{m}^2$ 로 자립복지재단 출입구에 위치하고 인접시설물로 운동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학교에서의 아외활동간의 연계성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관의 건축면적은 $7,815\text{m}^2$ 로서 1차적으로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구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신축시 위의 조감도로 건립하여 주변시설과의 동선 및 연계성 강화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체육진흥센터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관 인근에 건립하여 교육과 여가문화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유형별 여건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기능 수행

〈그림VIII-13〉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세부조감도



〈그림VIII-14〉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세부조감도



- 장애인체육진흥센터의 건축면적은 6,242m²로서 측면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여가문화 및 체육지원서비스의 상호 연계 지원
- 체육진흥센터는 1층에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수중재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견인
- 장애인고용복합센터의 건축면적은 9,862m²로서 아외공연장을 비롯하여 전시장, 대강당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교육연수기능과 체육시설, 직업훈련시설간의 상호 연계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수행

〈그림VIII-15〉 장애인 고용복합센터 세부조감도



〈그림VIII-16〉 연수숙박관 세부조감도



- 장애인 연수숙박관은 건축면적이 약 8,285m²로서 총 4층 건물로 조성하여 인근의 장애인고용복합센터와의 지리적 접근성 확보, 장애인의 교육훈련과 함께 숙박 등의 연수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추진
-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는 건축면적 6,255m²로서 인근의 케어팜 농장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농생명 관련 직업훈련이 용이하도록 실내와 실외 건축물 구성
- 장애인직업훈련센터의 핵심사업은 장애인 대상의 농생명 관련 직업훈련과 체험시설로서 장애인의 농생명 관련 고용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을 위한 공간으로 설비

〈그림VIII-17〉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세부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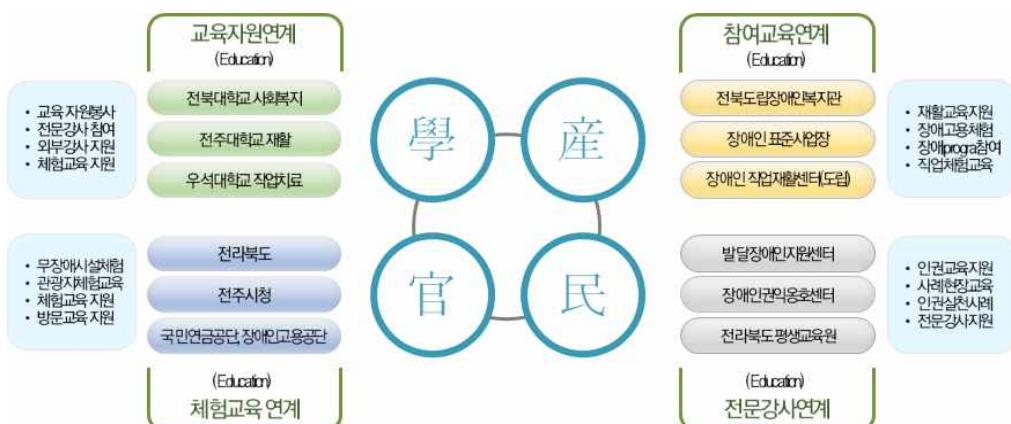


4. 자립복지재단 내 주요시설의 지역지원 연계방안

1) 장애인 교육(인식개선 및 직업교육)자원 연계방안

- 자립복지재단의 거점시설은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고용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전라북도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교육자원과 연계 구축 필요
-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핵심자원은 주로 학계, 민간단체 그리고 행정전달체계로서 행정기관 등이 고유 역할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인 고용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학계에서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하여 지역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등과 함께 자립복지재단에 설치하게 될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교육자원 봉사, 전문강사, 체험교육의 인력자원과 물리적 공간을 상호 연계함
- 또한, 산업분야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연계 및 직업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가능
- 특히, 장애인직업교육과 인식개선교육 과정에서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립복지재단 인근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접사도서관,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음으로 민간차원에서는 전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과 함께 인권교육, 전문강사지원, 사례현장교육 지원 등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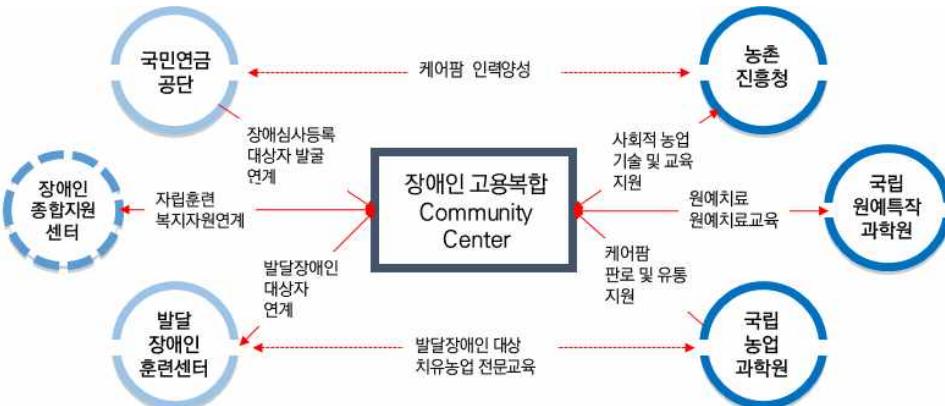
〈그림VIII-18〉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요사업간 연계망



2) 농생명 특화자원 및 케어팜(Care Farm) 연계방안

- 자립복지재단 내 주요시설 중 케어팜은 장애아동의 재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가족의 치유와 여가문화를 위한 중요시설임
- 자립복지재단 내 케어팜은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전라북도의 특화자원인 농생명 지원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농업관련 직업교육과 체험, 일자리 연계 및 농생산품 판매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견인
- 자립복지재단 내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라북도의 이전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 등과 연계하여 농생명 관련 직업훈련 및 교육 등 추진
- 농촌진흥청은 케어팜 등 사회적 농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립복지재단의 케어팜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또한 원예특작과학원은 원예치료와 원예치료 교육 및 실습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자립복지재단의 장애인고용복합 커뮤니티센터의 전문적인 케어팜 교육이 수행하도록 연계지원할 수 있음
- 특히, 원예특작과학원은 이미 원예치료를 활용한 케어팜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보와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의 농생명 특화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연계기관이 될 수 있음
- 여기에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생명 지원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이나 케어팜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장애유형별 케어팜의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그림VIII-19〉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지역자원연계방안



〈표VIII-2〉 전라북도 이전 주요 공공기관 현황

구분	목적 및 사업	착공	준공	부지
농촌진흥청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사업연구, 농촌지도 사업 및 농업관련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011.7	2014. 6	부지 : 947천m ² 총사업비 : 17,893억원
국립농업 과학원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어메니티 자원, 기능성 의약품 소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작물, 농산물 안전관리, 한식 세계화, 유전자원 등 · 자속기능한 농업환경 보전 및 농촌자원 가치창출 · 농업생명자원의 고부가 신소재 이용개발 ·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병해충 잡초 종합관리기반구축 · 농업생산 자동화, 에너지 절감 기반기술 개발 · 농업생명공학기술 활용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농업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기반 강화기술 개발 · 원예특작산업의 자속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채소·과수·화훼·인삼 등 원예특용작물 기술 개발 및 지원 · 원예 특용작물 품종개량 및 유전육종법 기술개발	2011. 7	2014. 6	부지 : 905천m ² 총사업비 : 17,893억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 원예 특용작물 안전성 기능성 향상, 재배방법 기술개발 · 친환경 고품질 안전생산 및 병해충 예방·방제 연구 · 시설원예 자동화 및 경영비 절감기술 개발·보급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의약 생활소재 개발 · 원예식물 활용 치유농업, 환경개선·생활공간 녹화기술 연구 · 원예특용작물 시설재배 환경 및 품질보전 기술개발 ·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 기후변화 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2011. 7	2015. 1	부지 : 1,799m ² 총사업비 : 17,893억원
국립축산 과학원	· 축산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 ·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수출기술 개발 ·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 ·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축산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	2011. 7	2015. 1	부지 : 1,236m ² 총사업비 : 17,893억원
한국 농수산대학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농업·농촌 발전을 주도할 정예 농업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자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두루 갖춘 미래 농업 CEO 양성	2013. 5	2014. 2	부지 : 394천m ² 총사업비 : 1,594억원
한국 식품연구원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식품기능성 규명, 신소재 신공정 연구개발 · 식품저장 유통 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 식품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 · 중소, 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체 협력 지원과 기술사업화	2015. 10	2017.8	부지 : 116천m ² 총사업비 : 2,063억원

자료 : 김동영 외(2016).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기본계획. 전라북도

- 이 이외에도 전라북도의 이전공공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는 재활승마 등을 통한 동물매개치유, 한국식품연구원은 농식품 활용 푸드마켓, 농산품 판매장 등의 전문적인 제조 및 유통기술의 연계가 가능하고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데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인력을 상호 연계할 수 있음

〈표VIII-3〉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구분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사회적기업	199개	75	20	34	12	11	6	10	4	3	4	3	8	7	2
	100.00%	37.7	10.1	17.1	6	5.5	3	5	2	1.5	2	1.5	4	3.5	1
인증	122개	51	13	10	8	6	6	5	4	1	2	2	6	7	1
예비	77개	24	7	24	4	5	-	5	0	2	2	1	2	-	1
마을기업	106개	5	5	10	17	6	8	12	6	7	5	8	7	6	4
	100.00%	4.7	4.7	9.4	16	5.7	7.5	11.3	5.7	6.6	4.7	7.5	6.6	5.7	3.8
협동조합	874개	322	98	119	55	49	28	100	19	19	8	14	10	14	19
	100.00%	36.8	11.2	13.6	6.3	5.6	3.2	11.4	2.2	2.2	0.9	1.6	1.1	1.6	2.2
자활기업	97개	14	10	19	6	5	5	2	4	4	1	8	8	8	3
	100.00%	14.4	10.3	19.6	6.2	5.2	5.2	2.1	4.1	4.1	1	8.2	8.2	8.2	3.1
합계	1,276개	416	133	182	90	71	47	124	33	33	18	33	33	35	28
	100.00%	32.6	10.4	14.3	7.1	5.6	3.7	9.7	2.6	2.6	1.4	2.6	2.6	2.7	2.2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9) 황영모(2019) 재인용

-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케어팜의 운영과 전문적인 농생명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포함한 농업관련 사회적기업으로의 일자리 연계 가능
- 전라북도에만 사회적 경제조직이 약 1,276개가 설립되어 있고, 농촌마을 공동체조직 도 약 1,260개소가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교육 이후 일자리 연계도 가능

〈표VIII-4〉 농촌마을 공동체 조직 현황

기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향토산업마을	'10~'14	5	8	8	7	9	10	7	10	7	7	8	8	9	7	110
맞체험마을	'07~'10	-	-	-	-	1	-	1	2	2	1	1	-	1	1	10
녹색농촌체험마을	'04~'13	-	1	6	6	9	7	5	9	12	8	7	2	4	9	85
농촌건강장수마을	'05~'14	3	4	4	5	6	4	8	4	5	7	4	8	6	3	71
농어촌공동체회사	'11~'13	-	-	-	1	-	1	2	-	-	-	-	-	-	-	4
농촌전통테마마을	'03~'08	1	1	3	5	3	3	1	5	3	2	1	2	1	2	26
마을기업	'10~'14	2	2	2	4	2	3	6	2	6	2	2	3	2	2	41
산촌생태마을	'96~'13	-	-	-	-	4	2	2	9	11	9	3	3	3	1	52
어촌체험마을	'02~'12	2	3	-	3	-	-	-	-	-	-	-	3	2	7	
정보화마을	'01~'09	2	2	3	1	3	4	3	2	2	2	3	3	5	3	39
농촌관광거점마을	'15	-	-	1	2	3	2	2	2	1	2	-	3	3	-	25
산촌마당캠프	'18	-	-	2	2	3	-	2	3	3	2	-	2	3	1	22
슬로푸드마을	'15~'17	1	-	1	-	1	1	1	1	2	1	1	1	2	1	15
에너지자립마을	'15~'18	11	1	2	15	1	1	2	1	-	1	2	-	1	15	14
생생 기초	'16~'18	1	12	16	1	16	14	15	16	15	15	13	15	16	1	204
마을 사후	'16~'18	-	2	3	-	7	4	6	4	6	6	6	5	4	-	56
농촌마을경관조성	'18	2	-	-	9	-	-	-	-	-	-	1	-	1	7	2
체험휴양마을	'10~'18	-	-	7	16	14	10	9	11	13	7	11	8	7	17	115
현장포럼	'13~'18	-	18	18	6	26	23	22	20	18	18	19	19	18	1	252
창조적마을만들기	'13~'18	-	-	4	-	19	1	6	8	4	6	1	10	5	-	71
진안군(자체)	'16~'17	-	-	-	-	-	-	-	21	-	-	-	-	-	-	21
임실군(자체)	'13~'18	30	-	-	83	-	-	-	-	-	-	18	-	-	73	18
합계		54	80		127	90	100	130	110	96	101	92	94			1,260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9) 황영모(2019) 재인용

3) 교육훈련 및 연수자원 연계방안

- 자립복지재단의 시설인 장애인고용훈련 연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방인재개발원 등의 이전공공기관과의 교육훈련 자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관리관리라고 하는 고유업무 이외에 장애인등급심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주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 따라서 장애인관련 국제교류와 교육연수과정을 상호연계할 경우 장애인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용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도 유용한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에는 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심사 이후 고용연수기관으로의 연계 그리고 장애인관련 전문가와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음
-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시각에서도 장애인관련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컨벤션 등 국제행사를 자립복지재단의 교육연수공간을 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민연금공단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육과 연수 등의 종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컨벤션 등의 건립을 검토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자립복지재단 내 교육훈련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관련 자원의 활용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인재개발원도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관련 강사 인재풀의 활용 그리고 공무원 대상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을 상호 연계할 수 있음

〈그림VII-20〉 자립복지재단 부지활용 관련 주요연수교육자원 연계자원활용(안)



〈그림VIII-21〉 자림복지재단 내 주요시설과 주요연계자원 현황



- 자림복지재단의 기본구상에 담길 시설들과 연계가능한 지역자원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농생명 자원과 연기금 자원이 대표적임
- 농생명자원으로는 농촌진흥청을 포함하여 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있고, 이를 시설은 자림복지재단과 반경 10%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의 상호 연계성이 뛰어남
- 또한, 장애인등급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관련 자원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고, 교육자원으로서 공무원 교육원도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함
- 따라서 자림복지재단의 기본구상에 담긴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장애인 관련 고용복지 교육시설의 주요 사업들은 농생명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장애인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또한, 국민연금공단이나 지방인재개발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는 장애인복지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인 대상 노후생활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지방인재개발원과는 장애인교육분야의 강사 그리고 교육자원의 상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결국, 자림복지재단 내 주요 공간구상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들은 전라북도의 농생명 자원 그리고 연금 및 교육자원 등과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사업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그림VIII-22〉 자립복지재단 내 대상별 사업의 연계 및 기대효과



- 자립복지재단의 공간구상의 기본시설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국민체육진흥센터 및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이 설치된 이후 지역자원과의 상호 연계가 구체화될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장애인과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지역자원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도 향상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장과 고용장애인도 장애인고용환경개선과 장애인근로조건 향상을 견인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사업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고용연수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관련 기관과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역량강화와 장애관련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직무전문성 강화와 노동시장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간의 상호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인단체의 각종 사업의 활성화를 유인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의 향상 그리고 장애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자립복지재단 내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사업장, 장애인관련 복지기관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 완화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 및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VIII-23〉 자림복지재단 인근 지역자원현황



- 자림복지재단의 인근 지역자원으로는 문화여가, 관광, 교육, 연수 지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자림복지재단 내 주요 시설과의 연계가능
- 자림복지재단 핵심 시설인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수기능과 직업훈련시설이 핵심사업으로서 인근의 농촌진흥청, 지방공무원인재개발원 등과의 교육 지원의 상호 연계가 가능함
- 또한,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요 이용자인 장애인교육연수생과 지역주민에게는 한옥마을과 역사박물관, 경기전 등의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연수생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정서적 치유와 힐링프로그램 공유도 가능
- 결국, 자림복지재단의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기본시설들은 고립적인 시설운영이 아닌 지역자원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용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물리적 지원을 가지고 있음

IX



사업타당성 분석

IX. 사업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요

-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 타당성 분석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지역의 현황, 관련 계획 및 법규,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 정치적 의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수행 여부를 판단함

- 경제적 타당성이란 해당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개별사업 자체의 입장이 아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발생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 정책적 타당성이란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내용을 제외한 정성적인 사업의 필요성, 입지 적정성, 지자체의 실질적 사업추진 의지, 관련 계획과 부합 등 현금흐름 외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함

- 본 연구에서는 자립복지재단의 기본재산 활용 방안으로서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각각 분석하여 국고/지자체 보조 사업 적격성 평가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편익추정 방법

- 특정 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화가 주는 총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으로 볼 수 있음
- 사용가치는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간접적인 수혜를 포함하여 비용이나 시간 또는 노력을 들임으로써 얻는 효용을 통해 계산되며, 이 가치는 다시 직접사용가치와 간접사용가치로 구분 할 수 있음

- 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이 물리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로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 대체가치(vicarious value)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경우 사람들의 이용을 선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제한 받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 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의 많은 부분을 비사용가치가 차지하고 있음

〈표IX-1〉 경제적 가치의 종류

분류	세분류	정의
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간접사용가치	-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발생하는 가치
	선택가치	-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지고 있는 가치
비사용가치	존재가치	-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발생하는 가치
	유산가치	- 미래 세대를 위해 재화를 보존하는 것 자체에 부여하는 가치
	대체가치	- 자신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얻는 만족감

- 하지만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경제적 가치보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임
-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인 장애인들에게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용가치가 크게 작용할 것이지만, 비장애인들에게는 사용가치는 거의 0에 가깝지만 비사용가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됨
-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인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추정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용가치만을 추정하여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로 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사용가치를 추정할 경우, 양의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 지역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님비 문제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경제적 불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지원 차원에서 경제적 불효과를 일단 제외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가치만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시장에서 제시된 시장가격과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액 (Willingness To Pay, WTP)를 비교하여 선호와 선택에 따라 수요곡선을 추정하여 측정하지만,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비시장재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황이 많아 신뢰할 만한 수요곡선을 통해 WTP를 측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은 크게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RP)과 진술선호접근법(Stated Preference Method, SP)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시선호접근법은 평가대상인 비시장재가 사적 시장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비시장재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으로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이 대표적인 방식임
- 여행비용접근법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의 액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이동한 시간과 실제 비용 및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임
- 진술선호접근법은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가상으로 설정하여(constructed market)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이 대표적임
-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비시장재화의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임
- 컨조인트 분석법은 대상 재화에 대한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순위를 매김으로써 간접적으로 재화의 가치를 유추하는 방식임

〈표IX-2〉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

구분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가상적 시장
직접 추정	경쟁시장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접 추정	여행비용 접근법	컨조인트 분석법

-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함

- CVM은 비시장재화를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는데 널리 활용되어져 왔으며,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가상적 편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의 Blue Ribbon panel에서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CVM 추천
- 또한 CVM은 타 방법에 비해 보다 다양한 비시장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컨조인트 분석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간편한 응답 절차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비사용 가치 측정 가능

- CVM의 지불의사에 질문의 설계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개방형 질문법(open ended question)은 질문방식은 단순하지만, 무응답이나 극빈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경매법(bidding game)은 여러 번 질문을 반복하여 응답자의 WTP로 근접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초기 WTP 제시금액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불카드법(payment cards)은 만일 연구대상 재화와 비슷한 성질의 정보가 타 항목으로 주어졌을 경우, 그와 비슷한 수준의 값으로 지불액을 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대상과 무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유의해야함
- 양분선택형 질문(dichotomous choice question)은 응답이 비교적 쉽고, 극빈치의 발생 확률이 작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정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으나 최근의 CVM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표IX-3〉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

방 법	내 용
개방형 질문법	· 응답자가 직접 WTP를 대답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
경매법	· 임의의 WTP에 대한 지불의사를 질문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일정 금액에 수렴하면 질문을 중지
지불카드법	· 다른 항목의 가구당 평균적인 지출 목록을 함께 제시하면서, 연구 대상 재화에 대한 지출액을 답하도록 함
양분선택형 질문법	· 일정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예/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함

-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따라 시설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① 가치 평가 대상의 선정 및 시나리오 작성

- 본 연구에서는 CVM 방식을 통해 시설별로 공익적 가치 평가를 하도록 하며, 지불의사에 관한 질문 이전에 응답자에게 조건부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해 준 후 대상 재화에 대한 의견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구성
- 특히 구체적인 사업의 특성과 계획을 응답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기카드 등 보조 자료 활용
-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 대상지역 즉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장애인을 가족을 둔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전국 단위의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국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구의 비용 및 기간의 한계로 전라북도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라북도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불용의금액으로 전국 장애인 가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 대상지와 각 지역간 거리계수를 적용하여 거리에 따라 지불용의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함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전라북도에 위치한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여행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지불용의금액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

② 지불 수단의 선택

- 조건부 시장 설정에 있어서 응답자가 밝히고자 하는 지불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현실성 있는 지불수단을 설정하는 것은 응답자가 진정한 가치를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상적인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특정 지불 수단을 선택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의 관련 정도가 높아야 함

- 응답자가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응답 구조가 단순화되어야 함
- 여러 가지 편의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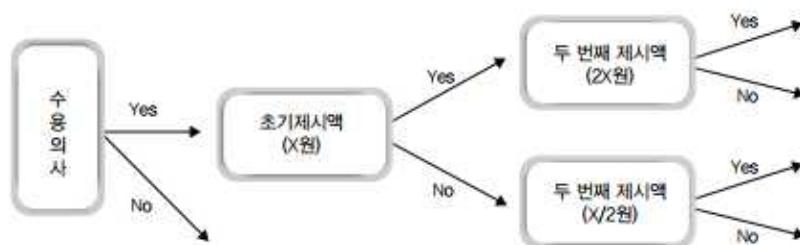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평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며, 이를 응답자가 향후 5년간 매월 세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정함

③ 자불의사 유도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대답하기 용이하여 응답률이 적고 설문 편의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함

- 양분 선택형 질문은 미리 설정된 금액들 중 임의로 한 가지 금액을 각각의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제시된 금액이 본인의 자불의사 금액보다 작거나 같다면 “예”라고 응답하고, 높다면 “아니오”라고 응답
-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경제, 이중경제, 1.5경제로 구분되는데, 초기 제시액에 대한 답변에 따라 차등화된 두 번째 제시액을 제시하여 의사를 묻는 이중경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단일경제 양분선택모형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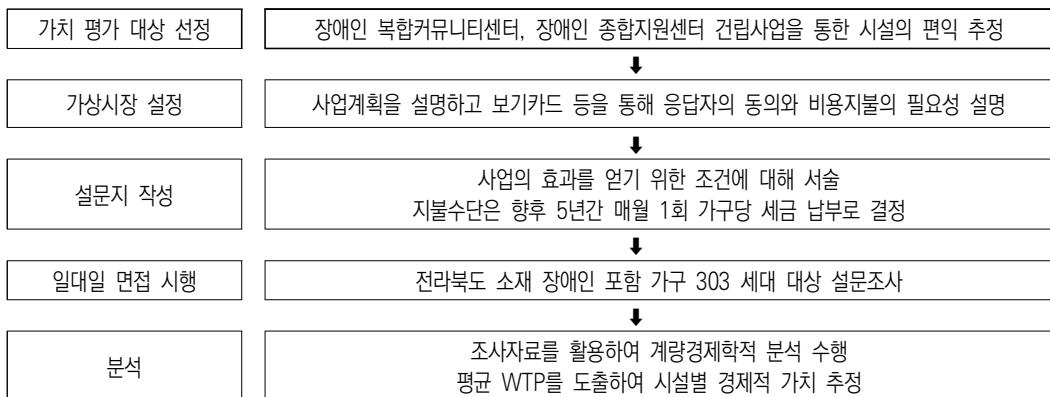
〈그림IX-1〉 이중경제 양분선택형 모형의 개념도



④ 제시금액 선정

- 본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유사 시설의 사례 조사 및 장애인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제시 금액의 수준을 판단하였으며, 본 설문조사에서 초기 제시 금액을 10,000원으로 둠
- 초기 제시 금액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제시된 금액의 2배 금액과 1/2 금액에 대한 수용의사를 질문함으로써 각각의 제시 금액에 대한 수용의사를 확인함

〈표 IX-4〉 경제적 가치 평가 절차



⑤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반응 분포

-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 제시 금액 10,000원에 대한 수용 의사하는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66.6%,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68.0%로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수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초기 제시 금액에 대해 수용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시금액을 2배로 올렸을 경우에는 수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에 대한 세금 지불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13.5%,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14.9%인 것으로 조사됨

〈표 IX-5〉 초기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 분포

	표본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요-아니요 지불의사없음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303	71(23.4%)	131(43.2%)	53(17.5%)	48(15.8%)	41(13.5%)
장애인종합지원센터	303	74(24.4%)	132(43.6%)	45(14.9%)	52(17.2%)	45(14.9%)

⑥ 지불용의금액 추정

- 본 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을 기본으로 추정하고자 하며, 다만, 개인의 특성변수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는 별도로 가정하지 않음
- 다만, 지불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모형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불거부자의 WTP가 실질적으로 0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형 추정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평균 WTP는 음의 값을 가질 가능성성이 높아짐

- 모형 추정 과정에서 지불거부자의 WTP가 분포 상으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형의 상수항의 추정치가 통계적 신뢰도가 낮거나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본 설문조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지불거부자의 비율이 높지 않아 WTP가 음의 값을 가질 가능성은 낮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거부자의 응답 결과를 표본에서 제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료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불거부자의 비중이 매우 큰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WTP가 낮거나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응답을 제거함으로 인해 편익이 크게 추정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불거부자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불용의금액을 추정하고 추정된 지불용의금액에 지불의사비율을 적용하여 실질 지불용의금액을 추정함
- 분석 결과,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지불용의금액은 16,637원, 장애인 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지불용의금액은 17,008원인 것으로 분석됨
- 지불거부율을 고려한 실질 지불용의금액은 각각 14,386원, 14,482원이며, 1년 동안 지불용의금액은 각각 172,630원, 173,780원임

〈표IX-6〉 사업별 지불용의금액 추정 결과

구분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상수	3.00520***	3.17033***
제시금액	-0.00018***	-0.00019***
평균 WTP	16,637.05원***	17,007.50원***
지불거부율	13.5%	14.9%
실질 WTP(월)	14,385.83원***	14,482.63원***
실질 WTP(년)	172,630원	173,780원

주) * :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⑦ 경제적 가치 추정

- 앞서 추정한 지불용의금액은 전라북도 거주 장애인 기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지불용의금액이 줄어든다고 가정하여 지역별 지불용의금액을 별도로 계산함

- 각 지역별 장애인 가구수에 거리 계수의 제곱과 지불용의금액을 곱하면 해당 지역의 총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연간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음
- 시설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44,063백만원이 되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44,356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5년 동안 세금으로 지불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총 편익은 이의 5배가 될 것임

〈표IX-7〉 연간 경제적 가치 규모 추정 결과

지역	장애인 가구수	거리계수	시설별 경제적 가치(백만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392,920	0.115	898	904
부산광역시	173,820	0.054	88	89
대구광역시	123,070	0.087	161	162
인천광역시	141,771	0.120	353	356
광주광역시	69,884	0.341	1,404	1,414
대전광역시	72,927	0.565	4,015	4,042
울산광역시	50,640	0.042	16	16
세종특별자치시	11,404	0.489	470	473
경기도	547,386	0.149	2,108	2,122
강원도	100,693	0.061	66	66
충청북도	97,086	0.301	1,516	1,526
충청남도	131,910	0.625	8,905	8,964
전라북도	131,746	1.000	22,743	22,895
전라남도	142,213	0.201	988	995
경상북도	176,550	0.071	153	154
경상남도	186,016	0.072	169	170
제주특별자치도	35,840	0.042	11	11
합계			44,063	44,356

- 5년 동안의 총 편익은 각각 220,315백만원, 221,780백만원이 될 것이며, 이를 2019년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185,106백만원, 186,337백만원이 될 것임
- 현재가치 계산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근거하여 4.5%로 둠
- 세금을 5년 동안 지불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가 5년 동안 지불하는 총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sum_{y=1}^5 \frac{\text{연간 WTP}}{(1+r)^{y-1}}$ (r : 할인률)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흐름을 파악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크게 3가지의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함

① 비용편익분석

- 편익/비용 비율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이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임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 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장시간에 걸쳐 투입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특정기간(일반적으로 현재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현재가치화’라고 함
- 편익/비용 비율은 사업의 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나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지표도 같이 고려

$$B/C \text{ Ratio} = \sum \frac{B_t}{(1+k)^t} / \sum \frac{C_t}{(1+k)^t}$$

B_t : 연차별 총편익, C_t : 연차별 총비용, k , t 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②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법

-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 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 IRR에 의한 판단은 단일투자인지 또는 복수투자인지에 따라, 단일투자인 경우에는 투자안의 IRR이 할인율보다 크면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인 경우에는 투자안들 중에서 IRR이 할인율보다 큰 투자안 중 IRR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함

$$\sum \frac{B_t}{(1+r)^t} = \sum \frac{C_t}{(1+r)^t}$$

B_t : 연차별 총편익, C_t : 연차별 총비용, r , t 는 각각 할인율(내부수익률), 기간을 의미함

③ 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NPV)법은 경제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어떤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총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총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순현재가치는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산이 용이하여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단일투자안의 경우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함

$$NPV = \sum \frac{B_t}{(1+k)^t} - \sum \frac{C_t}{(1+k)^t}$$

B_t : 연차별 총편익, C_t : 연차별 총비용, k , t 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④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기준

- 위의 세 가지 분석 방법 중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을 살펴보면, 내부수익률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어떤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을 그 투자안의 IRR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순현재가치법(NPV)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순현재가치법(NPV)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반면 순현재가치법(NPV)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나타내므로, 여러 개의 투자안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수익률(IRR)의 크기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면 최적투자조합을 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나, 순현재가치법(NPV)의 크기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조합을 택할 수 있음

- 순현재가치법(NPV)은 해당 투자안의 기업 가치에 대한 공현 정도를 현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 합계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내부수익률법은 그렇지 못하며, 내부수익률을 이용하여 투자 가치를 평가할 경우 투자안에 따라서 복수(複數)의 내부 수익률(IRR)이 존재하므로 투자 의사 결정이 어렵게 됨
- 이와 같이 각 방법들의 장·단점을 종합해 본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분석방법을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한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 지표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표 IX-8〉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 기준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비 (B/C)	$B/C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 현금유입 및 유출 발생시간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내부수익률 (IRR)	$IRR >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복수의 IRR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내포
순현재가치 (NPV)	$NPV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 현금유입 및 유출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의 어려움 • 투자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① 비용 측면

- 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용은 건립 단계에서 부지매입비, 단지조성비, 시설건립비로, 운영 단계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와 시설 유지비로 구분할 수 있음
- 부지매입비의 경우, 국공유지에 사업을 해서 실제로 부지매입이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기회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경우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만큼 부지매입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함
- 단지조성비와 시설건립비,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는 앞서 제시된 계획에 따라 지출된다고 가정함
- 시설유지비는 해당 시설이 30년 동안 운영되면서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지조성비와 건립비의 5%씩 매년 지출된다고 가정함

- 건립 단계에서는 총 149,300백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며, 이 중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으로 93,152백만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56,148백만원이 비용으로 계산됨
- 운영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건립 이후 30년 동안 운영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각각 214,728백만원, 136,122백만원이 운영 단계에서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됨
- 따라서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은 370,800백만원이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은 192,270백만원임

〈표IX-9〉 사업별 비용 추정 결과

단계	항목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합계
건립	부지매입비	2,500백만원	1,730백만원	4,230백만원
단계 (5년)	단지조성비	11,182백만원	7,738백만원	18,920백만원
	시설건립비	79,470백만원	46,680백만원	126,150백만원
운영 단계 (30년)	사업운영비	75,000백만원	51,900백만원	126,900백만원
	시설유지비	139,728백만원	84,222백만원	223,950백만원
합계	명목가치	307,800백만원	192,270백만원	500,150백만원
합계	현재가치	164,938백만원	102,263백만원	267,201백만원

② 편익 측면

-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1년차(2020년)부터 5년차(2024년)까지 매년 각각 44,063백만원, 44,356백만원의 세금 추가 납부가 발생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185,106백만원, 186,337백만원의 경제적 가치 상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제적 가치 상승분이 주민 편익으로 전환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 30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사업 완료 1년차(2025년)부터 사업 완료 30년차(2054년)까지 매년 각각 14,799백만원, 14,897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봄

〈표IX-10〉 사업별 편익 추정 결과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합계
총 지불용의금액(명목가치)	220,315백만원	221,780백만원	442,095백만원
총 지불용의금액(현재가치)	185,106백만원	186,337백만원	371,442백만원
총 주민 편익(명목가치)	443,964백만원	446,916백만원	890,880백만원

③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 결과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두 개의 사업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사업 중에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IX-11〉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 검토(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 값	비 고
B/C	B/C > 1	1.12	타당성 우수
NPV	NPV > 0	20,168백만원	타당성 우수
IRR	IRR > 4.5	6.38%	타당성 우수

〈표IX-12〉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 검토(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 값	비 고
B/C	B/C > 1	1.82	타당성 우수
NPV	NPV > 0	84,074백만원	타당성 우수
IRR	IRR > 4.5	14.85%	타당성 우수

〈표IX-13〉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 검토(통합 사업)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 값	비 고
B/C	B/C > 1	1.39	타당성 우수
NPV	NPV > 0	104,242백원	타당성 우수
IRR	IRR > 4.5	9.96%	타당성 우수

〈표 IX-14〉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현금 흐름(단위 : 백만원)

단계	연차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A)	(B)	(A-B)
건립 단계	1	2020		1,730		1,584	-1,584
	2	2021		7,738		6,781	-6,781
	3	2022		15,560		13,048	-13,048
	4	2023		15,560		12,486	-12,486
	5	2024		15,560		11,948	-11,948
운영 단계	6	2025	14,897	4,537	10,947	3,334	7,613
	7	2026	14,897	4,537	10,475	3,191	7,285
	8	2027	14,897	4,537	10,024	3,053	6,971
	9	2028	14,897	4,537	9,593	2,922	6,671
	10	2029	14,897	4,537	9,180	2,796	6,384
	11	2030	14,897	4,537	8,784	2,676	6,109
	12	2031	14,897	4,537	8,406	2,560	5,846
	13	2032	14,897	4,537	8,044	2,450	5,594
	14	2033	14,897	4,537	7,698	2,345	5,353
	15	2034	14,897	4,537	7,366	2,244	5,123
	16	2035	14,897	4,537	7,049	2,147	4,902
	17	2036	14,897	4,537	6,745	2,055	4,691
	18	2037	14,897	4,537	6,455	1,966	4,489
	19	2038	14,897	4,537	6,177	1,881	4,296
	20	2039	14,897	4,537	5,911	1,800	4,111
	21	2040	14,897	4,537	5,656	1,723	3,934
	22	2041	14,897	4,537	5,413	1,649	3,764
	23	2042	14,897	4,537	5,180	1,578	3,602
	24	2043	14,897	4,537	4,957	1,510	3,447
	25	2044	14,897	4,537	4,743	1,445	3,299
	26	2045	14,897	4,537	4,539	1,383	3,157
	27	2046	14,897	4,537	4,344	1,323	3,021
	28	2047	14,897	4,537	4,157	1,266	2,891
	29	2048	14,897	4,537	3,978	1,211	2,766
	30	2049	14,897	4,537	3,806	1,159	2,647
	31	2050	14,897	4,537	3,642	1,109	2,533
	32	2051	14,897	4,537	3,486	1,062	2,424
	33	2052	14,897	4,537	3,335	1,016	2,320
	34	2053	14,897	4,537	3,192	972	2,220
	35	2054	14,897	4,537	3,054	930	2,124
정산	36	2055		-1,730		-339	339
합계			446,916	190,540	186,337	102,263	84,074

〈표IX-15〉 통합사업 추진에 따른 현금 흐름(단위 : 백만원)

단계	연차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A)	(B)	(A-B)
건립 단계	1	2020		4,230		3,874	-3,874
	2	2021		18,920		16,580	-16,580
	3	2022		42,050		35,262	-35,262
	4	2023		42,050		33,743	-33,743
	5	2024		42,050		32,290	-32,290
운영 단계	6	2025	29,696	11,695	21,821	8,594	13,228
	7	2026	29,696	11,695	20,882	8,224	12,658
	8	2027	29,696	11,695	19,983	7,870	12,113
	9	2028	29,696	11,695	19,122	7,531	11,591
	10	2029	29,696	11,695	18,299	7,206	11,092
	11	2030	29,696	11,695	17,511	6,896	10,615
	12	2031	29,696	11,695	16,757	6,599	10,157
	13	2032	29,696	11,695	16,035	6,315	9,720
	14	2033	29,696	11,695	15,345	6,043	9,301
	15	2034	29,696	11,695	14,684	5,783	8,901
	16	2035	29,696	11,695	14,051	5,534	8,518
	17	2036	29,696	11,695	13,446	5,296	8,151
	18	2037	29,696	11,695	12,867	5,067	7,800
	19	2038	29,696	11,695	12,313	4,849	7,464
	20	2039	29,696	11,695	11,783	4,640	7,143
정산	21	2040	29,696	11,695	11,276	4,441	6,835
	22	2041	29,696	11,695	10,790	4,249	6,541
	23	2042	29,696	11,695	10,325	4,066	6,259
	24	2043	29,696	11,695	9,881	3,891	5,989
	25	2044	29,696	11,695	9,455	3,724	5,732
	26	2045	29,696	11,695	9,048	3,563	5,485
	27	2046	29,696	11,695	8,658	3,410	5,249
	28	2047	29,696	11,695	8,286	3,263	5,023
	29	2048	29,696	11,695	7,929	3,123	4,806
	30	2049	29,696	11,695	7,587	2,988	4,599
	31	2050	29,696	11,695	7,261	2,859	4,401
	32	2051	29,696	11,695	6,948	2,736	4,212
	33	2052	29,696	11,695	6,649	2,618	4,030
	34	2053	29,696	11,695	6,362	2,506	3,857
	35	2054	29,696	11,695	6,089	2,398	3,691
	36	2055		-4,230		-830	830
합계			890,880	495,920	371,442	267,201	104,242

5.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기반모형에서 이론적, 기술적 보완을 거쳐 CGE 모형까지 발전해 온 가운데,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채택할 때, 연구 기간 및 비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함

〈표 IX-16〉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비교

방법	장점	단점
소득기반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경제 주체의 변화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산업 체계에서만 가능 산업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투입산출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간 관계 고려 단순한 계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현상의 비선형성 반영 못함 가격 변동을 설명하지 못함 산업간 관계 고정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지 못함
사회계정행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생부문을 내생화 경제 주체별 효과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현상의 비선형성 반영 못함 가격 변동을 설명하지 못함 산업간 관계 고정 자료의 구축이 힘들 주관적인 결과 가능
CGE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생부문을 내생화 경제 현상의 비선형성 반영 가격 변동 설명 가능 다양한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형의 안정성 확보 힘듬 자료의 구축이 힘듬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결과 변동이 큼

- 투입산출모형의 경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수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을 통해 생산액, 고용, 부가가치 증가 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CGE 모형보다는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하지만, 투입산출모형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산업에 대한 투입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별 최종 수요 규모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사업비용까지 계산이 되어야 함
- 다시 말해 공공투자사업과 같이 재정이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만을 분석할 수 있으며, FTA나 조세 정책 등의 비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투입산출모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산업별 생산액 및 고용의 규모 증가 수준이며, 정부의 재정수입이나 가계소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사회계정행렬의 경우 투입산출모형에서 외생화하고 있는 변수들을 내생화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값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경제 주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하지만 투입산출모형과 마찬가지로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가 산업의 최종 수요 규모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별 최종 수요를 계산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CGE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구축하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른 분석 모형에 비해 낮을 수 있음
-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건설 등의 산업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회계정행렬이나 CGE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 과잉이라고 볼 수 있음

① 건립 단계 파급효과

-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산업은 단지조성을 위한 토목산업과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산업으로 2개의 산업 모두 건설산업에 해당됨
-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전라북도에 1,145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848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68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함
- 2개의 시설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할 경우, 전라북도에 미치는 효과는 1,832억원의 생산과 1,357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IX-17〉 건립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역	생산유발(억원)	고용유발(명)	부가가치유발(억원)	GRDP 기여율(%)
전주	972.5	760	345.1	0.30%
전라북도	1,144.7	848	397.8	0.0872%
전국	2,043.9	1,237	659.3	0.0040%

〈표IX-18〉 건립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생산유발(억원)	고용유발(명)	부가가치유발(억원)	GRDP 기여율(%)
전주	583.8	456	207.1	0.18%
전라북도	687.1	509	238.8	0.0523%
전국	1,226.9	742	395.8	0.0024%

〈표IX-19〉 건립 단계 파급효과(통합사업)

지역	생산유발(억원)	고용유발(명)	부가가치유발(억원)	GRDP 기여율(%)
전주	1,556.2	1,216	552.2	0.47%
전라북도	1,831.8	1,357	636.6	0.1395%
전국	3,270.8	1,979	1,055.0	0.0064%

② 운영 단계 파급효과

- 건립 사업 종료 이후, 시설 유지 및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고자 함
- 비용 중에서 시설 유지비는 사업지원서비스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주며, 인건비를 뺀 사업 운영비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줌
- 인건비는 개인 소득으로 귀속되어 지출에 따른 타 산업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라북도 고용자의 산업별 소비 지출 규모에 반영하여 파급효과를 계산함
-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매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67.4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7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43.3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13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개의 시설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개의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매년 전라북도에 미치는 효과는 148억원의 생산과 316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IX-20〉 운영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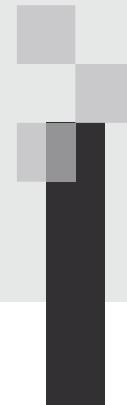
지역	생산유발(억원)	고용유발(명)	부가가치유발(억원)	GRDP 기여율(%)
전주	64.8	177	41.3	0.04%
전라북도	67.4	179	42.2	0.0092%
전국	89.8	194	49.9	0.0003%

〈표IX-21〉 운영 단계 파급효과(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지역	생산유발(억원)	고용유발(명)	부가가치유발(억원)	GRDP 기여율(%)
전주	41.6	111	26.2	0.02%
전라북도	43.3	113	26.8	0.0059%
전국	58.1	122	31.8	0.0002%

〈표IX-22〉 운영 단계 파급효과(통합사업)

지역	생산유발(억원)	고용유발(명)	부가가치유발(억원)	GRDP 기여율(%)
전주	106.4	288	67.5	0.06%
전라북도	110.7	292	68.9	0.0151%
전국	147.9	316	81.7	0.0005%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가나가와 어린이의료센터(2019) 소개소, <http://kcmc.kanagawa-pho.jp/about/files/info-ko1504.pdf>
- 김기수 외(2016).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아동의 재활치료 욕구에 관한 연구. 대전복지재단
- 김동영 외(2016).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기본계획. 전라북도
- 김미옥 외(2018).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김정섭(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고용노동부(2018)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최종안
-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4). 치유농업 방법론 평가체계 연구. 농촌진흥청
- 국민체육진흥공단(2019) 2019년도 업무현황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부(2017)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재구성.
- 농림축산식품부(2019) 사회적 농업추진전략(2019. 3. 15)
- 농촌진흥청(2018) 치유농업 정착 2단계 전략 주친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체육센터 역할 및 시설확충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2018) 장애인국민체육시설 현황
- 박경미(2015)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비전과 과제 자료집 재구성
- 보건복지부(2018)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재구성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2018)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8) 등록장애인 현황

- 이유혁(2016). 위니펙과 캐나다 인권박물관 :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50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이상민·차주영(2015)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혜경 외(2018) 복지, 교육, 고용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 오사카장애인국제교류센터 homepage
- 유한대학교(2013). 녹색치유농업의 해외실태 및 국내도입 전략개발. 농촌진흥청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전영현·임송수(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제196호
- 정경미(2014). 6차 산업 활성화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조홍식 외(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복천 외(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사업설명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공단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 장애인통계
-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장애인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 공단사업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화성시 보건소(2019) 홈페이지
- 흥지영·황수철(2017). 일본의 사회적 농업: 지방공공단체의 농복연계를 중심으로. 계간농정연구 65호 : p193~209
- 흥지영·황수철(2017) 일본의 사회적 농업: 농업과 복지의 연계. 계간농정 63호
- carefarms & Gardens(2019). Care Farming Explained <https://www.carefarminguk.org/>
- Gibbons, D et al(2017) Care farming and green care in SalfordHoeve Klein;

Mariendaal(2019) 재구성

- <http://www.camphill.org.uk/silo/files/introduction-to-camphill-communities.pdf>
- <http://www.camphill.org.uk>

연구수행기관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

연 구 책 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중섭

공 동 연 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시백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송용호

자립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

발 행 일 : 2019년 9월

인 쇄 일 : 2019년 9월

발 행 인 : 전라북도지사

발 행 처 :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